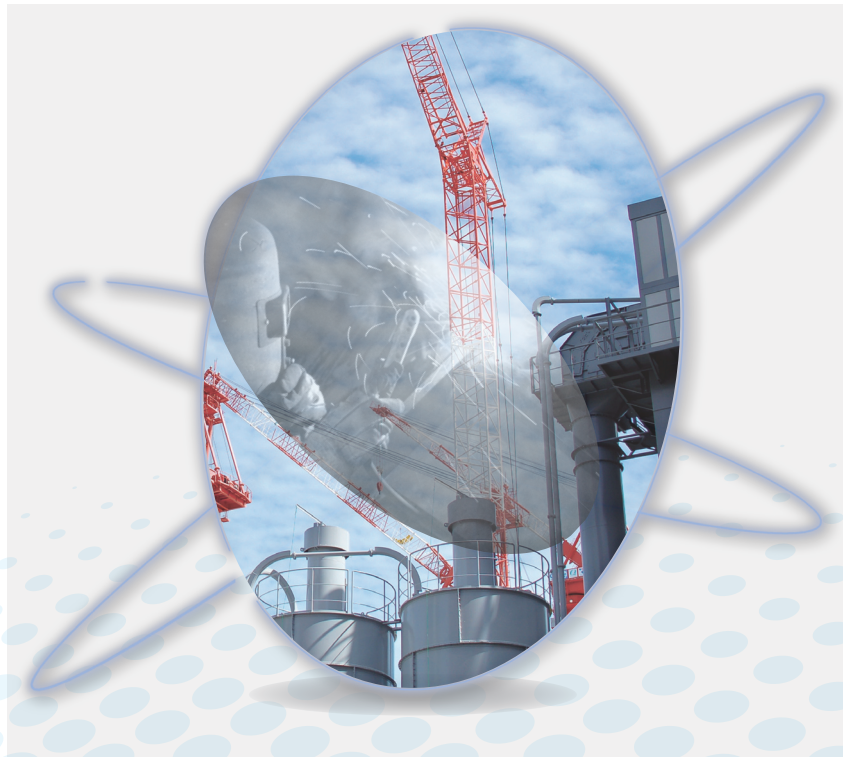


2000. 1. 1. ~ 2012. 12. 31.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13. 2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머 리 말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 많아 이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판례와 학설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올바른 법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안전보건기준을 선진화하고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맞춰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도 그간 6차례에 걸쳐 발간되어 왔습니다.

이번 「2013년도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은 그간의 행정해석을 재검토하여 법령 개정이나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타당하지 않게 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정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행정해석 중 이번 질의회시집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본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므로 이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발간된 질의회시집('10.12월) 이후부터 '12.12월까지의 행정해석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질의회시집」이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물론 산업안전보건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충실히 준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2월 28일

노동정책실장

조재복







## 제 1 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                                                                                 |    |
|---------------------------------------------------------------------------------|----|
| 1. 법 적용 일반 .....                                                                | 3  |
| →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                                       | 3  |
| →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                                  | 4  |
| → 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br>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           | 5  |
| → 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                                                        | 6  |
| →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 7  |
| →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                                                | 8  |
| →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                                           | 9  |
| →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                                                       | 10 |
| →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 10 |
| →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범위만 여부 .....                                    | 11 |
| →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                                                | 13 |
| →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                                        | 13 |
| →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                                                    | 14 |
| →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                                     | 15 |
|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 16 |
| →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                                              | 17 |
| →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                                        | 18 |
| →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br>사용 등) .....                     | 19 |
| →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                                                       | 20 |
| → 지방자치단체 급식시설의 법 적용 .....                                                       | 21 |
| → 본사 소속직원의 현장방문시 발생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 .....                                          | 22 |
| →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br>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 | 23 |
| →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 24 |
| →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 24 |
| → 광산보안법 적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여부 .....                                            | 25 |
| → 사업장의 개념 .....                                                                 | 26 |

|                                                                                                   |    |
|---------------------------------------------------------------------------------------------------|----|
| 2. 산업재해발생보고 .....                                                                                 | 28 |
| →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 .....                                                                     | 29 |
|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                                                                 | 30 |
| →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고 산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                                                      | 31 |
| →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                                                                   | 31 |
| → 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 보고시기 .....                                                                         | 32 |
|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                                                             | 32 |
| →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                                                              | 33 |
| →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일수 산정 방법 .....                                                                       | 34 |
| → 사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를 산정 방법 .....                                                                      | 35 |
| → 산업재해발생보고 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 .....                                                                 | 35 |
| →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                                                               | 38 |
| →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하여 .....                                                                  | 38 |
| →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                                                     | 39 |
| →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의 보고기한 ·                                                 | 39 |
| →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br>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                              | 40 |
| →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br>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                     | 40 |
| →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                                                          | 41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br>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 41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                                                           | 42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                                                         | 42 |
| → 요양신청서 반려된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                                                              | 43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 .....                                                         | 43 |
| 3. 산업안전보건교육 .....                                                                                 | 44 |
| →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                                                                | 44 |
| →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                                                                         | 45 |
|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                                                             | 46 |
| → 동일 현장내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소속변경시 신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 46 |
| → 유사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기 .....                                                               | 47 |
| →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 여부 .....                                                        | 48 |
| →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 여부 .....                                                      | 48 |
| →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                                                        | 49 |
| →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                                                                         | 50 |
| →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                                                       | 51 |
| → 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 인정여부 ·                                                       | 51 |
|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 .....                                                                         | 52 |
| → 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는 .....                                                           | 52 |
| →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                                                                    | 53 |
| → 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가능여부 .....                                                              | 53 |
|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인정범위는 .....                                                                          | 54 |

|                                                                       |    |
|-----------------------------------------------------------------------|----|
| → 작업선임자의 강사 적정여부 및 교육 실시 시기 .....                                     | 55 |
|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                                     | 55 |
| →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근로자의 교육면제 범위 .....                                      | 56 |
| → 특별교육은 매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57 |
|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사진 촬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                             | 58 |
|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 58 |
| →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                                  | 59 |
| → 자동차회사 영업지점 소속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시간 .....                                | 59 |
| →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작업에 투입될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br>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60 |
| → 토출압력이 9kg/cm <sup>2</sup>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61 |
| →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62 |
| → 안전보건교육 등의 실시결과 입증 및 보존방법 .....                                      | 63 |
| →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 64 |
| →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의무 주체 .....                                       | 65 |
| →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                          | 66 |
| →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                            | 66 |
| →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효력 .....                           | 67 |
| →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                           | 68 |
| →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                                         | 68 |
| → 고용유지 훈련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 69 |
| → 퇴사 후 사업장 전직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                                | 70 |
|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법적효력 여부 질의 ·                          | 70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특별교육 시간 중 간헐적 작업과 단시간<br>작업의 정의는 .....        | 71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대상은 누구인지 .....                                      | 72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 72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                          | 73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 관리기사의<br>실무의 범위 .....             | 74 |
| →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경력판단 기준 .....                                     | 74 |
|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                                     | 75 |
| →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 75 |
| →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                             | 76 |
| →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                                      | 77 |
| →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관련 질의회시 변경 ·                         | 78 |
| →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                                  | 79 |
| → 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 81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                              | 82 |
| →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83 |
|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                                      | 84 |
|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 84 |
|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 85 |
| →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 86 |
| →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                                  | 86 |

|                                         |    |
|-----------------------------------------|----|
| →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    | 88 |
| →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 폐지에 따른 질의회시 변경 .....  | 89 |
|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개정에 따른 질의회시 변경 ..... | 90 |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     |
|---------------------------------------------------------|-----|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95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                                | 95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 .....                           | 96  |
| →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                 | 98  |
| → 원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                 | 98  |
| →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                   | 99  |
| → 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                           | 100 |
| →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                          | 101 |
| → 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                             | 101 |
| → 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              | 102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 103 |
| → 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                 | 103 |
| → 단위농협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안전관리주체 .....            | 104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                             | 105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 비치 관련 .....            | 107 |
| 2. 관리감독자 .....                                          | 108 |
| →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                     | 108 |
| → 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                          | 109 |
| → 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                            | 109 |
| →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110 |
|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                              | 111 |
| → 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                    | 111 |
| →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                | 114 |
| 3. 안전보건관리자 .....                                        | 116 |
| →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                                | 116 |
| →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 117 |
| →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 .....                              | 117 |
| →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             | 119 |
| → 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 120 |
| →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자격 여부 .....                         | 120 |
| → 외부에서 A/S만을 주로하는 업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 121 |
| → 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 121 |
|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 122 |
| → 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 122 |

|                                                             |     |
|-------------------------------------------------------------|-----|
| →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포함되는지 .....                        | 123 |
| → 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 124 |
|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 125 |
| → 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br>겸임 여부 ..... | 126 |
| → 근로자수 변동으로 인한 선임의무 축소에 따른 보건관리자 근로계약 종료 여부 ..              | 126 |
| → 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 128 |
| →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                           | 129 |
| →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                       | 130 |
| →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                                      | 130 |
| →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                              | 131 |
| →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투여 가능 여부 ·              | 131 |
| →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                                     | 132 |
| → 동일지역내 1, 2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각각 선임여부                 | 133 |
| → 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 134 |
| →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 134 |
| →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                            | 136 |
| →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136 |
| → 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                    | 137 |
| →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 138 |
| → 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 139 |
| →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140 |
| → 회사 상호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                           | 140 |
| →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                        | 141 |
| →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           | 141 |
| → 도소매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 142 |
| →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 143 |
| →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                     | 143 |
| → 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                                      | 144 |
| → 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                               | 145 |
| → 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            | 146 |
| →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 147 |
| → 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                        | 147 |
| →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 .....                    | 148 |
| →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 149 |
| → 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 150 |
| →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                               | 151 |
| → 병원 및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 151 |
| →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 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 152 |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                                 | 153 |
| → 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 154 |
| → 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                        | 154 |
| → 안전관리자 해임 시 제출서류 .....                                     | 155 |
| →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가능여부 ·                   | 156 |
|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                     | 157 |

|                                                       |     |
|-------------------------------------------------------|-----|
| → 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                       | 158 |
| →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 158 |
| →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여부 .....                       | 159 |
| →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                        | 159 |
| → 야간 작업 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 160 |
| → 일괄하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                              | 161 |
| → 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 162 |
|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                 | 162 |
| → 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의 기준 .....         | 163 |
| → 동일 택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           | 164 |
|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                | 164 |
| →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                     | 165 |
| → 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                  | 166 |
| → 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                      | 167 |
| →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인지 여부 .....                    | 167 |
|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                                 | 168 |
| →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 169 |
| →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 169 |
| →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 170 |
| →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       | 171 |
| → 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 172 |
| →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         | 172 |
| →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               | 173 |
| → 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 174 |
| →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                        | 174 |
|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 .....                      | 175 |
| → 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 .....               | 175 |
| → 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        | 176 |
| →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    | 177 |
| → 박물관, 홍보관, 건축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 | 178 |
| →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178 |
| → 대표이사가 동일한 안전관리자 선임 .....                            | 179 |
| →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                          | 179 |
| →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의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                  | 180 |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 181 |
| →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관련 .....                                 | 181 |
| →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 182 |
| →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행정해석 .....                          | 182 |
| →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련 .....                    | 183 |
|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 .....                    | 185 |
| → 대학에서 공업경영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해당여부 .....            | 186 |
| → 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                    | 187 |
| →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 188 |
| → 대학에서 환경안전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당여부 .....           | 189 |
| →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                     | 189 |

|                                                                                                                              |            |
|------------------------------------------------------------------------------------------------------------------------------|------------|
| → 노동조합장을 도로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                                                                                             | 191        |
| →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는지 .....                                                                                | 192        |
|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                                                                                                     | 192        |
|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                                                                                 | 193        |
|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대행인원 산정기준 .....                                                                            | 193        |
| →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 .....                                                                                                        | 194        |
| → 보건관리자의 자격 .....                                                                                                            | 195        |
| <b>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b>                                                                                                    | <b>196</b>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 196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                                                                                                   | 197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 198        |
| <b>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b>                                                                                                    | <b>200</b> |
| →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 200        |
| →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                                                                                             | 201        |
| →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                                                                                    | 202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                                                                                              | 203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의결방법의 적정성 .....                                                                                               | 203        |
| →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 204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                                                                          | 204        |
| →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방법 .....                                                                                                | 205        |
| →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                                                                        | 207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서명을 받지 않은 회의록의 효력 및 작성시점 .....                                                                            | 208        |
| →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                                                                                    | 209        |
| → 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 210        |
|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                                                                                    | 210        |
| → 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                                                                     | 211        |
| → 1개 병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1개 병원은 자체 선출된 사람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 212        |
| <b>6. 안전보건관리규정 .....</b>                                                                                                     | <b>213</b> |
|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                                                                                        | 213        |
| <b>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b>                                                                                                    | <b>215</b> |
| →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                                                                                   | 215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 215        |
| → 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                                                                                        | 216        |
| → 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                                                                                    | 217        |
| →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 217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                                                                                                   | 218        |
|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                                                                                   | 219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가능 여부 .....                                                                                                  | 220        |

-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  
한지 여부 ..... 221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의 범위 ..... 221
- 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인 사업소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추천 가능 여부 ..... 222
-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222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정리해고된 후 복직 시 새롭게 위촉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23

## 제3장 산업안전 일반

- 1.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227
  - 도급인인 사업주 개념 ..... 228
  -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 229
  - 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 230
  -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경바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 230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 231
  -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구 지급 의무 · 232
  - 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 232
  -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 233
  - 법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와 “작업”의 범위는 ..... 234
  - 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 235
  - 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36
  -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주체 ..... 238
  -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 239
  - 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 241
  -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 241
  -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은 ..... 242
  - 산소결핍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여부 ..... 243
  -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 ..... 243
  - 사업주 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 244
  - 사업주 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 245
  - 해상고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 245
  -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 246
  - 도급사업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주체는 ..... 247
  - 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가능한지 ..... 247



|                                          |     |
|------------------------------------------|-----|
| →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       | 248 |
| →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은 .....          | 249 |
| →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       | 250 |
| →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의 .....    | 251 |
|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 252 |
| → 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     | 253 |
| → 도급 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관련 지침 변경 .....    | 254 |

## 2. 인증·검사제도 ..... 256

### 2-1. 안전인증 ..... 256

|                                                        |     |
|--------------------------------------------------------|-----|
| →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                   | 257 |
| → 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 .....                          | 257 |
| → 수입방폭모터의 경우 인증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 258 |
| → 크레인 운전속도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관한 구분 여부 .....                  | 259 |
| →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여부 .....              | 259 |
| → 차량탑재 크레인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법 적용여부 .....                     | 260 |
| → '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                      | 260 |
| →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이후 "개조" 없이 성능검정 부적합 판정시 법위반 여부 ·         | 261 |
| → 사출성형기 안전인증 적용 여부 .....                               | 261 |
| →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서면심사 여부 .....                             | 262 |
| → 굴절식 크레인 안전인증 대상 여부 .....                             | 263 |
|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에서 '출고'에 대한 시점은 .....              | 263 |
| → 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 264 |
| → 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 .....                     | 265 |
| →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                        | 265 |
| → Spider 장비의 의무안전인증대상 여부 .....                         | 266 |
| → 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면제 대상 인지 여부 .....  | 266 |
| → 위험기계기구 중고품 수입, 유통 및 출고시점에 대한 질의 .....                | 267 |
| → 타 법령에 의해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안전인증 대상 인지 여부 ..... | 268 |
| → 군용으로 제작될 15톤 텐더트럭 상부크레인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              | 268 |

### 2-2. 안전검사 ..... 269

|                                      |     |
|--------------------------------------|-----|
| → 타워크레인 부착물 설치가능범위 .....             | 270 |
| → 타워크레인 광고물부착 .....                  | 270 |
| → 검사합격증 재발급에 대하여 .....               | 271 |
| →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 변경 및 완성검사 실시 여부 ..... | 272 |
| → 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         | 273 |
| → 안전검사에서 적용 제외되는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는 ..... | 274 |
| → 가스 매니폴더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여부 .....        | 274 |
| → 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              | 275 |

## 3. 산업안전기준 ..... 276

|                               |     |
|-------------------------------|-----|
| → 인화공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 | 276 |
| →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여부 .....       | 277 |

|                                                                  |     |
|------------------------------------------------------------------|-----|
| →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                                              | 278 |
| → 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                          | 279 |
| →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br>비상구 설치 여부 ..... | 279 |
| → 1m 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의 의미 .....                        | 280 |
| → 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                        | 281 |
| →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 규정 ....                     | 282 |
| → 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                                          | 282 |
| → 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                                            | 283 |
| → 위험물질 보관 .....                                                  | 283 |
| → 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                        | 284 |
| → 무재해 인정범위 .....                                                 | 285 |
| →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                                               | 285 |
| → 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이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86 |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내화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                      | 287 |
| → 안전기준 제327조(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를 위반한 외부인에 대해<br>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 287 |
| → 조명탑 구조물을 승하강시키는 장치가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88 |
| → 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289 |
| → 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는 경우 안전기준 적용 시점은 .....                          | 290 |
| → 동력문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정지 의미는 .....                                   | 290 |
| → 공작물 증축시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                                      | 291 |
| → 앵글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의 인양가능 여부 .....                                 | 291 |
| → 작업장 통로의 설치기준 .....                                             | 292 |
| → 비상용 계단의 계단 폭 설치기준 준수 여부 .....                                  | 292 |
| →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                                        | 293 |
| →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94 |
| →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                               | 295 |
| → 배수로에서 갖추어야 할 추락방지 조치는 .....                                    | 295 |
| → 수직그물망으로 안전난간대 설치의 대체가능 여부 .....                                | 296 |
| → 천장크레인 자격자도 타워크레인 조종가능 여부 .....                                 | 296 |
| → 안전용구(보호구) 미 지급시 사업주의 책임 관련 .....                               | 297 |
| →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에 따른 등받이를 설치여부 .....                                | 298 |
| → 기중기 운전기능사 취득시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여부 .....                              | 298 |
| → 조선업 자율평가 시 사망만인을 산정 범위 .....                                   | 299 |
| → 통로의 조명에 대한 적용여부 .....                                          | 299 |
| → 기관차의 정거장 구내 이동이 입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 300 |
| →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                                          | 301 |
| →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장소에 교대근무자의 출입 가능여부 .....                          | 302 |
| → 열차의 지정된 차고지의 정의 .....                                          | 303 |
| →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                               | 304 |
| → 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인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                            | 304 |
|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                                    | 305 |
| →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305 |
| → 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 .....                                   | 306 |

#### 4. 건설안전기준 ..... 307

- 낙하물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307
- 파이프써포트의 높이는 파이프자체의 높이인지 장선망을 포함한 높이인지 307
- 무비계공법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308
- 적관 파이프 써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308
- 달비계 설치 작업시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309
- 갯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309
-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의무 주체 및 존치기한 ..... 310
- 하이드로 크레인에 의한 탑승설비(작업대차)를 제작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지 여부 ..... 311
- 아파트 측벽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부 ..... 312
- 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312
- 구조물의 높이가 2m이상이면 반드시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하는지 313
- 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 ..... 314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 ..... 315
- 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 315
- 철골공사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 ..... 316
- 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 317
-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 317
- 낙하물방지망을 설치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 ..... 318
-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318
-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 319
-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 319
- 가설통로의 경우 사업장 계단설치기준 적용 ..... 320
- 안전네트가 안전상의 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 320
- 작업발판 및 비계기둥의 간격기준 ..... 321
- 공사용 가설분전반 설치 작업의 정전작업 해당 여부 ..... 322
- 주유소 설치공사의 피뢰침설치 적용기준 ..... 322
- 건설기계 후방카메라 설치시 감시인 배치 여부 ..... 323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여부 .. 323
-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안전난간대 사용가능 여부 ..... 324
- 희망근로 사업 참여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여부 ..... 324
- 발코니 난간대 설치시 상부 및 중간난간대 설치기준 ..... 325
-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326

####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 327

##### 5-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327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 327
- 집수정 부분의 최대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328
- 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329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 329

|                                                                                |            |
|--------------------------------------------------------------------------------|------------|
| → 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 .....                                               | 330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깊이 .....                                                    | 330        |
| → 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                                     | 331        |
| →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                                           | 332        |
| → 판매시설 개보수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 333        |
| → 지하차도 집수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                                             | 333        |
| → 공사시기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                                             | 334        |
| →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                                                | 334        |
| → 기존건물 증축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                                            | 335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제출 가능여부 .....                                                    | 336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 336        |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br>작성 주체 .....                      | 337        |
| → 피로티 및 옥탑부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포함대상 여부 .....                                     | 338        |
|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 .....                                                        | 339        |
| <b>5-2. 공정안전보고서 .....</b>                                                      | <b>340</b> |
|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 기준 .....                                                     | 341        |
| → 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                                            | 341        |
| →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                                           | 342        |
| → 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                                             | 342        |
| → 석유류를 저장출하하고 있는 사업장의 석유류제품의 첨가제 주입을 위한 시설<br>설치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343        |
| → 폐윤활유 정제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 343        |
|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질의 .....                                                | 344        |
| → 설비가 신설될 경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 345        |
| →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                                                   | 345        |
| → 저장소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 346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br>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                 | 346        |
| → 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등 .....                                             | 347        |
| → 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관련 변경 .....                                     | 347        |

## 제4장 산업보건환경

|                                             |            |
|---------------------------------------------|------------|
| <b>1. 작업환경측정 .....</b>                      | <b>351</b> |
| → 화학물질의 허용농도 설정 기준 .....                    | 352        |
|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 353        |
| → 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                 | 353        |
| → 갱내의 범위에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            | 354        |
| → 소음노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   | 354        |
| → 분석설비 미비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여부 .....  | 355        |

|                                                           |     |
|-----------------------------------------------------------|-----|
|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포함 여부 및 이사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    | 355 |
| → 한시적인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 356 |
| → 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판단기준 .....                              | 357 |
| → 계절에 따른 온열의 노출기준 .....                                   | 358 |
| → 시료포집 근로자수 산정 방법 .....                                   | 358 |
|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는 것인지               | 359 |
| →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 조항은 무엇인지 ..... | 360 |
| → 서류상 예비조사의 실시 .....                                      | 361 |
| → 방진마스크 사용 작업장 기준 .....                                   | 361 |
| → 파견(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             | 362 |
| → 본사 및 5개사업소를 본사에서 총괄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               | 362 |
| →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                                | 363 |
| → 사업장과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보존 연한 .....                     | 363 |
| → 사업장 자체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364 |
| → 소음이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보정해야 하는지               | 364 |
| → 소음 측정치가 90dB이면 노출기준 초과에 해당되는지 .....                     | 365 |
| → 한 공정에서 5명씩 3교대로 작업을 할 경우 측정결과표상 표시 .....                | 366 |
| → 레이저 절단기로 절단작업시 발생하는 물질은 무엇이며 어떤 분진에 해당되는지               | 366 |
| → 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초과공정만 측정하는지 전 공정을 측정 하는지 .....              | 367 |
| →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의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 367 |
| → 공기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미 실시시 조치사항 .....                       | 368 |
| → 작업환경측정기관 합병시 측정업무 수행 방법 .....                           | 368 |
| → 건설현장과 같이 한시적인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 369 |
| → 전자부품서비스센터에서 행하는 납땜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                | 370 |
| →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니켈 및 6가크롬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 370 |
| →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370 |
| → 단시간 노출측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                           | 371 |
| →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 기관방법주기 .....                              | 372 |
| → 근로자가 용접용 보안면을 착용하고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방법 .....                  | 372 |
| → 일부공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향후 측정대상 및 주기는 .....                 | 373 |
| →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374 |
| → 타 지방관서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의 측정대행 가능 여부 .....                 | 375 |
| → 작업환경측정기관 추가 지정 및 출장소 운영 가능 여부 .....                     | 375 |
| → 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              | 376 |
| → 8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 평가방법 .....                       | 376 |
| → 포름알데히드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 377 |
| →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및 단시간 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 377 |
| → 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의 측정주기 및 범위 .....                             | 378 |
| →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시기는 .....                         | 378 |
| → 노출근로자가 1인이고 지역시료채취 할 때 시료수는 .....                       | 379 |
| → 염화비닐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                         | 379 |
| → 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 380 |

|                                            |     |
|--------------------------------------------|-----|
| → 분진작업과 상시 분진작업의 차이 .....                  | 380 |
| → 시멘트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 381 |
| → 단시간 납땜업무가 측정대상 등이 되는지 .....              | 382 |
| → 발암성물질 초과시 해당 유해인자만 측정하여야 하는지 .....       | 382 |
| →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작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  | 383 |
| →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 384 |
| → 노출수준을 달리하는 작업장이 혼재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  | 385 |
| →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 해당 여부 .....                | 386 |
| →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 386 |
| → 유기용제 작업환경측정 시 수동식 시료채취기 사용가능 여부 .....    | 387 |
| → 허용소비량 및 함유량 산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 388 |
| → 공장의 가동이 연기 또는 중단된 경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여부 ..... | 388 |

## 2. 유해물질관리 ..... 390

|                                                                                   |     |
|-----------------------------------------------------------------------------------|-----|
| → 사내 통신(Web site)을 통한 MSDS 비치(게시)의 법적 적정 여부 .....                                 | 391 |
| → 순간접착제에 유해그림의 부착 .....                                                           | 392 |
| →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여부 .....                                                 | 392 |
| → 염화메틸렌의 유해여부 및 관련 규정 .....                                                       | 393 |
| →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                                              | 393 |
| →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경고 표지가 부착된<br>경우 타 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394 |
| → 에틸알코올 등 혼합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MSDS 작성비치 여부 .....                                    | 395 |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허용소비량의 해석 .....                                             | 396 |
| → 허용소비량 단위 및 사용량의 적용방법 .....                                                      | 396 |
|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의 독성시험은 .....                                                   | 397 |
| → 허용소비량의 작업시간 및 정확한 단위환산 여부 .....                                                 | 397 |
|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 중 “일반소비자용 제제”의 범위 .....                                    | 398 |
| → 성형완제품(Article)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여부 .....                                            | 399 |
| → 화학물질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기재 방법 .....                                                  | 400 |
| → 타 지방관서 관할 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                                   | 400 |
| → 화학물질 경고표시 의무위반 여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401 |
| →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시 재교육 실시 여부 및 사용 사업주의 수정 가능 여부 .....                                 | 402 |
| →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                                             | 402 |
| → 시행일 이전 판매된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                                            | 403 |
| →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변경 사항 .....                                             | 404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장소 .....                                                      | 405 |
| → 화학물질 경고라벨(GHS라벨)중 그림문자 표시사항 .....                                               | 405 |
| → MSDS 작성 시 구성 성분 관련 질의 .....                                                     | 406 |
| → 경고표지 항목 및 대상화학물질 해당여부 .....                                                     | 407 |
| →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대상여부 .....                                            | 408 |
| →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 표시 .....                                                            | 409 |
|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관련 질의 .....                                                         | 410 |
| → 원료의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여부 관련 행정해석 변경 .....                                        | 411 |

## 3. 석면조사 및 관리 ..... 412

|                             |     |
|-----------------------------|-----|
|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련 규제내용 ..... | 413 |
|-----------------------------|-----|

|                                                                               |     |
|-------------------------------------------------------------------------------|-----|
| → 석면의 취급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사항 .....                                                | 413 |
| → 폐석면의 적절한 처리절차 .....                                                         | 414 |
|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폐기 방법 .....                                                   | 415 |
| → 불법으로 매립된 석면 처리방법 .....                                                      | 415 |
| → 석면조사 의무주체 .....                                                             | 416 |
| → 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업체를 통한 작업대상 여부 .....                                       | 416 |
| →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지 여부 .....                        | 417 |
| → 석면함유 자재에 나사를 박는 작업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                             | 417 |
| → 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대상 기준 .....                                                | 418 |
| →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의 의미 .....                                   | 418 |
| →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건축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 .....                             | 419 |
| →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공업계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기준 .....                           | 419 |
| → 석면조사기관 지정인력 또는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인력 중 “가”목의 요건에<br>해당 하는 자를 “나”목의 자로 대체가능 여부 ..... | 419 |
| →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대표자 인정 여부 .....                                               | 420 |
| → 장비를 임대할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로 등록가능 여부 .....                                         | 420 |
| →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                                     | 421 |
| →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기준 .....                                         | 421 |
| →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 석면조사 실시 대상여부 .....                                        | 422 |
| → 석면관련규정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에 대한 사항 .....                                        | 422 |

#### 4. 건강진단 ..... 424

|                                               |     |
|-----------------------------------------------|-----|
| →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 요청가능 여부 .....   | 425 |
| → 특수건강진단의 중복검사항목 인정여부 .....                   | 425 |
| → 소음청력검사의 방법과 기 유소견 판정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   | 426 |
| → 공업계 실습생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여부 .....                 | 427 |
| → 건강진단결과 추적검사 판정시 그 실시시기 .....                | 427 |
| →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     | 428 |
| → Air Gun(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 | 429 |
| → 일반질환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가능여부 .....                  | 430 |
| → 작업환경측정결과 연속으로 노출기준 초과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 .....  | 430 |
| → 정기건강진단의 법적의무 및 사후 불이익 여부 .....              | 431 |
| → 특수건강진단 분석수가 적용 .....                        | 432 |
| →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 의무 .....       | 433 |
| → 포름알데히드 함유중량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대상 범위 .....           | 434 |
| →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       | 434 |
| → 하나의 회사가 분리 독립된 경우 건강진단 인정 범위 .....          | 435 |
| → 역학조사의 대상과 실시절차 .....                        | 435 |
| → 화학분석실 운영업체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      | 436 |
| → 의료기관 전리방사선실 근무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          | 437 |
| → 근로자의 건강진단 거부 .....                          | 438 |
|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서류의 보존 .....               | 438 |
| → 취급 유해인자의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여부 .....          | 439 |
| → 건강진단 실시결과 송부 및 보고기한 .....                   | 439 |
| →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의 범위 .....              | 440 |

|                                                                                                                                       |     |
|---------------------------------------------------------------------------------------------------------------------------------------|-----|
| → 일반건강진단 대신 종합건강진단 실시 및 보고 등 .....                                                                                                    | 441 |
| →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                                                                                                      | 441 |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                                                                                                             | 442 |
| → 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                                                                                                       | 442 |
| →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같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                                                                                             | 443 |
| → 1차 및 2차 검사의 건강진단기관 분리실시 가능여부 .....                                                                                                  | 444 |
| → 배치전건강진단의 보고시기 .....                                                                                                                 | 445 |
| →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의 상근대상 여부 .....                                                                                            | 445 |
| →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 .....                                                                                                                   | 446 |
|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법정장비를 임대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 446 |
| → 주유원도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447 |
| →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 447 |
| → 건강진단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해석) .....                                                                                                        | 448 |
|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분원 또는 출장소에서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적법한지 여부 .....                                                                                     | 448 |
| → 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검사항목 .....                                                                                           | 449 |
|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                                                                                           | 450 |
| → 특수건강진단 신규대상 물질 사용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는 .....                                                                                           | 450 |
| → 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                                                                                         | 451 |
| →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 451 |
| → 휴직 시 건강진단 실시 여부 .....                                                                                                               | 452 |
| →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 구분 방법 .....                                                                                                            | 452 |
| → 제조공정 근무관리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 454 |
|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대상 여부 .....                                                                                            | 454 |
| → 밀폐된 맨홀내에서 자연발생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에 해당되는지 .....                                                                                      | 455 |
| → 특수 및 일반건강검진의 중복 항목인 흉부 X-ray, 간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br>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br>결과를 일반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이 가능한지 ..... | 456 |

## 5. 산업보건기준 ..... 457

|                                                                    |     |
|--------------------------------------------------------------------|-----|
| →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9호의 작업이 근로시간연장 제한 작업에 포함되는지 .....                  | 457 |
| → 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                      | 457 |
| → 갯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되는지 .....                  | 458 |
| →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및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 가능 여부 .....                    | 459 |
| →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가능여부 및 진단대상의 범위 .....                        | 459 |
| → 갯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                   | 460 |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관련 .....                   | 460 |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의 범위 .....                            | 461 |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 제3절(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br>조치)의 구체적 해석 ..... | 462 |
| →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일 9시간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한지 .....                       | 463 |
| → 사무직 근로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포함 여부 .....                                 | 464 |
| → 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기준 .....                                          | 464 |
| → 수시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방법 .....                                        | 465 |
| → 수시유해요인조사 시기 .....                                                | 465 |
| → 이동물품의 중량표시 방법 .....                                              | 465 |



|                                                                      |     |
|----------------------------------------------------------------------|-----|
| → 무게중심 이동물품에 대한 표시방법 .....                                           | 466 |
| → 수시 유해요인조사 방법 .....                                                 | 466 |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                                         | 467 |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안전보건교육에 해당<br>되는지 여부 .....           | 468 |
| →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실시요건 .....                                           | 469 |
| →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제한 대상 여부 .....                                        | 469 |
| →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 470 |
| →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470 |
| →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br>발생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471 |
| → 산설사업장 유해요인조사 .....                                                 | 471 |
| →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 472 |
| → 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방법 .....                                       | 473 |
|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                           | 474 |
| → 고무롤 발생공정의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                                        | 475 |
| → 황산 발생시 측방형후드의 제어풍속 .....                                           | 475 |
| → 항암제 취급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자체검사 대상 여부 .....                             | 476 |
| → 정신분열증 병력자의 취업 시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규정 적용 여부 ..                         | 476 |
| →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적용범위 .....                                          | 477 |
| → 사업장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                                 | 477 |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                                       | 478 |
| →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미는 .....                                        | 479 |
| → 고열작업장소의 범위 .....                                                   | 479 |
| → 캐시업무 근로자의 의사비치 여부 .....                                            | 480 |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                         | 481 |
| → 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 유해인자의 범위 .....                                         | 481 |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목적 및 증상조사자의 자격 .....                               | 482 |
| → 반자동 케리지 용접작업장에서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                                | 482 |
| → 정화조 시설이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                                          | 483 |
| → 밀폐공간작업시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 안전보건조치는 .....                                  | 484 |
| → 병원에서 근로자의 B형간염 환자 혈액노출 사고 후 추적관리 범위 .....                          | 484 |

## 제5장 건설업 안전보건

|                                              |     |
|----------------------------------------------|-----|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                   | 489 |
| →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의 범위 .....                   | 489 |
| → 순수 포장공사에 부대한 공사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      | 490 |
| → 여러개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      | 490 |
| → 원가계산시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원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 491 |
| → 하수종말처리현장의 공사종류 .....                       | 491 |
| → 관급자재비 감소로 대상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전관리비 재계상 여부 ..... | 492 |

|                                                                      |     |
|----------------------------------------------------------------------|-----|
| → 건축물내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                                           | 493 |
| → 분리 발주공사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                                | 494 |
| →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 조치하고 이 비용을 이윤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 495 |
| →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 포함 여부 .....                                          | 496 |
| →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 497 |
| → 건설업 외에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는지 .....                         | 497 |
| → 안전관리비 계상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 498 |
| → 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책임 여부 .....                             | 499 |
| →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엘리베이터 등을 다른 시공사에 도급을 준 경우 안전관리비<br>계상시 재료비에 포함되는지 ..... | 500 |
| → 경관림 조성사업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여부 .....                                    | 501 |
| → 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br>있는지 .....              | 501 |
| →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                                 | 502 |
| →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 503 |
| →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                                   | 504 |
| → 토지구획정리 등 복합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적용 .....                                     | 504 |
| →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제조하는 공장도<br>사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 505 |
| → 민원처리비가 포함된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 506 |
| → 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 .....                                     | 507 |
| →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률 적용여부 .....                                           | 508 |
| → 총 공사금액의 70%와 자체 실행예산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 508 |
|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70%의 의미 .....                           | 509 |
|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 510 |
| → 물품납부 및 설치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발주자의 책임한계 .....                            | 511 |
| → 사급자재비가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                                   | 512 |
| → Turn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 513 |
| → 관급자재비 누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 513 |
| → 사급자재 및 골재비용이 별도로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 514 |
| →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 .....                                 | 515 |
| → 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                                 | 515 |
| →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                                   | 516 |
| → 아파트 평당단가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 517 |
| → 일괄발주 계약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 518 |
| → 택지조성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 계상방법 .....                                        | 519 |
| → 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 .....                                        | 520 |
| → 안전관리비 초과계약시 법 위반여부 등 .....                                         | 520 |
| →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                          | 521 |
| → 시공사 구매자재를 지급자재로 볼 수 있는지 .....                                      | 522 |
| →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등이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되는지 .....                                | 523 |
| → 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 523 |
| → 안전관리비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                             | 524 |
| →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                              | 525 |
| → 현장에서 설치하는 완성제품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                             | 526 |

|                                                                                 |     |
|---------------------------------------------------------------------------------|-----|
|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의 1.2배 의미                                    | 526 |
| →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 527 |
|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범위                                                 | 52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련 질의에 대하여                                                        | 529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 529 |
| →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 공사금액의 범위                                   | 530 |
| → 발주(도급)금액이 평당단가(연면적×평당공사비)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아파트공사                           | 530 |
| →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531 |
| → 사업비 중 부자매입비, 시행비, 감리비, 분양비,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53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532 |
| → 노반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                                                               | 53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                                                               | 534 |
| → 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한지                                           | 535 |
| →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535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536 |
| →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한 회시                                               | 537 |
| → 일괄 발주 방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537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내용중 “제품”의 의미에 대한 회시                                            | 538 |
| → 154KV관련 공사의 공사종류 등에 대한 회시                                                     | 538 |
| → 발전소 설치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회시                                                     | 539 |
| → 공법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요율                                                           | 540 |
| →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공사종류                                                              | 540 |
| → 단가계약 공사에서 개별 단위공사의 의미는                                                        | 541 |
| → 아파트 공사중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추가 공사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금액에 포함 여부                   | 54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대상액에 포함가능 여부                                        | 542 |
| → 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한 재산권 여부                                           | 543 |
| → 발주자 제공 재료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54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비 관련 질의회신                                                     | 544 |
| →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545 |
| → 재해예방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환수                                                   | 545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의 범위는                                                  | 546 |
| → 터널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 546 |
|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책임한계                                            | 547 |
| →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 54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 548 |
| →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완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제4조의 완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 549 |
| →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 550 |
| → 고압 및 저압공사가 혼재된 전기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 550 |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기술지도 ..... 553

###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 553

- 환기장치 가동시설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53
- 안전관리비를 공중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 가능여부 ..... 554
-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54
-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고 안전관리비로 사용 여부 ..... 555
-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55
- 리프트 무선호출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56
- 안전지원제 행사후 수건을 배포한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56
-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57
- 안전관리자 통신수단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57
- 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냉각자켓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58
- 2차 건강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58
-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59
- 특고압선의 방호관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59
- 안전지원제 행사시 초청자의 기념품비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60
- 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지급여부 ..... 560
- 안전시설물 구입 시 발주처의 과도한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 561
- 자진신고한 미검정 가설기자재 심사수수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62
- 습윤지역 전선거치대 및 LPG운반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63
- 공사에 반영된 기존 안전방망 해체후 일부 추가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563
- 안전보조원 인건비 및 안전시설 설치 유지를 도급에 의할 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64
- 제빙을 위한 재해발생 방지 염화칼슘이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 565
- 사용하지 못한 안전관리비의 반환여부 ..... 565
- 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 566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 차이점 ..... 566
- 혈압계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67
- 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67
- 라셀망을 폭목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68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집행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 569
- 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69
- 개인보호구 지참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 570
- 안전화 깔창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70
-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의 범위 ..... 571
- 리프트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72
- 계열사 파견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용 기기 사용여부 ..... 572
- 안전순찰차량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74
- 장소협소로 협력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74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575
-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위한 수평강판 및 브리켓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575
- 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76
- 타 현장에서 안전교육장 비품 이송시 차량운송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576
- 안전순찰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유지비의 인정범위 ..... 577

|                                                              |     |
|--------------------------------------------------------------|-----|
| → 터널작업장 식별이 용이한 반사조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78 |
| →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 전액 지출여부 .....                     | 578 |
| → 작업용 우의 및 전선보호덮개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79 |
| → 안전모용 땀흡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80 |
| → 비계용 안전화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80 |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                            | 581 |
| →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안전관리비(카메라, VTR 등)의 손료처리 가능여부                   | 581 |
| → 고압선이 타워크레인에 인접한 경우 전선방호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82 |
| → 안전시설요원 퇴직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82 |
| → 안전가시설재 정리시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83 |
| → 지하굴착 현장에서 매연측정기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83 |
|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시기 및 안전관리비의 손료 적용<br>정산가능 여부 ..... | 584 |
| → 안전시설비가 부족하여 기준 초과 비용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                   | 584 |
| → 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컴퓨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85 |
| → 박리재에 의한 질병방지용 방수조끼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86 |
| → 설계내역서에 포함된 낙하물방지망을 도급내역서에서 감액 할 수 있는지                      | 587 |
| →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지급방법 .....                               | 587 |
| → 안전관리자 업무용기기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588 |
| → 환기FAN 가동에 따른 소음차단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89 |
| →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보상금지급<br>여부에 대하여 .....      | 590 |
| → 소화기 받침대 및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90 |
| → 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 할<br>수 있는지 .....   | 591 |
| → 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 592 |
| →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93 |
| → 하도급업체에서 안전보조원 채용 및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시<br>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94 |
| → 당해 현장의 안전보조원 퇴직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94 |
| → 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95 |
| → 안전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95 |
| → 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                   | 596 |
| → 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97 |
| → 리프트 자동운전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97 |
|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및 전선거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98 |
| →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운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598 |
| → 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 599 |
| → 추락방망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                                      | 600 |
| → 수직방망 및 접지형 플러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00 |
| →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 잠수교육 등을 안전관리비로<br>사용할 수 있는지 .....  | 601 |
| → 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02 |
| → 제빙용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03 |
| → 실공사착공전 선행된 공사 준비기간 중 사용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                  | 603 |

|                                                                |     |
|----------------------------------------------------------------|-----|
| →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                          | 604 |
| → 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05 |
| → 자산성 장비 구입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                                | 605 |
| → 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606 |
| →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 607 |
| → 화재예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607 |
| →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                             | 608 |
| → 손료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 609 |
| → 안전시설물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610 |
| → 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 610 |
| → 동일사업장에서 동일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사공시 안전장구 등을 공동으로<br>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611 |
| → 건설체험교육장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 612 |
| → 안전시설물 유지 및 보수 전담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 612 |
| → 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613 |
| →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14 |
| → 불꽃방지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14 |
| → 가설전선 피복을 위한 ELP주름전선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615 |
| → 안전자재 반입시 장비사용료 등 .....                                       | 615 |
| → 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 임대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16 |
| →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 여부 .....                   | 617 |
| → 낙석방호 철망 및 건설기계 후진경보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17 |
| → 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                          | 618 |
| → 철도공사 야간 작업수행자 야광조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19 |
| → 통신시설 사용 가능 여부(가능 또는 불가능) .....                               | 619 |
| → 부대입찰시 원하도급자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                                 | 620 |
| → 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                             | 621 |
| → 설계에 반영분을 초과 사용한 원하청간의 안전관리비 사용문제 .....                       | 621 |
| → 교량 공사에서 안전난간 및 난간 고정용 브라켓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22 |
| → 분실한 카메라 재구입 가능여부 및 안전시설 해체 비용 .....                          | 623 |
| → 교육용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24 |
| →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                                | 624 |
| → 음주측정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25 |
| → 신호수의 인건비 사용여부 .....                                          | 626 |
| → 안전차량 추가운영시 유지비 사용여부 .....                                    | 626 |
| → 교량 크로스-빔 하부에 방호선반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27 |
| → 고압전선 전기재해 예방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27 |
| → 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28 |
| → 안전모 햇볕가리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29 |
| → 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 사용여부 .....                          | 630 |
| → 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631 |
| → 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 631 |
| → 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 포함 여부 및 목적외 사용시 조치 .....                       | 632 |
| →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                       | 633 |
| → 안전보건행사비 소요비용 사용여부 및 인정 범위 .....                              | 634 |

|                                                                                          |     |
|------------------------------------------------------------------------------------------|-----|
| →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                                                              | 635 |
| → 감리자가 확인 날인하지 아니한 안전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인정 할 수 없는지 여부 .....                                      | 635 |
| →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 636 |
| → 터널공사에서 긴급 대피용 발전기 및 CCTV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37 |
| → 안전보건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어떤 내용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638 |
| →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집진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 638 |
| → 안전지원제 행사비용의 사용범위 .....                                                                 | 639 |
| →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급수시설, 난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 640 |
| → 안전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40 |
| → 안전관리팀의 산재과에 대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서 작성시기 .....                                        | 641 |
| → 안전관리자 비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642 |
| → 용접흙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 643 |
| → 외주업체 소속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643 |
| →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 중 누진에 따른 차액을 당해 현장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                                       | 644 |
| → 낙하물방지망을 “안”자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 645 |
| → 본사 안전관리부서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여부 .....                                             | 645 |
| → 『현재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 646 |
| →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입·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 647 |
| →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 647 |
| →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                                         | 648 |
| →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                                              | 649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649 |
| →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매월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                 | 650 |
| →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지 ..... | 650 |
| →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651 |
| → 리프트 호출장치를 포함, 임대하여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을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                       | 652 |
| → 안전시설재를 현장에서 반출시 운송비용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                                          | 652 |
| → 의료시설 사용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                                                   | 653 |
| →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                       | 654 |
| →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654 |
| → 자동탈착식 방호덮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656 |
| → 조끼형 안전벨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656 |
| → 크레인에 설치하는 감시용 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657 |
| →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657 |
|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설치비용 및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 658 |
| →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659 |

- 위험기계 자체검사후 개선결과에 대한 확인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659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660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방지를 위해 매층 20cm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660
- 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661
- 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 662
-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662
- 보존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이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한지 ..... 663
- 보존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이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한지 ..... 663
- 건설중장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664
- 안전작업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지 ..... 664
-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665
- 손 혈관인식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665
- 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666
-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 ..... 666
- 음주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667
- 피뢰침 설치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668
- 안전보조원의 각종 도구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668
- 신호수 및 구조물설치 신호업무 병행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669
- 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670
- 반사띠 및 형광물질이 부착된 안전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670
- 열차감시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구 및 완장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671
- 안전관리자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671
-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 672
- 안전보건관리비로 무릎보호대 및 신호수조끼 사용가능 여부 ..... 673
- 휴대용 산소캔 등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673
- 강풍여부 인지용 윈드백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674
- 비상용 방송설비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675
-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장소의 환기설비의 설치가능 여부 ..... 675
-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 구입가능 여부 ..... 676
-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677
-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의 안전순찰차량 유류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677
- 밀폐장소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기 사용가능 여부 ..... 678
- 법에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와 추가로 실시한 검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678
- 안전화 건조를 위한 에어건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679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방진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679
- 동절기 토목현장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이젠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680
- 안전띠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681
- 간호사급여, 냉장고 등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 68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설안전 컨설팅을 하는 경우 외부 안전전문가 범위 682



|                                                                  |     |
|------------------------------------------------------------------|-----|
| →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683 |
| → 낙하물 방지 설치비 관련 .....                                            | 683 |
| → 안전감시단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                                        | 684 |
| → 방염천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 685 |
| → 타워크레인 검사 비용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685 |
| → 갯폼 안전인양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                            | 685 |
| → 방한용 보온 목도리 및 손난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 686 |
| → 환기덕트설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 686 |
| → 외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 687 |
| → 간이 휴게실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 687 |
| → 철탑 송전케이블 간섭예방 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 68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적용 가능여부 .....                                      | 689 |
| → 안전패스너(안전레일&안전롤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 689 |
| → 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690 |
| → 공사현장내 안전감시용 CCTV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690 |
| →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691 |
| →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br>사용 가능여부 .....       | 692 |
| → 본사에서 전체 소속현장의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시<br>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 692 |
| →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 693 |

##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 694

|                                                 |     |
|-------------------------------------------------|-----|
| → 내부 바닥청소작업에 분진집진차 이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94 |
| → 가설발판 및 계단, 수해방자제비용 모래주머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94 |
| → 이동식비계 승강사다리 및 전도방지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95 |
| → 확포장공사시 투광등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95 |
|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96 |
| → 순찰을 목적으로 하는 Touch-checker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96 |
| → 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97 |
| → 가스누출 경보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97 |
| →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98 |
| →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99 |
| → 철로 건설목 시설비용 및 안내원의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699 |
| → 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00 |
| → 공사부 대리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시 업무수당 지급 여부 .....          | 701 |
| →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 701 |
| →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발주처 승인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 702 |
| → 자재주임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 구입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      | 703 |
| → 안전시설비 손료적용 및 중고자재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03 |
| →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04 |
| → 별도의 장소에서 석재 생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05 |
| → 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06 |
| →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707 |
| → 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07 |

|                                                           |     |
|-----------------------------------------------------------|-----|
|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철근 매립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08 |
| → 원청사 공구장, 담당기사의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지급여부 .....                    | 708 |
| → 목재 발판의 상부에 합판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09 |
| → 일체식으로 부착된 방호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10 |
| →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신호수용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10 |
| → 여름에 탈수방지를 위하여 얼음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11 |
| → 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               | 711 |
| →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12 |
| → 엘리베이터 운전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13 |
| → 안전관계자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14 |
| → 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14 |
| → 횡단보도 복공홀 마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15 |
| → 안전교육장 보안경비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15 |
| →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 716 |
| → 공사장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가설방음벽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17 |
| →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암, 토사 등의 운반비용 안전관리비<br>사용 여부 ..... | 717 |
| → 투광등의 부품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18 |
| → 안전관리재(겹직) 보조원의 인건비 사용여부 .....                           | 718 |
| →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19 |
| → 안전순찰차량 렌트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20 |
| → 야간업무감시 수당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20 |
| → 기관사의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21 |
| → 일괄도급시 제작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21 |
| → 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의 인건비 사용여부 .....                             | 722 |
| → 야간근무 안전당번의 인건비 사용여부 .....                               | 723 |
| → 가설울타리 안전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23 |
| →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24 |
| →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 725 |
| →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26 |
| → 교량하부에 수평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26 |
| → 물웅덩이 해충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27 |
| → 감리원 등이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27 |
| → 굴착면 주위 안전헬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28 |
| → 공용 앰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29 |
| → 현장 대리인이 안전업무 수행시 인건비 사용여부 .....                         | 729 |
| →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          | 730 |
| → 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31 |
| → 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 732 |
| → 교량 강교 박스 하부 안전망(합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일부 가능) .....             | 733 |
| → 노출된 도시가스관 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33 |
| → 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난간, 발판 등 일체형)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34 |
| →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 사용여부 .....                           | 735 |
| → 1일 안전교육 참가시 당일 임금을 교육비로 지급여부 .....                      | 735 |
| → 겨울철 방한복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36 |

|                                                                                                                |     |
|----------------------------------------------------------------------------------------------------------------|-----|
| → 수중 승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36 |
| → 성과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 737 |
| → 안전순찰 등 사용목적의 자전거 구입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38 |
| →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38 |
| → 철근작업시 실족 및 전도방지를 위한 발판설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739 |
| →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br>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 739 |
| → 체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br>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 740 |
| →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740 |
| →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br>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 741 |
| →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br>차량을 임대할 경우 .....                                                  | 742 |
| →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br>사용 가능한지 .....                                                 | 742 |
| →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                                                                | 743 |
| →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안상 부족분을 보존해주시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br>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                                                | 743 |
| →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744 |
| → 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 745 |
| → 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 746 |
| →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746 |
| → 성과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747 |
| → 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747 |
| → 철선커터기 등 기계공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748 |
| →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749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749 |
| → 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br>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br>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750 |
| →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br>사용 가능 여부 .....                                                    | 750 |
| →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br>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 751 |
| → 굴착작업 가시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752 |
| → 꽃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753 |
| → 간이 휴게시설 내 선풍기, 에어컨 등 시설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 753 |
| → 혹서기를 대비한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 754 |
| → 간이 휴막이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시 .....                                                                    | 754 |
| → 자체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 755 |
| → 타워크레인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755 |
| → 공장에서 기계제작 및 조립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756 |
| → 휴게실의 냉난방기 등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 757 |
| → 갯품의 추락방지 안전장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 757 |

|                                                       |     |
|-------------------------------------------------------|-----|
| → 군사작전지역 매물 폭발물 탐지장치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758 |
|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              | 759 |
| →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759 |
| → 안전화용 안전양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760 |
| →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762 |
| → 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 762 |
| → PE방호블럭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763 |
| → 용접작업 안전장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집행                        | 763 |
| → 전자식 인력관리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764 |
| →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765 |
| →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을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았을 때 안전<br>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765 |

## 2-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766

|                                                           |     |
|-----------------------------------------------------------|-----|
| →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서 공사착공의 기준                               | 767 |
| → 주한 미군부대 내의 공사인 경우 기술지도                                  | 767 |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                                      | 768 |
| → 기술지도 종료시점                                               | 768 |
| → 동시에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769 |
| → 기술지도 대가 및 기술지도 횟수 산출 방법                                 | 770 |
| → 기술지도 대가총액이 안전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계약체결                       | 771 |
| → 기술지도 적용시점, 공사기간 기준 및 수수료 20% 초과시 조정가능 여부                | 772 |
| →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이 차수별로 적용받는지 여부                             | 773 |
| → 2001. 1. 1 이전 착공공사로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제외 여부                | 773 |
| → 공사계약상 기술지도 대상이나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 여부              | 774 |
| → 안전관리자 선임공사에서 추가공사 수주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 774 |
| → 조기준공의 경우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 여부                             | 775 |
| → 추가 계약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여부                                 | 776 |
| → 절대공기 90일인 공사현장이 기술지도 대상인지                               | 776 |
| → 기술지도대상 3개월 미만에서 3개월의 의미                                 | 777 |
| → 2001. 1. 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를<br>대체 가능여부 | 778 |
| → 기계장치 설치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 778 |
| →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 779 |
| → 3개 학교 공사를 1개 공사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780 |
| → 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 780 |
| → 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 781 |
| → 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782 |
| → 총액의 20%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조정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783 |
| → 기술지도 수수료 한도(20%액의 50% 초과 및 월 1회 초과계약이 가능한지              | 783 |
| →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 784 |
| →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 784 |
| →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기술지도 계약횟수 및 승인여부                           | 785 |
|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조정방법                                       | 786 |
| →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787 |

|                                |     |
|--------------------------------|-----|
|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         | 787 |
|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장비기준 .....  | 788 |
| →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기술지도 가능여부 ..... | 788 |
| → 발주처가 다른 경우 기술지도 해당여부 .....   | 789 |
| →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     | 790 |
| → 공사금액별 기술지도 횟수 및 방법 .....     | 790 |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792

|                                                                       |     |
|-----------------------------------------------------------------------|-----|
| → 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 .....                            | 792 |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증빙방법 .....                                               | 792 |
| → 장기계속공사의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                                            | 793 |
| →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 실투입 인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793 |
| → 일부항목이 과소집행되고 최종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 하였을 경우 정산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 | 794 |
| → 자동혈압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및 공사종료후 발주처에 반납 여부 .....                       | 795 |
| → 시공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                            | 796 |
|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                                    | 796 |
| → 원·하도급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한지 .....                                | 797 |
| → 분리 발주된 공사를 하나의 회사가 시공시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 .....                            | 798 |
| → 안전관리비 잔액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족한 공사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                      | 798 |
|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                             | 799 |
| → 인건비 증빙 방법 .....                                                     | 800 |
| →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유무 .....                                         | 801 |
| → 발주처의 하수급 승인전에 하수급 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환수가 적법한지 .....                     | 802 |
| → 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정산시 증빙 방법 .....                                    | 803 |
| →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 .....                                          | 804 |
| →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                                | 804 |
| → 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합산 정산 여부 .....                                      | 805 |
|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감액 대상인지 .....                            | 806 |
| → 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한지 .....                                 | 806 |
| →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소급 정산여부 .....                                      | 807 |
| →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                                    | 808 |
| → 안전관리비 정산시 물가변동액 적용 방법 .....                                         | 808 |
|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                                           | 809 |
| →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                                           | 810 |
| → 감리단에서 검수하지 아니한 안전용품을 정산시 인정여부 .....                                 | 810 |
| → 안전시설·보호구 무상지원(CLEAN 3D) 비용 정산시 감액여부 .....                           | 811 |
| → 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법적인 문제 .....                                     | 812 |
| → 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정산방법 .....                                 | 813 |
| → 안전관리비 사용전에 감리단이 반드시 검수하여야 하는지 .....                                 | 813 |
| → 안전시설물 설치를 전문업체에 도급 줄 경우 정산과 관련한 경우 증빙처리 방법 .....                    | 814 |
| →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                                    | 814 |
| → 목적 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처리방법 .....                                      | 8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 816 |
| →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정산방법 .....                                               | 817 |

|                                     |     |
|-------------------------------------|-----|
| → 안전시설물 공동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방법 ..... | 817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 818 |

####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 819

|                                                 |     |
|-------------------------------------------------|-----|
| → 건설현장내 제조, 감리, 레미콘 운전기사 등의 재해율 산정 .....        | 820 |
| → 공동 수급사 운영지침 협약서의 법적 효력 .....                  | 820 |
| → 법령규정과 공동이행 협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재해자수 분배 방법 ..     | 821 |
| → 공동도급 공사에서 장비만 투입할 때 재해율 산정 .....              | 822 |
| → 하수급인 인정승인 및 공동도급공사 재해자수 분배방법 .....            | 822 |
| →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에서 재해자 분배방법에 대하여 .....            | 823 |
| → 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              | 824 |
| → 하도급사에서 산재처리시 재해율 산정방법 .....                   | 824 |
| → 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 .....             | 825 |
| → 뇌출혈로 인한 사망시 가중치가 부여 여부 .....                  | 826 |
| → 본사 근로자의 재해도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                | 826 |
| → 뇌출혈 사고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 여부 .....                   | 827 |
| →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를 변경시 분배 방법 .....      | 827 |
| → 장비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여부 .....            | 828 |
| → 인수합병의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 재제출 여부 .....            | 829 |
| → 전문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에 대하여 .....                     | 830 |
| → 운송업체 운전기사의 산업재해가 원수급업체 재해율에 산입되는지 여부 .....    | 830 |
| → 장비임대 및 설치하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 · | 831 |
| → 하도급 받은 사업주의 사고가 재해율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        | 832 |
| → 수급업체와 원청업체의 재해율산정 방법 .....                    | 832 |
| →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재 하도급한 경우 재해율산정 방법 .....          | 833 |
| →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 되는지 .....           | 833 |
|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                  | 834 |
| →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재해의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            | 834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재해율 산정기준 .....                     | 835 |
| → 산업안전보건법 보고의무 위반시 재해율 산정기준 .....               | 836 |
| → 3개월간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는 수식은 .....                   | 836 |
| →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계약시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              | 837 |
| → 민자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율 산정에 관한 회신 .....             | 838 |

## 제6장 지정(대행)기관

### 1.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 841

|                                                                     |     |
|---------------------------------------------------------------------|-----|
| →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br>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여부 ..... | 841 |
| → 보건관리대행시 대행계약 인원과 검진인원이 다른 경우 조치 사항 .....                          | 842 |
|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타기관에 시료분석 의뢰 가능 여부 .....                                | 843 |
|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보건행정학과”가 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                       | 843 |

|                                                                   |     |
|-------------------------------------------------------------------|-----|
| → 사업장 자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법정 장비의 제외 여부 .....                          | 844 |
| → 보건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 중 '산업의학 관련기관'과 '산업의학 분야'의 의미 ..                   | 844 |
|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인력이 자격기준 격상시 지도기준 .....                            | 845 |
| → 출장건강진단버스의 법적 기준 .....                                           | 845 |
|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자격별 대행요원이 동행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업무수행 인정 여부 .....          | 846 |
| → 지정교육기관이 임대차계약으로 강의실 사용시 시설장비기준 충족 여부 .....                      | 846 |
| → 정도관리 참여자의 업무중복 적합 여부 .....                                      | 847 |
| → 환경보건학 전공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848 |
| → 2개의 지정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및 시설기준 .....                           | 848 |
| → 안전관리대행요원의 1일 사업장 점검 사업장수 제한 .....                               | 849 |
|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실체는 유지된 채 명칭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정방법 ..                 | 850 |
|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임상의학전문의가 법정인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                      | 850 |
|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의사) 기준중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 대한 인정범위 .....          | 851 |
| → 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                           | 852 |
| → 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 인정 .....                                    | 852 |
| → 산업의학전공의 책임의사의 지도아래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853 |
| → 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의사의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 ..... | 853 |
| → 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                                 | 854 |
| → 고분자기기분석실험 등을 이수하였을 때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                        | 854 |
| →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의 자격 .....                                         | 855 |
| →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지 .....                      | 856 |
| → 사단법인 설립의 법적 절차 .....                                            | 856 |
| →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지정·변경 신청 관련 .....                                   | 857 |
| →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                    | 858 |
|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검사 .....                                       | 858 |
| →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타지역에 출장소를 운영하여도 되는지 .....                       | 859 |
| → 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실무 8년경력인 경우 기술지도요원 자격여부 .....                       | 859 |
| → 기술지도 요원이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치 기준 .....                                | 860 |
| →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 주기 .....                                          | 861 |
| → 비상근 이사의 인력기준 적합성 여부 .....                                       | 861 |
|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                                              | 862 |
|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 863 |
|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법정 인력 외 인력의 업무범위 .....                                | 864 |
| → 검업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여부 .....                               | 865 |
| → 안전대행기관의 출장소 설치 가능 여부 .....                                      | 865 |
|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 .....                        | 866 |
|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 가능 여부 .....                                      | 867 |
| →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의 인정범위 .....                          | 867 |
| → 소방설비 기사의 안전관리 대행기관 인력요건 인정여부 .....                              | 868 |
| → 안전관리대행기관 관외지정 가능여부 .....                                        | 869 |

|                                                          |     |
|----------------------------------------------------------|-----|
| 2. 측정 및 검진기관 .....                                       | 870 |
| →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서 ‘대학’의 범위 .....                          | 870 |
| → 대학 산업보건학 전공자 등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해당 여부 .....             | 870 |
| → 작업환경측정 분석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                          | 871 |
|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신청 시 정도관리 신규 실시의무 여부 .....       | 871 |
| →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br>하는지 여부 ..... | 872 |
|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 .....                     | 872 |
| →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                       | 873 |
| →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리 독립한 경우 지정신청 여부 .....                      | 874 |
| →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분석자의 측정 업무 가능 여부 .....                      | 874 |
| →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인력의 석면 감리업무 가능 여부 .....                     | 875 |

## 제7장 행정기준

|                                                                                |     |
|--------------------------------------------------------------------------------|-----|
| 1. 감독 및 조사대상 .....                                                             | 879 |
| → 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                                              | 879 |
| → 현장소장과 임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은 .....                                           | 880 |
| →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사업주가 검찰의<br>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감독대상이 되는지 ..... | 882 |
| →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가 조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 883 |
| → 사건의 관할 .....                                                                 | 883 |
| → 중대재해조사 등 관할 .....                                                            | 884 |
|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                                                      | 885 |
| 2. 과태료 부과 .....                                                                | 887 |
| →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및 감경기준 적용 방법 .....                                               | 887 |
| →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br>있는지 여부 .....                     | 888 |
| → 임차인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br>과태료 부과 여부 .....                 | 888 |
| →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br>적용방법에 대한 여부 .....          | 889 |
| → 공립초등학교에서 기능직공무원 사망 시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br>부과 대상 .....                      | 890 |
| → 노사간 합의 지연으로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넘긴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                                 | 891 |



## 효력이 없어지는 질의회시

|                                  |     |
|----------------------------------|-----|
| 1-1. 법 적용 일반 .....               | 895 |
| 1-3. 산업안전보건교육 .....              | 895 |
| 2-3. 안전·보건관리자 .....              | 896 |
| 3-1.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 897 |
| 3-2. 인증·검사제도 .....               | 897 |
| 3-3. 산업안전기준 .....                | 900 |
| 3-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  | 901 |
| 4-1. 작업환경측정 .....                | 901 |
| 4-2. 유해물질관리 .....                | 904 |
| 4-3. 석면조사 및 관리 .....             | 905 |
| 4-4. 건강진단 .....                  | 905 |
| 4-5. 산업보건기준 .....                | 906 |
|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기술지도 .....   | 906 |
| 5-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         | 910 |
| 6-1.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          | 910 |
| 7-1. 감독 및 조사대상 .....             | 910 |



## 제 1 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 제 1 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 1. 법 적용 일반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 질 의

- 인접된 A, B 사업장을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0조(보고의 의무),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등), 제15조(안전관리자등),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 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 법 제49조의2의 공정안전보고서의 통합유지 여부
  -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여부
- 위 문1에서 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운영의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가, 나, 다의 법 적용여부

#### 회 시

- 질의 1의

○ ‘가’항에 대하여

- 귀 문1의 가호에 예시된 각 법 조항별 의무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임.

○ 나항에 대하여

-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기 이전에 각각 공정안전보고서가 제출되어 심사를 마쳤다면 각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합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의 통합과정에서 기존 설비의 구조부분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어 하나의 설비로 공정자체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다항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등에 따라 각 주체별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발생시점, 기인물, 관리 등 의무주체 등 사안에 따라 그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확립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제34조 등 참고).

2. 질의 2의

○ 가 및 다항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은 건물이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소유여부 보다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나항에 대하여

- 질의 1의 회시내용 참고

(안정 68301-49, 2000.01.18.)

→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

**질 의**

같은 회사내에서 분사하여 하나의 별도의 법인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예) 크레인, 호이스트등)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음. 모체의 회사를 (갑) 분사회사를(을) 이라고 했을 경우

1.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2.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3. (을)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4. (갑)이 (을)에게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는 범위는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인 “을”사에게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동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기계를 대여한 “갑”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의 취지는 위험 기계·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동 기계·기구의 재해유발요인을 적출, 개선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동 자체검사 실시의무는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을”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3. “을”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 및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모체인 “갑”사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사된 “을”사에게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인 “갑”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을”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동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

(산안 68320-111, 2000.02.10.)

**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 질 의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의 의미

2. 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일용직 아님)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2.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 귀사가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합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 단, 귀사가 정식직원, 파견근로자 외에 임시·일용직 등도 사용한다면 이들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52명이고 당해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산보 68340-125, 2000.02.17.)

### → 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

#### 질 의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착공 3일 만에 재해발생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산출시점은



## 회 시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 기간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 기간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22-435, 2000.05.25.)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 업종)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 시간 등이 감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위 가, 나항이 적용된다면 사업내 교육강사기준 및 교육실적 및 자료보존기간
4. 모든 감리원은 3년을 주기적, 의무적으로 교육(안전관리포함)을 이수하고 있는 바, 이 교육으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 임

## 2. 질의 2,3,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 감리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

(안정 68307-800, 2000.09.06.)

## →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 질 의

제품의 출하업무를 주관하는 물류지원팀을 독립된 법인으로 분사하여 당사의 공장부지 내에서 당사의 물류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거래관계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물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분사된 물류회사는 자체적으로 도급업체(물류지게차등)를 운영, 관리하고 있음.

1. 당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승강기 및 물류 자동화 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당사에서 수행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분사된 물류회사에 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소재 및 업무범위
2. 당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발생시 법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3. 물류회사의 도급업체 사원이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 발생시 당사에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 회 시

1. 화물용 승강기 및 물류 자동화 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유지, 보수 등의 수행 주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소재와 업무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중 설계·완성 또는 성능 검사는 제조 또는 수입자가 검사의무 이행주체이며,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은 해당 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 기타 동 기계에 대한 유지, 보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관련 사업주간의 협의로 정할 사항임.

## 2.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발생시 법적인 책임소재

-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과 물류회사는 그 업무형태상 도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는 이외에 도급사업주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가짐.
- 아울러, 귀사는 동 물류회사에 대하여 물류창고를 무상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대여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무도 함께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 물류회사의 도급업체 사원이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를 입은 경우 귀사의 책임여부

- 위 2항의 회신내용에 따라 귀사의 책임소재 여부를 판단

(산안 68320-918, 2000.10.17.)

## →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 질 의

1. 회사의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여부
2. 질의 1의 임원이 근로자인 경우 교육실시 여부

### 회 시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 제14조)를 말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귀 문 월급직 임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이 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1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정 68307-203, 2001.03.23.)

##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별표1 제1호 대상사업인 “경비업”이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가 적용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적용범위 등】 별표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의 규정에 의하여 동 별표 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중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이 적용됨

따라서 귀문 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됨.

(안정 68307-274, 2001.04.11.)

##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질 의

1. 원자력발전소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정된 호흡 보호구를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착용해야 하는지

2. 방사성 동위원소가 부착된 분진(예 : radio iodine) 제거용으로는 몇 급의 방진 필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 회 시

1.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력법 적용사업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같은 법 제24조가 적용되므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2조의2, 제30조, 제49조 등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시킬 의무가 있으며 소음,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보호구를 착용 시켜야 함. 다만, 같은 규칙 제12조의2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 법·의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한 사업주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는 면제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근거한 방진마스크는 암석, 광물, 용접 분진등 일반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검정된 제품으로서 방사성 동위원소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착용할 수가 없음.

(산보 68307-286, 2001.05.08.)

### →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여부 ←

#### 질 의

1. 노동조합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작업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시 상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아주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현장 보존을 해야 되는지
2.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한 후 기계를 가동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위반여부는
3.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사고시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기계를 재가동 할 시 법적인 위반여부
4. 현장보존의 범위 및 정의는
5.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의 정확한 용어 정의는

## 회 시

### 1. 질의 1, 2, 3, 4에 대하여

- 「현장보존」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이 수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고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작업중지”와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되고,
-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켰거나, 당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에는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의 재개는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주가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사고원인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보존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2. 질의 5에 대하여

-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의 조건과 상황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수시로 변함에 따라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은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 이러한 “급박한 위험”은 유해물질의 누출, 질식 또는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파열·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안전과 보건에 즉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 단체협약 등에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때 “중대재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보아야 함.

(산안 68320-249, 2001.06.13.)

## →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 질 의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 회 시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법 집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적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법 적용 이외에는 귀사가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산안 68300-308, 2001.07.23.)

## →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 질 의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 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사정으로 법원 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C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허가하에 제반 법적 절차를 밟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 B사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3.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한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60, 2001.09.20.)

##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 질 의

1.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2. 공무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인원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은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제정시(1981.12.31)부터 적용되는 것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현재 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기준이 거의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금년 8월부터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단위에 두게 되어 있으므로, 각 단위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업장의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장소적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 지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질의하신 철도청의 경우 단위사업장(예: ○○시설관리사무소)별로 판단하여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공무원 및 공무원 아닌 근로자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별표에 정한 인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개별기관의 단위사업장 여부, 사업장의 종류(업종)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안정 68307-954, 2001.10.19.)



##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 질 의

1. 폐사는 일반건설업자로서 조합주택 신축에 총공사금액 150억원의 원수급인으로서 발주자의 서면 승인하에 시공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를 일괄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 건설공사 업무일체(재하수급인 선정/운영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 등 포함)를 수행토록 하고, 폐사에서는 사업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에 근무하며, 필요시 기성금 등의 관리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예정임
2. 폐사는 원수급인이기는 하나, 실제 조합주택 신축 사업장에 폐사의 근로자는 1명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괄 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일체를 수행토록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항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3. 폐사는 본 조합주택을 건설함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일괄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다음의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자 함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수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시행 책임
4. 일괄 하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일괄 하수급인이 선정한 재하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사고와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0조(벌칙)과 제71조(양벌규정)에 대한 1차 책임은 재하수급인에게 있고 2차 책임은 일괄 하수급인에 있으므로 원수급인에게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5.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의거 전액 계상된 안전관리비 전액을 일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에 사용토록 하였으나, 일괄 하수급인이 기준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 및 사용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적용에 원수급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6. 일괄 하도급자인 일반건설업자 소속 및 그의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의 제3호가목의 (2)와 동일한 적용에 해당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내용대로 공사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 시공하는 경우 원도급사 소속근로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그 책임하에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는 일괄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위반과 관련한 처벌은 구체적인 사용위반 사례가 발생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가목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사실적액이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로 산정된다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394, 2002.08.19.)

###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질 의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목적의 농가주택을 건축주겸 시공자로서 신축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
2.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55, 2002.10.16)

## →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 질 의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회계, 인사, 사업계획, 영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는지와 차량운전기사가 2명 포함되었다 하여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 같은 중앙보조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울 본사는 부수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주된 산업활동인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본사의 대표이사 등의 차량운전을 위한 운전기사(2명)는 사무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귀 서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의 대상사업란 제6호(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 법의 일부 적용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49, 2003.01.22.)

## →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 질 의

공동도급받은 B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견출공 1명이 추락,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공사개요>

- 택지개발지구내 9블록(1단지) 및 10블록(2단지)을 공히 3개사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발주처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공동도급 받음 (지분율 : A사(주관사) 47%, B사 30%, C사 23%)
- 위 3개사는 도급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에 의거 1단지(9블록) 전체는 A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중 8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B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중 6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C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분담시행중에 있음(발주처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않고 임의로 분할함)
- 위 협약에 따라 각사별로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시공인력을 배치 하였으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보고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해조사와 관련하여 사법처리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2. 귀 질의에서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82, 2003.03.26.)

##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 등)

### 질 의

1. 플랜트 건설공사 특성상 전체공정이 여러개의 단위설비가 조합되어 진행되는 바, 동일한 건설부지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건설조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대표공사명으로 전체 여러 그룹중 우선 그룹 1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수행 하던 중에 그룹 2, 3, 4 등이 계속하여 계약이 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지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보고를 별도 그룹 2, 3, 4에도 재 신고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현재는 동일한 지역, 동일한 건설조직에 따라 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계약된 그룹별 전체 총괄 공사금액이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재작성 여부
  - 추가된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안전관리비 집행관리 문제
  - 각 그룹별 공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룹 전체의 계상금액별 합계를 총괄로 집행관리해도 무방한지

### 회 시

1.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귀 질의 2의 경우 추가로 수주한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어 기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3. 귀 질의 3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동일한 부지내에서 동일 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분리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집행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산안(건안) 68307-148, 2003.05.30.)

##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위원장(근로자대표)이 공문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시 동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의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부장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동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는 건강진단 입회권을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킬 의무가 있는바, 이는 건강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감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본건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임
2. 그런데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위원장)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이 경우 제반 행위를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 입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동 입회가 성격상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신전속적인 행위 또한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조합규약 또는 총회 의결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동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근로자대표의 권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당해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자격제한은 없는바,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자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

법상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로 판단컨대, 수임인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의사)을 대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음

4. 따라서 당해 사안에 있어 노조위원장은 건강진단시 입회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인인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주는 노조위원장(위임인)을 대신하여 산업안전보건부장(수임인)을 근로자 건강진단에 입회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825, 2003.10.07.)

※ 관련조항

- 법 제2조(정의) 제4호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43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급식시설의 법 적용

###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 급식시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재수단으로서 객관적 의무위반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 즉 고의·과실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자연인·법인을 막론하고 그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책임자는 행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책임자(의무자)로 정하여진 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동법상 의무자인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 ※ 다만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사법인과 다르며,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국가의 전체적인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도로법 위반과 관련한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가 있음

따라서, 이 건 공립초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립초등학교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안전정책과-2876, 2004.05.31.)

## 본사 소속직원의 현장방문시 발생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

### 질 의

자재(설비) 납품업체가 자재 납품을 완료한 상태로서 납품업체 관리자가 시운전 가동하는 시점이며, 납품된 자재(설비)는 발주자가 가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1. 납품자재(설비)가 성능에 미달되는 등 사유로 납품업체 본사소속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중 실족하여 사고(경상, 중상, 사망)가 발생한 경우 사고처리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2. 사고자에 대한 산재처리와 보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3. 이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율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4. 자재 납품완료, 가 사용승인 완료된 자재(설비)에 대해서 납품업체의 관리 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신규, 정기 등), 보호구 지급·착용, 납품자재(설비)의 안전시설물 설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5. 이렇게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직원이 현장에 방문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동 질의 내용만으로는 납품자재(설비)의 공급계약 완료 이후 시운전 또는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점검·보수작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자재(설비)의 납품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히 납품업체 본사소속 직원이 납품자재(설비)가 설치된 현장에 출장하여 동 자재(설비)의 성능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납품업체 본사 본연의 업무로 일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어 동 직원 소속 회사인 납품업체 본사에서 사고처리와 아울러 사고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고와 관련한 재해율 산정은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사고자 소속사업장이 그 주체가 될 것임



2. 계약된 자재(설비)가 납품이 완료되고 가 사용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납품업체 소속 근로자인 감리자가 현장에 일시 출장하여 시운전 가동하는 등 납품업체 고유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작업과 관련한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및 납품자재(설비)의 안전시설물 설치의무는 동 근로자 소속 사업장인 납품업체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3.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직원이 현장에 방문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6733, 2004.12.06.)

**원수급업체 대표이사과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 질 의

건설현장의 안전상조치 의무위반 관련하여 원수급업체 대표이사과 현장소장이 고발된 경우 피고발인인 원수급업체 대표이사가 피의자로서 반드시 출석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고발이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발사건이 제기될 경우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고 해당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에 사건송치하게 되며,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의자와 누구도 대리할 수 없음

다만, 고발의 남용에 의한 피고발인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발장의 기재 또는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발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없이 사건송치가 가능할 수 있음

참고로, 각하사유에 대하여는 검찰청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및 같은 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를 참조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433, 2006.01.18.)

##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질 의

대구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인 시설사업소, 월배 차량기지사업소, 제1기전사업소의 소재지가 같은 경우 동 현업기관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회 시

1. 현업기관들이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 한편 귀소가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했을 때 각각의 현업기관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독립적인 지휘 감독권 및 업무 분장권을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현업기관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각각의 현업기관을 하나의 사업장 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근로형태, 노무관리, 회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환경팀-835, 2006.01.26.)

##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질 의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같은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보건규칙 제142조(정의), 고시 제2004-50호(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2.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뇌심혈관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제2008-43호』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 사업의 종류·규모,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바,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란 입법 및 일반 정부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행정, 외무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행정, 사회 보장행정등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의미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1)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가 규정되며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고 있고,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정한 『고시 제2004-50호』는 같은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고시 제2003-24호, 고시 제2004-50호는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됨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는 이중보상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퇴직공무원인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제3항과 『고시 제2008-43호』는 적용되지 않음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04.21.)

## → 광산보안법 적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여부 ↩

## 질 의

석회석 광물을 채굴·파쇄하는 사업장의 광물 파쇄시설이 제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는 제3호가목에서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풀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 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이 포함되고,
  - 제조공정이라 함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또한, 「광산보안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광산보안업무 처리 지침(고시)에 따르면 광업시설에는 광산내 광물선풀시설 및 파쇄 시설이 포함됨
3. 따라서, 귀 질의가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원재료인 석회광물을 파쇄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면 이는 제조공정이 아닌 선풀공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35, 2010.07.07.)

## 사업장의 개념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청의 경우 구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 부서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부서(청소행정과 등)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 2. 산업재해발생보고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행규칙 제4조)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

### 질 의

1. 산재은폐시 일정기한이 경과하면(예 : 공소시효) 그 후에 산재은폐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을 받지 않는지? 경미한 산업재해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소멸기한이 각각 틀린지 여부
2. 산재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사업주)을 신고(고발)하는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3. 사업장에서 건설장비에 의해 깔림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단순교통사고로 결론짓고, 장비운전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추후 지방노동사무소의 재조사시에는 원청사 및 하청사 현장소장 및 양사 법인에게까지도 벌금이 부과된 사건의 경우 추후 원청사 재해율에 산정이 되는지 또한 이 사업장이 5개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각사 지분율에 따라 직원과건 및 최고 지분율을 가진 회사가 주관사가 되어 현장소장 권한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장인 경우 5개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재해율이 반영되는지 반영이 된다면 어느 년도에 반영이 되는지(참고로 사망사고는 2000년도에 발생)
4. 상기 사망사고건과 관련하여 유족과 보상금 협의시 회사측 위로금과 교통사고 보험금을 합하여 지급한 후, 벌금형을 부여 받은 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유족에 대한 합의금 중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외한 추가비용투입분에 대하여 유족보상금반환청구 할 수는 있는지
5. 만약 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는(복지공단에서 지급 거부시) 이번 사건을 현장 산재사고(해당업체의 재해율에 반영이 되는)로 볼 수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 보고)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의무는 재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2. 산재은폐 신고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서 접수하며,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2항 참조)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하여 우리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재해율 산정은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원청업체

소속 재해자수에 원청사 소속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포함하여 산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청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다면 원청사의 재해율에 반영이 됨.

공동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4. 산재보험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산재보험에서는 그 받은 금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보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유족급여)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처리하시기 바람.
5.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재해가 이에 해당된다면 산재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율 산정시 반영됨

(안정 68302-14, 2000.01.08.)

##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 질 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같은 공사구간내에 원청(도급인) 회사와 일정한 공사구간을 하도급받은 하청회사가 함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의 소속근로자가 '98.12.4일 하청업체 공사구간내에서 작업도중 손목의 신경부위에 부상을 당하여(외상은 없음) '99.1.6일 정형외과에서 하청업체 산재담당자와 동행하여 진료결과 좌측 완관절 관절염으로 초진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최초로 나온 후 그 이후 치료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여러차례 진료를 받다가 '99.9.6일 수술을 한 재해로서, 이 재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는 원청회사에 '99.6.18일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 '99.11.18 원청회사 확인을 득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가 제출된(위 기간 산업재해조사표는 원·하청 어느 회사도 제출하지 않음)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사업주는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99.8.28 개정 전 시행규칙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되 동 기한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재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내에 하여야 하는바,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안정 68320-84, 2000.01.27.)

## →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고 산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

### 질 의

회사에서 4일을 초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요양을 하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여부

### 회 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안정 68302-1130, 2000.10.26.)

## →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

### 질 의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됨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산재예방 목적상 필요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기 어려움

(안정 68302-971, 2002.11.13.)

## 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 보고시기

### 질 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지

### 회 시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업무와 동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보고 대상인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움.

(안정 68302-72, 2003.01.30.)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 질 의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 도급공사)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적용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이중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즉,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것임

(안정 68300-599, 2003.07.18.)

##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 질 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재해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이 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2.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통상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정 68320-836, 2003.10.11.)

## →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일수 산정 방법

### 질 의

1. 1월 2일 손가락 베임사고로 3바늘을 꿰매고 1월 3일 병원에 가서 소독약을 바르고(약 조제는 없음) 1월 10일 손가락 꺾임 부분의 실밥을 제거하였을 경우 요양일수를 3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9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2. 1월 2일, 3일, 4일 병원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2월 2일, 3일인 같은 병명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면 요양일수가 33일인지 아니면 5일인지 그렇다면 보고기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전정책과-4229, 2004.07.29.)

## 사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를 산정 방법

### 질 의

1. 개별 산재에 가입하는 사내 협력사의 재해율이 대외기관에서 산정하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는지
2. 모기업 재해율에 반영된다면 협력사의 재해보고서를 모기업에서 받아 볼 수 있는지, 만약 받아 볼 수 없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 회 시

1.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모기업과 당해 협력사 중 어느 쪽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해율은 달리 산정되는 바,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에 개별 가입한 경우에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고 사내 협력사만의 재해율로 별도 산정됨
2. 사내 협력사에서 산업재해 보고서를 모기업에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음

(안전정책과-172, 2005.01.07.)

## 산업재해발생보고 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

### 질 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대하여

1. 회사에 사고 보고도 없이 본인 주장에 의해 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회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회사에 아무런 보고 없이 본인이 요양신청서 및 재해진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늦게 제출하여 30일을 넘긴 경우
3. 사고는 30일 이전에 다쳤으나 재해자 본인이 회사에 보고도 없이 참고 일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을 넘긴 경우
4.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힘들데 근골격계 산재발생시 노동부 보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5.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이 모두 틀린데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은

6. 사고발생시 사고목격자도 없고 업무상재해라고 판단하기도 모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의성 없이 재해자가 주장하는 사고발생일을 30일 넘긴 경우
7.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전에 회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휴일, 공휴일, 명절, 휴가로 인해 고의성 없이 1~2일 늦게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경우
8. 휴게시간, 체육대회 중 사고도 30일 이내에 재해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지
9.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담당자의 휴가, 실수 등 업무지연으로 1~2일 늦게 접수되는 경우
10. 사고자 본인 또는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사고자 본인과 회사측에서 합의 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요양신청서를 30일 늦게 접수한 경우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중에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의 의미는 무엇인지

## 회 시

### 1. 질의 1), 2), 6), 10)에 대하여

-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는 동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을 조각할 수도 있음

### 2. 질의 3), 4)에 대하여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 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 3. 질의 5)에 대하여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된 재해 중 사고와 질병 구분이 모호한 재해로서 그 구분이 잘못 분류된 재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재해발생 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재분류하고 있으므로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재분류 자료를 최종적으로 판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산재발생 미보고로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적발된 재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조사결과를 최종 판단자료로 보아야 함

### 4. 질의 7), 9)에 대하여

- 민법(제111조)의 일반원칙상 서면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즉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를 말하고(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가족이 수령한 때 등),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요지(了知)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 비록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나 사정으로 당해 서면을 보지 않아 알지 못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함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이 휴가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를 보지 않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동 신청서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졌으면 그 날에 동 요양신청서가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5. 질의 8)에 대하여

- 휴게시간, 체육대회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제출해야 함

### 6. 질의 11)에 대하여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안전정책과-914, 2005.02.19.)

## →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 질 의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발생보고를 늦게 한 경우 법 위반 여부(보고기한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판단)

### 회 시

1.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발생시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2.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3.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

(안전정책과-1729, 2005.03.28.)

## →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하여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전정책과-3840, 2005.07.06.)



## → 사업주(차주겸 운전자)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사업주(차주겸 운전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를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안전보건정책팀-1576, 2005.11.25.)

## →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의 보고기한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기한은 (갑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사무실에서 인지 여부 무시) (을설) 사무실에서 인지 및 최초 진단일로부터 1월 이내
2.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등기우편 발송시 도달일자와 발송(소인)일자 중 어느 것을 접수기간으로 하는지

### 회 시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신고를 전제로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2. 산재발생 보고기한 산정은 민법상의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을 따름  
(안전보건정책과-132, 2008.04.18.)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질 의**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 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근로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사실을 보고(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음.

-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 있음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06.12.)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질 의**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임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날로 보고 있음

(안전보건정책과-467, 2008.07.24.)

##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 질 의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 회 시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제31조), 중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보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2.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산재통계산출 목적이며, 동조 제2항은 중대 재해를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조항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

재해 보고기한의 기산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가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안전보건정책과-1719, 2010.06.14.)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에 해당하는 보고기한이 불명확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알게 된 날부터 토·일요일이 지난 3일째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조,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2945, 2011.08.04.)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 질 의

A 회사가 2006년 1월에 배관 철거 건설공사를 하였고, 동 공사기간 중 B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을 하였으며, 동 건설공사는 2006,2월에 완료되어 폐지되었음. B 근로자가 2009년에 퇴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B 근로자가 요양 중 2010년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되어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중대재해 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보고의무 주체는 “사업주”인바, B 근로자가 사망한 시점에서는 B 근로자가 그 이전에 퇴직한 관계로 A 회사와 B 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 회사에 보고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507, 2011.09.06.)

## 요양신청서 반려된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 질 의

산업재해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 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았다는 사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법적 근거 및 판단 이유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신속하고 정확한 산재통계를 바탕으로 시의성있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동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통계산출에서 제외되게 됨으로써 동 규정(산재발생 보고의무)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됨
2. 또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반려되는 경우 법적으로도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신청서 반려 건이 산업재해일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비로소 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3541, 2011.09.07.)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

### 질 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면 공상처리를 하고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31, 2012.01.17.)

### 3. 산업안전보건교육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 질 의

1. 작업전 준비체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일 5분정도 실시하는 경우 안전 교육으로의 인정 여부
2.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노동조합 관련단체 소속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실시한 교육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가능한지
3.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요원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교육실시자 자격요건이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명시되어 있는 바 “당해 분야”의 의미

## 회 시

1. 작업 전에 실시하는 준비체조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안전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사업주의 책임하에 귀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정기 안전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선정 등 교육 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법 제31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2호의 “당해 분야”라 함은 한국산업 안전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중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함.

(안정 68301-277, 2000.03.15.)

##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 질 의

사업장내에서 단기간의 지원업무 및 생산품의 수시 변동이 발생한 경우

1.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의 근로자가 생산제품 및 생산공정은 다르나 유사장비나 유사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지원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의 종류
2. 질의 1)의 경우 지원업무가 종료된 후 원소속으로 복귀시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
3. 근로자가 과거 업무를 행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에 재지원해서 갈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
4. 근로자가 동일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경우의 교육실시 의무 및 교육종류

## 회 시

1. 질의 1), 2),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는 작업 부서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1호라목이 규정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본 사안에서 새로운 B 작업장의 작업이 상기 【별표 8의2】에 비추어 볼 때 A 작업장의 작업과 다르지 않다면 사업주는 A 작업장의 작업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사항을 재교육할 의무가 없음.
- 참고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참조).

## 2.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여부와 동조 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의 변경여부는 위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므로 생산제품의 변경만으로는 교육실시나 교육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안정 68301-1045, 2000.10.05.)

###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 질 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 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안정 68301-1246, 2000.11.22.)

### → 동일 현장내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소속변경시 신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질 의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내의 B 협력회사에서 작업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 유사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기

### 질 의

1. 동일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A”라는 구역에서 운반작업을 하던 자가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4. 작업내용의 변경시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5. 근무중 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질의 1,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 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상술한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2. 질의 3, 4) 관련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작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면 됨

### 3. 질의 5) 관련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지원함에 있어 사전 작업내용변경 교육이 필요한지는 당해 지원작업이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안정 68307-50, 2001.02.14.)

##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 여부

### 질 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이 작업내용을 달리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매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문과 같이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다면 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7-142, 2001.03.12.)

##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 여부

### 질 의

1. 사업장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인해 위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생산 손실 등을 사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지 여부
2.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월차 등 개인사유로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가 출근후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본인 사유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교육을 미 실시 한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2.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일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동 일시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업주는 귀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참여, 연·월차의 사용,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안정 68307-195, 2001.03.22.)

###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교육을 작업시작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경우 당해 조항의 위반여부
2. 정기교육은 작업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 시간 이상이라면 당해 조항위반으로 볼 수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7-666, 2001.07.30.)

##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 질 의

1.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에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부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관리감독자는 부서의 장뿐인지, 아니면 휘하의 장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가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정 68307-699, 2001.08.08.)

##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 질 의

현재 당사가 실시하는 월 2시간의 부서 단위별 정기안전교육(주 15분씩 4회 총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시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이 없을 시 별도 1시간)과 관련, 노동조합은 전체인원(300~400명)에 대한 집체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는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실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0-49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정 68307-1027, 2001.11.06.)

## 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 인정여부

### 질 의

근무시작전 전달사항과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5분에서 10분정도 감독자가 실시한 교육을 월 2시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 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근무시작전에 5분 내지 10분정도 실시되는 전달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7-1107, 2001.11.24.)

##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 ↗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최초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변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동 교육은 경과기간 등에 관계없이 변경된 작업이 상술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안정 68307-1118, 2001.11.28.)

## → 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는 ↗

### 질 의

“A” 직무를 담당하다가 “B”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받은자가 다시 “A”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지(단, 작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음)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란 직무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직무변경에 따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같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이수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안정 68307-1135, 2001.12.01.)

###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 질 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체조나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안을 관리감독자에게 배포하여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에게 5~10분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기안전보건 교육 인정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월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안정 68307-1235, 2001.12.27.)

### 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가능여부

#### 질 의

택지개발지구내 블록별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사업장별 구분 실시, 교육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147, 2002.02.22.)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인정범위는

## 질 의

1. 고소위험공정작업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한 근로자는 월 정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지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위험작업 이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특별교육을 시킬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와 특별 안전교육 대상 직종의 정확한 구분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항목중 건설업 관리감독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정기적인 안전 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 (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 회 시

1.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월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건설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히 실시한 교육이 사업장의 정기교육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법령상에 규정된 교육내용, 시간, 강사의 자격, 교재 등이 적합한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직종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작업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라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교육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3. 사업장내 정기교육은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당해 연도에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할 교육은 면제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201, 2002.03.11.)

## → 작업선임자의 강사 적정여부 및 교육 실시 시기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근로자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교육을 위험 포인트를 가장 잘 아는 작업선임자가 관리감독자를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한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3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은 관리감독자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로 『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작업선임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교육은 각각 당해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함

(안정 68300-116, 2003.02.17.)

##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 질 의

1. 신규 채용 및 작업을 전환하는 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대상 작업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지,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1반 2대, 가공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의무 여부

#### 회 시

1.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됨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중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귀 사업장에 보유한 호이스트가 5대라면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는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안정 68301-186, 2003.03.14.)

### →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근로자의 교육면제 범위

#### 질 의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의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한 때에는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업내용이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작업내용 변경이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2. 따라서 사업주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정 68307-749, 2003.09.06.)

## → 특별교육은 매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특별교육은 교육대상 작업과 관련될 경우 16시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년 16시간을 실시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바, 동 특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됨

(안전정책과-470, 2004.01.27.)

##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사진 촬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안전보건 교육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및 서명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음
2. 따라서, 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1188, 2004.03.02.)

##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질 의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별도의 채용시 교육(8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안전정책과-2946, 2004.06.03.)

## →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 질 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시간은 정기교육 2시간 중 1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대상별로 일정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가. 목에서 규정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시간 동안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받으려면 상기 교육내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4611, 2004.08.18.)

## → 자동차회사 영업지점 소속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시간

### 질 의

생산공장·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전국 450여개의 영업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자동차 국내 영업본부의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빌딩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지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는데, 국내 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시행규칙 별표 8은 정기교육의 대상자를 영업직은 별도 구분없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로 구분하여 대상별로 교육시간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영업본부 영업직 사원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사무직에 해당하는 월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내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귀사 영업지점들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 영업본부가 당연히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사 국내 영업본부, 영업소 등 단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안전정책과-6638, 2004.12.02.)

##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작업에 투입될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1.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 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과거 투입된 해당직무의 직무전환교육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후 또다시 파업으로 인해 해당직무로 투입되는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직무전환교육은 실시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4. 일상적인 업무전환을 6개월에 한 번씩 같은 직무를 맞교대(정기적인 직무 전환)하는 경우 매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 의해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교육 중 직무전환 등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2.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과거 투입되었던 사무직 인원의 현장 재투입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재실시 여부와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정기적인 직무전환에 따라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작업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최초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이후 매회 동 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안전정책과-6732, 2004.12.06.)

**토출압력이 9kg/cm<sup>2</sup>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33조는 '94.3.29일 개정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특별교육 대상 인원이 법 개정전인 '83년에 입사하여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법에는 압력용기를 설치·취급하는 인원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 설비가 철거되고 새롭게 압력용기가 설치되었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 설비가 설치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재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토출압력이 9kg/cm<sup>2</sup> 이하인 공기압축기를 운전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 8의2의 특별교육 실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1.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특별교육 실시의무는 '81.12.3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전문개정 등 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현행 동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 바
  - 특별교육 실시 대상자임에도 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작업설비,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역시 작업설비, 작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 내용으로는 새롭게 설치된 압력용기의 특성 및 작업내용 등을 자세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설비 및 작업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출압력이 9kg/cm<sup>2</sup> 이하인 공기압축기”의 정확한 게이지 압력을 알 수는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 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의해 압력용기의 경우 “게이지 압력이 1kg/cm<sup>2</sup>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공기압축기가 동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6833, 2004.12.13.)

### →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질 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



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귀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4호 가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가 적용되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안전정책과-138, 2005.01.05.)

### → 안전·보건교육 등의 실시결과 입증 및 보존방법

#### 질 의

1. 현행 산안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점검·회의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교육·점검·회의 등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싸인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여부

## 회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기록·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임

(안전정책과-4214, 2005.07.19.)

##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질 의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분기별 6시간 교육),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분기별 3시간 교육)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동 규칙 별표 8, 별표 8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표준안전작업방법, 안전사고사례 및 산재예방대책,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 귀부 소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내용 중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비상시 응급조치, 안전관리의 중요성, 근로자의 건강 관리 및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대상 및 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직종 및 철도산업의 업종분류 [산안68320-90('02.2.28), 구 철도청에 사업장별 적용업종을 회신한 바 있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팀-655, 2006.02.02.)

##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의무 주체

### 질 의

1.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음
  - 따라서 원청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3.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팀-1346, 2007.03.27.)

##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 질 의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안전관리자의 참관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종료후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후 일정 점수 이상시 교육이수 인정)으로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6-28호, 2006. 9. 29.)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1/2매로 보고, 동영상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 근로자의 수강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시청각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법정 안전보건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강사의 참여없이(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단순히 PC를 이용한 시청각교육인 경우 이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91, 2008.04.10.)

##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 질 의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제는 무엇인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항목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97, 2008.04.10.)

## →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효력 ←

### 질 의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노동부고시 제2008-71호, 2008.11.24)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1/2매로 보고,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근로자의 수강정보등록 (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을 이용한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948, 2009.03.24.)

## →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 질 의

'08.12.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를 2009.01.01.~2009.12.31. 기간동안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신규교육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308호, '08.9.18.) 제3조 규정에 따라 2009. 1.1.(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11. 1.1.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3.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선임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지방관서에 변경선임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규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05.14.)

## →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 질 의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갈 경우 안전교육 실시의무 이행 주체와 관련하여

1. 안전교육은 출장지에서 하여야 하는지

2. 안전교육을 출장지에서 하였다면 인원을 출장지로 잡아야 하는지
3. 안전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4.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하여야 하는지
5.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실시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2. 귀 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 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 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11.17.)

### 고용유지 훈련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질 의

고용유지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예) 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 훈련을 한 경우 7월부터 근로자 교육을 연간 의무교육시간의 1/2만 하면 되는지

#### 회 시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해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훈련 중인 자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

유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09.11.23.)

## → 퇴사 후 사업장 전직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 질 의

1. 2008년 1월에 최초로 안전관리자(건설현장)로 선임되어 당시 직무교육(신규)은 받지 않은 사람으로 중간에 사업부를 옮겨서 퇴사 처리 한 적이 있으며 업종도 제조로 변경됨
2.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며,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한 결과 중간에 퇴사한 경우는 신규교육대상자라고 함
3.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지금은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신규로 선임이 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3. 따라서 2009. 1. 1.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라면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국민신문고, 2010.10.01.)

##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법적효력 여부 질의

### 질 의

1. 현재 사업장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집체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규정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와 타 지역 사업장(분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 효력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터넷 원격교육은 거리에 관계없이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이 곤란한 근로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의 출결관리, 교육시간 등 사업주가 실제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업장내 인트라넷망(일반 인터넷은 제외)을 이용한 원격교육만을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함
2. 따라서,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방법으로는 위탁할 수 없으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하여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정기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4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위탁기관을 통해서만 위탁할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2.03.1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특별교육 시간 중 간헐적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정의는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교육시간을 보면 특별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작업을 의미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함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됨

(국민신문고, 2012.04.06.)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대상은 누구인지

### 질 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인데 건설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됨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여부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12.03.12.)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질 의

1. 용역업체를 통해서 협력업체에 1일 단위로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원도급업체에 교육비 지원 의무가 있는지
2. 그리고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급인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와 교육장소, 교육장비 제공 등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임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경우는 동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은 교육장까지의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에 사용하는 비용도 협의체(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에서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12.05.02.)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 질 의

1. 신규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3. 신규근로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 회 시

1. 건설업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해당이 없으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12.06.19.)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 관리기사의 실무의 범위

### 질 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석면조사 등과 회사의 형태 또는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라 함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 등과 같이 「산업」과 관련한 업무로서 「산업보건」, 「산업위생」분야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리키며, 실내공기질, 대기, 수질 등의 환경분야 대행업체에 재직 중의 경력은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라고 보기 어려움

(국민신문고, 2012.06.27.)

##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경력판단 기준

### 질 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전인지 자격증 취득 후인지 알지 못하여 질의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이후에 건설안전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따라서, 자격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의 경력, 타 분야에서의 경력 등은 포함되지 않음

(국민신문고, 2012.06.29.)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 질 의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과 별표8의2에 의해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교육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에서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질 의

당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1.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2. 외주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의무 주체
3.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당사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4. 교육실적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하여 외부 인력의 교육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여부
5.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 회 시

### 1. 질의 1~4에 대하여

- 귀사가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의 교육 의무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 의무자임
- 따라서 귀사에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2. 질의 5에 대하여

-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실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 질 의

’09년 1월 1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면제 되어 있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정직무교육 복원 실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이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10년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당사의 안전관리자가 전문화교육(20시간)을 수료 하였는데 법정 보수교육(24시간)보다 4시간이 부족한데 상기사항이 보수교육 면제에 해당이 되는지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이 2년 마다 실시해야 하는데 당해 년도의 교육사항(산업안전보건교육원)만 면제가 되는지? 전년도에 실시한 교육도 해당이 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조에서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24시간 이상의 전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동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당해 보수교육이 면제됨
2.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사이에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전문화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차기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됨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 →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 질 의

1.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교육을 받았을 경우 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3.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 회 시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실시하면 되며
3. 건설업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함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 →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관련 질의회시 변경

####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 면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면제기준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조제3항

####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5호) 제26조에서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교육시간과 관계없이 당해 보수교육이 면제됨

(국민신문고, 2010.10.01)

#### 4. 문제점

- 면제기준이 종전 교육시간에 관계없이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에서 24시간 이상인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개정됨(2012.1.26)에 따라 수정 필요

#### 5. 행정해석 변경

- 교육시간이 24시간 이상인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관리책임자 등의 보수교육을 면제함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시간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

###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전보건정책팀-5974, 2007.12.28.)

- 휴업기간 중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 정기교육은 균등하게 배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나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월 또는 분기 마지막 무렵에 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조업시작 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날부터 남은 기간 내(예를 들어, 12.16일부터 12.31일까지 휴업을 하고 1.1일 조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휴업을 한 날을 뺀 12.1부터 1.15까지가 1월임)에 법정 교육시간을 실시하여야 함
  - 조업단축으로 1월을 모두 채우지 못하거나, 분기 내 3월 전체의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교육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산업안전보건법상 매월 또는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월이 아니며 사업을 실시한 날부터 1월 또는 분기를 산정함. 예를 들어 1.15일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1.31일이 아닌 2.14일이며, 분기는 4.14일임

(안전보건정책과-113, 2009.01.08)

-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귀사에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과-4817, 2009.12.30)

○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중 정기교육과 관련하여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종사자는 제외)는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
-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함
-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분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실시하면 되며 건설업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함

(국민신문고, 2010.10.16.)

4. 문제점

○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2.1.26)되어 수정 필요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분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5. 행정해석 변경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 매분기 6시간 이상
  -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 → 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 질 의

당사는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바, 직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

#### 1. 의사

가. 대학교 소속 교수 :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병원에선 환자를 진료 (급여는 대학교에 지급, 진료수당은 병원에서 대학교로 이체 후 대학교에서 지급)

나. 병원소속 수련의

#### 2. 병원소속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 3. 외부인력(병원에서 근무) : 1) 용역, 2) 파견근로자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같은 법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는 업종으로 수련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귀 병원에서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다만,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의 경우 대학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교육서비스업(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교수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4. 또한, 외부인력 중 용역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으며
  -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음

(국민신문고, 2012.12.27.)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 질 의

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직무능력향상과정 및 관리감독자 재해예방실천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 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마.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2.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교육을 인정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고 비번, 휴일에만 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한 사업의 특성상,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유무, 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를 게시하여 근로자 개별 수첩에 기재하고난 뒤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고시)」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 교육시간의 준수여부
    - 생산직근로자 : 매분기 2시간이상, 사무직근로자 : 매분기 1시간이상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참조)
    -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교육내용의 준수여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안전 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참조)
  - 교육실시자 자격의 준수여부
    - 산안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교육방법의 준수여부
    - 산안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산업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참조).
2. 따라서 귀소에서 질의한 일일교육 및 분기교육이 산안법상 근로자정기안전 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술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실시자의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여부, 열차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형태의 교육용 자료의 게시 등의 내용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보기는 곤란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 질 의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질 의

특별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횟수가 예를 들면 거꾸집지보공 조립자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월에 실시하였다면 이것으로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매일해야 하는 것인지 한달에 한번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의 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질 의

매월 2시간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매월 2시간씩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정기교육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 8과 별표 8의2에 의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은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교육대상자의 구분없이 관리감독자를 생산직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당해 관리감독자교육을 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에서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해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처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질 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주관하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사가 노동조합 기획위원(간호사면허증 소지)인 건강한 노동세상 자원임.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별표 1에 의한 사내 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회 시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면 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대상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

###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설업종사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8시간 이상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안정 68307-157, 2001.03.15)

○ 유해 · 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2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 · 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의 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361, 2002.07.26)

#### 4. 문제점

- 채용 시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구분이 종전 ‘건설업 종사근로자 또는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에서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개정됨(2009.8.7)에 따라 수정 필요

#### 5. 행정해석 변경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채용시 교육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유해 · 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 · 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의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시간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

###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고시)」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 생산직근로자 : 매월 2시간이상, 사무직근로자 : 매월 1시간이상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참조)

(안정 68301-1216, 2000.11.18.)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귀 질의처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정 68301-874, 2002.10.15.)

### 4. 문제점

-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2.1.26)되어 수정 필요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분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 5. 행정해석 변경

-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
    - 생산직근로자 : 매월 2시간이상 → 생산직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 사무직근로자 : 매월 1시간이상 → 사무직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
    -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 →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 폐지에 따른 질의회시 변경

####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가 폐지되어 종전 제도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 및 별표 6의2

####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특정단체 등이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관련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의 교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위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단체라면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주의 위탁실시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음

(안정 68301-781, 2000.07.21.)

#### 4. 문제점

-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 폐지(2009.2.6)에 따라 사업장 및 지방관서에서 교육의무 확인 시 혼란 야기

#### 5. 행정해석 변경

-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마.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교육을 인정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개정에 따른 질의회시 변경

#### 1. 검토배경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개정되어 종전 제도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및 별표 1

###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2-10호, 2002.5.23)」 별표 1에 의한 사업 내 교육 강사기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가.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제2호 및 제3호)
  - 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다.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따라서, 귀 병원의 노동조합 기획위원이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것과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내 강사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팀-1404, 2005.02.21.)

### 4. 문제점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추가(‘08.11.24, 고시 제2008-71호)되어 사업장 및 지방관서에서 교육의무 확인 시 혼란 야기

### 5. 행정해석 변경

-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면 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 제 2 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제 2 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 질 의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관리자로서 관리(교육)감독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2.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무조건 관리책임자가 형사 책임이 있는 것인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 동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선임되었다면 법상 부여된 직무수행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안전보건관련 단체 등에 문의 바람.

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아니함.

(산안 68320-230, 2000.03.17.)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총괄·관리하는 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각 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하였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본부별로 둘 수 있는지

## 회 시

1.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
2. 질의한 사업장의 경우에 동일한 사업을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각 사업본부별로 책임운영되고 있으나,
- 동 사업장은 각 사업본부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규모가 커서 각 생산공정 및 관리부문으로 나누어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을 뿐, 각 본부별 사업이 별도의 독립경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각 사업본부별 또는 담당업무별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고 작업 한계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이행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됨.
3.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1인을 선임·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 문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구축·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 재해발생시의 책임에 대하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근거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상에 각 본부장에게 당해 업무영역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 임무가 부여되고 있어, 재해조사 결과 본부장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본부장도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20-296, 2001.07.11.)

##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 질 의

주택관리업자가 기술인력·장비 및 기타 관리인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두고(투입) 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인 이상 또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인지
2. 위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지 아니한 사업주는 처벌규정이 있는지

### 회 시

1. 주택관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하는 주택관리업자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각 사업장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주택관리사업의 단위장소, 예 : 아파트단지 등)의 규모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해당.

(산안 68320-321, 2001.07.25.)

## 원·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 질 의

1. 총공사금액 325억원 공사를 시행하는 A건설현장에서 철골 및 골조부분에 대하여 각 B, C업체에 110억원, 200억원 하도급 공사를 체결하였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2.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위 C업체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자체 도급받은 골조공사 부문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 또는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B, C 또는 A업체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 감독도 받아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도급 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을 의미함. 따라서 A, B, C사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 지도·조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인 C사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도 C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한 한다고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58, 2001.11.21.)

##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검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 질 의

1. 공공발주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수주 한 바,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재해예방전문기술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기공사업법상 시공관리책임자가 현장 상주 하면서 검직할 수 있는지 여부
2.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기타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검직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공사가 아니므로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때에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23, 2001.12.22.)

## → 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 질 의

1. ○○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하여 폐사에서 시행중인 도로공사('96. 8~'02. 12 약 890억원)에 연계하여 동일 공사구간내 IC가 추가 발주되어 수의 계약('02. 4~'03. 9. 약 140억원으로 수주한 경우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자가 같은 공사조직으로 동일한 작업장내에서 수행하는 공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공사(약 140억원)를 별개의 건으로 보아 안전관리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를 추가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고, 사업개시신고 등 제반사항을 신규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2. 만약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면 신규공사와 기존공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별도로 계상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관리해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1. 기존에 시공중인 도로공사 현장내에 추가로 IC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공사가 기존공사와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및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분리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함. 다만,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137, 2002.04.03.)

##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항(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14일 이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착공 신고후 14일 이내인지 아니면 실착공인지, 만약 14일 이후에 선임 신고시 법적인 제재조치는 어떠한 사항인지)

### 회 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2.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05.20.)

## 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 질 의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장소장을 대리인 신고와 함께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등의 신고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설령 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사로부터 현장소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현장에 부임하는 관계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장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대표이사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로 하고 있는 바, 이 때 보고인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9, 2002.11.15.)

### → 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 질 의

최초 13억원 공사에서 매년 7억원, 13억원씩 증액되어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34억원이 되었는데,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에서는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음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 하는지(공사기간은 총공사기간으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도 따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가 종료되었을 때 관할 노동부에 어떤 양식으로 종료되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을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선임하여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차수별 공사시에는 총 부기금액(추정 계약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착공시 선임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보고서식의 공사 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총 공사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임 또는 공사종료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종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57, 2003.03.0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결과 현장소장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을 하자, 회사측에서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를 행하지 않았을 뿐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안전정책과-4215, 2004.07.29.)

### 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 질 의

아파트 도급계약에 포함된 모델하우스 건립공사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에서 모델하우스 공사가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수행 중일 경우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도 본 공사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과-6958, 2004.11.06.)

## 단위농협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안전관리주체

### 질 의

A단위농협(본점)이 있고 여러 지점(사업소)은 동일한 시·군내에서 읍·면·동 단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경영권 등 사업주로서 권한은 단위농협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있을 때 a사업소 소속 근로자가 b지점에서 관리하는 양곡창고에서 출하작업을 위하여 이송용 컨베이어를 화물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컨베이어 전도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안전상의 조치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갑설>

- 양곡출하작업의 내부결정 및 작업지시 등 단위업무를 각 사업소(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각 사업소는 단지 장소적으로 분리된 소규모 하부조직으로써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권이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도 아니고,
- 그 규모가 대부분 상시근로자 6-15명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도 아니므로 일상적인 사업추진 및 내부업무 집행은 각 사업소에서 결정하지만 단위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장에게 있으므로 당해 조합장을 위반 행위자로 보아야 함

#### <을설>

- A단위농협(본점)은 다수의 지점(사업소)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점의 사업 내용도 금융보험업과 도정업으로 나뉘어 있어 일률적이지 아니하며, 단위 사업장의 통상적인 업무는 그 장이 전결로 시행하고 단위농협 자체는 금융보험업체에 해당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도 아니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곧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성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b지점의 장(또는 창고 관리자)을 위반 행위자로 보아야 함

### 회 시

1. 본사, 지점,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2. 따라서 A단위농협(본점)이 여러 지점의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위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이 조합장에게 있다면 당해 조합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갑설)

(산업안전팀-4679, 2007.09.2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 질 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배제하고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대표)를 피의자로 임의 입건하여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기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법적책임이 없다면 그 이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판례는 어떠한 지
2. 산안법 해석 및 판례상 선임·신고된 관리책임자가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법적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대상자가 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조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한다하여 관할관청 근로감독관이 피의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3. 기관의 대표와 법적 관리책임자간 책임공방이 벌어질 경우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의 입장에서 두사람의 의견 중 누구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법리 및 보편적 상식에 근거해볼 때 옳은 판단인 지
4. (사)한국○○○의 경우 1998년부터 10여년동안 ○○고용노동지청에 총무이사 또는 부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하였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사)한국○○○에서는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행정기관의 행정 처분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업무처리를 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지
5. 본 건의 경우 ① 피의자 선정을 이해하지 못해 조사에 동의(협조)하지 않거나 조사자가 불분명(모호)하고 ② 노무사가 장기간 검토한 이의신청서가 참고 조차 되지 못하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관할관청 근로감독관은 검찰송치 후 본안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일축함) ③ 무엇보다도 증거 자료확보 및 참고인 조사가 완료되어 사법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바,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피의자 조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검찰송치가 가능한 지 여부 및 만일 불가하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6. 검찰합동점검의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의 단속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정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법처리도 한다고 하며, 법적근거를 물어보니 관행상 그렇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위반으로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행정행위는 아닌 지

#### 회 시

1.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2(1)·(2)서식)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따라서 당해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의 적정선임·보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법에 규정한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가 보고하였다면 비록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장의 적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사업주의 선임·보고가 법적기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된 자에 대한 적정여부를 해당 사업장의 사실조사를 통해 상기 법적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검찰합동점검 관련 조사는 지방노동관서와 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음
  - 따라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적용과는 무관하며, 감사지휘하에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권남용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안전보건지도과-2200, 2009.06.0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 비치 관련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를 사업장에 각각 갖추두어야 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일인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서류만 갖추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법 제13조와 제18조에서 각각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 및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 선임 및 지정(안전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각각 별도로 갖추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29, 2012.01.16.)

## 2. 관리감독자

**제14조(관리감독자)**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시공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는 위에서 언급한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현장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80, 2000.12.04.)

## → 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 질 의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중에 작업팀이 여러팀으로 구성되어 각 작업반장들의 지휘아래 작업을 할 경우 각 팀마다 안전담당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전담당자 지정 인원수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 회 시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 8.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게 되었는데, 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36, 2001.01.12.)

## → 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 질 의

정부양곡 도급계약에 의해서 양곡창고를 운영중인데 양곡의 입·출고 과정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인부(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1. 개인창고 또는 법인창고에서 사업주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되는지
2.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그 자격은
3. 양곡창고(양곡더미높이 5-8미터)에서 근무하는 인부(근로자)에게 어떤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지

### 회 시

1. 귀하의 질의만으로 귀사의 평소 작업종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안전담당자는 작업의 내용이 동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업종)와는 관계가 없음. 다만, 질의내용으로 보아 양곡의 창고 입, 출고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안전담당자

지정 업무로서는 “높이가 2미터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시행령 별표2, 제24호)” 등이 있음.

2.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되고 특별히 제한하는 자격이 없음.
3. 양곡의 취급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는 당시 작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7편(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과 8편(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보호장비로는 2미터 이상의 하적단 위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를 지급·착용케 하여야 하는 것(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8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산안 68320-268, 2001.06.23.)

## →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건설현장의 안전담당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직·조·반장)로서 거푸집지보공 작업, 2m 이상의 굴착작업, 비계작업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작업에만 안전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 아니면 현장내 모든 작업 공종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8.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2. 위 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자가 기존의 안전담당자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동령 [별표2]에서 정하는 39종이고, 그 외의 건설 작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임
3. 그러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안전관리비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459, 2001.09.20.)

##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 정비업무(자동차 정비업)가 포함되는 지 여부

- 동 조의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의 범위가 다음에서 어디까지인지 문제

(1) 현장정비팀장=보직과장, (2)정비반장=팀원, (3)정비반원=팀원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여기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는 정비업무가 포함되며 귀 사의 경우 현장정비팀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1737, 2006.04.05.)

## → 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 질 의

1. 역장과 역무과장이 근무하지 않는 C조의 근무시간대에 노사가 협의만 하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역장만 관리감독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2. 선임시설관리장에게 당해 시설관리반을 관리토록 하고, 선임시설관리장은 5~6명의 시설관리원들을 지휘하고 있고, 선임시설관리장은 본소인 시설사업소로 출근하지 않고(회의 등 필요시에만 사업소로 출근) 해당 시설관리반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관리반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 지

3. ○○시설사업소는 일근 사업소장 1명, 일근 기술원 1명, 장비운전원 2~3명, 각조별(3조 2교대)로 선임시설관리장이 시설관리장과 시설관리원을 지휘하여 사업소 관내에서 사업소 소재지가 아닌 별도의 지역에서 작업시행하고, 각 지역(서빙고동, 마포동)에 시설관리원 2명씩 배치(일근 근무)하는 경우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 지
4. 본사 부속기관으로 규모가 큰 ○○시설관리사무소는 3조 2교대를 시행하고, 일근하는 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 밑에 3명(3조 2교대)의 선임시설관리장이 각 조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직접 지휘·관리하고 있으며, 철도 업무특성상 사업소 건물 내가 아닌 사업소 관내의 각각 흩어진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근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운용이 가능한 지
- 5, 6. ○○차량사업소의 경우 본소 이외에 △△주재와 ▽▽주재를 두고 있으며, 주재에는 3명의 선임관리장이 3조 2교대로 각 3명의 차량관리원을 지휘하는 경우
  - 각 과마다 해당 조별로 1명의 과장이 선임장 2명을 두고 선임장으로 하여금 파트별로 작업을 시키는 경우 과장 까지만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가능한 지
  - 환경관리과처럼 1명의 일근과장이 각조별로 선임관리장을 두고 3조 2교대로 운영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7.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과장 없이 선임 관리장 3명을 두고 3조 2교대로 각조별 3명의 관리원을 지도하여 주재를 운영하는 경우의 관리감독자 범위는
8.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선임관리장을 각조별 1명씩 두고 혼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9. 각 팀에는 각 과별로 1명의 과장이 있어, 여러 조를 관리하고 있음 이 경우 노사협의만 하면 차량과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 지
  - ※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지휘는 선임차량관리장이 하고 있음
10. 전기분야는 각 지사에 전기팀을 두고 각 지역별로 전기사업소와 신호제어사업소, 변전사업소를 두고 있고 사업소의 구성은 일근 사업소장 및 기술원 1명, 장비운전원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선임전기장 3명이 3조 2교대로 각 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경우 일근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

#### 회 시

1.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 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2.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써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수행
3.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4. 따라서 3조 2교대의 경우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관련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고 보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질의1에 대하여>

- 관리감독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사협회의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를 두어 상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C조 근무시간대의 경우에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역장을 포함하여 각조별로 조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2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근무하는 업무성격상 당해 작업시 작업자들을 실제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각 시설관리반별로 선임시설관리장을 관리감독자로 두어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3, 4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A조, B조, C조 별로 각 선임시설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5에 대하여>

- 각 과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6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7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선임장이 각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8에 대하여>

- ◇◇차량사업소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9에 대하여>

- 노사협회의와 관계없이 차륜조, 연결조, 제동조, 대차조, 기중기조의 각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10에 대하여>

- A조, B조, C조의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3203, 2007.06.28.)

##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 질 의

1. A사업소의 직급체계는 사업소장-팀장-선임전기장-전기장-전기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협약 및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상에는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선임전기장까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각각의 선임전기장들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A사업소에는 ○○주재소, ○○전기보수실, ○○변전소 등 장소를 달리 하는 4개의 현장이 있고, 각 현장마다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소속 전기장과 전기원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임
  - A사업소의 상급기관인 B본부는 선임전기장 일시 부재시(7일 이내) 관리감독자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사업소별로 직무대리를 자체지정토록 하였고, A사업소는 선임전기장의 직무대리로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내부공문으로 지정함
    - ※ B본부 사무분장표에는 전기장과 전기원은 시설운영·조작·성능시험·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임

2. 관리감독자인 선임전기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2.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관리감독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755, 2012.07.13.)

### 3. 안전보건관리자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 질 의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2. 귀 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 2000.01.03.)

## →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을 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별표1”에 의한 법 일부 적용업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에는 경호 및 경비업(74922), 소독 및 구충서비스업(74931),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73932) 등이 포함되어 있음.

(산안 68320-2, 2000.01.03.)

## →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

### 질 의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관리자·환경관리자 겸임가능의 구체적 해석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고의무면제가 보건관리자에 적용되는지

### 회 시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환경

보건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의한 보건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해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고, 환경관리인과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채용면제기준에 관해서는 동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그리고 동 규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라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위의 두가지 자격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인 중 2명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의 규모, 즉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판단해야 함.
- 상시근로자 300 미만 사업장
  - 사업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일 경우에는 당해 선임예정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자격(수질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라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 자격)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자격은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상기인은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도 없고 상기인을 수질 또는 대기분야 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음.
- 상시근로자 300 이상 사업장
  -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는 대기 또는 수질분야 환경관련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겸직 자체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업주가 대기 또는 수질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당해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2. 특조법 제54조의4(환경관리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면제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는 해당되지 아니함.
- 따라서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12조제6항 준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또는 개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또는 개임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산보 68340-23, 2000.01.12.)

##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 질 의

상시근로자 400인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위탁이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은 동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 제1항제2호에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개의 법이 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조법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 규정(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의 규모)과 관련해서도 특조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400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기관(노동부지정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산보 68340-24, 2000.01.13.)

## 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질 의

'97년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근로자 수가 약 600명 이상인 호텔의 산업안전관리자로 노동부에 등록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구비할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1. 귀하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안전공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등】, 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영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중 하나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바,
2. 귀하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사업주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선임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산안 68320-179, 2000.03.03.)

##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자격 여부

### 질 의

현재 보건위생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산업위생에 관한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을 하였는데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 제6호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로서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하여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와 같이 현재 보건위생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졸업자가 아니므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해당될 수 없음.

(산보 68340-189, 2000.03.14.)

## 외부에서 A/S만을 주로하는 업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전기전자제조업으로서 인원은 50명 이상이나 작업현장은 주로 외부에 나가서 A/S만 이루어질 때 보건관리자 선임에 해당이 되는지

### 회 시

1. 어느 일정한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에 의해 판단하면 되고, 당해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사업장의 내부인지 외부인지와는 관련이 없음.
2. 그런데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귀 사업장이 전기전자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귀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196, 2000.03.16.)

## 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비파괴검사업체로서 전체근로자수는 200명이나 본사에서 상주하는 근로자는 50명이며 나머지 인원은 지방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지

### 회 시

1. 비파괴 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바,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파괴 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산보 68340-210, 2000.03.20.)

##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 있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및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장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면 법적 혜택이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속하는 바,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보건관리대행 선임의무)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 따라서 귀 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2. 그리고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음.

(산보 68340-244, 2000.04.07.)

## → 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시설용역업체로서 근로자수는 65명임. 주요 구성 파트는 보일러를 가동하고 관리하는 기계실과 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정비하는 전기실, 그리고 청소하는 영선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런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해당이 되는지

### 회 시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및 별표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수치 미만) 모두를 충족할 경우에만 보건관리자 선임의무(해당규정 : 동법 제16조)가 면제되고,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수치 미만)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귀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별표1 제4호의 각목

-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라. 연간 석유 250만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산보 68340-249, 2000.04.10.)

## →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포함되는지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산업안전관리자를 2명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2명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전담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2. 시행령 별표4 제5호에서 말하는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도 포함되는지
3. 시행령 별표3의 선임방법에서 해당자중에서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하는지

### 회 시

1. 질의 1, 3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및 업무량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이유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도, 2인 모두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2. 질의 2에 대하여

- 귀하가 질의한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 제5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이 해당됨.

(산안 68320-299, 2000.04.11.)

## → 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한 아파트를 경비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경비직근로자 50인이상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설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보일러 및 전기시설을 관리할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 회 시

1.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부동산업에 해당되고 파견근로자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귀사는 경비직 파견근로자 50명과 아파트관리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및 기타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 제21호의 규정과 동시행령 별표1 제4호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수치 미만)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별표1 제4호의 각목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공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라. 연간 석유 250만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산보 68340-281, 2000.04.22.)

###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총 공사금액이 72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1개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408, 2000.05.16.)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됨(2000.8.5)

## 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 질 의

근로자 69명이 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9조제2항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산업 안전관리자로서 선임(겸임) 가능 여부

### 회 시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이상을 차지 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수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나.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수용전력이 2,000kw 이상인 경우임(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호).
2. 따라서 숙박업(호텔)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전력도 850kw로서 ②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산안 68320-429, 2000.05.22.)

## 근로자수 변동으로 인한 선임의무 축소에 따른 보건관리자 근로계약 종료 여부

### 질 의

1. 당사는 종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보건관리자 2명(간호사 1명, 대기기사 1급 1명)을 선임하여 왔으나, 현재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가 되어서 대기기사 1명만 선임하고 촉탁근무자인 간호사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대기기사 1명 선임이 가능하다면 환경관리자 업무와 보건관리자 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귀 질의내용 중『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일 경우

- 1)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의미한다면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됨.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 노동정책 → 근로기준 → 근로기준관련지침 → 『계약제 근로자 관련 업무처리 지침』)를 참고 바람.

나. 『근로계약의 종료』가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할 경우

- 1)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 따라서 당해 사안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

가) 사용자는 배치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은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람.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위의 두 가지 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산보 68340-378, 2000.05.29.)

## 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차량 견인 및 관리 및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종류·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은 동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5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2.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중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의 주차장운영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다만, 시설공단 및 각 주차장의 선임대상 여부는 아래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하는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주차장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작고, 조직의 관련성(회계, 인사 등), 사무능력(명의를 독립성 등)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기관의 독립성 판단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존재여부를 그 근거로 할 수도 있음). 시설공단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 각 주차장들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시설공단과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각 주차장들이 조직적 관련, 사무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각 주차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본다면 주차장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산안 68320-45, 2000.05.31.)

##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 질 의

전문대학의 응급구조과의 경우 보건위생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근로자의 보건관리(건강관리, 직업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내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 별표6에 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영 별표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 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음.

2. 귀 질의에서 문의한 “응급구조과”는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을 그 설치목적으로 하며

주로 소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응급구조사, 소방서 119구급대원 및 구조대원,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자 등의 양성을 위해 임상응급의학 등 응급의료관련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관련학과임.

3. 따라서 동 과의 설치목적, 교과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급구조과”는 영 별표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산보 68340-398, 2000.06.07.)

##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 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 회 시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 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산보 68340-466, 2000.06.30.)

##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 질 의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는 아니지만 20년 근무한 약사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괄호의 “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영 별표6의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에 한한다는 의미임.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법 제76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정 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산보 68340-467, 2000.06.30.)

##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 질 의

1.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의무실 산업간호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는
2. 산업간호사가 근무사원의 애로로 인해 두통, 감기, 설사등에 투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 시

1.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대하여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음.
2.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6호다목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와 이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으므로 두통, 감기, 설사 등의 경우에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산보 68340-471, 2000.06.30.)

##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투여 가능 여부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만 가능한지 또는 전문의약품이나 주사제도 가능한지 여부와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투약대상약품 등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여부
2.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 보건관리자가 아닌 약사가 건강관리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인 경우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관리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 포함)을 투여할 수 있음.

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투여만 가능함.

2.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법 제76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정 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약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음.

(산보 68340-496, 2000.07.15.)

##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 질 의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업무범위내에서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보건관리자인 간호사는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만 정해져 있는데 전문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기준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경우는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포함) 및 일반의약품을 구분없이 투여할 수 있음.

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따르는 일반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음.

2.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 정책과(02-503-7557, 58)에서 담당하고 있음.

(산보 68340-570, 2000.08.23.)

## → 동일지역내 1, 2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각각 선임여부 ←

### 질 의

한 개의 회사인데 같은 지역내에 각각의 울타리를 하고 두 개의 공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장별로 건강관리실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간호사는 한명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건강관리실을 관리하다보니 다급한 상황이 발생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음. 인원은 1공장 1,000명 2공장 5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정은

### 회 시

1. 일정한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바,
  -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① 인력의 규모, ②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③ 사무능력(명의를 독립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간의 거리가 공동보건관리자가 가능할 정도의 인근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보건관리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귀사의 경우는 귀 질의 내용에 따른 사업장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므로 각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및 선임하여야 할

보건관리자 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판단기준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산보 68340-618, 2000.09.18.)

### 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 질 의

수용전력은 4,200KW이며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는 겸직할 수 있는지

#### 회 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주된 영업분야 등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동조 제4항의 분야에 해당되는 수용전력 2,000kw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로 보게 되므로 귀사의 질의와 같이 수용전력이 4,200kw라면 동법 제29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함.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코자 하는 경우 동법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특조법에 의한 겸직 안전관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기 바람.

(산안 68320-937, 2000.10.24.)

###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질 의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어떻게(몇명) 선임하여야 하는지?(당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단위현업사무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출장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극히 작고, 조직적 관련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귀 공사의 경우 분소, 역 등의 세분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역무사무소, 승무사무소, 차량사무소 등 현업기관이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지하철현업기관설치운영내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등 귀 공사 관련 운영규정에서

현업기관의 장에게 관할구역 내 업무의 총괄 및 지휘, 노사업무 협조 및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소속직원의 인사 및 회계업무 관리, 교육계획 수립·실시, 직원의 출·퇴근, 결근 등의 복무관리, 업무(보직) 부여, 인력 배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의 변경, 차량의 검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시설 개·보수공사 및 시행,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 등의 업무와 감독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가 각 현업기관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등으로 보아 현업기관은 조직상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3. 따라서 귀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본사와 역무사무소 및 승무사무소, 차량 사무소, 설비사무소 등 각 현업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산안 68320-1133, 2000.12.30.)

##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 질 의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종업원이 300명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의무 및 법정 안전교육은 어디까지인지

### 회 시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 중
  -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림.

(산안 68320-86, 2001.02.12.)

##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질 의

현재 수행중인 관공사의 공동도급이 J사 70%, D사가 30%로서 공동수행하고 있는 바, 현장내에서 최근 추가공사 (100억미만)를 J사 단독으로 수주하였을 경우

1. 기존 공동도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같이 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그렇게 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1.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급사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경우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의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됨
2. 다만, 추가공사가 2000. 12.31 이전에 착공된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산안(건안) 68307-10023, 2001.02.13.)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2000. 9. 28)에 따라 기술지도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인 건설공사(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로 변경(시행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 질 의

파견업체가 보건관리자 자격자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상주토록 하면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적법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2. 이 경우 보건관리자의 선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동법 시행령 별표6의 자격자를 사업장에 직접 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음.

- 동법 제정당시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지도·조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 보건관리자를 사업장에 상주하여 보건관리를 전담토록한 동법 제16조는 보건관리자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임.
-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인정할 경우 동법상 전문기관에 의한 보건관리업무의 외부위탁 규정을 엄격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예외를 인정하여 개인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영리기관에 의한 보건관리 대행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건관리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 동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 더욱이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되는 소위 「절대금지업무」임.
- 3. 따라서 파견업체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파견된 간호사 등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할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됨을 알려 드림.
- 4. 덧붙여 귀 질의의 내용에서와 같이 현재 민원인이 소속한 회사가 간호인력을 대학병원 등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됨.

(산보 68307-88, 2001.02.16)

## →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하는지

### 회 시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인 귀사의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업종분류에 의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대분류)” 중 “방송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영 별표1)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음.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령 제12조제1항, 영 별표3 제22호 해당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100, 2001.02.21.)

## 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영 별표3]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아파트관리소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됨.
2. 동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 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아파트관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임.

(산안 68320-110, 2001.02.27.)

## →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질 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2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 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안전 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 소속의 건설 현장에서 10년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면 소속사의 원·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는 경우 증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선임이 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065, 2001.03.08.)

## → 회사 상호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 질 의

회사명만 변경(법정선임자, 주소, 설비 등은 변동없음)되는 경우 노동부 관할 사무소에 변경신고의무가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또는 대행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한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함.

2. 다만, 종전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설비, 근로자의 변경 등이 없이 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보고시 별도의 자격 등을 생략하고, 회사명 변경 사실과 해당자의 계속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직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20-132, 2001.03.16.)

## →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시 겸직 가능 여부

### 질 의

30~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안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를 선임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는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91, 2001.03.20.)

## →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 질 의

공항내의 독립된 2개 사업장이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확보 문제 등으로 자사내 건강관리실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공항내 타사 부속의료원과 장비·설비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별도로 자사내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업주의 지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2. 다만, 귀소의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장의 건강관리실내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보건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명시적으로 확보(사업장간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등)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 확보 등 시설 및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음.
3. 구체적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적법한 시설·장비 지원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사 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07-231, 2001.04.17.)

## → 도소매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유통회사로 본사에 약 40명의 사무직원(영업사원 7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고, 110명 정도의 판매사원이 각 백화점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음. 이 경우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회 시

1. 도·소매업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으로 구분되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됨.
  -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공센티미터당 7킬로그램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미만인 사업
  - 라. 연간 석유 250톤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2. 다만, 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아 결정되어야 할 것임.

(산보 68307-233, 2001.04.18.)

## →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300억원)과 생명공학관(17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 각각의 계약건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3.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영역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2.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 구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1, 2001.04.25.)

## →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 질 의

원청업체(제조업)에서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하여 수급업체에서 인력만 투입하고 자체 생산설비를 사용 및 생산관리 및 인원관리 등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급업체 인원을 안전관리대행시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이 근로자 파견업체인지, 일반적인 하도급업체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 제조업체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제조업체의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제조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아 제조업을 하는 수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원청)와 수급업체(하청) 각각의 규모(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단, 도급자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 68320-192, 2001.05.02.)

## 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 질 의

1. 사업장 의료실의 간호사가 감기환자에 대한 일반의약품 투여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직원들이 흔히 치료받고 있는 경증의 내과환자, 피부질환자 및 외상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각 질병 및 상병의 종류(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의료행위 허용범위는
2.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선임된 간호사가 치료를 위해 일반의약품을 투여하는 행위는 법적 하자는 없는지
3. 의사를 신규채용하였을 경우도 투약은 일반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

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만이 투여가 가능하므로 감기 등 가벼운 상병의 약화방지를 위한 경우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다만, 투여는 단기간에 걸쳐야 하고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의뢰하는 등 상당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일정한 보건관리자의 의료행위가 산안법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산안법의 취지, 기존에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져온 의료관행, 일반 의료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른 일반의약품은 투여할 수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내 건강관리실에서 산안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투여가 가능함.

(산보 68307-287, 2001.05.08.)

## → 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 질 의

당사는 ○○공단지역내에 위치하며, 전기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대지9천여평(본사)에 직원이 56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건관리자는 전담 2명이 선임되어 있음. 최근 공단내 도로건너편 1천여평의 공장을 증설운영하게 되는데 직원은 50~70여명임. 이 경우 본사 보건관리자가 공장까지 관리가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력의 규모,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능력(명목의 독립성 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간의 거리가 공동보건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인근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보건관리상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사업장이 독립성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사의 경우 현재 선임된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새로 증설되는 조직의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람.

(산보 68307-432, 2001.06.28.)

## 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 질 의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고용, 급여를 지급하게 하면서 서류상 원청 안전관리자로 해 놓은 경우 합법적인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금액이 위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안전관리자는 위 선임규모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가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로 선임토록 한 경우라면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

(산안(건안) 68307-10325, 2001.07.18.)

##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종업원수는 130명정도이고 이동통신기지국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이 통신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산업표준 분류표(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 귀하의 질의만으로 그 업종을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통신업(대분류) 중 전기통신업(중분류)으로 소분류로는 “무선통신업(6422, 무선전화, 무선호출, 기타 무선통신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2.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산안 68320-316, 2001.07.24.)

## 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 질 의

상시 근로자가 75명인 제조업체로서 환경기사(대기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원으로 하여금 대기기사1급 자격증 한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환경관리인에 선임시켜 양쪽의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려할 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보건관리자의 선임 자격요건을 만족하는지

### 회 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제7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귀 질의에 의할 경우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선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산보 68307-515, 2001.07.27.)

##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

### 질 의

당사는 건축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서울소재 본사외에 지방 수개의 지역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소재 본사에서는 생산공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순수 관리직과 영업직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인원수는 500명을 상회함.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여부는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같은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장”(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됨.)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본사가 영업소·공장 등과 별개의 장소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영업직인 것으로 보아 주업종이 도·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귀사의 본사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영 별표1】의 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다만, 귀사의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독립된 사업장 여부, 실제 업종 등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람.

(산보 68307-541, 2001.08.07.)

##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산업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 시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제28조 제1항제7호에서 “교통안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등의 사용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관리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는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조법시행령(대통령령)에서 교통안전관리자 선임면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수업 중 특조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되는 대상이 없으며,
2. 지난 1999.2.5. 교통안전법 개정에서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를 폐지하고 자율고용으로 완화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영 별표4 제10호라목)을 교통안전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개정(1999.2.8) 하였으며,  
자격의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 “교통안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서 채용하는 교통안전관리자”라고 하여 운수업에 선임된 교통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개정된 자격은 “교통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라고 하여 운수업에 있어서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종전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대수에 따라 선임되던 교통안전관리자 제도는 폐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일원화되었으므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운수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363, 2001.08.20.)

## 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해당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시설의 보유주체인 회사가 하여야 하는지 또는 용역업체가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외근 및 A/S, 창고관리 등 사무직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 별표1에 의한 일부적용 업종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부적용을 받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의 입법취지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동법 제2조제3호)”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귀사와 용역업체는 각각의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 일부적용 사업중 귀사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상의 설명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영업직은 사무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영업직 중 전화 및 컴퓨터를 사용하고 내근하는 자는 사무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여 확인 바람.

(산안 68320-371, 2001.08.22.)



##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 질 의

공사착공서류를 제출시 안전관리자 선임건에 20억원 미만의 공사시에는 무자격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대표이사가 지정하면 되는지, 소정의 교육이라면 무자격자가 어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가 아니며, 그에 대한 교육절차도 당연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참고로 3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대상이라도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때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산안(건안) 68307-10423, 2001.09.03.)

## 병원 및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병원 및 호텔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병원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고,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5호에 의한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이나 이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대상 사업장임.

- 따라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병원은 안전관리자(영 별표3) 및 보건관리자(영 별표5) 선임업종 중 기타업종에 해당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2. 호텔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 상 숙박 및 음식점업(대·중분류) 중 숙박업(소분류)에 해당되며,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에 의하여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 가.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1이라도 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408, 2001.09.11.)

## →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 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교사동 개축공사를 시공중에 체육관 증축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비는 각각 공사별로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1. 동일 부지에 2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중이므로, 개축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체육관 증축공사에도 선임한 바, 2개 현장에 한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여부
2. 이 경우 한 현장에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중복하여 집행(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기존에 시공중인 교차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일 부지내에서 추가로 체육관 증축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함
2.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내역 및 공사비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00, 2001.10.18.)

##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 질 의

공사금액 2,300억원의 일괄계약 공사형태의 공사로 공사기간이 2000. 06-2006. 06이고 환경영향평가는 2000. 06-2001. 11 실시, 실착공 공사기간은 2001. 12-2006. 06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4명임

공사기간 초기 15, 종료 15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건설안전) 선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기간을 2000. 06~2006. 06(환경영향평가 기간 포함)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1. 12~2006. 06(실착공기간)으로 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된 기준인 공사 시작후 및 종료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

## → 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지역에서 ○○통신에서 발주한 ○○전화국 연결통신구터널공사(철드공법)를 1998년 8월 16일부터 2003년 1월 1일(2차분 준공예정일) 까지 1차계약분, 2차 계약분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종의 터널공사가 진행중인바, 당사에서는 1차공사시 상기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케 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방노동사무소 및 발주처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그런데 본공사의 2차계약시 발주처에는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나 지방노동사무소에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공종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1차 공사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에도 상주하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이런 사유(동일한 공사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별도로 노동부에는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음)로 발주처인 ○○통신 본사에서 2001년 10월 하순경 현장지도 방문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의 적, 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여 질의

### 회 시

귀 질의의 공사가 1, 2차로 나누어 계약·시공되고 있으나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 → 120억원 미만 2개 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 질 의

120억원 미만 현장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의 현장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각각의 현장에 기술지도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현장은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관리됨)

1. 1인의 안전관리자를 2 이상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2. 안전관리자를 중복배치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현장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는지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발주처의 요구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지(법상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대상이 아님)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공사금액이 위의 기준 이상일 때에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현장의 공사비중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4.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88, 2001.12.04.)

### 안전관리자 해임 시 제출서류

#### 질 의

공사 진행중에 안전관리자와 화약관리자를 겸직을 하고 있다가 화약관리자로서만 활동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해임신고는 어떻게 서류상에 남기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해임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92, 2001.12.06.)

##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가능여부

## 질 의

당 현장은 정보통신공사현장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총 공사 금액은 140억원 정도임. 3개사 각각의 공사금액은 30~70억원 가량이 되며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는 3개사 모두 선임신고를 했고, 안전관리자는 1개사에서 대표로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였음

1. 1억~120억원 미만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1개사가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면 다른 2개사도 기술지도가 면제되는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안전관리자가 법적 선임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안전담당자를 1인 두고(3개사에서 4~5개월씩 동일인으로 운영)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3. 안전관리비 관계서류를 제외한 서류(교육, 점검 등)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로 함은 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공사별로 각 분담내역의 공사규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귀 질의에서 밝힌대로 30억원~70억원 이라면)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을 의미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른 두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안전 보조원을 선임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37, 2001.12.29.)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 질 의

총 공사계약금액이 2,339억원, 공사기간이 1999. 12~2007. 12까지 총 96개월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업체에서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2,339억원에 해당(800억원 이상 2인, 700억원 추가시마다 1인씩 추가)하는 4인을 선임하여 매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는지(단, 전체공사기간의 시작과 종료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으로 함), 아니면 4인을 선임만 해 놓되 년차별 공사진척에 따른 누계 공사비가 800억원 미만일 경우 1인만 상주토록 하면 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은 총공사 부가금액을 말하며, 귀 공사의 경우 총공사 금액인 2,339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원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 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 질 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산보 68340-224, 2002.03.19.)

##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질 의

당 현장은 '95.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을 80% 정도를 보이고 있는 현장인 바, 처음에 공사금액 153억원으로 착공(건축허가시)하여 지금까지 6번의 공사업체가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었음. 이번에 새로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정도임 이럴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를 처음 공사금액이었던 150억원에 기준으로 하여 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수차에 걸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축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산안(건안) 68307-10204, 2002.05.11.)

##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여부

### 질 의

총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A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102억원과 B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인 현재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바,

1.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선임 후 업무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원도급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A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102억원, B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일 경우, 원도급업체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며 A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는 바, 설령 A하도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업체는 위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24, 2002.05.20.)

##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 질 의

공사비 63억원의 A현장 및 25억원인 B현장은 각각 별개의 현장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의하면 공사비 120억원 이상이 되어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개 현장은 120억원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 적용대상인데

1. 이 경우 안전관리 외주 여부 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직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정이 가능하다면 자격요건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인건비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두어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업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음
2. 위의 현장은 공사금액이 각각 120억원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다만,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3.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의 A, B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산안(건안) 68307-10243, 2002.05.28.)

### 야간 작업 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질 의

당 현장은 터널공사로 안전관리자 5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터널현장이라 주야 24시간 계속공사를 하고 있음. 전에 근무하던 곳도 터널현장이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야간 작업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안전관리자 중 1, 2명을 교대로 야간 업무를 추진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됨

(산안(건안) 68307-10253, 2002.05.31.)

## 일괄하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 질 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로 일반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원도급자는 현장대리인 1인만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모든 실질적인 작업은 일괄하도급 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으로 하되, 안전관리자는 일괄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자를 선임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안전관계자 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외에 다른 첨부 서류가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 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위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안전관계자 선임보고는 원·하청 관계없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첨부 서류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279, 2002.06.12.)

## 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질 의

아래 두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M.Tr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54,948,857,000원, 지급자재비 48,816,000,000원, 도급공사비 6,132,857,000원이고
- GIS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71,389,976,000원, 지급자재비 66,440,000,000원, 도급공사비 4,949,976,000원임.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91, 2002.06.19.)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 질 의

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인 토목공사현장으로 착공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여 현재 산안법에 따라 기술 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감리단 및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이며, 이 기준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임. 다만, 발주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98, 2002.06.25.)

## 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의 기준

## 질 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할 현장에서 1명만 선임할 수 있는 기준 15%가 공사기간과 기성공정율 중 어느 것인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 제23호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현장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37, 2002.07.19.)

※ '03.7.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시 의무선임자인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으로 3년 이상 유경험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완화

## → 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 질 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바, 당사에서 시공하는 현장이 같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으면서 각각 블록이 다름. 각 블록간의 거리는 500m, 1,000m 정도 떨어져 있음(3개 블록). 시행자와 시공자가 같으면서 한곳에서 모든 관리를 할 계획이지만 착공신고와 사업승인은 각각 별도로 받았음.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고 혼자서 관리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각 블록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3개 블록의 공사금액 합계는 1인으로 가능한 금액임)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택지지구내에서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는 등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40, 2002.07.19)

##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 질 의

○○지역 항만공사('98. 11. 9~'02. 12. 30) 현장의 시공사로서 공사금액은 1,224 억원이며 공정율이 90%로 현재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이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면 공정율 85% 이상일 경우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2명에서 1명으로 인원축소를 요구하는 바, 당사에서는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을 유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관계자 인건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인원축소 및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의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사기간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 사항인바 현장사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축소와 그에 따라 인건비 감액조치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8307-10356, 2002.07.25)

##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 질 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채용이 계속 지연되므로 기술인력 용역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지원할 경우

1. 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선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안전보조원의 경우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속은 용역업체 직원임)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당해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 근로자가 아닌 용역업체 직원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사료됨
2. 건설현장의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과건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용역계약에 의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안전보조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바, 안전보조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 고용관리과(503-9749)에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건안) 68307-10362, 2002.07.26.)

## → 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 질 의

재건축(아파트) 건설현장으로써 서로 다른 발주처(조합)로 구성된 같은 단지내 두 개의 현장에서 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되어 있고 착공계도 각각 제출하였음. 시공 및 현장관리는 한 개의 회사에서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체계, 관리하에서 시공하고 착공일과 준공일 등 공사기간이 동일함

1.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을 1명씩만 선임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각 2명씩 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1명씩만 해도 된다면 안전관리비는 합쳐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로 나누어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상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바, 귀 질의의 2개의 공사가 동일한 단지 내에서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함. 다만,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경우 그 인건비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 및 정산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비용이 이중으로 정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68, 2002.07.30.)



## 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당사는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주로 제공하는 업체로써, 근로자수는 154명이고, 그중 14명은 본사에서 전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등 지원업무를 담당, 나머지 140여명은 전국에 산재한 120여 건설현장에 파견 상주하면서 건설 시공 등과 관련한 품질관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이런 경우 본사 사업장만으로는 근로자 1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전국 건설현장에 산재한 근로자를 묶어 하나의 사업개념으로 보아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산업재해원인조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구분은 『한국 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상의 업종 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분류에 의하면 계약에 의해 건설 시공과 관련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51, 2002.10.09.)

##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인지 여부

### 질 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영 별표 4)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6호에 해당하는 “고등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를 포괄하는 의미이며, “전공(專攻)”이라 함은 “한 가지 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학과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공)학을 주로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졸업한 자)”로 보아야함.

또한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그 명칭만으로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한 학과인지 불분명하나 일반적인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기업의 품질관리시스템(조직, 자원, 절차) 평가,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품질향상 및 고객만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주로 배우는 학문임. 그러므로 이러한 학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로 볼 수 없음.

(산안 68320-3, 2003.01.08.)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 질 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육상운송업, 호텔업, 방송업 및 골프장운영업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회 시

육상운송업(구역내 철도운송업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 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호텔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상 숙박 및 음식점업(대·중분류)중 숙박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전체)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가 적용되어 법 제16조의 적용은 배제되나,

- 가.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상기 각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방송업과 골프장 운영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 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산보 68340-62, 2003.01.24.)

## →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질 의

근로자를 50인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회 시

병원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 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62, 2003.1.24)

## →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질 의

(재)○○석유품질검사소는 상시근로자 74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 연구개발 및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 시험조사 등을 하는 사업장으로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 회 시

위 검사소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판단키 곤란하나, 귀 문만으로  
판단할 때 석유제품의 검사를 주로하는 사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중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441)”에 해당하고, 동 업종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의한 산안법 일부적용 업종임

따라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품질검사소는 산안법 제 15조 및 제1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산안 68320-30, 2003.02.03.)

## →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철거를 포함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괄 도급을 받고 있는 바, 공사 진행상 건설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철거공사 후 신축공사까지는 약간의 시간(대략 1개월 내외)이 소요되고 있음

착공신고를 철거공사만 하고 철거완료 후 신축공사에 대한 별도 착공계 제출하는 등 철거공사와 신축공사에 대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별도로 시행할 경우

1. 철거공사 금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인지 여부
2. 철거공사까지 일괄도급이므로 착공신고와는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400억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중 선임하여야 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재건축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41, 2003.02.20.)

##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 질 의

총 공사구간이 20km정도이고 공사구간내 교량 2개소와 옹벽 2개소 공사(120억원)를 주공사 1건, 나머지 옹벽공사와 기타공사를 합쳐 기타공사 1건으로 별도 계약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고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공사건별로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를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원청인 회사가 2개의 공사건을 1개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어 건별로 계약하고 동일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며 동일 근로자가 주 공사 및 기타복구에 같이 투입되고 안전점검시 전구간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및 인건비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등 1개의 사업장처럼 관리되고 있는 경우

1. 2건의 공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점검구간을 명확히 기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2. 중복선임하여 1인이 관리하더라도 건별로 되어 있으므로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서류이며, 그 외의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협의체 구성·운영 서류 등은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시에 필요한 서류임
2. 귀 질의와 같이 인접한 2개 공사현장을 하나의 공사조직하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사건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역서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서류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관리방법이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통합 또는 별도) 하시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64, 2003.03.12.)

## 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질 의

시행령 제12조 별표 3에 의거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인(800억원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바,

1. 15%라는 것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공사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2. 만약 공사기간이 기준이라면, 당초 공사금액 800억원, 공사기간이 1,000일이었고 850일 후 851일째 안전관리자를 1인만을 선임한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900일째에 변경되어 1,100일로 연장되는 경우 85%되는 시점은 935일이 되는 바, 35일간 안전관리자를 재 선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 제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2.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즉시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4, 2003.05.15.)

##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 질 의

당 공사는 고속도로현장으로써 최초 공사금액 765억원으로 시공중 설계 변경건

으로는 감액이 되었고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한 결과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되었음

위와 같을 경우 설계내역의 증가 없이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증원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바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변경요인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62, 2003.06.12.)

###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 질 의

1.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토목공사로서 당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한 미상주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는 없는지
2.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외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 회 시

1.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2.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안(건안) 68307-215, 2003.07.21.)

## → 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질 의

1. ○○중학교신축공사 공사금액 40억원, ○○주공아파트 공사금액 90억원, ○○아파트 신축공사금액 250억원의 3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회사가 동일한 동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안전관리자를 공동선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하다면 인건비 지출 비율의 결정은 시공사 자유인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기술지도 대상공사 중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는 3개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음
2. 유선 확인결과 동일한 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사현장 단위조직이 별개인 귀 질의의 공사금액이 250억원인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나머지 2개 공사현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각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42, 2003.08.13.)

## →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 질 의

종합병원에 14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 및 위탁하는 인력파견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 회 시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 별표 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692, 2003.08.19.)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

## 질 의

저희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인력 공급)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1. 저희업체에서 용역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저희 회사와 하청(용역업체)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 하는지?

## 회 시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347, 2003.09.01.)

## 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

## 질 의

같은 시에 2개의 아파트공사 현장이 있을 경우 A현장은 150억원이 넘는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 현장이고(자체공사), B현장은 약 50억원 정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현장이 아님

거리로는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B현장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150억원 이상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시공사라 하더라도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또한, 공사현장이 동일한 공사조직, 관리체계하에서 장소적으로도 인접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별개의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기술지도를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270, 2003.09.09.)

### → 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

#### 질 의

당사는 상시근로자수가 298명 정도이며, 인접지역에 2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각기 번지수가 다른 2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1공장, 2공장 형식으로 구성), 이 2개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으며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공장, 2공장 따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1명 및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1,2공장을 모두 관리 할 수 있는지

#### 회 시

개정(2003.6.3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동일 사업주(동일 개인사업주 또는 동일 법인)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2개의 공장이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 있고, 이들 공장의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미만이라면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을 것임.

(산안 68320-373, 2003.09.23.)

※ '10.11.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지역을 종전 '같은 읍·면·동' 지역에서 '같은 시·군·구' 및 '하나의 사업장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확대

###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 중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5, 6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

귀 질의의 “소방안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 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인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762, 2005.07.14.)

## 박물관, 홍보관, 건축·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 질 의

상시근로자 60여명이고 박물관, 홍보관, 시청각실, 기획설계시공, 건축·플랜트 모형을 제작, 납품하는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제조업(대분류)중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중분류)으로 세세분류로는 “교시용 모형 제조업(36975)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되고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장임

(산업안전팀-1759, 2005.12.14.)

##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1.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2. 사업주와 협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 법적인력이 아닌자로 하여금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 위반인지와 이 경우 수수료를 사업주와 협의하여 징수가 가능한지

### 회 시

1.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이는 규정된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의 보건관리대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지정한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대행 기관이므로 지정받은 인력이외의 자가 대행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건관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보건환경팀-1679, 2006.03.21)

## 대표이사가 동일한 안전관리자 선임

### 질 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시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음.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화학제품제조업일 때 동일 지역 안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 시 2개의 사업장에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구분하지 않고 공동 선임이 가능한 지

### 회 시

귀 질의와 같이 동일 지역안에서 각 법인이 다르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575, 2007.02.01.)

##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 질 의

공공기관으로 ○○도 ○○군청 실과원소의 소속인 보건의료원으로 주요업무는 보건정책사업추진(보건소 기능과)과 의료원(병원)으로서 진료과목은 10개과목과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공무원(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95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답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안전관리자 선임 등)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 별표1 제5항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제외)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사업장은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제외 사업장으로 봄

<을설>

위 별표3 제23호에서 명시한 제1호 내지 제22호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종류로 적용대상이며 공공행정기관 현업부서로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명시된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대상 사업장임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보건의료원은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577, 2007.02.01.)

### →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 질 의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전기사용 용량은 300킬로와트 미만이지만 월 평균 4천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도시가스법에 의거 가스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 회 시

레스토랑은 음식점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이나, 귀 사업장과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법의 전부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레스토랑은 도시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가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음

(산업안전팀-915, 2007.02.21.)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질 의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설비를 수주/제작/납품을 주로 수행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인 공사금액은 수주금액기준인지 아니면, 수주금액중에서 현장설치공사비(인건비, 기타)에 한정된 설치비 기준인지

가령, 당사에서 150억원에 수주하여 A,B,C,D,E,F의 6개 국내자동차설비 전문 회사에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안전관리업무는 어떻게 대응 하면 되는지

### 회 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916, 2007.02.21.)

## →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관련

### 질 의

당사는 식료품 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는 80여명인 회사입니다.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라서 냉동제조(프레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보면 10호 가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였던 데 위에서 말한 자격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있는 지(식료품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는 별개라고 생각됨)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영별표4 제10호)규정에 의거 식료품

제조업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고압가스 냉동기계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945, 2007.02.22.)

##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질 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으로,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보건소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공중보건의료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보건의료원은 일반병원으로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1의 제5호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제외)으로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보건소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며 보건의료원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면 영 별표1의 제4항의 해당요건(가 - 바 항목)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보건의료원은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및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영 별표1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므로 동 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산업안전팀-949, 2007.02.22.)

##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행정해석

### 질 의

안전관리대행업체 한국산업안전검사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1년6개월을 근무한 경우 산업안전실무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기관(지정검사기관, 안전관리대행기관,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지정교육기관등)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사업장 또는 해당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이를 입증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안전보건지도과-44, 2008.04.01.)

## →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련

## 질 의

1.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한곳은 300인 이상, 다른 한곳은 300인 이하인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2. 선임대상인 경우 협력사 중 기 안전관리 대행으로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이들 협력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원청에서 관리자를 선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사업장 전체 인원에 대해 관리자를 선임(대행업체 이용)해야 하는 지의 여부
3. 동일 읍·면·동 지역이 아닌 경우에 협력사로 구성된 사업장으로 전체 협력사 중 대부분이 안전관리, 보건관리 대행으로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50인 미만으로 미선임되어 있는 협력사가 일부 있는 경우 원청에서 50인 미만업체만 선임 해야하는 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 전체 인원에 대해 관리자를 선임(대행업체 이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3항(제12조제3항 준용)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인 및 수급인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봄. 다만, 영별표3, 영별표5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제1차 금속산업

나.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다. 토사석채취업

라.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 읍·면·동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개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인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첫 번째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3)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5)에 따라 각각의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두 번째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도급인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합제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3)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5)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

- ※ 수급인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대행 기관에서 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보아 도급인은 수급인 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하고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수 있음

(안전보건지도과-72, 2008.04.18.)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

### 질 의

총 공사금액이(도급액) 1,100억원인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공사(철근 공사 부분)를 12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하도급 대비 원도급 공사금액 125억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119억원에 하도급공사를 체결할 때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여부[다만, 공사시공과 관련되는 자재비(레미콘 31억원, 유로폼 등 가설재비 30억원) 61억원을 도급인(원청)이 제공]

1.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은 60억원이나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지급자재비(유로폼 등 가설재 30억원, 레미콘 31억원)가 시가 환산액 61억원일 경우 하도급 공사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도급계약이 아닌 하도급계약이므로 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을설) 계약서상의 부기금액은 아니나 레미콘은 지급자재로 포함하여 91억을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병설) 계약서상의 부기금액은 아니나 레미콘, 유로폼 등의 가설재를 모두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121억원으로 본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 120억원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3.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경우 하도급에서 투입한 안전관리자 인건비외 기타 사용된 안전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노동부 점검 및 감독 시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부분에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및 사법처분의 대상은 누구인지

### 회 시

1.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따라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부가세포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2.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다만, 설계감리비, 분양관련비용, 이주(비)

관련비용, 민원처리비, 하자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병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3.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선임(하도급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에 따른 소요인건비, 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공사 시행관련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은 사업주이므로 동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행정 및 사법처리 처분됨. 다만, 중대재해조사 관련 직접적인 원인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원 · 하도급업체에서 선임된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음.

(안전보건지도과-412, 2008.10.24.)

## 대학에서 공업경영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해당여부

### 질 의

○○공업대학 공업경영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학력·경력으로 안전관리 초급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조언을 위해 【영별표4】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대학에서 전공한 “공업경영과”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안전관리초급기술자” 경력이 【영별표4】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관련학파에 해당되는지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1998.12.31.까지의 교육에 한함)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영별표4】 안전관리자 자격 제5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공한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전공한 공업경영과(산업공학과)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귀하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취득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 경력증은 건설기술관리법의 목적에 따른 것일 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1219, 2009.04.01.)

## 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 질 의

1. 안전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1명과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중 1명을 선임하여도 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의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지

### 회 시

1. 기특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업장이 500인 이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함

동 사업장이 기특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의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참고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는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인간공학 기술사가 있음

(안전보건지도과-1299, 2009.04.09.)

## →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질 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 등 아래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여부

1. 종합경기장 천연잔디관리 및 주변환경정비(2명 근무)
2. 청소년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시설관리 및 주변환경정비(8명 근무)
3. 화장장에서 화장 및 납골업무, 화장실 및 환경정비(5명 근무)
4. 공영주차장 주차 및 징수업무(총 16명 근무)
5. 시가지 전역 환경정비와 쓰레기 수거업무 등(101명 근무)
6. 저소득층 자녀 대상 무상교육서비스 지원(3명 근무)
7.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긴급구조(4명 근무)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령(법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사업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를 [영별표1]에 규정하고 있음

동 별표에서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다수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함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상시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시가지 전역 환경정비와 쓰레기 수거업무”가 한국표준 산업분류(8차 개정)상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9030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51, 2009.04.14.)

## 대학에서 환경안전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당여부

### 질 의

「○○○○ 부설공사」의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예정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있는지

※ ○○대학 환경안전과 졸업자 ○○○(졸업일자 : 2003.2.15.)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의 5, 6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되고 학력인정등에 관한 법률('97.1.12. 제정)의 안전공학 전문학사 학력인정 표준교육과정상의 2년제 전문학사 학력인정 학점 및 과목 중 전공(전공필수 포함)분야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사 취득한 자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대학 “환경안전과”는 환경 및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산업안전공학 전공(전공필수 포함) 분야의 이수학점이 28학점에 해당되어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전문학사학위(산업안전공학 전공)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198, 2009.06.02.)

##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 질 의

시공자가 A사가 B사로 교체되어 2009.11월 공사도급 계약을 발주처와 하였을 경우 전체 공사기간을 어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사기간 : 2007.11 ~ 2012.6
- 2007.11~2008.10(A사)
- 2008.11~2009.10(공사중단)
- 2009.11~2012.6(B사)

(갑설)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공사기간(2007.11~2012.6)에서 공사중단 기간(2008.11~2009.10)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공사

(을설) 발주처로부터 B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아닌 A사 공사기간 및 공사 중단기간을 제외한 2009.11~2012.6만을 전체 공사기간으로 산정

## 회 시

귀 기관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갑설” 또는 “을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여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제23호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현장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

한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로 하여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례>

총 공사계약금액 2,139,711,429원인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조업월수가 12월(2008.1.1.~12.31)이고 일반노무비율('08년) 28%,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08년)의 경우

$$\begin{aligned} \text{▶ 상시근로자 수} &= \frac{\text{총공사계약금액} \times \text{건설업 일반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text{조업월수}} \\ &= \frac{2,139,711,429 \text{ 원} \times 28\%}{2,496,330 \text{ 원} \times 12 \text{ 월}} = 20 \text{ 명} \end{aligned}$$

\* 소수점 이하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이에 따라 관련 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므로 연도 중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총 공사계약금액과 조업월수에 따라 결정됨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으나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종료 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즉시 영별표 3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안전보건지도과-750, 2010.04.19.)

## 노동조합장을 도로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 질 의

택시운송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Time off)제도에 의하면 노조전임자가 산업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이 도로교통 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통안전 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 임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 회 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범위는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합의·참여·신고·추천 등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안전관리자(법 제15조)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12조제2항)

이에 따라 귀 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에 속하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안전 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로서 회사의 재산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내 운수업무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며, 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

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은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216, 2010.07.29.)

## →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는지

### 질 의

상시 근로자수 140명의 택시운송업체에서父子가 등기부상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2인 모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에 있어 아들이 부친의 결재를 받는 등 부친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아들을 동 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 회 시

단일 회사인 경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으나 위 질의내용과 같이 공동대표이사 중 어느 1인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산업안전과-535, 2010.09.02.)

##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 질 의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규정 적용시 공사시작 후 15%에서 공사시작의 의미는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 제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 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실제 현장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에서는 가설공사(수방공사)가 시작된 시기를 공사시작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AA-1009-041597, 2010.10.01.)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 질 의

공사금액 69억5천만원의 기계설비공사로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괄 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귀 현장과 같이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업안전과-1013, 2010.10.20.)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대행인원 산정기준

### 질 의

안전·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1명은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행인원 산정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또는 별표5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19조제2항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은 제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에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1명만을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바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대행계약 시 그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하여야 하며, 대행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대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4115, 2011.09.29.)

## →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

### 질 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E 5개사의 상시 근로자수 합이 약 400명 이상(각사 모두 각각 50명 이상임)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선임의 한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것은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한 사업장 A~E 5개사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3167, 2012.06.13.)

## 보건관리자의 자격

### 질 의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으며, 귀 질의의 병원경영학과는 병원경영학, 보건경제학, 병원회계학, 보건통계학, 건강보험 등 병원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산재예방정책과-4912, 2012.09.10.)

##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공사현장 착공시기에 A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이었으나 작업수행중 B가 현장대리인, C가 현장소장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B, C중 누구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회 시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따라서,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70, 2001.08.04.)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 질 의

A사가 B사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임대받아 임대받은 사업장에 관리 감독자 3명을 파견하여 도급물량(C사 등이 제작, 납품)에 대한 전체 공정관리만을 할 경우

1.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법 제29조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2. B사로 부터 임대받은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자체 문제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 C사 등 물품 제작, 납품업체 직원이 재해를 입을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C사 등 물품 제작, 납품업체 직원이 A사가 B사로 부터 임차한 크레인 등 장비로 인해 작업중 재해발생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1. 귀 질의의 경우 A사에서 파견나간 관리감독자 3명의 지휘체제, 업무, 상호간 역할, 하도급사인 C사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A사의 근로자와 도급받은 C사 등의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법 제2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재해 유발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관리(운전)주체, 재해 발생 경위 및 당시 작업내용, 작업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등과 같이 위험기계기구를 대여할 경우 동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의무 이행주체가 그 이행을 소홀히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고의 발생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안전상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267, 2006.10.3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권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에 동 조항 위반은 당연하지만, 법 제18조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예)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모두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A사장 대신 자격(권한)이 없는 B전무가 동 책임자로 선임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회 시

산안법 제13조제1항(관리책임자)과 제18조제1항(총괄책임자)은 각각 다른 의무 행위여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의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 책임자 미선임 또는 총괄책임자 미지정시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각각의 범위반으로 보아 각각 과태료 부과

문제는 질의 내용과 같이 자격(권한)이 없는 자를 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선임한 경우에 동 조항 위반은 당연하지만, 법 제18조에 의한 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 법 제13조제1항에서 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정하지 아니하고(시행령 제9조제2항에 규정함), 시행령의 위임 근거도 처벌조항(법 제13조제1항)이 아닌 조항(제13조 제3항)에 두고 있어 처벌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입법적인 문제로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 부는 현행 규정 하에서도 처벌(과태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법 제18조제1항에서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원청의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자격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잘못 선임된 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13조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8조제1항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위반(자격이 없는 관리책임자 선임)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1465, 2012.03.21.)

##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⑤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⑥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⑧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질 의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 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사업장에 함함)·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96, 2001.08.24.)

## 근로자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 질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수를 노조규약에 의하여 무한정으로 선임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또는 사용자위원)수를 무한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정 68301-4, 2003.01.04.)

##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 질 의

1. 총무팀 소속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인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로 이동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은 동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내용처럼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부서만을 이동하였다면 이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은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 동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 동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제8호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동법 제20조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귀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말함

(안정 68301-355, 2003.04.28.)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 질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를 사내 전자문서(사내 인트라넷 게시판과 비슷하여 직원들의 자유게시판, 회사 공식문서, 회사 절차 등 규정서들이 게시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회의결과 등의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상의 ‘사내 전자문서’가 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접속하여 회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사내전자문서를 통한 회의결과 홍보방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회의결과 등의 주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381, 2003.05.09.)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 질 의

노사합의로 체결된 사내규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의결방법으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지와 안건 의결 방법을 수정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 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고 정한 귀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동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1-423, 2003.05.22.)

##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질 의

1.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기구를 두어 사용주가 위임하는 회사 간부를 의장으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3. 노사 대표간에 본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유해·위험업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설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본사 및 지방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임
3. 또한 귀 질의상의 “산업안전보건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동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미한다면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정 68301-529, 2003.06.3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의 임단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통보한 상태로

1.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기로 일정까지 확정되어 통보하였으나 조합에서 일방적인 불참으로 미 실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2.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된 상태인바, 3개월이란 주기의 범위 여부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조측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라도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개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질의 1, 3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주어 동 위원회 정기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소집을 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의 개최일에 근로자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동 위원회가 개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 정기회의 3개월 주기는 동 위원회 개최일 이후부터 3월을 말함

(안전정책과-3480, 2004.06.28.)

### →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방법

#### 질 의

1. 산안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 및 근로자 9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현장이라(120억 미만) 9인의 인원 구성이 되지 않을 시, 예를들어 사업주측 인원이 3명밖에 안되면 근로자측도 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2. 산안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현장은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해야 되는지 여부

3. 산업법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제3항에 의한 건설업 도급사업에 있어서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시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석시켜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는 몇 명을 이야기 하는지 여부

## 회 시

1. 건설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이며, 동 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와 사용자위원으로서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의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노·사 동수로 구성·운영하여야 함
2.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 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 다.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 라.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에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3.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함

(안전정책과-3999, 2004.07.20.)

##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중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관련하여

1.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규정으로 무효인지 여부
2.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할 것임
2.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가 별도의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항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음. 다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안전정책과-7136, 2004.12.2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서명을 받지 않은 회의록의 효력 및 작성시점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6(회의결과 등의 주지)와 관련하여 2005. 4.6일과 5.10일에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2005.5.18일과 5.23일에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 개최결과 회의록을 사측위원만 날인을 받아 게시판에 게시하였음

1.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위원의 승인이나 날인을 받지 않고 게시했다고 철회를 요구하는데 철회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은 도저히 의결될 수 없는 안건인데 회의록은 어느 시점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는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의·의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결과는 동 사항을 적시하여 게시하면 될 것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개최 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타 토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의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시행령 제2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안전정책과-3217, 2005.06.03.)

##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 질 의

본사 및 다수의 지점(현장)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본사는 지점(현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직근로자(약 900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점(현장)은 개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본사와 지점이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약 8km)되어 있고 본사의 근로자가 사무직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사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현저하게 다르고 인사관리 및 회계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분국,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기관들을 직근 상급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위 원칙을 기준으로 귀사의 본사 및 지점(현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만일 귀사의 본사와 지점(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본사에는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별표 1 제6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본사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안전보건정책팀-4753, 2007.10.19.)

## 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A건설의 경우 공사비 120억원 이상의 단위공사에 3~4개 하도급사를 두고 있고, 동 하도급사(전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는바 지역노조 지부장이 위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현장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나, 동현장 노조가입 근로자만으로 지역지부 노조의 과반수를 이루는 것은 아님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함

사용종속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대표자인 지역노조지부장이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없다면 당해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안감독관 1명, 그리고 공사비 20억원 이상 현장근로자

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토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시 동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노조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아니면 사업장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건설업에서 산안위 설치·운영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로 구성 운영할 지는 당해 현장에서 선택할 문제임.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산안위 근로자위원인 노조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항의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또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민주적 선임절차(방법)에 대한 입증은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자 명단, 입증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 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 질 의

당사는 별도의 3개 사업장(3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3개 사업장을 대표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원의 수가 과반수 넘음  
이 경우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인 근로자대표의 정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의미함

귀 질의와 같이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3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별도로 각각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를 정하지 않는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3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12.01.)

1개 병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1개 병원은 자체 선출된 사람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질 의

△△대학교병원(이하“본원”)과 □□△△대학교병원(이하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병원은 자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산안위”)를 운영하고 있음.

1. 본원 노동조합에서 근로자 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본원 소속 근로자가 □□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3. 임기내 근로자위원 교체 권한 소재 여부

#### 회 시

1. 질의 1,3에 대하여 :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산안위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노동조합 조직범위와 관계없음)이 될 것이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 산안위 근로자위원은 □□병원이 동 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병원 소속 근로자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산안위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31, 2012.01.18.)

## 6.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

#### 질 의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개정(2003.7.7) 시행규칙 별표 6의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2. 사내안전보건규정 개정시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 6의4>의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지
3.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회 시

1.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1항 각호 및 시행규칙('03.7.7 공포, 노동부령 제194호) 제26조제2항(별표 6의2)에 의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정한 사항

중에서 제외 또는 그 외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별표 6의2 제7호 “다” 참조)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법 제21조)을 거쳐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중전의 심사제도는 폐지)

(산안 68320-266, 2003.07.08.)



##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한 한 개의 노동단체에 2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가능한지
2. 한 개인이 소속 사업장과 노동단체에 동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노동단체인 경우에는 2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음
2. 사업장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상급 노동단체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해촉 권한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추천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안정 68320-153, 2000.02.15.)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2(작업중지) 내용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인지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 회 시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제4호에 의거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자신이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권한은 없음.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7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된 작업중지 명령권한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것이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 위임된바 없음
3.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뜻함

(안정 68320-905, 2000.08.24.)

### 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 질 의

철도청 각 산하기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관련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각 산하기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한지

#### 회 시

철도청과 그 산하기관은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철도청 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함

(안정 68300-340, 2002.04.23.)

## → 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 질 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함에 있어 사업주의 의견을 들음 없이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현행 1명에서 33명으로 위축을 받을 수 있는 지

### 회 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제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마다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동 시행령 제45조의제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인 이상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동 기준에 따라 추천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안정 68300-455, 2002.05.22.)

## →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제1항제2호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법적의미는 무엇을 말하는지, 단위조합이 모여 지방본부가 구성되고 지방본부가 모인 철도 노동조합의 경우 동법 제10조제1항의 설립신고에 관한 내용과 동종산업의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는 어떤 관계인지, 산업안전 보건법상 철도청을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 철도본부 노동조합 대표를 철도청의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지

### 회 시

통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4호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 연합단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동법 제10조제2항은 동조 제1항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철도청을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국의 사업장들을 각각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철도청 산하 각 사업장 별로 아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중 (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되, (다) 및 (라)사항을 참고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로 다른 사업인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나 분회 등의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를 말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기 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결과에 따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판단하시기 바람.

(안정 68301-545, 2002.06.24.)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 질 의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사측이 원하지 않더라도 노조위원장이 추천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되는지, 한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몇 명 두어야 하는지, 해촉 사유가 없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제1호는 명예감독관 위촉시 당해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책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사업주의견은 지방노동관서

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현실이나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위촉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님.

하나의 사업장에 몇 명의 명예감독관을 둘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 제4조에 의하면 사업장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명예감독관의 해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때에도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3항의 규정에서는 명예감독관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해촉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안정 68300-341, 2003.04.22.)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 질 의

1. ○○노총 ○○지역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노총 ○○지역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노총 ○○지역 본부 대표가 상기 ○○노동조합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 자의 위촉 가능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하므로 ○○지역 ○○노동조합의 노조 설립신고서 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는지 단위노동조합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기 위해서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이어야 함. 따라서 ○○노총 ○○지역본부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고 추천된 자가 그에 소속된 임·직원인 경우라면 관련규정에 의해 위촉이 가능하므로 노조 설립 신고서, 조직현황, 임직원 현황 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위촉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1-824, 2003.10.07.)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가능 여부

### 질 의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법 기준에 따른 업무(시행령 제45조의2제2항)를 태만히 하였을 때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2. 규정대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해촉을 요청해야 해촉이 가능하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에게 해촉을 요구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대표가 거부한다면 사업주가 해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동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위촉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에게 해촉 의견을 제시하여 근로자대표로 하여금 해촉 요청을 하도록 협의하면 될 것임

그러나 귀 질의 “나”와 같이 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의 업무수행 곤란여부 등 해촉요건 해당여부 파악을 요청하시기 바람

(안전정책과-5366, 2004.09.23.)

##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 노동조합이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울산지역에 지역본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울산지역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기구”로 보아 동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는 특정 지역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하여 연합단체의 조직상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부 등으로 조직화된 기구를 말함 따라서 귀 소에서 질의한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경우 단순히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인지 연합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규약에 의해 울산지역 지부로 설립되어 동 연맹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지역대표기구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안전정책과-750, 2005.02.05.)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의 범위

### 질 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중의 하나인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 발전소 운전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매일 24시간 상시 감시 및 점검)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점검의 날” 또는 계절적, 특성시기별로 이루어지는 점검을 말하는 것인지

### 회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자체점검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동 점검과정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발전소 운전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매일 24시간 상시 감시 및 점검)에 참여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사가 함께 인정할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안전보건정책팀-328, 2007.01.23.)

### 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인 사업소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추천 가능 여부

#### 질 의

조직이 개편되어 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이 된 사업소의 근로자대표(지부장)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귀사의 지사 소속 각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수행업무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 개별 사업소 단위로 안전보건관리를 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취지와 업무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업소 단위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에 관한 협의 및 처리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는 없으나,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사협의회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팀-1870, 2007.04.26.)

###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 질 의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무관리, 산재예방 등 근로조건의 기획·결정 또는 근로 제공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소위 관리자)를 제외한 자로서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자가 그 위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다만, 위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원·하청 소속의 부장, 과장, 반장 등의 형식적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의 실태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임

(안전보건정책팀-2834, 2007.06.26.)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정리해고된 후 복직 시 새롭게 위촉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질 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가 정리해고된 후 복직되었을 경우 새롭게 위촉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 회 시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를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추천하면 지방노동관서는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음

복직원직과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별개의 문제로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및 신규 위촉여부를 확인하고 위 위촉절차를 거쳐야 할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07.03.)



## 제 3 장 산업안전 일반



## 제 3 장 산업안전 일반

### 1.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⑧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⑨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도급인인 사업주 개념

### 질 의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1. 위에서 사업주란 반드시 사업을 대표하는자를 말하는 것인지
2.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즉,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경우에 안전관리자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주의 작업장 순회점검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3. 안전관리자의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주 순회점검으로 볼 수 없다면 실제로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사업본부장이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안전점검일지를 기록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를 말하는 것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도급인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로서

법상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며, 행위 능력이 없는 법인 또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로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 질의 2, 3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제2호(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 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을 하기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것이며,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대하여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산안 68320-266, 2001.06.23.)

## →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 질 의

1. 개발과정에서 암석이 다량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암을 필요로 하는 제2업체에서 직접 암을 발파후 크랏샤(파쇄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생산하여 제2업체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발생하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책임의 주체 및 관리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지
2. 제2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암을 처리할 경우와 제2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각 관리책임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원청) 사업주 등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하도급)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으며,  
귀사가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다른 업체에게 장소, 설비 등만 제공하고 공사(작업)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사가 제공한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조치 책임은 귀사에 있음.

(산안 68320-269, 2001.06.23.)

## → 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 질 의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본사의 엔지니어링부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 의무의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회사 소속의 공사부서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엔지니어링부서 소속 직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근무하는 경우 동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각각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1.07.14.)

##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 질 의

당 공장은 화학제품제조업인데 사업장내에 식당/경비/조경 등을 외주 용역을 주어 관리를 하고 있음. 당 공장 내에 있는 모든 수급(하도급)회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협의체 구성 및 시행 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합동안전보건 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데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도 이 규정에 해당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하청)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 “건설업, 제1차금속산업,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채취업, 제조업”으로 정하고 있음.

귀사가 외주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다는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업체와 도급관계인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하나 귀사의 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은 협의체 구성을 해야 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305, 2001.07.19.)

###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

#### 질 의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은 원청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대부분이 협력회사 근로자에 의한 작업수행이 이루어 지므로 협력회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협력회사에서 동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회사와 협력회사의 법적인 책임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임

따라서 귀사와 같이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수급인인 사업주(협력 또는 하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건강진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안정 68307-718, 2001.08.13.)

## →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구 지급 의무

### 질 의

당 현장은 ○○하수처리장건설공사로 공사금액 280억원(관급 80억원)으로 계약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계상되어 있을 경우

1. 일반관급자재(레미콘, 철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와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설치가 제조업체에 일괄로 계약되었을 경우 관급자재 설치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2. 상기 항에 대한 도급자의 법적 한계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자재 포함)는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관급자재인 레미콘, 철근 등은 이에 해당되며, 이때의 안전관리 의무는 귀사에 있음
2.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 설치공사를 따로 발주하고 본 공사와 다른 시공자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공되는 경우 이는 별개의 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관급자재비는 본공사의 관급자재비로 볼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3, 2001.12.03.)

## → 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 질 의

법인 A는 APT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업체로서 APT를 건설함에 있어, 골조공사 도급계약을 자회사인 법인 B와 체결하면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물론 안전 점검 및 교육도 모두 법인 A가 담당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관련된 안전관리비 역시 A가 사용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에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일부가 미설치되어 관계기관의 점검시 적발되었을 때 위 법 제67조와 제71조의 적용에 있어서 안전시설의 미설치 책임은 법인 A와 그 대리인인 현장감독만이 져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시설의 미설치 책임은 법인 A는 물론 법인 B 및 각 대리인이 모두 져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 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가 별도로 행하여져야 함

귀 질의에서 A업체가 공사현장 전체를 계획·관리하고 시공하면서 공사의 일부를 B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B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의무는 B업체에 있으며, A업체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됨

(산안(건안) 68307-10598, 2001.12.06.)

##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 질 의

1.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들어 올린 부움대가 부러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부움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 2호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규정을 원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라 함은 설치방법 및 장소에 따라 기계·기구 자체가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부움대가 부러진 곳은 상기 장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도괴”라 함은 국어사전상 “무너지는 것”을 뜻하고 있으나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 부움대의 회전반경내는 부움대가 부러질 경우 중대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기계·기구가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인정하여 원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서는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전도 또는 도괴는 넘어지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위의 규정은 이러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반의 침하방지, 안전한 경사유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펌프카의 작업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음이 부러진 경우라면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8, 2002.07.15.)

## 법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와 “작업”의 범위는

### 질 의

1. 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동일한 장소의 범위”는 공장의 울타리 개념인지, 공장건물 단위인지 건물내의 칸막이 개념인지
2. 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작업에 대한 범위는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몇 회 작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 회 시

#### <관련규정>

####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이하생략)

1. “질의 1”에 대하여
  -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장소”는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장소에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
  - 위 법문 중 ㉠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 법문 중 ㉔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로 정의되고 있어 작업과정상에서 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함

## 2. “질의 2”에 대하여

- 법문에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고 하여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 법문 중 ㉔의 “작업”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는 무관함

## 3. 산안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동항 각호에서 도급인인 사업주의 의무로서 정하는 사업주간 협의체, 작업장의 순회점검, 교육지원, 경보의 통일, 작업 환경측정 등은 동일한 장소 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수급인과의 혼재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상대적으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안 68320-86, 2003.03.10.)

## → 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 질 의

당사는 조립금속제조업으로써 사내에 3개의 수급업체가 있으며 작업의 단위공정은 300여개 이상이며, 각각의 업체 소속 근로자는 80명, 77명, 13명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점검반 구성원중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을 포함하게 되어있는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은 각각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2. 질의 1의 점검은 회사와 회사의 위치에서 동일장소에서 일할때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합동안전 보건점검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산안법시 행령 45조의 2제2항 직무와 관련)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3호의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의 팔호안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정에 한한다.”라는 문항이 있는데, 여기서 “수급인에 해당하는 공정”이라 함은 수급인이 맡고 있는 모든 단위공정(3개 업체 100여개 내외 단위공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내에 일하는 각각의 수급업체별로 1명씩 참석시키면 되는지

####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 규정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에 대하여는 규정상 도급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선정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가능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각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거나 사업주간 협의체 등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에 대하여

- 사업주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할 법상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나,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참여시키는 것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3”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은 점검반원으로 구성된 각 수급인(협력업체)의 근로자 대표 중 수급인의 작업공정에 대한 점검시에 반드시 당해 수급인 소속근로자 대표가 포함되어야함을 의미함.

(산안 68320-136, 2003.04.09.)

### → 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질 의

저희 AA주식회사는 고무제품제조업이고, B(주), C(주)등 30개 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 근로자수는 2,900명임.

1. 제29조제3항은 제조업 건설업 구분없이 매월 1회 이상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의 개념에 관하여 위의 전제조건에서 제조업은 도급인 사업주가 AA주식회사가 되고 수급인 사업주가 B주식회사, C주식회사가 되는 것인지?, 건설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3. 제조업도 AA주식회사가 2일에 1회이상 협력업체(B, C주식회사 등)를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4. 당사업장은 고무제품제조업이므로 분기별 1회 정기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제30조 제1항의 작업장의 순회점검(2일에 1회이상)과 별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 협의체의 구성·운영 대상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2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령 제26조제2항)으로 제조업체인 귀사의 경우 시행령 제23조제4호(제조업)에 해당하여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한 도급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일반적 으로 지칭하는 원청업체의 사업주이고, 수급인 사업주는 도급을 받은 하청 업체(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업의 원·하청 개념과 같음.
3. “질의 3”에 대하여
  - 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인인 귀사의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2일에 1회 이상 사업장 전체(수급인의 작업장 포함)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 “질의 4”에 대하여
  -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제조업의 경우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산안 68320-308, 2003.08.04.)

##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주체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제조업이고 수급인(용역업체)이 식당일 경우

1.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2. 도급인이 재해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은폐 이후 뒤늦게 알았을 때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3. 도급인이 수급인(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지
4. 협의회를 월 1회 개최 시 식당도 포함되는지
5. 2~3일 통원치료를 받고 자체 처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상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하나의 장소에서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2개 이상 사업의 업무가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이루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행하는 도급인과 식당업을 행하는 수급인이 도급계약관계 하에 있다 하더라도 쌍방의 업무가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식당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도급인에게는 법 제29조에 의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의무(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운영 의무 포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법 제29조에 의한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험기계기구나 사무실, 공장건축물을 대여한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사업주는 대여자로서 또는 피재근로자의 소속과 관계없이 도급인이 관리하는 장소(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자로서 당해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



※ 동일한 구내에서 수개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지게차 등을 활용한 화물운반, 부분적인 보수공사 등에 의하거나, 화재, 폭발 등 비상사태시 접근 금지·대피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여 동일한 구내에서 근무하는 타사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주 상호간에 안전보건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법 제29조의 도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자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의한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자이면 그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법적 시간 및 내용 등 제반 법적요건을 준수 하여야만 법정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여야 함

이 때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법 제29조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피재근로자의 사업주를 말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 하는 바

피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

(안전정책과-513, 2004.01.29.)

##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 질 의

1.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과 하도급업체 “을”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2. “을”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의 서류를 “갑”이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갑”의 법률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3. “갑”이 “을”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4. “을”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시 “갑”의 안전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 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2.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관련 서류는 “을” 사업주가 구비·보관 하면 될 것임
3.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예방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유무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외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원도급 업체)에게도 안전·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재해 발생시 구체적인 책임한계는 그 원인, 작업내용,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691, 2004.07.26.)

## 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원도급 업체가 작성하였는데 별도로 하도급업체에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사업주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주인 하도급업체가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원청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에 당해공정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팀-435, 2005.10.04.)

##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

### 회 시

장비임차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인지에 대하여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요지와 같이 중장비(천공기) 임대업체가 건물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 받은 하도급업체와 중장비 임대만을 약정하고 당해 공사의 원도급업체에게 공사 현장 내 별도 장소를 임차하여 장비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중 임대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면 하도급업체(중장비 임차인)를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귀소 의견 “을설”)

- ※ 참고로, 도급은 민법 제66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일(건설공사)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산업안전팀-110, 2006.01.06.)

##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 (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은

### 질 의

장비임차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인지에 대하여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요지와 같이 중장비(천공기) 임대업체가 건물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 받은 하도급업체와 중장비 임대만을 약정하고 당해 공사의 원도급업체에게 공사 현장 내 별도 장소를 임차하여 장비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중 임대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면 하도급업체(중장비 임차인)를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 참고로, 도급은 민법 제66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일(건설공사)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산업안전팀-110, 2006.01.06.)

## 산소결핍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여부

### 질 의

배양기 등 제조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가 산안법 제30조제5항 제10호에 의한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도급인 사업주에게 화재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 제3호)”이므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바

동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으로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장소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산재발생 위험장소의 해당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912, 2006.02.23.)

##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

### 질 의

배양기 등 제조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가 산안법 제30조제5항 제10호에 의한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도급인 사업주에게 화재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

제3호)”이므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동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으로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장소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산재발생 위험장소의 해당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귀소 의견의 “을설”)

(산업안전팀-912, 2006.02.23.)

###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업안전팀-1628, 2006.04.07.)

##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약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약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약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약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약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주간 협약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업안전팀-1628, 2006.04.07.)

## 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 질 의

해상교량공사를 행하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및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가 단지 선박소유주로부터 무동력선인 부선(속칭 바지선)을 공사현장 해상에서 철근망 등을 운반하는데 이용코자 월대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부선 관리책임자인 선두(부선의 선장격으로 근로자임)가 동 부선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선박소유주, 하도급 및 원수급업체 관계자 등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작업지시 없이 부선의 부력탱크를 점검하고자 잠겨 있던 볼트, 너트들을 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열고 들어가 있던중 “산소결핍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0호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의 규정을 원·하청에 대하여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장소’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수개의 사업에 의하여 작업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각 작업현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무명령계통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요지와 같이 하수급인이 선박소유주에게 바지선(부선)을 임차한 상태에서 사고 당시의 작업상황이 타 도급 작업과의 연관성이 없고, 피 재해자가 타 소속 근로자와 혼재됨이 없이 단독으로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원·하수급인을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로서 책임을 묻기에는 곤란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108, 2006.09.04.)

###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 질 의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 대상에 포함 여부

1. “을”사가 “갑”사의 작업장 기계기구를 1년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보수를 하는 경우
2. “을”사가 “갑”사 작업장의 집진기 등 설비를 1년계약으로 관리하는 경우
3. “을”사가 “갑”사의 건축물 및 기계설비 설치, 보수공사를 1회성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
4. “을”사가 “갑”사의 식당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경우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도급”이라 함은 민법 제664조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1, 2, 3, 4의 경우 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 상기 도급의 정의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623, 2006.09.22.)

## → 도급사업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주체는

### 질 의

창고시설로 출하관리는 원청업체 직원이 하고 포장기계 조작 및 정비보수업무는 하도급업체가 전담하고 있을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수행 주체는

### 회 시

귀 질의만 가지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의 적용을 받는 업종 및 작업, 장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의 책임이 원청 사업주 등에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수행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5069, 2006.10.16.)

## → 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가능한지

### 질 의

1.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여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해야 되는지(업체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2. 이때, 중대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전문건설업체(계약건설)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
4. 주공이 직접 자체 실행예산에 편성하여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 회 시

1. 대한주택공사는 자기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원청업체)이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선임의무가 없음
2. 법 준수 의무는 원·하청 사업주에게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판단하고 있음. 이때, 원청업체는 법인인 주택공사 및 법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대표이사(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게 있으며,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임
3. 전문건설업체(계약건설) 공사금액이 12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동 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원청업체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수를 선임하여야 함. 원청업체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수를 선임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을 넘더라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4.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주체도 원청업체이므로 원청업체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하청업체 사용분을 정산하거나 도급계약서에 반영하여 일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916, 2009.07.24.)

### →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 질 의

○○유통업체(시설제공자 이하 “원도급인”)와 (주)□□관리(이하 “원수급인”)가 1차 건물관리도급계약서(건물 및 시설유지관리, 환경관리, 보안관리)를 체결하고, 원수급인 (주)△△환경(이하 “수급인”)과 또 다시 “환경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2차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원수급인 건물 2층 쓰레기 슈트장(지면으로부터 높이 97.8cm×가로 83.8cm×세로 83.4cm로 설치된 개구부)을 통해 폐박스, 쓰레기봉투 등 쓰레기를 버리다가 동 개구부로 추락·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 조치) 제3항에 의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상부난간대 미설치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질의 1과 같이 상부난간대 미설치로 사법처리를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책임한계는

#### 회 시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는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동 규칙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의한 안전난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서와 같이 바닥으로부터 97.8센티미터 위치에 만들어진 쓰레기 슈트용 개구부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제7조의2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추락위험장소로 볼 수 없음

※ 다만, 작업장 바닥에 별도의 작업발판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작업발판으로부터 슈트장까지의 높이가 낮아져서 추락했을 경우에는 제7조의2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해 건설업과 시행령 제23조 각 호의 사업에만 적용되는 바, 질의에서와 같은 업종은 제29조를 적용 받는 도급사업이 아니므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제23조 각 호의 사업 : 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안전보건지도과-92, 2010.01.11.)

###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은

#### 질 의

○○가 발주한 ○○공사를 A사(45%)와 B사(55%)가 공동 도급받았으나 발주처 승인 없이(각사 현장소장 합의에 의함) 임의로 구간을 나누어 분담시공 중에 A사의 시공구간에서 협력업체(C)사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갑설> 2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사 현장소장의 합의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한 A사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여야 함

<을섭> 비록 양사 현장소장의 합의로 분담시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고 결재권자(대표이사)의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발주처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A,B사 사업주 모두를 사법처리하여야 함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귀 질의에서 2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원청에게도 2차적인 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의 갑설>.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06.30.)

### →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 질 의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내 T블럭 제작장에서 두 개의 블록 사이의 접합용접을 하던 과정에서 통상적인 작업방법으로 작업하지 않고, 수급인 근로자인 피재자가 작업편의상 두 블럭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임의로 블록에 러그를 부착하여 크레인 줄걸이에 걸어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다가 러그가 탈락 되어 날아가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의 취지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자기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범위가 불명확함으로 인한 안전보건 조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 재해발생 위험장소에 한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 당해 작업이 재해의 원인이 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장소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해 작업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주체가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여부
3. 당해 작업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이 정해져 있고, 통상 동 지침대로 작업이 수행되고 있었는지 여부

(산업안전과-550, 2010.09.03.)

## →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의

### 질 의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토목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의 2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사용자 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원청사 대표인지 아니면 현장소장 인지, 또한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도 업체 대표인지 현장소장인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 위원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판단하는 경우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하고,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이에 해당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역시 각 도급 또는 하도급 업체의 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을 말함

(국민신문고, 2011.03.23.)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질 의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내 해양구조물 제관 공장에서 철판을 성형기로 둥글게 밴딩한 강관(Ø2000×L1800, 3t)을 용접작업장소로 운반하기 위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리모컨 스위치로 조작하는 천장 크레인을 조정하여 대차 위에 상차하던 중 강관하부가 대차와 충돌하여 강관을 매단 줄 걸이용 후크 한쪽이 탈락하여 강관이 리모컨을 조작하는 작업자를 강타한 사고와 관련하여 동 작업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참고

- 강관운반 대차는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높이는 1m 임
- 강관상차 작업은 천장크레인 리모컨을 조작하는 작업자 1인이 수행함
- 강관상차작업은 1일 2회 정도 이루어짐
- 크레인 및 대차는 도급인 소유임

갑) 통상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은 크레인 결함, 줄걸이용 로프 및 후크의 결함,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크레인에 매단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이고 동 작업이 특정된 한 장소에서 늘 이루어지므로 위 법 적용이 되는 장소로 보아야 함

을)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작업장소의 특징을 보면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위험장소에 상존하는 불안전 상태를 도급인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보건시설 설치 및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작업장소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위 사고 장소의 경우 1인 작업이고, 권상높이가 1m로 작업이 1일 2회 정도 간헐적이며, 천장 크레인은 리모컨으로 조작하므로 작업자가 권상 물체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와 작업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통상적 장소로 보기는 곤란 함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16개소)에 대해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도급인 사업주도 안전규칙의 당해 위험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귀 질의의 재해 관련 사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크레인(15톤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강관(무게 3.17톤)을 대차(높이 0.97m)에 올리던 중 강관이 강관채결용 기구(하카)로부터 이탈되어 떨어지면서 대차측면에 있던 크레인 조작자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통상적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어 매일 강관을 대차에 싣는 작업을 하고, 동 작업 또한 일정장소에서 수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에서 정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여짐(귀 질의의 ‘갑설’)

(건설산재예방과-1601, 2011.07.13.)

## 조선평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 질 의

당사는 조선평업종으로 평업장내에 수행하는 각종 시설공사(건물보수, 증축, 기계 설치 등)를 개별산재 가입된 업체를 통하여 공사수행중 중대재해 또는 중대재해에 버금가는 추락, 붕괴사고 발생시 아래와 같을 때 법적 안전관리 책임여부

1. 당사의 작업장내에 공사장소가 위치한 경우
2. 공사업체중 크레인 등 당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3. 공사업체 작업자와 당사의 작업자가 동일 작업장에서 서로 자기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4. 원도급자가 제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 회 시

1. 시공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음. 예를들어 귀사가 보유한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조치는 귀사에게 있고,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과정 등의 안전관리는 시공업체에 있다고 사료됨

2.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시 원수급인에게 당해 장소에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귀사가 조선업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서 건설공사로 도급을 준 경우라면 이 조항은 해당되지 아니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 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
4.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작업으로 도급 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됨으로 도급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귀 사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과-3311, 2012.10.02.)

## → 도급 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관련 지침 변경

1. 검토배경
  - 제조업체가 직접 수행하던 생산설비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설비공사업체 등에 도급을 주고 제조업체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남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발주자의 지위에서 도급을 준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 제29조 적용이 배제



#### 4. 문제점

-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불가분의 사업을 도급함에도 계약형태상 발주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재해예방능력이 미약한 설비 공사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뿐 아니라, 설비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할 조치까지 방기함

#### 5. 행정해석 변경

- 산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 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
-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실제로 도급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던 것을 관리효율, 비용절감 등을 위해 도급을 주는 만큼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법 제29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과-3311, 2012.10.02.)

## 2. 인증·검사제도

### 2-1. 안전인증

**제34조(안전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 질 의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신청시 성능검정 규격이 한정되어 있는 데, 검정신청 제품의 사용편의 및 안전성 확대를 위해 다른 제조방식, 다른 규격으로 제조 생산된 제품을 성능검정신청할 수 있는지

예를들어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경우 아코디온(미닫이식, 자바라식)식으로 성능검정규격이 정하여져 있으나 다른 규격, 다른 방식(발판식)으로 제조된 제품도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와 성능검정에 합격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50호)의 규정에 의거 파이프 씨포트 등 30종의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품목은 성능검정 대상이 아님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에 대해서는 위 검정규정 제411조에서 “아코디온식 문짝을 단 롱리프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제품은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092, 2002.03.06.)

## 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

### 질 의

현재 일본에서는 건설용 낙하물방지망을 자외선에 강한 폴리에틸렌 재질을 사용해 제작해 왔으며, 이 제품으로 건설사에 임대하는 형태로 리스사업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의 실행은 약 30년정도 되었다고 함

또한, 이 폴리에틸렌 재질의 낙하물방지망은 사후 원료의 재활용이 가능함으로 폐기할 필요성이 없어 환경오염방지 및 국가적으로는 원자재 수입을 절감할 수 있어 매우 활용가치가 높으나, 국내에서는 건설용 망의 재질이 자외선에 의하며 쉽게 부식되고 사후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1회밖에 사용할 수 없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국내에서도 일본과 같은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데 굳이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제재가 있는지

안 마크를 획득한 폴리에틸렌 재질의 제품을 생산시 그들과 같은 재사용시스템 적용에 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해주셨으면 함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의한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50호, 2001. 8. 14)에서는 물체의 낙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 방향으로 설치하는 안전방망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또는 비닐론 등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에틸렌도 성능만 인정되면 검정을 받아 사용이 가능함. 참고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방망의 재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폴리에틸렌 14개 업체 49건, 폴리프로필렌 8개소 19건(한국건설가설협회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재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장소, 기후, 공사기간, 낙하물 적치량 등에 따라 망사의 노후화가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인 재사용 규정을 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사용횟수 등에 따른 재시험은 정해진 규정이 없음. 따라서, 검정당시와 강도 등 구조적인 성능에 변함이 없어 낙하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면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3, 2003.05.15.)

### → 수입방폭모터의 경우 인증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입제품(방폭모터)의 경우 기존 수입된 또는 수입중인 부품의 경우, 안전인증제도를 적용함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 회 시

안전인증 제도 시행은 '09.1.1.이후 출고·발주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에 명시(법 부칙 제2조)하고 있고,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받은 것은 검정 유효기간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음(법 부칙 제4조제1항)

※ 다만, 과거규정을 적용받은 것은 Ⓛ마크를 부착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264, 2009.01.29.)

## 크레인 운전속도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관한 구분 여부

### 질 의

안전인증 대상인 크레인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대한 구분에 대한 질의  
감속기 등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없이 전동기 전기적 사항에 따라 주행·횡행·  
권상 등 운전속도가 변하는 경우 별도의 형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주행·횡행·권상 등 운전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크레인의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  
이나 운전속도가 변하더라도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일형식으로 분류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안전성여부는 안전인증기관에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제2008-73호) 제9조

(안전보건지도과-868, 2009.03.13.)

##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여부

### 질 의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크레인에 대해 '03.7.7. 삭제된  
중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의 계속 적용여부

### 회 시

'03.7.7. 삭제된 중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 사항은  
법률(제6847호, '02.12.30)에 상향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중전 회시내용(산안  
68807-/ '95.1.8)처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지만 원자로내에서 원료  
봉과 직접 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된 크레인에 한해서 현행 안전인증·  
안전검사의 적용이 면제됨

(안전보건지도과-3375, 2009.09.03.)

## 차량탑재 크레인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법 적용여부

### 질 의

차량 탑재 크레인의 의무 안전인증 적용시점 관련규정인 “2009년 10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에서 “출고”의 법 해석 및 시행일 이전 출고한 제품의 법 적용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고 일반적으로 출고(出庫)란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에 내는 것(사전적 의미)을 말하므로, 생산품(완제품)이 제조사에서 국내현장에 설치·사용될 목적으로 반출되는 시점으로 적용(차량탑재 시점과는 무관)함이 타당하며, 시행일 이전에 출고한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796, 2009.10.06.)

## ‘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 질 의

현재 당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로용 작업발판”은 재질향상으로 인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바닥판 두께규정(1.1mm 이상)을 미달하여 현재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규정과는 별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안전인증기준에서 두께규정을 고려한 성능기준은 순수한 바닥재의 성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외관특성만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두께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바닥재 성능을 보강한 기술기준으로 개정중에 있음

하지만, 당사 제품은 현재 서면심사만을 완료한 상태이고, 최종제품이 적합을 받은 서면심사와의 도면과 불일치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에서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 없이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음

이에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으며, (사)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기술적 검토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선 안전인증을 받기위한 사전요건을 안전인증기관과 협의하시길 바랍

(안전보건지도과-4086, 2009.11.02.)

## →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이후 “개조” 없이 성능검정 부적합 판정시 범위반 여부 ←

### 질 의

보호구가 최초 검정합격 이후 제품의 원료, 생산방식, 형식 등 일체의 변경 또는 개조없이 그대로 제조되었으나 '09년 방호장치·보호구 특별점검 결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성능시험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4제1항 제2호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회 시

법 제34조의4제1항제2호에서 ‘개조된 경우’라 함은 제품별 안전인증의 개념에서 최초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제품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성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뜻함

(안전보건지도과-4209, 2009.11.13.)

## → 사출성형기 안전인증 적용 여부 ←

### 질 의

1. 현행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인 사출성형기가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2. 2009.1.1.이전에 종전 설계·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이던 설비(현재 안전 검사는 수검을 완료한 상태)에 대해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3. 사출성형기가 수입품인 경우 안전인증 방법
4.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5. 알루미늄 용탕을 가져와 용탕을 주입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사출하는 경우도 사출성형기에 해당되는지

## 회 시

1. '09.1.1부로 시행된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에서 사출성형기가 새로 포함되었으나 안전검사와 달리 안전인증은 제작단계에서 수검받아야 하는 제도이므로 법 시행 이후(즉, '09.1.1) 제작·설치되는 것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2. 안전인증(중전 설계·완성검사)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상을 제조(설치 포함)하는 자이며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3.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제조자이므로 수입품은 해외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다만,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수입되는 전체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4.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았더라도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면 그 변경 주체가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5. 사출성형기 적용범위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루미늄 용탕을 가져와 용탕을 주입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사출하는 경우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출성형기에 해당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517, 2010.02.02.)

##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서면심사 여부

## 질 의

1. 3톤 이상 건설기계(타워크레인)를 보유한 장비주가 현장여건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서류심사를 하는 기관과 제출서류
2. 3톤 미만(최대 2.99톤)의 장비의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하는 기관 및 어떤 기관에서 서면심사를 할 능력이 없다고 받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은

## 회 시

1.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신규등록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음)

※ 타워크레인 안전인증기관(서면심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 산업안전협회,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상 3군데)

※ 제출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에 따른 [규칙별표 8의3] 참조



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기관은 상기 3군데 기관에서 담당하며, 각 기관에서는 신청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 종전 설계·완성검사를 받았으나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을 회피할 목적으로 3톤 미만으로 개조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안전보건지도과-518, 2010.02.02.)

## 굴절식 크레인 안전인증 대상 여부

### 질 의

한국○○공단에서 운용중인 굴절식 크레인 20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6847호, '02.12.30개정) 전 및 이후 설치된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안전인증 의무자

### 회 시

귀 공단에서 설치하여 사용중인 고정크레인은 종전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현재 안전인증 대상(정격하중 0.5톤 이상)으로서, 설계검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을 포함)하는 자이며, 단, 법률 제68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03.7.1)전 설치된 크레인이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되지 않았다면 제조 또는 설치한 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92, 2010.04.22.)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에서 '출고'에 대한 시점은

### 질 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의 법 적용 시점인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에서 '출고일'에 대한 명확한 해석

1. 국내 제조품의 경우 ①제조일 ②최초 유통일(판매, 대여 등) 중 어느 시점
2. 해외 수입품(특히, 중고품)의 경우 ①제조일②수입일③최초 유통일(판매, 대여 등) 중 어제인지

## 회 시

‘출고일’은 법을 적용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 제조품과 해외 수입품의 구분 없이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말하며, 참고적으로 법 제34조 제3항 및 제35조제1항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자율 안전안전확인 신고의 전부를 면제하고 있음

(안전보건지도과-1103, 2010.05.25.)

## 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질 의

옥외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편리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안전모 등에 탈부착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여부에 관한 질의

○ 안전모용 아이스팩 · 땀흡수대 및 햇빛가리개, 아이스타이 제품 등 6개 제품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충족하여야 할 안전성에 관한 기준(규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유통·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귀사의 제품은 안전인증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중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안전모용 아이스팩, 땀흡수대,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 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06.01.)

## → 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

### 질 의

'95년 9월에 제조된 차량 탑재 고소작업대의 기계 장치부를 신규 차량에 이설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안전인증 심사절차의 간소화 포함)

### 회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제조·수입자와 대상 기계·기구를 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도 포함되므로 귀사처럼 시행일 이전에 출고된 고소작업대 작업부를 재 설치하는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 다만, 귀사의 의견(제조 또는 중고품 판매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을 위한 1대에 한정하며, 해당 제품 제조사 소멸로 서면심사 관련 일부 서류 구비에 기술적 지원이 필요)을 존중하여 서면심사는 안전인증기관과 기술적 지원·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현장 설치시 제품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확인(안전인증기준에 반드시 적합해야 함)된다면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61, 2010.06.16.)

## →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 질 의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

1. 해외공장의 분산으로 일정, 경비 과다소요 ⇒ 해외 공장실사를 대표성을 가지는 1개소에 대하여 실시(그 외의 공장은 서류심사로 대체)
2. 소량 다품목의 경우 업체의 제반규정을 실사 후 제조업체를 승인(사후확인인 무작위 수거시험으로 대체)
3. 미국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규정에 따른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소 실사후 그 시험성적서를 인정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외국 제조사가 받도록 할 경우, 귀사는

외국 제조사의 대리인으로서 안전인증 신청시 국내 수요를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위의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시길 바람 '1'의 방안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관과 충분히 협의(안전인증 신청시 동일형식의 구분 및 현장실사 후 결정)하고 ②,③의 방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체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안전보건지도과-34, 2010.07.07.)

## Spider 장비의 의무안전인증대상 여부

### 질 의

건설현장의 자재운반이나 이삿짐 등 화물 운반용으로 제작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와 유사한 Spider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8조(정의) 제3호에 의하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사다리 붐)을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의하신 설비(Spider 장비)는 사용용도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정의에 부합되고, 운반구 및 사다리 붐 등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가 이동을 위한 장치, 즉 차량에 탑재된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인 것으로 사료됨

(제조산재예방과-728, 2011.05.03.)

## 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 의하면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에는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설치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제4호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설치자가 중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인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에 대해 방폭성능을 확인하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설치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제조산재예방과-1462, 2011.07.12.)

### → 위험기계기구 중고품 수입, 유통 및 출고시점에 대한 질의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의 의미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

(제조산재예방과-1670, 2011.07.29.)

## 타 법령에 의해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구로서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을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고압가스용기의 설치, 관리, 점검 등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있는지 여부

### 회 시

1. 고압가스용기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및 제73조에 의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됨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cm<sup>2</sup>)을 초과한 경우”로 정의
2. 소방용 고압가스용기의 설치, 관리, 점검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제조산재예방과-1827, 2012.06.22.)

## 군용으로 제작될 15톤 텐더트럭 상부크레인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1.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안전인증을 해 줄 수 있는지
2. 차량탑재용 크레인의 안전인증 의무조항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3.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이전 설계되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특수목적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11호에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하고 있음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 하고 있음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부칙<제2008-73호, 2008.12.3.> 제1조(시행일)

(제조산재예방과-2725, 2012.09.27.)

## 2-2. 안전검사

**제36조(안전검사)** ①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⑥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⑩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 → 타워크레인 부착물 설치가능범위

### 질 의

타워크레인에 부착가능한 임의 광고판·조명등 등의 설치가능한 범위

### 회 시

우리부에서는 타워크레인의 부착물에 의한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의 고소에는 풍압 등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을 개정고시(제2001-57호 제52조)하여 2001.10.10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의 임의부착물에 대한 허용범위는 타워크레인의 종류, 부착물의 크기·수 등을 감안하여 부가응력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설계·완성검사 등 안전성 검사시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광고용 현수막·대형간판은 풍압에 의하여 과도한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작업등의 경우에도 그 크기·무게·수 기타 부대설비(브라켓 등)에 의해 과도한 부가응력 발생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히 대형으로 제작된 작업등 부착물의 하중이 타워크레인 설계 하중 이하인 경우에는 부착·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26, 2002.01.14.)

## → 타워크레인 광고물부착

### 질 의

당 현장내 타워크레인(Potain H30/23C 12TON)의 COUNTER JIB 부위에 회사 로고를 부착할 때 풍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가응력이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구조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회사로고(광고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귀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Potain H30/23C 12Ton (Mast 2m×2m×3m)에 광고물을 설치하였을 때 구조부에 미치는 정도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해석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광고물이 부착되는 부위의 구조체에 대하여만 안전성을 검토하였을 뿐 마스트·지브 등 타워크레인 전체의 구조물에 미치는 강도계산 검토는 제외되어 있어 광고판 설치시의 타워크레인 구조부의 안전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참고로, 타워크레인은 가동 중 하물을 권상한 상태(선회브레이크 고정)에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온 경우와 하물을 권상한 채로 선회도중(바람방향과 선회방향이 반대인 경우 등 가장 불리한 경우) 바람이 불어온 경우 등에 대하여 선회중심에서의 비틀림 발생 등의 영향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각 제조사별·기종별로 메인지브 및 카운터 지브의 부재(원형강관, 각형강관, L형강, H형강 등)가 달라 이에 따른 풍압면적 등을 고려한 부가응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워크레인의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가응력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은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 2001.10.10)을 적용하여야 함

향후, 타워크레인에 광고판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설계단계부터 광고판 등 부착물을 설계계산에 반영하여 그 안전성 여부가 사전 검증된 후 부착되어야 할 것임.

(산안 68320-154, 2003.04.15.)

### → 검사합격증 재발급에 대하여

#### 질 의

“갑”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검사 및 안전인증을 받아 제품 생산하던중 부도(현재 화의 중)가 발생하자 그의 종업원은 급여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을”이란 회사를 설립하여 “갑”의 제품 검사·안전인증에 관한 권리(검사합격증 및 안전인증서를 말함) 및 생산시설을 이전받았고, 그의 채권관계에 있는 “병”은 “을”의 회사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갑”으로부터 “을”이 이전받은 검사합격증·안전인증서를 함께 이전받았는데, 이 경우 “병”의 검사합격증 및 안전인증서의 재발급은 적법한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내지 제58조의4, 제58조의8,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합격증 및 안전인증서(이하 “검사합격증등”이라 함)는 특정의 기계·기구가 안전·보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이를 발급받은 자는 동종 모델 제품에 합격표지 또는 안전증표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사합격증등은 사업주의 주관적·전속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여부와 같은 객관적 사정을 표준으로 하여 발급되는 것임

따라서, 검사합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에 물적사정의 변경이 없고 검사합격증등이 법령에 의하여 타인으로의 이전이 금지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기업의 인수·합병·양도 등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검사합격증등의 재발급은 가능하다고 봄

참고로, 검사합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의 물적사정의 변경여부는 법리문제가 아닌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정확한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제시하기는 곤란하나, 그 동일성 유지 여부는 단순히 당해 생산과 관련한 모든 인적·물적 조직이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수는 없고, 인적·물적 조직의 일부가 이전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이전된 부분으로 당해 제품생산에 변화를 초래하거나 하자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봄

(산업안전과-507, 2004.01.16.)

##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 변경 및 완성검사 실시 여부

## 질 의

1.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 이것이 주요구조부 변경에 해당되어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 주요구조부 변경시 현재에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 시

1.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7호)」 제10조에서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 원동기,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주요 방호장치, 혹 등의 달기기구, 원치, 균형추,

설치 기초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에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가 포함됨

다만,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 이므로 기설치된 마스트와 동일한 재질과 규격의 마스트로 그 길이만 연장될 경우에는 주요구조부가 변경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그러나,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이후 다른 규격(재질, 두께, 길이, 넓이 등)의 마스트로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요구조부 변경에 해당되어 완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임

2.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 설치되어 완성검사를 받은 기계 등의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음

(산업안전과-997, 2005.03.07.)

## 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 질 의

크레인 등 법정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사업주와 지정검사기관이 용역계약에 의해 다음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질의

1. 크레인, 압력용기의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시행('11.1.1.)에 앞서 자율적으로 지정검사기관이 해당 기계·기구의 예방검사 등 일련의 사용전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2. 현장의 작업환경, 재해발생 위험도를 고려 법적 검사 적용범위 이외(2톤 미만)의 크레인까지 자율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2톤 이상)
3. 철강조업의 위험성·사용빈도를 고려 검사주기를 3개월로 정하여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6개월)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한 기계·기구의 사용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중 일정한 적용범위를 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상기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적기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안전보건지도과-52, 2009.01.07.)

## → 안전검사에서 적용 제외되는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는

### 질 의

안전검사 대상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 중 ‘산업용 이외의 밀폐형 팽창탱크는 제외’라는 내용에서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에 관해 질의

### 회 시

산업용이란 산업현장(생산공정)등에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산과 관련이 없는 난방·급수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팽창탱크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568, 2009.02.17.)

## → 가스 매니폴더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작업현장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 또는 고무 가스호스에 작업자들이 개인호스를 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직경 150mm 이하(길이 300~500mm)의 가스분배기(Manifold)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호) [별표1] 제5호 가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2kgf/cm<sup>2</sup>)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가스분배기(Manifold)의 경우, 안지름이 150mm 이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제조산재예방과-2299, 2011.10.05.)

## 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의 별표10에 따른 인력의 자격요건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 범주에 전기공사기사 자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검사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의5)에서 기계분야 등의 관련분야로 ‘전기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검사원의 자격에서도 전기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 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는 검사기준 등 동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중직무분야’가 전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기공사 기사’ 자격은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분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제조산재예방과-610, 2012.03.08.)

### 3. 산업안전기준

#### → 인화공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화공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법률에서 분류되는 화물용승강기와의 차이는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승강기와 화물용승강기의 분류는  
가. 제작시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분류하여 제작,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나. 인화공용승강기와 화물용승강기의 분류를 승강기 Cage 내부에 조작반이 설치되어 있으면 인화공용승강기로 분류하고 조작반이 없으면 화물용승강기로 분류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3. 산업자원부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화물용승강기로 분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승강기(Cage 내부에 조작반 설치되어 조작자 1인 탑승 가능한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승강기로 분류를 해야 하는지 여부, 조작자 1인이 탑승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승강기로 분류해도 되는지

##### 회 시

1.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 및 “화물용” 승강기와 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의 화물용승강기와의 차이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는 화물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사람의 탑승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으로 구분하는 바, 그 종류에 대한 정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에 따라 “인화공용” 승강기는 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를 말하며 “화물용” 승강기는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승강기를 말함.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화물용 승강기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화물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인은 탑승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적재용량 1톤 미만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은 제외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그 적용범위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2. “질의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및 “화물용” 승강기의 분류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 승강기는 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설계·제작·설치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며 운반구 내부에 조작반 설치 여부가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기준은 아님.
  - 물론 “인화공용”일 경우는 운반구 내부에 조작반이 있어야 할 것이고, “화물용 승강기”의 경우는 운반구 내부에 반드시 조작반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승강기 종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는 공통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함.
3. “질의 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화물용 승강기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고 있는 조작자 1인이 탑승 가능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승강기로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 위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화물용엘리베이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승강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671, 2000.07.26.)

##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여부

### 질 의

스텐레스 코일(약 14.5톤)을 이동하는데 전용달기기구인 c-hook를 크레인 주권 후크에 걸어 사용하고 크레인 운전자 스스로 코일을 들어 이동하고 필요위치에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럴 경우 주권 크레인 후크에 해지장치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8조 및 제125조,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35조에 의해 크레인에는 후크해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짐을 달아 올리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후크가 구조적으로 와이어로프 등이 벗겨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없이 줄걸이가 가능하며 작업경로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귀 공장의 경우에도 코일을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크레인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용 달기기구인 c-hook를 주권 후크에 걸어 작업자의 도움이 없이 운전자 스스로 줄걸이를 하고 인양물을 필요한 위치에 옮겨놓으며, 또한 그 경로상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다면 주권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20-778, 2000.08.29.)

##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2.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현장조합원(작업자)이 노동조합에 동조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중 산업재해(상해부위 : 머리)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는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사업장내 작업의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사업장내의 작업수행과정에서 물체의 낙하·비재, 유해화학물질의 비산 등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 또는 위험요인의 방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2.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착용케 할 사업주의 의무와 동 기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할 근로자의 의무는 그 근거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미착용 권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5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에 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877, 2000.10.04.)



## → 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 질 의

교량공사현장으로 안전난간이 5,000개 정도가 필요하나 감리단에서 2,000개 반입후 추가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난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하여도 당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4, 2001.01.06.)

## →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 질 의

1. 옥내저장소 면적에 상관없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지정수량 미만의 경유탱크를 별도 구획하여 시도조례에 의해 옥내탱크저장소로 허가를 얻고자하는데 이 경우도 출입구와 별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3. 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에는 1개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작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구의 설치에 위험물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나 재해발생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중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위와 같이 비상구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위험물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단독 건물로 존재하면서 근로자가 그 저장소내에서 상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구 설치의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2. 동 저장소내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 행하는 옥내 작업장내에 또 다른 건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 작업장소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전체 작업장내에 그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동 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아울러, 비상구 설치에 관한 요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별도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상구의 설치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임.

(산안 68320-83, 2001.02.08.)

## 1m 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의 의미

### 질 의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상 계단과 관련된 규정(제23조~제27조)은 공장설립 연도에 관계없이 동 기준을 적용받는지
2. 공간 부족으로 동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단참의 폭이 1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는
3. 1미터이상의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의 의미와 일반작업 및 보수용으로 같이 쓰일 때 또는 불량처리(확인)시 이용하는 계단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위반시 처벌은

### 회 시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계단과 관련된 규정은 공장의 설립년도에 관계없이 동 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 1990.7.23부터 적용됨.
2. 공간부족으로 동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단참의 폭이 1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는 사고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도로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폭이 1미터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장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3. 동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1미터이상의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이라 함은 계단의 용도가 급유·보수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계단으로서 통상 통로(또는 작업발판)로 이용되지 않고 특정 업무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는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언급하신 일반작업 및 보수용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불량처리(확인)시 사용되는 경우는 동 작업이 통상작업의 일부로서 일정하게 반복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된다면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안 68320-96, 2001.02.20.)

## 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등을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에 부로아성형기 및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기계는 공작기계(날부분을 제외한다)·수송기계·건설기계 뿐만아니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로아성형기 또는 섬유원단가공기계를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동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87, 2003.03.07.)

- ※ 법령입안시 앞의 단어 또는 단어군과 유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등”을 불완전명사로 사용하고 있음(일반적인 문장에서는 “등”을 앞의 단어와 붙여 씀으로써 앞의 단어군이 복수라는 의미로서 그 외의 다른 것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있으나 법령에서 “등”을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 규정

### 질 의

공장건축물의 방폭지역내에서 중간 칸막이벽을 건축마감재료인 밤나이트를 사용하여 방폭지역과 비방폭지역을 구분하여도 산업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 제333조, 제334조 등의 규정에서 방폭지역과 관련한 안전상의 조치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귀하가 질의한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 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칸막이 벽은 폭발성가스 및 점화원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방폭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화재·폭발에 대해 충분한 내력을 가진 구조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방폭지역내 칸막이 벽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것임.

(산안 68320-138, 2001.03.23.)

## 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 질 의

폐사 액체화물저장시설중 일부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 Volatile Organic Compounds) 저감을 위한 시설설치 대상에 적용됨으로 인하여 VOCs저감 설비로서 축열식 촉매산화기(RCO : Regenerative Catalytic Oxidizer)를 설치할 경우 각각의 저장시설을 단위공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격거리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 회 시

귀사에서 설치코자 하는 축열식 촉매산화기(RCO)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처리하기 위한 공정시설로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 및 동 규칙 별표3의 2에서 규정하는 “단위공정시설”에 해당함.

따라서 저장시설과 단위공정시설은 20m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함. 다만, 저장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됨.

(산안 68320-157, 2001.04.04.)

## → 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 질 의

지게차 등으로 자동차부품을 취급할 때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종사 근로자에게 현재 “보통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작업자들이 발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어 이를 “경작업용 안전화”로 교체하여 착용토록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회 시

보호구 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0-15호)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화의 사용장소별 등급은 중작업용·보통작업용·경작업용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사와 같이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운반하는 일반작업장에는 보통작업용 이상의 등급을 가지는 안전화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금속제품 등을 선별 또는 조립하거나 식품가공물 취급 등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경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토록 할 수 있을 것임.

(산안 68320-269, 2002.07.05.)

## → 위험물질 보관

### 질 의

1. 인화물 보관의 경우 어떤 물질을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
2. 산화성·발화성 물질등과 같이 보관하면 안되는 물질이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폭발성물질·발화성물질·산화성물질·인화성물질·가연성가스·부식성물질·독성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54조에서는 이와 같은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위험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동 규칙 제261조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써 인하여 당해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질을 근접하여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 또는 혼합금지물질 등에 관한 정보는 각 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동 자료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http://www.kosha.net))에서 찾아볼 수 있음

(산안 68320-326, 2002.08.12.)

## 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등을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에 부로아성형기 및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기계는 공작기계(날부분을 제외한다)·수송기계·건설기계 뿐만아니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로아성형기 또는 섬유원단가공기계를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동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87, 2003.03.07.)

- ※ 법령입안시 앞의 단어 또는 단어군과 유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등”을 불완전명사로 사용하고 있음(일반적인 문장에서는 “등”을 앞의 단어와 붙여 씀으로써 앞의 단어군이 복수라는 의미로서 그 외의 다른 것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있으나 법령에서 “등”을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무재해 인정범위

### 질 의

회사의 노·사 화합의 일환으로 사업주 승인아래 축구동호회활동을 하던 중 접촉사고로 4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무릎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동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 무재해운동 기록이 소멸되는 지 여부

### 회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칙(한국산업안전공단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중 발생한 재해는 무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안 68320-123, 2003.03.26.)

##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 질 의

타워크레인 2대를 같은 높이로 설치, 서로 충돌이 발생되도록 설치하였을 때 위법한 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56조 제1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때에는 선회시 근접하여 설치된 각 크레인과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크레인 사이의 충분한 거리유지 또는 각 크레인의 설치높이를 다르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155, 2003.04.15.)

## 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이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서로 분리되어 있는 3개의 공장에 있어

1. 공장은 동파이프를 생산하기 위하여 천정크레인 및 콘베이어가 계속 중량물을 운반하고 있음(크레인 3톤, 5톤)
2. 공장은 C.N.C선반을 이용하여 약 3kg~15kg 정도의 가공물을 절삭하고 있으며, 천정크레인(3톤) 1대가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분기 1~2회 정도). C.N.C선반은 가공시 뚜껑을 닫기 때문에 칩이나 가공물이 비산될 우려가 없음
3. 공장은 성형기 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동파이프를 확관, 성형, 절단하는 공정으로 제품의 단위중량은 약 0.1kg~15kg 정도며 제품을 BOX에 담아(35kg) 수작업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음. 원재료(약 100kg~1,500kg)는 공장에서 크레인(3톤)으로 운반하며 1일 운반 시간은 약 10분 정도임

상기 공장별 작업에 있어

1. 2, 3번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면 2, 3번의 경우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안전모의 착용 여부
2. 3번의 경우 크레인 대신 지게차를 사용하여 원재료를 운반하는 경우 안전모의 착용 여부
3. 3번의 경우 크레인으로 물건을 운반할 경우에만 안전모를 착용해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1. 제2공장의 C.N.C 선반을 이용한 가공물 절삭작업의 경우와 확관, 성형, 절단한 동파이프의 운반(크레인 운반 포함)작업의 경우 귀 질의만으로는 작업공정에 대한 정확한 현장파악이 어려워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C.N.C 선반의 뚜껑을 닫은 경우라도 선반절삭편이 날아오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지게차 또는 크레인을 이용한 동파이프의 적재 또는 운반시 동파이프의 낙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2.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안전모 지급·착용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함



3. 원재료, 자재, 물건 등의 운반에 있어 크레인 이용 또는 지게차 이용에 관계 없이 해당 작업수행 근로자가 위 안전모 지급·착용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함

(안전정책과-2167, 2005.04.16.)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내화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 질 의

1. 안전규칙 제290조에 규정된 “건축물 등”과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범위
2.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내화성능 기준

### 회 시

1. “건축물 등”이라 함은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모두 포함하며, “위험물 저장·취급용기”는 안전규칙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용기를 말함
2. 건축물 등의 내화처리에 사용하는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에 규정된 성능 이상을 갖추어야 함

(산업안전과-3387, 2005.07.06.)

## → 안전기준 제327조(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를 위반한 외부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1. 특별고압변전실은 자격있는 자만이 출입가능한 것인지 여부 및 무자격자 출입 시 벌칙규정 여부
2. 전기실 출입문 및 전기시설물(큐비클) 파손행위 처벌가능 여부

### 회 시

1. 질의내용 ‘1’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 등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 및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규정은 소속 근로자의 감전위험 방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질의내용과 같이 입주업체 대표자 등 근로자의 신분에는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유자격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2’에 대하여 : 전기설 출입문 및 전기사설물(큐비클) 파손행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규정이 없으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타법(민·형사소송법 등) 적용 및 처리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람

(산업안전팀-112, 2006.01.06.)

## 조명탑 구조물을 승·하강시키는 장치가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조명탑 구조물을 승하강 시키는 장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양중기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최대하중 0.25톤 이상인 것)를 말함

따라서 귀 기관에서 우리부에 의뢰한 질의내용 및 도면,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재해를 유발시킨 기계장치(조명탑 등기구)는 지상에서 25m 상부에 설치된 등기구 부착 전용구조물로서 첫 번째 가이드레일이 없으며, 두 번째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고, 세 번째 단순히 고정설치된 등기구를 수리·점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구조 및 기능특성을 고려해 볼 때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양중기의 종류

- ①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함

- ②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건설작업용, 일반작업용 및 간이리프트를 말함
- ③ 곤돌라 :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승강장치 기타의 장치 및 이들에 부착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케이지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함
- ④ 승강기 :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운반구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운반하는 기계·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승용승강기, 인화공용승강기, 화물용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를 말함

(산업안전팀-558, 2006.01.26.)

## 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사업장 계단 설치 기준이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가설계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7조 【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635, 2006.04.07.)

## 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는 경우 안전기준 적용 시점은

### 질 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어 적용을 받는다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하여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03. 8. 18.부터 시행됨

귀 질의의 고소작업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적용을 받는 사다리로서 동 사다리가 10미터를 초과할 때에 한하여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415, 2006.06.09.)

## 동력문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정지 의미는

###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 규정의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의 의미에 대하여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의 규정은 동력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작동되는 문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동력이 끊어질 경우 문이 하강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동중에 정지스위치를 조작하여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라면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팀-2417, 2006.06.09.)

## → 공작물 증축시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 질 의

1. 건물에 자동소화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공작물을 증축할 경우에 있어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의 내용중 “배관·전선관등의 지지대”의 정의

### 회 시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의 규정에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 분무시설 또는 폼헤드 설비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자동소화 설비를 갖추지 않고 내화구조로 설치할 경우에도 내화시간 기준을 2시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동소화 설비를 갖추지 않고 내화구조로 설치할 경우 내화시간 기준은 1시간이며, 공작물을 증축할 경우에도 내화시간 1시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또한,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의 정의는 재질이나 구조에 관계없이 배관이나 전선관을 받치는 구조물인 지지대(Support)를 의미함

(산업안전팀-3974, 2006.08.24.)

## → 앵글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의 인양가능 여부

### 질 의

150톤 앵글크레인(이동식크레인중 크롤러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40~50톤)을 인양·이동할 수 있는지

### 회 시

이동식크레인의 한 종류인 크롤러크레인(무한궤도식)은 중량물을 인양하여 원하는 단거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장비로 중량물을 인양·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크롤러크레인을 이용 중량물을 인양·이동

작업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중량물취급, 이동식크레인 사용시 규정 등을 준수 하여야 함

(산업안전팀-5084, 2006.10.01.)

## → 작업장 통로의 설치기준

### 질 의

보행자전용통로 공간확보가 불가능하여 옥내통로상 작업자와 반제품 자동운반장치(AGV)가 교대로 작업자보행 및 자동운반장치 운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반제품 자동운반장치가 어떤 형태이고 통로에 어떤 방식으로 운행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동 자동운반장치가 운행될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는데 있어 지장을 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937, 2006.12.11.)

## → 비상용 계단의 계단 폭 설치기준 준수 여부

### 질 의

기계가동중 이상발생시 기계측면에 있는 계단을 통해 기계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때 보수용 또는 비상용 계단으로 보아 계단의 폭을 1미터 이하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계단이 평상시 근로자의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의 이상 발생시 관계자만 사용 된다면 이는 보수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938, 2006.12.11.)

##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 질 의

1.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표준작업지도서(작업방법 포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단, 운행경로는 1일 운행일지 작성)
2. 표준작업지도서(안전대책, 작업방법 포함)가 지게차가 아닌 작업을 실시하는 해당 단위작업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 1일 운행일지만 휴대하고 이동 중인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의 작성(제173조) 위반여부
3. 작업시작 전과 종료후 지게차가 1일 운행 일지상의 정해진 경로를 주행 하다 전방의 장애물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운전자가 다른 경로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작업계획의 작성(제173조) 위반여부

### 회 시

1.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의 형태,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는 바,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작업방법이 포함된 표준작업지도서에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운행 경로에 따라 1일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표준작업지도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지시키고 사업장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다면 지게차 운전 작업자가 표준작업지도서를 휴대하고 있지 않더라도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은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종료후 등 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벗어나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영역인 작업장소 및 통상적인 작업경로를 벗어나서 주행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작업계획의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통상적으로 작업시작 전이나 작업종료 후 지게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와 작업장소로의 이동경로의 경우 전방의 장애물 발생 등을 예측, 이에 따른 위험에 방대책도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795, 2007.02.13.)

##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1.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을 하여야 하는 지
2. 현장에서 유리섬유, 먼지, 소음이 심한 경우(피트내, 6.5브레카 장비) 사업주에게 방진복, 방진마스크, 귀마개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감전 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는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는 등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음발생 수준 즉,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90데시벨 이상 등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및 충격소음(120데시벨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이 발생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등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 피부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하는 경우의 보호의 지급 의무 외에 방진복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안전팀-938, 2007.02.22.)

##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개인보호구 교체시기와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 교체 시기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내용·작업조건 및 보호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걱정하게 지급한 보호구를 공사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 또는 재 사용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산업안전팀-3392, 2007.07.11.)

## 배수로에서 갖추어야 할 추락방지 조치는

### 질 의

작업자들이 설비를 점검하거나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공장설비 하부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깊이 1~1.3m)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 회 시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 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39조 및 제440조

(산업안전팀-3868, 2007.07.31.)

## 수직그물망으로 안전난간대 설치의 대체가능 여부

### 질 의

아파트내부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그물망 양쪽에 로프를 넣어 당겨서 수직으로 그물망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 회 시

계단의 안전난간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바, 안전난간 대신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그물망의 강도 등 제품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물망 특성상 안전난간과 달리 처짐이 크고, 용접작업 및 건설자재 운반으로 쉽게 훼손될 수 있는 등 안전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그물망은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업안전팀-4463, 2007.09.11.)

## 천장크레인 자격자도 타워크레인 조종가능 여부

### 질 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내용 중 '07.7.1.이전에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12.31.까지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타워크레인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바, 타워크레인조종과 작업방법이 가장 유사한 천장크레인조종작업 자격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을 할 수 있는지

### 회 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으로 한정하였고(동 규칙 별표1의 12.(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이 2006. 10.23. 개정되어 2007. 7.1.부터 시행) 동 규칙 개정 이전에는『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한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천장크레인 조종업무,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와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다 2006. 10.23. 개정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제도를 분리하여 신설하였음

다만, 동 규칙 개정전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로 일정기간 이상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하던 자의 불이익과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임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 및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동 규칙 개정 이전부터 조종업무 대상과 자격취득 시험과목을 달리 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와 동일하게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392, 2007.11.26.)

## → 안전용구(보호구) 미 지급시 사업주의 책임 관련

### 질 의

작은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보호구 지급이 미흡한데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기준 및 미 지급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①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②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안전대 ③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 등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사업주는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업장 점검, 신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토록 행정조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산업안전팀-5413, 2007.11.27.)

## →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에 따른 등반이율 설치여부

### 질 의

건조·수리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부터 제8호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는 의미가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등반이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의 「잠함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하지 아니한다(2008.1.16 개정)」라는 규정에 의거 ‘건조·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1항제5호 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바,

건조·수리 중인 선박에 임시로 설치한 고정식 사다리의 경우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에서 높이가 2.5미터 부터 등반이율을 설치 하여야 함

(산업안전팀-374, 2008.02.04.)

## → 기중기 운전기능사 취득시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여부

### 질 의

기중기 운전기사 자격 소지자로 15년째 타워크레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 이수시 까지 무자격자 인지 여부

### 회 시

2006.10.23.개정된『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07.7.1.부터『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함. 다만, ‘07.7.1. 이전에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12.31.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07.7.1. 이전에 기증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경우에 2008.12.31.까지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을 부여하고,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기간까지는 타워크레인 운전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산업안전팀-549, 2008.02.22.)

## → 조선업 자율평가 시 사망만인율 산정 범위

### 질 의

조선업 안전관리 수준 자율평가지 사업주의 법 위반 혐의가 없는 사망사고에 대하여 사망만인율 계산에 포함시킨 근거 및 이유

### 회 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관리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사망사고로 인한 근로손실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망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범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만인율 산정시 포함시킬 방침이며, 다만, 단순교통사고 및 개인질병 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함

(안전보건지도과-402, 2008.10.20.)

## → 통로의 조명에 대한 적용여부

### 질 의

1. 사업장(제조업)내 공장동과 별도로 기숙사동을 설치·운영하고 있을 때 근로시간이 아닌 새벽에 기숙사동 2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에도 75럭스 이상 조명시설의 설치의무가 부여되는지

2. 조명시설이 설치 되었을 때 그 작동스위치가 1층 계단 입구에만 설치되어 2층 근로자가 계단을 내려올 때 작동할 수 없다면 법 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통로의 조명)규정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가 통행하는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숙사동 계단통로에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아울러, 사업주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항상 유지되도록 작동스위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안전보건지도과-867, 2009.03.13.)

### 기관차의 정거장 구내 이동이 입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1. 기관사가 동력차 운전실에서 전방의 진로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서 타 철도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정거장 구내를 이동하는 것이 입환작업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2. 위 질의내용이 입환작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구내운전으로 보아 유도하는 자(입환담당 역무원)를 생략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현행 입환신호기 설치구간에서는 유도자 없이 이동하고 있는데, 입환표지 설치 구간에서도 유도자를 생략하고 동력차를 이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08조에서 입환작업이라 함은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작업”을 의미하므로 정거장 구내를 이동하는 것은 입환작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입환작업 특성상 다수의 궤도에서 동시에 입환작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신호 오인 등에 의한 열차접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동일작업구간 내에 기관사, 수송원(차량연결·분리작업자, 신호자, 유도자 등을 포함), 청소원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에 따른 돌출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유도하는 자의 생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입환작업이 아닌 열차의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 우려가 있는 궤도의 보수·점검작업을 하는 때에는 열차운행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는 제505조의 열차운행 감시인의 배치를 제외 가능하다고 판단됨

3.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 또는 실수로 인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시각적으로 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해 부착하는 것으로 작업자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안전보건대책이므로 유도자의 생략은 어렵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552, 2009.04.29.)

##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에 관한 규칙「제10편 궤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중 제509조, 제515조(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의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 안전작업계획서를 관리감독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

- 관리감독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는 ‘현장 작업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가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관리감독자의 지정 내용을 보면 ‘차량은 사업소장, 과장, 선임차량 관리장 / 역은 역장, 부역장, 조장, 수송과장 / 시설은 사업소장, 선임시설 관리장 / 전기는 사업소장, 과장, 선임전기장, 전기장’으로 되어 있음

- ○○○○노동조합은 안전작업계획서는 관리감독자 중에서도 사업소장(혹은 과장) 이상의 관리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

※ 회사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사장-지사장-사업소장(역장, 부역장)-과장(조장)-선임관리장-전기장-작업자’이고, 사장과 지사장 밑에는 일반적으로 STAFF이 있으며, 사업소장 밑에는 ‘과장’직함을 가진 관리자가 있기도 함

- 사업소장 이상이 작성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측 주장의 근거는 관계 규정에 있는 내용 중 ‘작업인원, 작업량’은 현장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불어서 중장비 투입 등 기계작업 실행 여부는 지사 전체의 중장비 현황과 지사에서 결정하는 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용임

## 회 시

제도 보수·점검작업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입환작업시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작성의무가 있음

본사, 지사,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사, 사업소 등(이하 “지점”이라 약칭함)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도 보수·점검작업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입환작업시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의 사업주 의무를 위임 받을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의 본사와 지점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고 (다) 및 (라)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사업 여부

따라서 상기기준에 따라서 작업장소, 작업인원, 작업량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의 의무를 가짐. 이는 반드시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또는 작업 책임자가 작성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의 최종결재를 득하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의 작성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안전보건지도과-2199, 2009.06.02.)

##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장소에 교대근무자의 출입 가능여부

## 질 의

1. 24시간 운영하는 폐수 하수처리장의 변전실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규칙”) 제327조 제4호의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장소에 일반 교대



근무자가 출입하여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교대근무로 인한 감시운영 근무자가 안전규칙에 따른 관계근로자인지 여부

2. 관계근로자의 자격요건 및 일반 감시운영 근무자가 교육을 통해 변전실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안전규칙 제32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촉·접근에 따른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의무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관계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자격요건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시설물의 용도, 관리형태, 작업내용에 따라 사업주가 전기안전분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운영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근로자는 자격 및 사전교육을 통해 해당 설비 및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근로자에 한해 선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4361, 2009.11.25.)

### 열차의 지정된 차고지의 정의

####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7조제2항의 “지정된 정비차고지”의 구체적인 정의

#### 회 시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정비작업에 따른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이 중요한 바, 동 작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상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정한 일정 장소에서만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018, 2010.05.17.)

## →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제3호(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에서 “동력하강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2.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내려 고정시키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전용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 시킬 수 있는지

### 회 시

1. “동력하강방법”이란 크레인의 기계적 동력 등을 이용하여 탑승설비를 하강하는 방법을 의미함
2. 이동식 크레인을 “아웃트리거”로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이동식 크레인으로서의 실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조산재예방과-2580, 2011.10.28.)

## → 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 질 의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 산업안전분야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재예방 계획수립, 사업장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산재예방정책과-4520, 2011.10.28.)

##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 회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 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332, 2012.04.30.)

## →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작업자 및 화물을 탑승시킬 수 있는 작업대, 동 작업대를 조작할 수 있는 유압라인 및 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을 부착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고소작업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16조 제1항제1호에서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6호에 따라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 구동장치 및 유·공압계통, 제어반”을 주요 구조부로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한 설비는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 작업대를 조절하기 위한 유압라인 및 제어반(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 고소작업대의 주요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조산재예방과-1717, 2012.06.12.)

## → 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

### 질 의

건설현장 이외의 장소인 시멘트 공장 silo에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서면심사를 받아 설치한 리프트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일반작업용 리프트” 중 어느 리프트로 구분하는지와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2011-39호) 제8조에 따라 “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건조용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인 경우에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구분되고,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용도를 인화공용으로 인증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조산재예방과-2086, 2012.07.20.)

## 4. 건설안전기준

낙하물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 의

낙하물 방지망의 규정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의 규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의 규정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회 시

1. 낙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 규정에 의거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여야 함
2.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낙하물방지망설치지침, C-02-07)의 “비계외부에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준의 수평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층에 대하여 개구부 등을 포함한 낙하·비래방지조치를 완벽하게 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1.에서 설명한 규정과 상치될 경우 1.규정이 우선 적용됨

(산안(건안) 68322-35, 2000.01.14.)

파이프써포트의 높이는 파이프자체의 높이인지 장선·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3조제8호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때”라는 기준은 파이프써포트의 순수 높이인지, 장선, 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3조제8호다목의 높이란 장선이나 명예를 포함하지 않은 파이프받침 자체의 높이임

(산안(건안) 68322-55, 2000.01.22.)

### 무비계공법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아파트를 무비계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전후 발코니 부위는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가 가능하나 좌우측벽부위엔 사실상 1단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측벽에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낙하물방지망 설치여부는 측벽 등 장소나 갭폼 등 공법에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83, 2001.03.17.)

### 적관 파이프 써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원청회사는 “안”자 백관 파이프 써포트를 사용하게 하고, 적관 파이프써포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적관이 산업안전공단의 성능검정품인 “안”자 제품임. 외관상 색깔차이 외에는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도급자측은 적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반입 자체를 저지하고 있어 작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람

#### 회 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노동부고시 제1998-23호)에서는 파이프써포트의 재질,

크기, 강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색깔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 씨포트가 “안”자가 각인된 제품으로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이라면 적관, 백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15, 2001.04.04.)

## → 달비계 설치 작업시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외부도장 시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려고 하는데 안전망까지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2미터 이상인 장소에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작업내용이 기존 건물의 외벽을 도장하는 공사로 작업특성상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것이 곤란하여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달비계의 구조가 동 규칙 제38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고 조립·해체 및 변경 등의 작업시에도 동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등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51, 2001.04.21.)

## → 갯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아파트 10개동 15~20층 (48~62m) 시공시 외부거푸집을 갯폼으로 설치하였으며, 갯폼에는 작업발판을 4단설치하고 외부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때 산업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및 제456조에 예외적으로 건물외부에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한 낙하물방지망은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갯폼 등 공법과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갯폼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는 골조공사 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적 또는 마감작업, 양중 작업시 등에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낙하물방지망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80, 2001.05.09.)

###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의무 주체 및 존치기한

#### 질 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의무의 주체와 존치기간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토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낙하물방지망은 낙하 및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위 작업이 도급에 의해 행해지고 도급자(원청)의 근로자와 수급자(하청)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원청)인 사업주에게 낙하·비래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



이렇게 설치된 낙하물방지망은 당해 작업중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치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80, 2001.08.13.)

### → 하이드로 크레인에 의한 탑승설비(작업대차)를 제작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35m 높이의 교량상판 거푸집 작업시 하이드로 크레인에 달기구를 메달아 탑승설비(작업대차)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탑승하고 작업시키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법 여부와 만약 크레인 작업대차 사용으로 사고발생시 책임한계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9조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30조에서는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탑승시킬 수 있으며, 탑승설비는 전위 또는 탈락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크레인에 달기구를 달아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것은 작업장의 여건 등이 다른 방법에 의한 작업대, 이동통로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위의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사고발생시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원인, 작업상황, 제반 안전조치 이행 상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위의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 또는 사법적인 조치를 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422, 2001.09.03.)

## → 아파트 측벽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15층 아파트 신축공사의 갱폼공법 사용시 측벽낙하물 방지망을 10m마다 설치·해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지상에서 3m높이에 1단만 하고, 전·후면은 발코니 부분만 10m 이내마다 3개소 설치해도 적합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매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해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진행작업과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예를들어, 측벽의 경우 갱폼사용으로 인하여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비래 및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마감작업시 페인트 작업 등으로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5, 2001.10.25.)

## → 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최근 개발된 리프트카 무인시스템을 산안법에서 정하는 설계검사와 현장설치시 완성검사를 필한 상태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조항을 볼 때, 안전기준규칙 136조제2항에는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

현장에서도 무인작동시스템 적용을 고려중인데, 규칙에서 정한 항목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부(참고로, 이 시스템은 탑승대기실에서 호출버튼을 누르면 작동하게 되어있음)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규칙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리프트 내부의 탑승조작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무인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귀 질의처럼 각 층마다 호출버튼이 있어 운반구 외에도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리프트의 무선조작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은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 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97-33호) 제65조제10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http://www.molab.go.kr) → 부서홈페이지 → 산업안전국 → 법령및판례 → 고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산안(건안) 68307-10569, 2001.11.27.)

## 구조물의 높이가 2m이상이면 반드시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하는지

##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비계 제1절 재료 등에서 비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371조에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그러면 우선 구조물의 높이가 2m이면 비계는 당연히 설치하고 추가로 작업발판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인지 원초적으로 구조물의 높이가 2m이면 비계부터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 제2장의 ‘비계’에 관한 규정은 비계의 재질, 작업발판, 조립·해체 및 변경시 준수사항 등 비계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구조물이 2m 이상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성질상 비계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에 그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한 사항이고

동 규칙 제371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계의 높이, 다시 말하여 작업장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을 정함과 동시에 작업발판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임

(산안(건안) 68307-10570, 2001.11.30.)

## 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

### 질 의

1. 아파트 골조를 갱폼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1단은 낙하물방지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하여 법적 기준대로 10m 이내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면 아파트 20층 기준일 경우 최소 4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갱폼 공법으로 골조공사를 할 경우는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함.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10m범위를 벗어나서 20층 기준일 경우 2단 또는 3단만 설치가 가능한지
2. 갱폼공법 골조공사시 아파트 측벽 부위는 최하단 1단만 낙하물방지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갱폼 등 공법의 종류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진행 또는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 설치간격은 10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함
2.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하물방지망은 낙하·비래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측벽의 경우 갱폼사용으로 인하여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비래 및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마감작업 역시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9, 2001.12.12.)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4호에서 정한 “공중전선”의 의미와 범주에 대하여

공중전기라 함은 공중에 저절로 생기는 온갖 전기현상의 총칭을 말하므로 공중전선은 옥내·외 전기배선을 총 망라한 전기배선을 총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배선이 사적 또는 공적 용도에 인입되기 이전 즉,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배전판에 인입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전선을 총칭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4호의 “공중전선에 근접한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공중전선이라 함은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나무기둥, 콘크리트 기둥, 철탑 등의 지지물을 이용하여 공중에 가설한 가공전선(overhead wire)을 말함

(산안(건안) 68307-10617, 2001.12.18.)

## → 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 질 의

지하철 상수도 관로이설공사현장에서 설계도에 굴착깊이 6.5m, 굴착면의 구배 기준 1:0.3(경암기준)으로 되어 있어 설계도대로 작업시 토사붕괴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작업장소의 지질을 조사한 결과 보통 흙(토사 및 매립토)으로 판정되어 발주처에 관련근거(구조계산, 안전성검토)를 첨부하여 기존 설계도대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이것이 계약조건이라는 이유로 반영이 안되어 설계도대로 작업 수행 중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자가 발생시 그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 책임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시공자)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장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에서 정한 토질에 따른 구매를 준수하거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05, 2002.01.08.)

## 철골공사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

### 질 의

철골공사 현장에서 1절 공사후 하부에 설치하는 망이 추락방지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 제440조의 규정에 의거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와같은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동 규칙 제456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필요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3. 따라서, 추락방지망 또는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여부는 공사진행에 따른 위험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1”의 기준에 의한 추락방지망을,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2”의 기준에 의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4.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해야 함
5. 참고로, 추락방지망 및 낙하물방지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182, 2002.05.03.)

## → 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양중기의 운전도중에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운반구 외에도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무인작동시스템으로 리프트를 운행시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리프트 무인작동시스템은 리프트 운반구 외부에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235, 2002.05.23.)

## →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 질 의

현장조건이 추락, 낙하, 비래, 감전과 전혀 관련이 없을시 안전모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의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감전·충돌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서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착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러한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78, 2002.06.12.)

## 낙하물방지망을 설치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

### 질 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층에서 상층으로 내·외부 마감공사를 상부 골조공사와 병행함에 따라 마감공사 부분의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하고 지상에 방호선반과 골조공사 진행 중인 부분의 직하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매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공법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해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진행작업과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공법에 따라 하층부의 내·외부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장 내부로부터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고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물 등의 위험을 방지한 경우라면 마감공사 부분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163, 2004.02.19.)

##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수직보호망을 아파트 발코니 및 개구부 주위 전체에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 설치 여부



#### 회 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의 필요하지 않으며 안전난간대는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낙하 또는 비래 예방과 별개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667, 2005.12.07.)

### →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

#### 질 의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사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3. 또한, 귀사의 제품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망을 걷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324, 2006.03.24.)

### →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

#### 질 의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사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귀사의 제품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망을 건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324, 2006.03.24.)

### 가설통로의 경우 사업장 계단설치기준 적용

####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사업장 계단 설치 기준이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가설계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635, 2006.04.07.)

### 안전네트가 안전상의 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 질 의

안전난간의 강관파이프 대신 추락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강도 1톤이상)할 경우 안전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비계 조립에 의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난간·울, 손잡이, 덮개, 안전방망 설치 등 해당 작업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예방조치에 대한 설치방법 및 강도 등의 기준은 개별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네트[추락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강도 1톤이상)한 경우]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귀 질의의 안전네트가 상기 다른 예방조치의 기준과 같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기준(성능검정 포함), 설치방법 등을 충족하고 있다면 추락 방지용 안전조치로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627, 2006.09.22.)

## 작업발판 및 비계기둥의 간격기준

## 질 의

1. 발판재료간의 틈 3센티미터 이하는 비계와 작업대와의 간격인지
2.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에서 1.5미터 내지 1.8미터인데 비계기둥 중심 간격인지 또는 비계기둥 간격인지
3. 띠장간격은 1.5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선간격에 대한 규정은 있는지

## 회 시

1. 작업발판 재료와 작업발판 재료의 틈 간격을 규정한 것으로 비계와 작업대와의 간격은 아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1조)
2. 비계기둥 간격은 비계용 파이프의 중심과 중심 간격임(규칙 제378조 제1호)
3. 장선간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비계기둥과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팀-5508, 2006.11.16.)

## → 공사용 가설분전반 설치 작업의 정전작업 해당 여부

### 질 의

공사용 가설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의 차단기중 1개를 내리고 전선연결 작업을 하는데 정전작업에 해당되는지, 또한 교류아아크용접기를 분전반내 차단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차단기를 내리고 용접기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정전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정전작업이라함은 전로를 개로(開路)하여 해당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분전반내 차단기를 내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의 작업이라면 정전작업에 해당됨

정전작업을 하는 경우 개로된 전로의 충전 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분전반 잠금 조치를 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팀-6173, 2006.12.26.)

## → 주유소 설치공사의 피뢰침설치 적용기준

### 질 의

주유소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뢰침 설치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를 적용해야 되는지? KSC 규격을 적용해야 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에 피뢰침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개정(「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피뢰설비 규격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중에 있으므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참고사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팀-3500, 2007.07.18.)

## → 건설기계 후방카메라 설치시 감시인 배치 여부

### 질 의

건설기계 협착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 후미에 후방카메라를 부착하여 운전원에게 후방시야를 확보하여 준다면 감시인 또는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 및 제222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유도자를 배치토록 하고 있는 바, 건설기계 유도 업무는 단순히 후방시야 확보로 대체될 수 없으므로 건설기계 작업 시에는 후방카메라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유도자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팀-5297, 2007.11.14.)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여부

### 질 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두 종류의 작업계획서를 통합작성이 가능한지

### 회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및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바, 양 작업계획의 통합작성은 사용하는 기계에 대하여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상기 기준에서 규정한 작업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합작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74, 2008.05.08.)

##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안전난간대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철골공사시 안전난간대 대신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안전난간대로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및 설치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바, 와이어로프를 안전난간대로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이 곤란함

(안전보건지도과-1456, 2008.06.27.)

## 희망근로 사업 참여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여부

### 질 의

재래시장, 동별 영세사업장, 노점상에 방문하여 원산지표지판 배부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거나 동물보호법에 의한 유기동물방지 및 애완견 안전조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희망근로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시켜야 하는지

### 회 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질의에서 열거한 작업은 통상 안전모 착용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소에 따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245, 2009.08.24.)

## 발코니 난간대 설치시 상부 및 중간난간대 설치기준

### 질 의

당 사업장은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로서 상부난간대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20센티미터 보다 높은 150센티미터인 ‘조립식 안전난간’으로 한국건설가설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았는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2호에는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 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과 다르게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150센티미터(중간난간대는 2단으로 설치)이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2호에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 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가 170센티미터, 상부난간대의 높이는 142센티미터, 중간난간대는 바닥면에서 47센티미터와 95센티미터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전난간의 기준에는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사이의 길이가 45~60센티미터이나, 귀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사이의 길이는 47~48센티미터로서 법 기준 이내임

따라서 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상부난간대를 90~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사에서 제조하는 안전난간의 경우 상부난간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높고 중간대도 2개를 설치함으로써,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조치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의무안전인증을 받아 안전난간의 재료·구조·강도 등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으로서의 성능이 확인 되었으므로 귀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은 법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립식 안전난간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의 2.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716, 2010.08.18.)

##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질 의

○○화력본부는 1992년 보일러 노내 정비작업 전용 접이식 시스템비계(폴세트)를 아일랜드 ○○○○사로부터 수입·구매하여, 매년 보일러 노내 정비작업현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2.1.19 신규로 접이식 시스템비계(폴세트)를 수입·구매하여 사고현장에 설치(2012.2.26.-3.1)하여 사용 중 붕괴되었음.

이에 ○○화력본부에서 사고현장의 붕괴된 시스템비계를 철거 후, 1992년에 구매하여 그동안 사용하다가 보관중이던 시스템비계를 향후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동 시스템 비계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80, 2009.12.23)」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시스템비계용 부재의 인증은 2011.3.23부터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2년에 구매한 접이식 시스템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님 다만, 시스템비계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건설산재예방과-1192, 2012.04.12.)



##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 5-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③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 질 의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1조에 공사착공전일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출시기가 언제인지 갑)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전일 제출하여야 하는지 을) 터파기공사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병) 높이 31m 대상구조물 기초공사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정) 높이 31m는 G.L(Ground Level)기준이므로 G.L지점까지 구조물이 올라오는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1조에 의하면 동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동 계획서를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고, 동 규칙 제120조에서는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전체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대상 시설물의 착공전 (위 질의의 “병”)임

(산안(건안) 68307-15, 2001.01.06.)

집수정 부분의 최대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굴착깊이는 8.3m인 지하차도 공사로서 배수목적인 집수정 부분의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동조 제4항에서 정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고 위 규정에 의거 굴착깊이가 10.5미터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중 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작아 전체 굴착면적이 1/8미만인 경우라면 굴착깊이가 10.5미터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24, 2001.04.07.)

## 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지상높이 31m이상에서 단순보수공사로 기존 건축물에 보강타일부착과 외부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작업 수행내용이 제출대상 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또는 주요 부분의 변경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부보호를 위한 보강타일 부착 및 외부도장작업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위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44, 2001.04.18.)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의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에서 기존의 산을 절취하여 학교건물을 시공할 경우 건물 굴착깊이 10.5m라 함은 절취작업 부분이 포함되는지 굴착깊이의 기준이 G.L선인지 아니면 절취한 부분의 최고 높이인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인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 (귀 질의의 G.L) 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절취해야 할 부분의 높이는 굴착깊이에 산입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564, 2001.11.22.)

## 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

### 질 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가목(1)의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에 준하여 산정된 건축물의 높이가 26.3m이고, 최고지반고에서 최고높이는 21.1m, 최저지반고에서의 최고높이는 32.5m일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중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공사”를 적용하는데 있어 대지의 고저차로 지상높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높이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동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31m 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산안(건안) 68307-10147, 2002.04.1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깊이

### 질 의

1. 당 현장은 서울 서남권 ○○○○시장앞 지하철도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평균 굴착깊이가 9.52m이며, 배수목적인 집수정 부분의 굴착깊이가 15.4m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개착식 굴착공법으로 시행하는 지하철도(공사개요서 참조) 건설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에 의거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규모의 사업중 터널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5m 이상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작아 적체 면적의 1/8미만인

경우라면 동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굴착깊이 10.5m 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님

2. 귀 질의에서 터널공사라 함은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 단면적이 2m<sup>2</sup> 이상되는 것을 말하며, 개착식으로 진행하는 지하차도 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183, 2002.05.03.)

## → **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 **질 의**

농토현장에서 수로를 만들기 위해 강관을 유압자키로 밀어넣은 후 강관내부의 토사를 반출하고 본수로용 흡관을 설치하는 공사(28미터)에서 강관의 지름이 3미터인 관계로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를 초과함

터널이라 함은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단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되는 것을 말함”이라고 하는데 상기와 같이 강관을 밀어내고 그 내부의 토사를 제거한 다음 흡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터널로 적용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터널공사라 함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그 내부단면적이 2m<sup>2</sup>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는 터널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인바, 귀 질의와 같이 지름이 3m인 강관(2m<sup>2</sup> 이상에 해당)을 지표면하에 밀어넣은 후 근로자가 강관내부에 들어가 토사굴착 및 본 수로용 흡관을 설치하는 경우 터널공사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5, 2003.03.21.)

##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 질 의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현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산업재해율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 회 시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와 함은 각 참여회사들이 공사를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도 각각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자율안전관리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현장은 주간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되고, 「분담이행방식」 현장은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분담이행방식」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는 B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행하는 경우라면 당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동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도 각 공사현장의 공사규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는 당해 현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도 각 개별현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 간 내부협약에 관계 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공동이행공사라 하더라도 분할 시공함이 명기된 도급계약서류 또는 참여사 전체가 분할 시공함을 동의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각사별로 분리산정이 가능함

(산업안전과-3001, 2005.06.15.)

## 판매시설 개보수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질 의

공사내용이 영업중인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고 공사면적은 산정하기 어려워 전체 매장면적으로 신고 하였으나 실제 공사면적은 5000제곱미터 보다 작은 면적(매장을 부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인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등의 공사가 아니고 단순히 건물내부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팀-5486, 2006.11.14.)

## 지하차도 집수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 질 의

지하차도 건설현장으로 굴착을 개착식(흙막이로 시공하지 않고 사면 굴착)으로 시공을 하는데 지하차도의 가장 깊은 부분은 9M이고 집수정만 13.5M인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넓지 않아 전체 굴착면적의 1/8미만인 경우라면 굴착깊이가 10미터를 초과하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1608, 2007.04.02.)

## 공사시기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 질 의

1. A공사(지상층 500억원), B공사(A지하+B지상·지하 +C지하 3500억원), C공사(지상층 1,000억원)의 공사가 발주처와 시공자가 다르나 동일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B공사(C지하공사)후 C공사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지
2. B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 6명이 선임되었는데 B공사에 A, C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되는지
3. A, C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 회 시

1. A, B, C공사가 발주처와 공사시공 조직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2. A, B, C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은 해당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A, C 별도 산정)하며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 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산업안전팀-5782, 2007.12.26.)

##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 질 의

○○공사가 당초 9층에서 12층으로 설계 변경되어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최초 착공일 2008.1.7, 설계변경 허가일 2008.4.7)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바 동 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가 새로이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 중인 구조물이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 경우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 (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안전보건지도과-2319, 2008.08.28.)

## 기존건물 증축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 질 의

1. 기존건물을 증축(기존 25미터 건축물을 증축 10미터, 기존 35미터 건축물을 증축 5미터)하여 31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2.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되거나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2.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개축 등 해당 연면적이 3만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며,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의 시설 개보수 작업은 해당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3371, 2008.11.07.)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제출 가능여부

### 질 의

신도시내 7개 필지에 7개의 상가동을 시공할 경우(발주처가 하나이고, 시공사와 계약도 1건, 현장 관리도 하나의 사무실에서 한 현장소장이 운영)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통합 제출 가능 여부

### 회 시

신도시 내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7개 현장으로 시공 되지만 1건 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관리 조직도 하나인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묶어서 제출함이 타당함

(안전보건지도과-120, 2010.03.03.)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질 의

관내 종교시설 신축공사의 가중평균 굴착 깊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설계도면상 최대 굴착 깊이가 10.36미터이고 10미터 이상 깊이에 해당하는 굴착면적이 전체의 1/8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가중평균한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을) 최고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이고, 10미터 이상 깊이에 해당하는 굴착면적이 1/8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 해당함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고 건축물 건설공사에서 집수정, 엘리베이터 펌트, 정화조 등을 위한 굴착으로 극히 작은 부분이 깊이 10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전체 굴착면적의 1/8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회신 등을 통해 해석하여 왔으며,

※ 산안(건안)68307-10124(2001.4.7), 산안(건안)68307-10183(2002.5.3), 산업안전팀-1608(2007.4.2)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04.3.10.부터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공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지청관내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이 가중평균 굴착깊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설계도면상 최대 굴착 깊이가 10.36미터로 10미터 이상이고 10미터 이상이 되는 면적이 전체 굴착면적의 1/8을 초과한다면 귀 지청의 “을설” 의견과 같이 동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됨

(안전보건정책과-289, 2011.01.20.)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주체

#### 질 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원청사(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

원청사(A)는 발주처로부터 기성 청구 및 지급업무, 공사/품질/안전등에 대해서는 제안 또는 권고만 할 수 있고, 감독업무는 안하며 하도업체(B)는 원가, 공사, 품질, 안전의 주체로 모든 업무를 관할하여 실시함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심사하여 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을 줄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계약관계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도급관계에서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원수급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원수급업체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는 원수급업체에서 하여야 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원수급업체인 “A”에 있음

(국민신문고, 2011.12.26.)

## → 피로티 및 옥탑부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포함대상 여부 ←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관련입니다. 동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높이산정시 피로티 부분이 지상높이에 포함되는지
2. 옥탑부분이 지상높이에 포함되는지

※ 여기서 피로티부분은 건축법상 높이 산정에서 제외(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되는 부분을 말하며, 옥탑부분 또한 높이 산정에서 제외(옥탑 등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되는 부분임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를 착공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상높이의 산정은 우리부 행정해석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지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을 하나 건축물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하여 높이를 산정하고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토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옥탑 등의 높이가 14m일 경우 그 옥탑등의 면적이 1/8이 넘는 경우는 14m가 전체 높이에 산입되고, 1/8 이하인 경우는 2m만 높이에 산입됨

(국민신문고, 2012.05.30.)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

### 질 의

우리 현장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및 심사 대상 사업장으로 2012년 06월 25일부터 착공계를 제출하여 시공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가설 사무실 축조, 진입도로 설치, 공사부지 성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공종은 굴착깊이가 10.5m 이상으로 2012년 10월 부터 작업 예정

이번 저희 회사가 2012년 8월 1일부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자체 심사 대상으로 지정 되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심사를 의뢰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 삼사하여 공단에 결과서만 제출 하면 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 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자체심사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6항)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에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되기 전 “가설사무소 설치, 진입 도로 설치, 공사부지 성토” 등 공사 준비작업만 진행하고 아직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이후 착공 전일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될 것임

(국민신문고, 2012.07.26.)

## 5-2. 공정안전보고서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⑧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추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⑨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⑩고용노동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8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 기준

### 질 의

화학제품제조업으로 PILOT공정에 “1리터짜리 연속종합반응 PILOT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대상설비인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설비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해 원유정제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또는 합성수지제조업(다만, 합성수지 제조업은 가연성 가스와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질소질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제조업(원제 제조에 한함),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의 보유설비 또는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동표에서 정하는 수량이상 공정과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제조 또는 취급 등의 설비임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인지 여부는 위 2개항을 기준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을 것임.

(산안 68320-403, 2000.05.15.)

## 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 질 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설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설비 운영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있는지

### 회 시

공정안전관리(PSM)제도는 유해·위험설비의 설계단계 및 사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고 당해 설비의 고유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함.

참고로, 대여하는 설비가 같은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 “대여자의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함.

(산안 68320-170, 2001.04.14.)

## →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 질 의

당 사업장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통해 배관을 이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동 시설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이 아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예 : 용해로, 건조로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산안 68320-537, 2001.11.27.)

## → 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 질 의

LPG를 사용하는 용해로, 유지로 등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



안전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기타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 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시설임.

(산안 68320-402, 2002.09.18.)

### 석유류를 저장·출하하고 있는 사업장의 석유류제품의 첨가제 주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석유류를 저장, 출하하고 있는 지방 사업장에서 석유류제품에 소량의첨가제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동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 및 제33조의7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회 시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라 함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외의 경우는 변경 관리절차에 따르면 됨

(산업안전과-4149, 2005.08.01.)

### 폐윤활유 정제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질 의

“폐윤활유”를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에서 정제(“이온정제”로 불순물 여과 → 70~80℃로 간접 가열하여 약품처리로 침전분리 → 원심분리로 유수분리 → 제품저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정제연료유(연료로 사용함)”라는 명칭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를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과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23221)” 중 어떤 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 회 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업종인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은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을 재처리하거나 또는 기타 광물성 역청물질을 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 이외의 기타 석유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바

당해 사업장에서 취급·사용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물질이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에 속하는지 여부와 동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정제 연료유”가 “윤활유 또는 그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166, 2005.08.03.)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질의

### 질 의

도장공장의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나 별도의 열처리 공장의 경우에는 LPG 가스 및 메탄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규정물질 사용량에 대한 환산값(R)이 0.061인 상황에서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에 의해 단위설비에서 사용하는 규정 수량에 의해 R값이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위공정에 관계없이 기존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전공장의 공정설비 적용여부 및 적용이 된다면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질의

## 회 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한 7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유설비와 업종외의 대상 사업장은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함.

귀사의 경우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물질을 산정하므로 도장공정 뿐만 아니라 열처리 공정의 LPG 가스 및 메탄올 사용설비도 포함하여 제출대상이 됨. 다만, 열처리 공정이 도장공장과 같이 초기에 설치된 설비가 아니고 도장공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이 완료된 후 설치 되었다면 공정안전보고서의 별도 제출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의 변경관리지침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면 됨

(산업안전팀-2054, 2006.05.15.)

## 설비가 신설될 경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질 의

기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설비가 신설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 회 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에 해당하는 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과 시행령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21개 규정물질 수량 이상을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 및 관련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09-90호) 제2조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대상이 됨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해당사항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참고·조명설비 등은 제외)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산업안전팀-1165, 2007.03.07.)

##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 질 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내의 가스공급시설과 관련이 없는 열병합발전소 또는 경유저장시설 등의 PSM 제출 대상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제7호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은 유해·위험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

(산업안전팀-2366, 2007.05.09.)

## 저장소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질 의

400여 객실을 갖춘 목욕장이 겸비된 콘도미니엄 및 물놀이형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콘도의 난방과 온수를 공급 또는 물놀이형 시설의 수온유지를 위해 가스 공급업체인 ○○도시가스로 부터 저장소 없이 계약에 의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보일러를 가동하는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 회 시

공정안전보고서는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가 제출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6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정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현장확인을 통한 정확한 제출대상 여부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206, 2009.03.3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 질 의

50톤 용량의 LPG저장탱크를 보유하고 1일 가스량 10~15톤을 사용하여 알미늄을 용해하는 공장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장내 보유설비 중 위 시설을 제외한 인화성가스

취급·사용설비(용해로, 균질로)와 해당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공정설비는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대상에 해당됨

(산업안전과-1477, 2010.12.08.)

## 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등

### 질 의

1. 식품제조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내의 전기기계·기구를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및 별표 10에 따라 암모니아를 규정량(200톤) 이상 제조·취급·저장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 됨  
※ 규정량이란 제조·취급 등의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을 말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에 따라 인화성가스(암모니아)를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함  
※ 인화성 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0에 따르면 인화하한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가스상의 물질로, 암모니아는 인화하한계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3%이므로 인화성 가스에 해당됨

(제조산재예방과-288, 2012.02.01.)

## 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관련 변경

1. 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주체 및 염산, 불산 등 취급설비의 공정안전관리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관련 변경

○ 검토배경

- 「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회시」(산업안전팀- 1998, 2006.05.09)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주체와 불화수소 등의 공정안전관리 적용 여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별표 10

○ 기존 행정해석(지침)

- 설비의 소유주가 아닌 별도의 분사법인이 해당 설비의 운전주체일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설비를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분사법인이 해당 됨
- 액체상태의 염산, 질산, 황산, 불산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문제점

- 분사법인이 실제 설비 소유주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경우 설비의 소유주가 해당 설비의 운전주체로 볼 수 있음
- 불화수소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물질이나, 압력을 가하거나 온도를 낮추어 액체상태가 된 경우, 액체상태의 불산으로 오인되어 공정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될 소지가 있음

○ 행정해석 변경

- 설비의 소유주가 아닌 별도의 분사법인이 해당 설비의 운전을 담당하나 설비 소유주로부터 독립성이 없으면 설비 소유주가 공장안전관리의 의무주체가 될 수 있음
- 질산, 황산, 염산, 불산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 불화수소와 염화수소는 압력을 가하거나 온도를 낮추는 등 물리적 환경변화로 액화되더라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2 기타 행정사항

- 기존의 행정해석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이 해석에 따름

(제조산재예방과-3571, 2012.12.31.)

## 제 4 장 산업보건환경





## 제 4 장 산업보건환경

### 1. 작업환경측정

**제42조(작업 환경측정 등)** ①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 → 화학물질의 허용농도 설정 기준

### 질 의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설정하는데 있어,

1. 노동부에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의 노출한계(TLV)를 기준으로 공표하는 이유는
2.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의 발암성 규정에서, A1, A2, A3, A4의 분류기준은
3.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의 차이점과 법적 규제력의 차이는

### 회 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주요 화학물질의 노출한계(TLVs : Threshold Limit Values)를 정하여 권고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정부 등 선진국에서는 ACGIH의 TLV를 기준으로 자국의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직업병이 발생하여 자료가 있는 일부 물질 이외에는 ACGIH의 TLV 기준을 대부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음.

※ A1 :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됨(Confirmed human carcinogen), A2 : 인간에게 발암성이 의심됨(Suspected human carcinogen), A3 : 동물에게는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나 인간에게는 관련성이 알려지지 않음(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s), A4 : 인간에게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노동성 산하의 정부기관으로서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요 유해화학물질 699종의 허용기준(PELs : Permissible Exposure Limits)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초과여부에 따라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제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는 민간기관으로서 현재 유해화학물질 697종의 노출한계(TLVs)를 정하여 이를 대·내외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산보 68343-122, 2000.02.16.)

##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작업환경측정시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점은 무엇인지, 또한 반드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비롯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 회 시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며,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시행규칙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을 측정 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산보 68344-224, 2000.03.23.)

## → 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 질 의

1. 톨루엔의 노출기준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2. 톨루엔 등 유기용제들을 정기적으로 농도를 측정한다면 그 주기 및 농도측정에 따른 공정시험법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는
3.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노출여부 확인 방법 및 중독여부 판단방법

### 회 시

1. 톨루엔의 작업장내 노출기준은 100ppm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97-65호)」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2. 톨루엔 등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6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을 측정 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측정방법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99-38호)」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3.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정도는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름.

(산보 68343-341, 2000.05.16.)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7-25호)」(2008.1.1. 시행)에 따라 톨루엔의 노출기준은 50ppm으로 개정되었으며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은 현재「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 갯내의 범위에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 및 [별표2] 특정분진작업에서 기술되어 있는 ‘갯내’의 범위에 토목공사의 일종인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 회 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 및 별표2 “특정분진작업”에서 사용되는 “갯내”란 “땅속을 파고 들어간 굴”로 “채석작업”에 한정된 용어는 아니며, 토목공사의 일종인 “터널 굴착작업”도 작업중인 경우 동 규칙인 갯내 작업과 같은 의미로서 분진작업에 해당됨.

(산보 68344-693, 2000.10.23.)

※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분진작업과 특정분진작업을 구분하지 않고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로만 규정

## → 소음노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도 해당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 및 동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산보 68307-145, 2001.03.15.)

※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512조~제517조

## 분석설비 미비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여부

### 질 의

분석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자체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 회 시

측정자의 자격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20호)」 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석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 환경측정을 할 수 있음.

또한, 동 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집한 시료의 분석을 외부 지정 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산보 68307-261, 2001.04.30.)

※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2에서 규정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포함 여부 및 이사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 질 의

1. 노출기준 미만이나 국소배기장치의 제어속도가 미흡하여 측정자가 측정결과서에 이를 기술하였다하여 사업자는 노동사무소에 측정결과보고서 국소배기장치건에 대하여 개선 또는 개선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측정결과보고서에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한 후(1항과 관련없음), 개선계획서 완료일내에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개선연기신청을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한 개선완료후 완료보고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도 근로자로 보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중 “4.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초과시 측정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업환경을 관리(개선)하여야 함.

질의에서와 같이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개선 또는 개선계획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음.

2.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공정에 대하여는 개선완료 또는 개선중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요구 또는 지시 등에 따라야 함.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주식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 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동 이사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이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270, 2001.05.02.)

### 한시적인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질 의

터널(도로, 철도, 지하철)작업의 특성상 3~5년의 한시적인 작업인 경우가 많은데, 굴진중인 작업중에만 측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굴진 종료 또는 개통된 후 마무리 작업(내벽방수, 레일설치, 도로포장 등)이 터널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도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하는지

## 회 시

터널(도로·철도·지하철)등 갱내에서 실제 공사(작업)기간 중에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의하여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평가·개선하는 등 적절한 작업환경관리를 하여야 함.

(산보 68307-341, 2001.05.28.)

## 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판단기준

## 질 의

1.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단위작업장소라 함은 규칙 제9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동 선박내부에서 200~300여명의 용접공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용접작업을 행할 때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용접공 개개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박 전체를 동일 노출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옥내 또는 옥외에서 선박블록을 조립하는 공정에서 선박블록이 동일 조립장에 블록이 50~100여개가 있을 경우 각 블록마다 1~2명의 용접공이 용접작업을 행할 때 단위작업장소라 함은 각각의 블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립장 전체를 동일 노출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 시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10호 중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라 함은 근로자의 작업공정, 직종, 직무가 같고 동일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유해·위험의 정도가 동일하게 작용하는 곳(작업장)을 일컫는 것으로 때에 따라 작업장 형태, 작업종류 및 방법, 유해인자의 노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조선업종에서 동일 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정률에 따라 작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변경될 경우 유해인자 노출정도 등도 달라지게 되므로 단위작업장소도 해당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용접 작업시 단위작업장소도 용접의 종류 등에 따른 가변성이 많으므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위작업장소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함.

따라서, 위와 같이 동일 노출군 및 단위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련 전문가의 현지확인파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07-406, 2001.06.30.)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 제2조 제10호

## 계절에 따른 온열의 노출기준

### 질 의

외부 온도가 34℃ 가까이 되고 있을 때 실온(작업장내)은 노출기준 26.7℃이하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계절적인 요인에 대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는지

### 회 시

귀하가 질의하신 노출기준 26.7℃는 “계속작업이 가능한 중등작업”으로 이와 같은 고온의 노출기준은 실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작업장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대기온도를 고려할 이유가 없음

(산보 6834-599, 2001.08.28.)

## 시료포집 근로자수 산정 방법

### 질 의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작업근로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포집 근로자수를 20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에서 매 5인당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9조(시료포집 근로자수)에 의하면,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수 10인까지는 2인이상, 근로자수 11~15까지는 3인이상”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이 타당함.

(산보 68344-614, 2001.09.05.)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 제19조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는 것인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작업환경측정결과표중 3.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바 이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노출기준 미만의 사항에 대한 의견도 작성 가능하다는 것인지

#### 회 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중 “3.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작성요령은 동 서식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살펴보면,

※ 측정농도의 평가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측정결과의 평가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측정농도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2.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3. 대책:공학적 · 관리적 · 개인위생적 측면으로 제시하되,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

즉,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종합의견을 작성하라는 의미이나,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필요한 의견은 기재할 수 있음.

(산보 68344-126, 2002.02.09.)

##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 질 의

1.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여 노출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거조항은
2. 예비조사의 실시와 측정결과서내의 측정위치도의 작성주체는
3. 사업장에서 유기용제 GC분석 Back data를 요청하였을 경우 측정기관에서 Data를 거부할 수 있는지
4. 측정시 측정자의 수를 규정하고 있는지와 규정한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 회 시

1.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
2. 측정대상 사업장에 대한 예비조사, 측정계획서 및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작성 등은 측정자가 하여야 함(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7조, 제39조)
3. 질의3 및 질의4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하위규정에서는 측정기관이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환경측정의뢰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거나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5항)시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작업환경측정시 측정자의 수도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대상 작업장의 규모 및 유해인자의 종류 등에 측정기간 및 측정자의 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의뢰(계약)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주와 측정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44-244, 2002.03.22.)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

## → 서류상 예비조사의 실시

### 질 의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7조제2항의 내용중 공정 및 취급인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다에서 서류상의 의미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별지 제21호 서식상의 예비조사 결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비조사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지

### 회 시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음.

※ 서류상 예비조사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측정 기관에 제공한 경우
- 또는 측정기관이 전회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

동 규정상 “예비조사”라 함은 사업장방문에 의한 조사를 의미하며, “서류”라 함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별지 제21호서식)가 포함된 관련자료 등을 의미함.

(산보 68344-247, 2002.03.25.)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에서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측정기관이 전회에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 → 방진마스크 사용 작업장 기준

### 질 의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호)에서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발생 작업장소는 어떤 곳이며 오일 미스트(oil mist) 발생장소도 이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얼마만큼 발생되는 작업장을 말하는지, 그리고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 회 시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호) 제115조에서 정하는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라 함은 재료 등에 압박·충격·전단(剪斷) 또는 마찰 등으로 인해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보호구의 착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차선택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시설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가스·증기·미스트·흙 또는 분진이 발생되어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농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우리부에서는 유해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구의 선정여부, 검정보호구의 지급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산보 68307-434, 2002.05.09.)

## 파견(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 질 의

작업환경측정 시 파견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 회 시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용역업체 근로자도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노동부홈페이지, 부서별홈페이지, 고용정책심의관실, 법령자료, 소관법령 참조).

(산보 68344-507, 2002.05.29.)

## 본사 및 5개사업소를 본사에서 총괄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 질 의

지역적으로 분리된 본사 및 5개 사업소에서 사업소별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 사 합의로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할 수 있는지

### 회 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 사합의로 관내 측정기관

이외의 지정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고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산보 68344-539, 2002.06.05.)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55호)」 제9조

## →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 질 의

조선수리업에서 사무직만 있고 필요시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 회 시

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44-569, 2002.06.15.)

## → 사업장과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보존 연한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장과 지정측정기관에서는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에서 5년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다만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 물질은 30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측정기관은 법 제64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산보 68344-696, 2002.07.29.)

### 사업장 자체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질 의

작업환경측정을 외부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다가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사업장자체측정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 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 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항 적용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사항도 포함됨.

(산보 68344-970, 2002.11.11.)

### 소음이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보정해야 하는지

#### 질 의

귀하가 소음측정평가와 관련하여 소음폭로량 측정기로 연속측정(6시간 이상)한 결과 Dose가 85%일 경우 식 5에 의하여  $Leq$ 는 약 88.8dB(A)이고, 6회 측정한 경우에도 평균치가 89.0dB(A)로 나타났을 경우, 이때의 실시간 작업은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1. 연속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 6회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고시 4의 등가소음레벨을 이용하여  $n$ (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시간)을 10 시간으로 하고 분모의 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기간 합을 8시간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 회 시

8-TWA는 1일 8시간 작업일 때의 기준이므로 소음 폭로량 측정기로 8시간 동안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소음발생사업장수, 측정기관의 소음 폭로량 측정기 보유 대수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한 값을 8시간 측정된 값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정상적인 작업시간 즉 1일 10시간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하는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음

참고로, 미국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95의 부록A(소음노출 계산)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작업시간 10시간에 대하여 보통소음계로 6회 측정한 경우의 계산은 상기 답변 내용과 같이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39호)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등가소음레벨 방법을 적용하여 1일 10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44-938, 2002.10.31.)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55호)」 제36조

## → 소음 측정치가 90dB이면 노출기준 초과에 해당되는지

## 질 의

우리나라 소음의 기준이 90데시벨로 되어 있는데 만일 측정치가 정확히 90데시벨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 회 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소음 노출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음.

※ “노출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함.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8, 제2조 노출기준 정의)

(산보 68344-129, 2003.02.20.)

※ 현행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7-25호)」 제2조

## → 한 공정에서 5명씩 3교대로 작업을 할 경우 측정결과표상 표시

### 질 의

사업장의 한 작업공정 전체인원이 15명이고, 3교대 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나-2.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 측정결과와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5명이라고 기재하고,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는 교대작업(5명씩 3교대)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임.

(산보 68344-305, 2003.04.18.)

## → 레이저 절단기로 절단작업시 발생하는 물질은 무엇이며 어떤 분진에 해당되는지

### 질 의

'04년도에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레이저 절단기로 철판소재를 절단작업시 발생하는 물질은 무엇이며, 일본에서 동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을 측정 한 결과 관리농도가  $2.9\text{mg}/\text{m}^3$ 으로 통보 받았는데 어떤 분진을 말하는 것인지

### 회 시

귀하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왜냐하면 레이저로 절단시 발생하는 분진의 종류는 소재의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일본에서 사용하는 관리농도란 “작업환경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 환경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기준에 따라 단위 작업장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로부터 당해 단위 작업장소의 작업환경 관리의 양부(良否)를 판단할 때의 관리구분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를 의미함. 관리농도가  $2.9\text{mg}/\text{m}^3$ 라는 의미는 광물성(유리규산) 분진이 포함되지 않는 금속 등의 분진의 기준농도임.

(산보 68344-483, 2003.06.13.)



## → 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초과공정만 측정하는지 전 공정을 측정 하는지 ←

### 질 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횟수)에 따라 소음이 100dB을 초과하면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음 초과 공정만 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 회 시

2003. 7. 7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횟수)에 의하여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 가. 발암성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 나.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 소음은 3월에 1회 이상의 측정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보 68344-675, 2003.08.08.)

## →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의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 질 의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의 노출기준의 적용은
2. 가구공장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사업주만 근무하는 경우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지

### 회 시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은 화학물질및 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중 산화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사업주만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같은법 제43조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이 되지 않음.

(산보 68344-677, 2003.08.08.)

※ 현행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1호)」 산화철 노출기준 5mg/m<sup>3</sup> 임

## 공기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미실시시 조치사항

### 질 의

1. 공기업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지와 예산 등의 사유로 미실시시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2. 분석 등 유해인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행정요원도 전원 비사무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에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등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일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의 경우 의법조치 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분석 등의 업무가 아닌 행정요원”의 사무직, 비사무직 분별 여부는 개별 직원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및 직무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보 68344-703, 2003.08.20.)

## 작업환경측정기관 합병시 측정업무 수행 방법

### 질 의

1. 각기 다른 측정기관 A와 B가 합병되었을 경우 측정지역을 통합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합병 후 기관의 명칭을 달리(A, B 또는 C) 사용함에 따라 지정지역이 달라지는지
2. 타 지방노동사무소 관할에도 지정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회 시

1. A 측정기관과 B 측정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법정인력, 시설 또는 설비 등을

교류 또는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이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며, 측정지역의 지정에 관해서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관내 측정기관 수, 측정기관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감안한 측정능력, 지역 및 사업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한편, 기관의 명칭을 달리 사용함에 따라 지정 지역이 결정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2. 타 지방노동사무소 관할 지역의 측정업무를 지정받고자 원할 경우에는 작업 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7조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임

(산업보건환경과-38, 2004.01.03.)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 제7조

## → 건설현장과 같이 한시적인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질 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옥외 작업장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규모, 기간, 한시적인 작업, 작업 인원 등에 대한 고시(기준) 없이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 회 시

작업환경측정대상은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공사규모 및 작업 인원과는 상관없이 적용됨. 다만, 공사기간, 한시적인 작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의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인 경우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동 규칙 제4조)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됨

(산업보건환경과-300, 2004.01.16.)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8호(임시작업) 및 9호(단시간작업), 제421조 제1호(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이하 사용) 및 제605조 제2호(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을 제외

## 전자부품서비스센터에서 행하는 납땜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 질 의

전자부품수리서비스센터에서 반복적인 수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납(납땜 작업)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회 시

반복적인 수리작업으로 인하여 납에 꾸준히 노출된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 건강진단 대상이라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371, 2004.01.26.)

##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니켈 및 6가크롬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질 의

용접봉 니켈함유량이 9~11%이며, 스텐레스 용접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 니켈이 발암성물질인지 또한, 스텐레스 용접시 6가 크롬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6가 크롬의 발암성물질 여부(크롬 함유량 19~22%)

### 회 시

니켈은 불용성화합물만이 발암성이며, 스텐레스 용접시 6가 크롬이 발생되어 작업자가 노출된다면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6가 크롬은 발암성물질임

(산업보건환경과-888, 2004.02.23.)

##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3년도 상·하반기 결과를 토대로 횟수가 1년 1회로 조정된 경우, 2004. 1. 1부터 확대·적용되는 물질을 측정해야 할 경우 측정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2. 용접작업의 경우 오존 등이 발생되는데 확대·적용되는 물질에 따라 오존을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오존은 2차 부산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회 시

1.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확대·적용된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2.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차 부산물로 발생되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을 해야 함

(산업보건환경과-927, 2004.02.24.)

### 단시간 노출측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 질 의

1. 단시간(STEL)측정은 꼭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등간격으로 4회 이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2. 15분간 4회 측정할 경우 시료는 몇 개로 하는지,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보는지, 측정결과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회 시

1. 단시간(STEL)측정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시간가중평균농도(TWA) 측정에 대한 보충적인 수단임. 따라서 단시간 측정은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4회 이상 측정을 해야 평가 할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2005-49호) 제18조 참조

2. 15분간 4회 측정할 경우 각각 다른 시료로 포집하며, 15분간 측정한 4회 중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판정. 측정결과서는 4회 측정한 측정치를 측정치란 등에 모두 기입하고, 비교란에 단시간 노출측정 또는 STEL 측정이라고 기입함

(산업보건환경과-1091, 2004.03.03.)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 제18조

##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 기관·방법·주기

### 질 의

1. 측정장비 검교정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만약 의무사항이라면 대상, 주기, 기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시 1인당 1일 2개 사업장 이상 측정시 거리 등의 기준이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고시인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운영요령(별첨 참조)에 의거 측정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일 2개소 측정시 거리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다만, 1일 2개소 측정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의 측정시간, 측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임

(산업보건환경과-1253, 2004.03.10.)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 제17조~제31조

## 근로자가 용접용 보안면을 착용하고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방법

### 질 의

용접보안면 내부에서 측정할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지

### 회 시

1. 귀하가 용접보안면을 착용한 경우 그 내부에서 용접흡을 측정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그림 1. 용접용 시료채취기 설치모습 1



그림2. 용접용 시료채취기 설치모습 2

2. 보안면의 종류에 따라 시료채취기 설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
  - 그림 1과 같이 보안면 자체에 3단 카세트를 부착하여 용접시 보안면을 내리면 보안면 안에서 시료채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고,
  - 그림 2의 경우는 보안면을 내렸을 때 시료채취기가 보안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턱선 등에 고정시키는 방법
3. 상기방법은 하나의 예이며, 이는 현장 근로자의 보안면 종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조건에 따라 적당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그림 2는 올바른 시료채취기 위치와 잘못된 시료채취기 위치 모습을 동시에 보여 주는 사진임

(산업보건환경과-1405, 2004.03.15.)

## 일부공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향후 측정대상 및 주기는

### 질 의

1. 시행규칙 개정으로 납땀시 발생하는 납 외에 주석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 (개정·시행전의 유해인자는 최근 1년간 노출기준 미만)
2. 전체 공정 중 일부 공정만 초과된 경우 전 공정을 모두 측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초과된 공정만 측정해야 하는지
3.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급성독성물질과 만성 중독물질의 구별 근거는 무엇인지

## 회 시

1. 최근 1년간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연속하여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측정 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적용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 하여야 함
2. 일부 공정이 초과 된 경우에는 6월 1회 이상 전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함. 단, 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3월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3. 만성중독물질은 납, 수은 등 주로 오랫동안 인체에 누적되는 물질을 말하며, 급성중독물질은 일산화탄소 등을 말하는데, 그 구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독성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천정값(Ceiling)으로 되어 있는 노출기준, 만성중독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가벼운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은 노출기준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음

(산업보건환경과-1448, 2004.03.17.)

##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1. 작업물량에 따라 소음 수준이 80dB(A)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측정대상 여부
2. 소음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에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측정 실시대상 여부

## 회 시

질의 1, 2에 대하여 ; 소음의 측정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제1항에 의거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을 측정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 근무여부가 측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산업보건환경과-1493, 2004.03.18.)



## → 타 지방관서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의 측정·대행 가능 여부

### 질 의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역에 소재하다가 타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시 측정 및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 및 보건관리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함. 그러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우에는 타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내용을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함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9조제4호의 규정)

(산업보건환경과-1494, 2004.03.18.)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55호)」 제9조

## → 작업환경측정기관 추가 지정 및 출장소 운영 가능 여부

### 질 의

A 노동관서에 소재한 기관(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B 노동관서에 지정측정 기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A 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고 B 노동관서에서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 회 시

A 관서에 소재한 기관이 B 관서에 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A 관서에서 지정을 받은 후 B 관서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산업보건환경과-1531, 2004.03.19.)

## 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 질 의

폐수처리장에 가성소다 포대(25kg)의 윗부분을 열어 1일 1~2회로 30초 내지 1분 정도 가성소다 투입작업이 이루어질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회 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6조(정의)제9호에 의거 단시간작업에 있어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이루어진다면 측정대상이라고 판단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업보건환경과-1925, 2004.04.08.)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 제8호(임시작업) 및 9호(단시간작업), 제421조 제1호(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이하 사용) 및 제605조 제2호(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을 제외

## 8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 평가방법

### 질 의

1. 8시간 이상되는 소음에 노출되는 소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2. 도정사업장(정미소)의 소음이 90dB를 근접 또는 상회하는 경우 측정대상 여부

### 회 시

1. 현재 규정상 1일 8시간 이상의 소음노출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음
2.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대상임. 따라서 도정사업장의 소음이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가 90dB를 근접 또는 상회한다면 측정대상이라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2017, 2004.04.09.)

## → 포름알데히드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질 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 불검출로 나타나고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 회 시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제11의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측정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동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인 경우에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2415, 2004.04.30.)

## →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및 단시간 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질 의

1. 유해인자가 소음과 목분진인데 측정결과 최근 2회 이상 노출기준 미만이고,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는 경우 1년에 1회 측정이 가능한지
2. 유해인자 노출시간이 1일 1시간 이내의 경우 측정대상 여부
3. 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가 있는지
4. 작업환경측정기준이 지방관서마다 다른지

### 회 시

1.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고 소음과 목분진 등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발암성 물질은 예외)에 대하여 최근 2회 측정한 결과 2회 모두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 1회 측정이 가능함
2.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의 “단시간작업”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없음

3. 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측정대상 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대상 여부 판정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임
4. 작업환경측정대상 기준은 지방노동관서마다 다를 수 없음

(산업보건환경과-3558, 2004.06.29.)

## 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의 측정주기 및 범위

### 질 의

발암성 취급 공정이 있을 경우 작업환경 측정을 취급공정만 2회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공정을 2회 측정하는 것인지

### 회 시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다른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미만 등 규칙 제93조의4 제2항의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 취급 공정에 대해서만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함

(산업보건환경과-4006, 2004.07.16.)

##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시기는

### 질 의

1년에 1회로 횟수조정을 받은 A사업장(최근 1년간 공정설비 등의 변경은 없는 상태)은 '02년은 측정을 실시하였으나 '03년에는 측정 미 실시로 지방노동관서의 시정지시 후 '04년 상반기에 측정을 실시하였을 때 향후 측정시기는 언제인지 (1년에 1회 측정주기 완화가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은 매 6월에 1회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여야 하며 다음 동조 제2항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1년에 1회로 측정횟수가 완화된

- ①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 ②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따라서, A사업장의 경우 '03년 측정 미 실시로 동조 제2항제2호 작업환경측정 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동조 제1항에 따라 6월에 1회(2004년 하반기)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04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고 동조 제2항1호를 만족할 경우 '05년부터 1년에 1회로 측정횟수가 완화됨

(산업보건환경과-4398, 2004.08.03.)

### 노출근로자가 1인이고 지역시료채취 할 때 시료수는

#### 질 의

단위작업장소의 노출근로자가 1인일 때 지역시료채취를 할 경우 시료수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지역시료채취방법은 장소적 개념으로 노출근로자가 1인이라 할지라도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19조(시료채취 근로자수) 제2항에 따라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4399, 2004.08.03.)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 제19조 제2항

### 염화비닐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 질 의

PVC 수지를 이용한 압출 또는 성형작업시 발생하는 염화비닐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의거 염화비닐이 PVC 수지내 중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1134, 2005.03.02.)

## → 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질 의

소독약 제조업체로서 메탄올(120kg/월), 디클로로벤젠(1,930kg/월), 크레졸(200kg/월)을 사용하고 월평균 1.5일 가량(약 8~16시간) 작업이 이루어질 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지

### 회 시

메탄올, 디클로로벤젠, 크레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되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함

다만, 임시작업(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함) 및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을 제외함)을 행하는 작업장은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동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에도 해당됨

(산업보건환경과-2122, 2005.04.19.)

## → 분진작업과 상시 분진작업의 차이

### 질 의

“분진작업”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상시 분진작업”은 어떤 것인지

## 회 시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분진작업의 종류)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상시분진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작업”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임시분진 작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의미하는 것임

(산업보건환경과-2150, 2005.04.20.)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6조 제2항 및 [별표16] 참조

## 시멘트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질 의

1. 시멘트의 성분 분석표상 금속류인 산화알루미늄 성분이 65% 미만, 산화마그네슘 8.2%, 산화제2철 5.0% 미만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2. 시멘트 성분 중 크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3. 사업주가 5개의 측정대상 물질중 3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측정기관도 책임이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의거 시멘트 성분내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분진 및 흙이 중량비율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됨
2. 시멘트 성분 중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이 중량비율 1%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됨
3.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측정기관도 측정대상항목을 누락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산업보건환경과-2560, 2005.05.10.)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일부를 누락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3만원(1차), 12만원(2차), 30만원(3차)의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

## 단시간 납땜업무가 측정대상 등이 되는지

### 질 의

1. 옥내 작업장에서 장비수리를 위해 납땜업무를 1일 30분미만으로 작업하되 매일 작업하는 것이 아닐 때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와 국소 배기장치 설치 의무 여부는
2. 공기청정기와 같이 재순환방식의 국소배기장치가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임시작업(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및 단시간작업(납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에 해당된다면 보건규칙 제169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 및 제170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의 규정에 따라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특수 건강진단 대상에는 해당됨
2.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닥트, 배풍기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보건 규칙 별표 8에 따른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할 수 있으면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될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과-2731, 2005.05.19)

※ 기존 보건규칙 제169조 및 제170조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3조 및 제424조로 개정

## 발암성물질 초과시 해당 유해인자만 측정하여야 하는지

### 질 의

1. 작업환경 측정결과 발암성물질 초과, 화학적 인자 2배 초과일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만 3월에 1회 측정하는 것인지



2. 시행일자는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인지
3. 측정결과 일부 공정에서 물리적 인자 초과, 화학적 인자가 초과(2배 미만) 되었을 경우 해당 작업장 및 작업공정의 해당유해인자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측정주기 완화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전체 공정에 대해서 6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4.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의 경우 해당유해인자(발암성물질)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대상인지, 아니면 해당공정 전체 유해인자인지 아니면 사업장 전체가 6월에 1회 이상 측정대상인지

#### 회 시

1.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49호)은 공포한 날('05.10.7)부터 시행함
- 3, 4. 작업환경측정 횟수가 3월에 1회 이상 또는 1년에 1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은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팀-911, 2005.10.19.)

###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작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2항에 의해 6개월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발암성물질은 제외) 사업장 전 공정이 아닌 “해당 작업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별로 적용해도 되는지
2. 측정주기 연장(6월에서 1년)요건 중의 하나인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을 사업주가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2항에 의한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주기의 조정(연장)은『작업장』단위로 적용됨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로 적용되는 경우는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발암성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측정주기가 3월에 1회 이상으로 단축되는 경우의 기준임
2. 측정주기 조정(연장)을 위해 사업주가 조정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작업환경 측정을 누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팀-864, 2006.01.27.)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만원(1차), 20만원(2차), 5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

##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질 의

토목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4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자체구입한 후 산업위생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8시간 시간가중평균을 측정한 결과 80dB을 넘지 않을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제1항에 의해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93조의2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따라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는 바, 소음을 측정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9-78호) 제26조(소음의 측정방법),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규정을 준수하여 측정·분석하여야 함

그러나 위 규정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아닌 80dB 발생소음에 대해서는 측정자의 자격과 측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측정대상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1463, 2006.03.07.)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 제26조(소음의 측정방법) 및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참조

## 노출수준을 달리하는 작업장이 혼재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 질 의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3개의 작업장을 가진 동일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가” 작업장 : 모든 공정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며 최근 1년간 그 작업장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음

“나” 작업장 :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물질 제외)가 있으나 노출기준 2배 미만임

“다” 작업장 :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화학적 인자가 있음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횟수의 조정은 동조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발암성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여 측정 주기를 6월에서 3월에 1회 이상으로 단축하는 경우(이 경우 측정대상은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를 제외하고는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인자가 있을 경우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나”작업장에서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2배 미만)하므로 모든 작업장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초과하는 “다”작업장에 대해서만 해당공정의 당해 유해인자에 한하여 3월에 1회로 단축하여 실시하면 됨

(산업보건환경팀-2004, 2006.04.10.)

## →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 해당 여부

### 질 의

황산 노출이 있는 축전지실에서 작업(축전지 증류수 보충과정)은 2명이 반기 1회 1~2시간 실시하고 점검은 13명이 교대로 3개의 축전지실을 매월 10분 정도 점검하며 근로자 1명의 최대 황산 노출 시간이 월 평균 10분 정도일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제1항제1호의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에 해당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하며, ‘단시간작업’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함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축전지실에서의 작업은 ‘임시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노출정도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환경팀-1567, 2007.03.19.)

## →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질 의

병원 및 의원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글루타르알데히드 등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제외)

해당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므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

(근로자건강보호과-1090, 2008.12.30.)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8호(임시작업) 및 제9호(단시간 작업) 참조

## 유기용제 작업환경측정 시 수동식 시료채취기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수동식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유기용제를 측정할 때 사용상 주의사항 및 모든 유기용제 측정에 수동식 시료채취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수동식 시료채취기는 확산, 흡착, 투과의 원리를 이용하여 공기 중 유해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 측정이 가능하나 수동식 시료채취기 제품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측정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특히, 작업장내 기류나 습도의 영향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저농도 환경에서 측정하거나 복합물질을 측정할 때에도 정상범위를 이탈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수동식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제조사에서 신뢰성있는 실험 등을 통해 제시하는 시료채취유량, 탈착효율 등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가 있는 물질에 한하여 그 관련 정보와 국내외 전문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측정·분석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과-326, 2010.08.10.)

## → 허용소비량 및 함유량 산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질 의

1. 허용소비량 산정시 해당물질의 양만 가지고 산정하는지 아니면 총량을 가지고 산정하는지
2. MSDS상 물질 함유량이 특정한 값이 아닌 범위(range)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은

### 회 시

1. 허용소비량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출하므로 혼합제제인 경우 함유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예를 들어 1kg의 혼합물질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10g만 들어있는 경우 허용소비량 산정시 10g을 산입하여 계산)
2. 작업환경측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범위중 최고값(max)(예: 0.5~2%인 경우 2%)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다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그 함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국민신문고, 2012.03.08.)

## → 공장의 가동이 연기 또는 중단된 경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여부

### 질 의

1.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을 제외한 다른 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일 경우 하반기에는 소음만 측정하면 되는지
2. 만약 내부 사정으로 공장의 가동이 계속적으로 연기될 경우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여부
3. 휴업신고 등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 여부

### 회 시

1.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외한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소음은 85dB)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따라서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하반기에는 소음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작업환경측정은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공장의 지속적인 가동 연기 등으로 소음에 대한 노출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면 공장이 가동된 후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 질 때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3.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 중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휴·폐업 등의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민신문고, 2012.08.30.)

## 2. 유해물질관리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은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방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⑨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⑩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⑪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내 통신(Web site)을 통한 MSDS 비치(게시)의 법적 적정 여부

### 질 의

우리 사업장은 금년 경영계획 수립시 “MSDS 전산화” 항목을 집어넣었음. “MSDS 전산화”란 각 물질별 MSDS 및 부서별 물질 사용현황, 물질별 유해성, 당사 자체규정인 “MSDS 운영지침”의 내용을 전산화 하여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사원이 공유화 하기 위함이며 참고로 우리 사업장은 각 현장의 휴게실에 PC가 설치되어 있고, 그 PC를 이용 사내 홍보사항의 전달 및 게시하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사업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MSDS 전산화”가 법 제41조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에관한기준 제10조의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문서(sheet)로 작성하여 사업장내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함.

(산보 68343-25, 2000.01.13)

## 순간접착제에 유해그림의 부착

### 질 의

순간접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화학회사로 지금까지 포장에 ‘유해그림’을 넣지 않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7-27호)등에 따라 경고표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이나 문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이를 담은 각각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이 경고표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 유해그림, 유해위험성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는 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한다는 취지의 문구임.

관련 고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고시 제97-27호)”이며, 이 기준은 노동부 인터넷([www.molab.go.kr](http://www.molab.go.kr)) → 부서홈페이지 → 산업안전국 → 법령 및 판례 → 고시안내에 기록되어 있음.

(산보 68343-147, 2000.02.25)

##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여부

### 질 의

저의 회사는 미군항공기를 정비하는 관계로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 표지가 되어 있지 않음. 물론 제품의 구성물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긴급시 조치사항이 제품에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미국법에 의한 경고 표시가 되어있음. 또한 제품의 MSDS가 번역되어 보관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고표지를 따로 부착 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경고표지는 동법 제4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7-27호) 제11조에 따라 한글로 작성·부착하여야 함.

(산보 68343-256, 2000.04.11.)

## → 염화메틸렌의 유해여부 및 관련 규정

### 질 의

염화메틸렌의 유해여부, 관련된 규제 또는 규정 등이 있다면 알고 싶음.

### 회 시

유해성 : “염화메틸렌”은 피부 및 점막에 약간의 자극이 있고,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회(ACGIH)에서는 발암성추정물질(A2)로 규정하고 있음.

법령근거 : “염화메틸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에 1회이상 취급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고, 취급 근로자는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인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작업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또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에서는 “제2종 유기용제”로 규정되어 있어 동 규칙 제119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산보 68343-221, 2001.04.13.)

## →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 질 의

초산에틸을 생산하여 탱크로리 및 드럼(200ℓ 강제드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대신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1. 기존 경고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은 노랑색 바탕에 검정색 그림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의 초산에틸 강제드럼은 바탕색상이 갈색이므로 그 위에 검정색 경고 표지를 인쇄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2. 질의 1의 사항이 적합지 않을 경우 당사 초산에틸 강제드럼의 바탕색을 갈색에서 노랑색으로 바꾸고 경고표지를 검정색으로 인쇄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 회 시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하고자 할 때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을 유해그림의 바탕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1리터(ℓ) 미만의 소량 용기에만 적용됨(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 제15조제3항 단서 참조)

따라서 귀사가 화학물질을 담은 강제드럼(200ℓ)에 경고표지를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 고시의 경고표지 부착원칙(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 유해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에 따라 작성·표시하여야 함.

(산보 68343-271, 2000.04.18.)

###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경고표지가 부착된 경우 타 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1. 제품 경고표지를 위하여 폐사의 제품의 유해성 분류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 분류는 다르나 경고문구가 유사한 제품들이 많아 제품 경고표지를 단일화시키고자 이들을 유해성 분류가 높은 것으로 통합하여 경고표지를 표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예) 인화성, 유해성→고인화성, 유해성  
유해성, 자극성→유해성  
과민성→유해성  
인화성→인화성, 유해성

2. 현재 폐사에서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영문경고표지가 부착된 원료의 경우 개별경고표지 부착 대신 보관, 사용장소에 관련 경고표지 및 유해성 정보를 게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료제품의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7-27호)」에 따라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위험성의 분류문구(16가지)는 당해 제품의 상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 문구에 따라 취급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가 달라짐.

따라서 귀하가 예를 든 “인화성”을 “고인화성”으로, “자극성”을 “유해성”으로, “과민성”을 “유해성” 등으로 문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제품의 유해·위험성에 따른 정확한 분류문구를 경고표지 상에 표기하여야 함.

2. 현재 귀사에서 직수입하는 영문 경고표지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동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용기별로 한글 경고표지를 작성·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장소에 유해성정보 등의 게시 및 교육으로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갈음할 수는 없음.

(산보 68343-362, 2001.06.05.)

## → 에틸알코올 등 혼합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MSDS 작성·비치 여부 ←

### 질 의

부탄가스흡입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탄캔내에 고미제라는 물질이 데나토늄 벤조에이트(Denatonium Benzoate)와 에틸알코올의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동 물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독성 여부 및 그 근거와 취급 근로자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해당여부

- 데나토늄벤조에이트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대상물질(유해물질).
- 에틸알코올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대상 물질(자극성물질, 인화성물질).

####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데나토늄벤조에이트 : 단시간 노출시 천식과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음.
- 에틸알코올 : 눈, 피부, 점막에 자극적이고, 장기간 노출시 중추신경 및 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음.

(산보 68343-633, 2001.09.12.)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허용소비량의 해석

### 질 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관련 작업장 체적을 감안한 허용소비량이 10g이고, 10명이 하루 총 1시간 미만으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며, 10명이 하루 사용하는 양을 모두 합한 것이 30g인 경우, 허용소비량 초과 유무

### 회 시

허용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허용소비량(g/hr) = 작업장체적/15」임 귀하가 체적을 감안하여 계산한 허용소비량 값이 10g/hr로 계산되었다면 하루 8시간 동안은 80g/day이며, 만약 8시간 동안 사용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총량이 30g/day라면 허용소비량 미만이라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472, 2005.01.25.)

## 허용소비량 단위 및 사용량의 적용방법

### 질 의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에서 1시간당 허용소비량을 계산할 때 단위 및 사용량의 적용방법은 취급근로자 전체에 대한 사용량인지 근로자 1명에 대한 사용량인지
2.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 회 시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소비량의 단위는 그램(g)이며, 사용량은 작업장 체적 내에 근로하는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는 사용량임
2.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 여부는 작업장의 크기, 유해물질 사용량, 작업장의 환기량,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의 유무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577, 2005.01.28.)

##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의 독성시험은

### 질 의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의 독성 시험은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지와 수입품의 경우 해당 제조국가의 공인 실험결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2. 일반소비자용 주방용 세척제를 슈퍼마켓에 판매했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수입물질인 경우를 포함함)의 시험은 우량 실험실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 일반소비자용 주방용 세척제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양도대상에서 제외됨

(산업보건환경과-1402, 2005.03.16.)

## → 허용소비량의 작업시간 및 정확한 단위환산 여부

### 질 의

1. 「작업시간」 1시간의 의미가 유해물질 취급업무인지 또는 8시간 중 평균 1시간을 의미하는지
2. 작업시간 1시간당 유해물질 사용량의 근거 무엇인지
3. 유해물질 양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기하는데 리터(ℓ)나 밀리리터(ml)인 경우 어떻게 환산해야 하는지
4. 허용소비량의 정의 및 작업환경측정 적용범위와 관련규정은 무엇인지

### 회 시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제1항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작업시간」이란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을 의미함

- 2, 4. 사용량의 근거 및 허용소비량의 정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
3. 무게(g)를 부피( $\ell$  나  $\text{ml}$ )로 환산할 경우 유해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2440, 2005.05.07.)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 중 “일반소비자용 제제”의 범위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는 물질 및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제, 소독용락스, 염소제제, 알콜 소독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 회 시

시행령 제32조의2제11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용 제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임. 동 규정은 입법 취지상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제품”으로 해석함

해당 화학제품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 화학제품으로서 판매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임

※ 구체적인 예로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된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페인트, 윤활유 등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라도 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경우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제품인 경우

(근로자건강보호과-1545, 2010.06.25.)



## 성형완제품(Article)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여부

### 질 의

제조 당시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작업 시 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는 성형 완제품(Article)에 발암성 물질이 미량 함유되었다면 법 제41조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의미하고
-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의미함

노동부고시 제2009-68호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형화된 완제품”은 우선 법 제41조에 따른 위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의 범위 내에서 해석 되어야 하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형 완제품(Article)”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중에서 고체 상태로 가공된 화학제품을 의미하며, 입자(particle), 펠릿(pellet) 등의 형태로 가공된 중간 제품이 주로 해당 됨

한편, “성형 완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기능·용도가 최종 사용까지 유지되는 제품을 의미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서 사용되는 등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는 화학제품이므로 “성형 완제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성형 완제품”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국 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및 경고표시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문의하신 A사의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제품은 추가적인 가공 과정이 없이 그대로 자동차 머플러에 장착되는 “성형 완제품”이므로 법 제41조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산업보건과-16, 2010.07.13.)

## → 화학물질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기재 방법

### 질 의

경고표시 기재항목인 “공급자 정보”를 일본의 제조자, 한국의 수입자 중 어느 곳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UN GHS 지침서에 따르면 “공급자 정보”를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음

### 회 시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가 필요시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정보를 말함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며, 해외 제조자도 포함될 수 있음

다만,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는 취지에 미루어 볼 때에 해외 제조자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주가 필요 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에 국내 수입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참고로,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 제5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한국어로 기재하여야 함

(산업보건과-29, 2010.07.13.)

## → 타 지방관서 관할 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 질 의

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화학물질 제조·유통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송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호)」제12조 제1항 및 동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별 관할 구역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감독 시 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제조·유통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유통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건을 이송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과-161, 2010.07.26.)

## 화학물질 경고표시 의무위반 여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질 의

1.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의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2.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3. 여러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별·공정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 회 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13 제42호)에서는 화학물질의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따른 위반건수 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화학물질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관계없이 경고표시 미 실시 자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과-1132, 2010.10.22.)

##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시 재교육 실시 여부 및 사용 사업주의 수정 가능 여부

### 질 의

1. GHS MSDS로 개정하였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2. 화학물질 공급업체의 사정으로 개정된 GHS MSDS를 양도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 사업장에서 직접 MSDS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 사용가능한지

### 회 시

1.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은 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5에 규정되어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 재교육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모든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작성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10년)

##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 질 의

1. GHS 시행 전에 해외 해상 선적한 물품이 국내 GHS 시행 이후에 들어온다면 GHS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2.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3. 국내 및 국외의 원료 공급자가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 사업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수입자인지 공급자인지
4. 하반기 사업장 점검 시 GHS에 따른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으로서 해당 화학제품의 국내 반입 일자가 2010.7.1 이후라면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행하여야 함
2. 해외 공급자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행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는 사업주는 MSDS 및 경고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시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4. 2010.7.1.부터 단일물질에 대하여 GHS에 따른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신문고, 2010년)

### → 시행일 이전 판매된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 질 의

1. 2010년 7월 이전에 생산되어 이미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2. 2010년 7월 이전에 생산되었으나 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3. GHS 기준에 따라 아무런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GHS에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2010.6.30. 이전에 이미 유통되었거나 사용 중인 단일물질에 대해서 기존 경고표지를 추가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2. 2010년 7월 1일부터 단일물질에 대해 GHS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되지 않고 제품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단일물질에 대해서도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 제3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자로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사업장내에 갖춰 두어야 함  
(국민신문고, 2010년)

##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변경 사항

### 질 의

1. GHS 제도 중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의 차이는
2. MSDS와 경고표지 상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3. 경고표지의 유해위험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4. 경고표지 표기의 오류 시 후속조치는? 기존 경고표지 인쇄위에 별도의 스티커 작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기존 경고표지 그대로 유통시켰을 경우 어떤 징계가 있는지
5. MSDS 및 경고표지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 회 시

1. 단일물질이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외한 물질을 말함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불순물 또는 부산물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물질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됨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 2009-68호)」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경고표지의 명칭은 MSDS 상의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3. 동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서 경고표시는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수정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존 경고표지 위에 재부착하거나,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4. MSDS 미제공 및 경고표시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신문고, 2010년)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장소

### 질 의

각 공정별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경우 법규 충족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두어야 함

또한,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 2009-68호)」 제12조제1항에서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갖추어 두라고 명시되어 있음

1.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따라서 귀 사업장의 각 공정별 교육장이 상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였다면 법규를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0년)

## → 화학물질 경고라벨(GHS라벨)중 그림문자 표시사항

### 질 의

1. 그림문자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표시 가능 여부
2. 경고표지 중 그림문자 란에 빨간색 테두리 4개를 미리 제작하여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1.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제8조제3항에 따라 그림문자의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해야 함

다만,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즉, 바탕색이 붉은 계통의 색인 경우에 한하여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이어야 함

2. 또한 그림문자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을 표시하지 않고 테두리만 표시할 경우 인화성 가스 구분2, 수유독성 등과 같이 그림문자가 없는 구분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테두리만 표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12.03.13.)

## MSDS 작성 시 구성 성분 관련 질의

### 질 의

1. 완성된 제품(도료)의 색에 따라 MSDS 역시 색상별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2. MSDS 상 기재되는 구성성분의 함유량 총합이 100%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따라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별로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해야하며 질의하신 도료의 경우에도 일부 구성성분이 유사하더라도 색의 차이로 인해 구성성분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제품명이 다른 경우 각기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제11조제8항에 따라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  $\pm 5$  퍼센트(%)의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음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구성 성분을 함유량 범위로 표시하는 경우 구성 성분의 함유량의 총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국민신문고, 2012.06.04.)



## 경고표지 항목 및 대상화학물질 해당여부

### 질 의

경고표지 항목관련

1. 예방조치문구 항목 대신 다른 항목명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2. 공급자 정보에 회사 이름만 기재하거나 전화번호 없이 회사 이름 및 주소만 기재해도 되는지
3. 혼합물질에 한하여 GHS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고표지 사용이 가능한지
4. 동불, 납스틱, 가스류, copper foil, prepreg, cover lay, thin core등이 MSDS 및 경고표지의 대상이 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제2항에 따라서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함
  1. 명칭 :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또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제7조에 따라서 경고표지의 양식은 다음과 같음

|                                                                                     |            |
|-------------------------------------------------------------------------------------|------------|
| (그림문자 예시)                                                                           | (명 칭)      |
|  | (신 호 어)    |
|                                                                                     | 유해·위험 문구 : |
|                                                                                     | 예방조치 문구 :  |
| 공급자 정보 :                                                                            |            |

2. 따라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예방조치 문구’로 기재를 하여야 하고 공급자 정보는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 시 연락을 위한 것이므로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제2항에 따라서 두 종류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2013년 6월 30일까지(2013년 6월 30일 당시 유통·사용 중인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혼합물질에 한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MSDS 및 경고표지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혼합물질의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GHS 기준이 적용(전면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시행시기 이전부터라도 GHS 기준에 따르도록 권함

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다만, 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임.

여기서 고형화된 완제품이란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기능·용도가 최종 사용까지 유지되는 것으로서 사용 중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과정이 없어야 함  
따라서 각 물질의 사용공정에 따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적의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12.07.06.)

##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대상여부

### 질 의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자료가 없어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우 GHS 경고표지 부착대상 해당 여부

### 회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번의 유해성·위험성의 모든 항목이 “해당없음

(분류되지 않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작성 대상이 아님

다만,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의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도·제공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양도·제공받은 자는 통보받은 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있어야 함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 “자료 없음”의 경우 아직 유해성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경우 경고표시에 명칭 및 공급자 정보를 기재하시고,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는 “자료 없음” 등으로 표기, 예방조치 문구는 MSDS를 검토한 후 예상되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MSDS를 참조하십시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국민신문고, 2012.07.31.)

##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 표시

### 질 의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표시 부착 관련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실험 과정 중 화학물질을 옮겨 담은 소분용기에도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 회 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밀리리터(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음

동조 제3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 있으며

여기서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함(동고시 제2조제8호)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함

따라서 사용하시는 소분용기의 용량이 100밀리리터(ml)를 초과하고 위의 반제품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실험을 위해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옮겨 담은 후 그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면 그 소분용기는 반제품용기라 할 수 없음)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에 맞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국민신문고, 2012.09.18.)

##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관련 질의

### 질 의

1. 기존제품과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신규제품이 도입된 경우 근로자 MSDS 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의 여부
2. GHS 개정에 따른 근로자 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및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함.

따라서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에는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동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기존제품과 신규제품을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GHS 개정에 의하여 MSDS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취급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함

(국민신문고, 2012.09.27.)

## 원료의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여부 관련 행정해석 변경

### 1. 검토배경

- 「약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

###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 「약사법」 제2조제4호

###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입니다.
- 「약사법」에서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원료의약품이 대한약전에 실려 있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제외 제제로 볼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0년)

### 4. 문제점

- 「약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약품 중 동법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의약품이 누락됨

### 5. 행정해석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입니다.
- 이 경우「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란 동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물품을 말합니다.

####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따라서 원료의약품이「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등 제외 제제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신문고, 2012.11.21)

### 3. 석면조사 및 관리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련 규제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을 제조 및 사용의 용도가 아니고 기기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37조에서 누구든지 “청석면”, “갈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에서는 백석면 또는 기타 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주는 적정 시설,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사용토록 하고 있음.

또한 석면 또는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동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석면관계 작업(제5장의2)”에서 석면분진의 비산방지조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산보 68343-169, 2000.03.04.)

## 석면의 취급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사항

### 질 의

석면의 취급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 사항은

### 회 시

석면(청석면, 갈석면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청석면, 갈석면은 제조, 수입, 사용 등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받은 사업주는 동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의2 석면관계작업(제173조 내지 제173조의9)」 및 「유해물질 제조·사용 허가기준(고시 제97-47호)」에 적합하게 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하여야 함.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 설비를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한 작업방법으로 제조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67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산보 68343-126, 2001.03.06.)

## 폐석면의 적절한 처리절차

### 질 의

1. 철거된 폐석면은 2중으로 봉합하여 지정폐기물로 구분 매립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2. 고형화된 건축자재는 철거시에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습식방법과 철거 부분을 비닐등 차단막을 이용하여 차단하여 분진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 처리하고 철거된 석면포함 고형폐기물은 일반 건축폐자재와 같이 매립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3. 석면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종류구분은 어떻게 되며 건물내 자재 중 석면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 회 시

1. 철거된 폐석면(석면포함 고형폐기물)의 매립처리 및 처리방법 등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소관사항임
2.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작업방법, 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계획수립, 경고표지의 설치, 습식작업, 장소밀폐, 음압유지,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 착용, 잔재물의 흡날림 방지조치 등이 있으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 내지 제24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3. 건물내 자재 중 석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편광현미경법, 전자현미경법 등이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과-3296, 2005.6.13.)



##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폐기 방법

### 질 의

1. 슬레이트에 사용되는 석면의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2.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 여부(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어지는지)
3. 일본에서는 '08년까지 건축물에 쓰여진 석면 자재를 모두 수거폐기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슬레이트가 포함되어지는지,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에 쓰여진 석면자재를 수거 폐기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1. 지붕재로 사용되는 슬레이트의 석면 함유량은 제조업체마다 다르며 과거 생산업체인 (주)금강고려화학(☎031-299-2000) 또는 (주)벽산(☎063-830-8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 석면이 슬레이트 등 고형화 상태의 물질에 함유되어 흩날리지 않아 흡입되지 않는다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슬레이트 지붕을 파쇄, 개·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작업 근로자에게 석면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 될 수 있음
3.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폐기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산업폐기물과 2110-6937)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보건환경과-4622, 2005.08.08.)

## → 불법으로 매립된 석면 처리방법

### 질 의

토지의 굴착과정 중 과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 슬레이트가 발생되어 처리할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질의한 바와 같이 이미 해체·제거되어 매립된 폐 슬레이트(석면이 1% 초과 함유된 경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석면함유물질의 위치와 범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거나 폐석면을 수거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보호의 지급·착용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수거된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환경부소관)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방법 등은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국민신문고, 2009.06.06.)

## → 석면조사 의무주체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 회 시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 → 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업체를 통한 작업대상 여부

### 질 의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대상이 아니면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회 시

산업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 조사대상이 아니라면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해야 하는 작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작업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제4호에 따른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는 바, 전기공사 등을 위한 석면함유제품의 해체작업 시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고 해당 작업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라면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함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 석면함유 자재에 나사를 박는 작업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질 의

작업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고 석면이 함유된 천정텍스에 석고보드를 덧입히기 위해 피스(나사)로 고정시키는 작업의 경우 등록업체를 통해 작업을 해야 하는지

### 회 시

천정텍스에 석고보드를 피스(나사)로 고정시키기 위한 작업을 할 경우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작업장 외부로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을 하여야 함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 → 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대상 기준

### 질 의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체가 하여야 하는 작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작업 후 공기 중 농도측정”을 해야 하는지

### 회 시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대상은 산안법 시행령 제30조의7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신고대상)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 →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의 의미

### 질 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는지

### 회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외에「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규정된 학력·경력자의 초급기술자도「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됨

- ※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 기능사보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 자격이나 취득한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토목분야의 기능사보 자격 보유자도 등록요건으로 인정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건축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

### 질 의

토목·건축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는

### 회 시

실무에 종사한 자란 시공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  
감리·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시설물 철거·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한 자를 의미함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공업계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기준

### 질 의

공업계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의미는

### 회 시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 공업계열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졸업자가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업계 외에 인문·농업·상업계 고등학교나 대학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과에 관계없이 인정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 석면조사기관 지정인력 또는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인력 중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나”목의 자로 대체가능 여부

### 질 의

지정조사기관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중 “나”목에 해당하는 자 1명을  
“가”목의 자 1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 회 시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별표 10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또는 등록 기준 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상위 개념이므로 “나”목에 해당하는 자 대신 “가”목의 해당자를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즉,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2명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요건으로 인정

※ 석면조사기관의 경우 분석인력에 해당하는 “다”목의 해당자는 별도로 두어야 함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대표자 인정 여부

#### 질 의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당해기관의 대표자도 해당되는지

#### 회 시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산안법상 지정 또는 등록요건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면 그 외에 달리 불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배제하기는 곤란함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 장비를 임대할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로 등록가능 여부

#### 질 의

등록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인정 여부

#### 회 시

지정 또는 등록기준의 해당 장비는 상시 보유하는 것이 원칙임

※ 임대의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1년 미만인 경우에는 리스상태가 연속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임대하여 보유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 확인 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 →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제2007-26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 회 시

원석(原石)과 같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제2007-2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바, 채굴과정을 거쳐 나온 석재도 그 속에 석면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따른 석면함유제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자연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석재라도 분쇄 등의 인위적 가공과정을 거쳐서 분말 등과 같이 제제(製劑)\*가 되는 것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임

※ “제제”란 어떤 물질의 유용성을 이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배합·가공된 물질을 말함  
(산업보건과-209, 2010.08.02.)

## →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기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개별 석면조사 대상 기준 미만의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여부

### 회 시

법적 기준 면적(건축물 50㎡, 주택 200㎡)에 대한 철거·해체대상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각각 1 이상인 경우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 연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A1/B1 + A2/B2$  [A1 : 모든 철거·해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B1 :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연면적(50㎡) 기준, A2 : 모든

철거·해체대상 주택의 연면적 합계, B2: 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연면적 (200㎡) 기준]

※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C1/B1 + C2/B2$  [C1: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 B1: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50㎡) 기준, C2: 모든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 B2: 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200㎡) 기준]

산출 값이 1 이상인 경우는 개별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동법에서 정한 각 개별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산업보건과-1469, 2010.11.19.)

##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 석면조사 실시 대상여부

### 질 의

비바람에 의해 무너진 건축물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석면조사 실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의 소유주 등이 파쇄, 개·보수 등(해체·제거)의 목적행위 전에 석면 함유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을 조사(석면조사)토록 한 것임

따라서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건축물 등이 붕괴, 파손되는 등의 경우는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과-40, 2011.01.05.)

## 석면관련규정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에 대한 사항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와 동법 제38조의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석면조사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동법 제38조의3의 석면조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의 입법취지는 석면조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자(미등록 일반철거업자를 포함)는 석면해체·제거작업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토록 한 사항으로서 해체·제거작업시 동 작업기준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동 조항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의 “석면조사 결과”라는 조문으로 인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등이 있어도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동 조문을 개정 중임  
(’11.4.12, 개정법안 국회제출)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의 위임을 받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부터 제105조까지에 동 작업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의무주체는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적인 적용범위인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주(개인 사업자 포함)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38조의3은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건설산재예방과-976, 2011.5.24.)

## 4. 건강진단

-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④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⑨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⑩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⑪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신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 요청가능 여부

### 질 의

요통등 근골격계질환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임신건강진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한 공정이 아닌 전 공정에서 작업도중 장시간 지게차운전, 허리를 굽혀 물건을 굴리는 작업, 바퀴달린 중량물을 순간적으로 미는 작업등으로 요통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사유로 조합의 대표자가 역학조사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 회 시

임시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골격계질환 등도 포함될 수 있음.

역학조사는 같은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건강진단의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가 직업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나 근로자대표가 요청할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시할 수 있음.

현재 역학조사는 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산보 68307-72, 2000.01.29.)

## 특수건강진단의 중복검사항목 인정여부

### 질 의

1. 보름전 연(鉛)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소음부서로 부서전환시 소음

배치전 건강진단 필수항목중 순음기도 청력검사와 연(鉛) 특수건강진단에서 받았던 중복되는 임상검사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중복된 검사항목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전에 검사했던 항목의 유효기간은

#### 회 시

1. 배치전 건강진단은 신규로 채용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서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임.

근로자를 소음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나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또한 다른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나서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검사항목과 동일한 배치전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당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사료됨. 채용시건강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다만, N, N-디메틸포름아미드·벤젠·사염화탄소·1, 1, 2, 2-테트라크로로에탄·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 등 6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시에는 동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없음.

(산보 68307-83, 2000.02.01.)

### → 소음청력검사의 방법과 기 유소견 판정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

#### 질 의

1. 특수건강진단 청력검사전에 소음으로부터 격리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격리를 취해야 하는지
2. 1998년 특수건강진단결과 소음성난청 직업병유소견자(D<sub>1</sub>)로 판정되어 소음 발생이 비교적 적은 공정으로 배치전환을 하였으며, 그 이후 특수건강진단이 아닌 일반건강진단을 받고 있음. 이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소음발생장소에서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시의 소음청력검사는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약 14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토록 하고 있음. 이는 건강진단과정에서 작업환경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 등을 배제하고 근로자의 가청역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를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중 ‘소음청력 검사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2.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차목 및 제9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119, 2000.02.14.)

## → 공업계 실습생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여부

## 질 의

공업계 고3 실습생의 경우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 회 시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안전·보건교육과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순히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일정기간 동안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음.

(산보 68307-491, 2000.07.12.)

## → 건강진단결과 추적검사 판정시 그 실시시기

## 질 의

특수건강진단결과 사업주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직업성요관찰자(C<sub>1</sub>)에 대한

추적검사 시기와 관련하여 검진 의사가 사후관리 소견란에 “1년후 추적검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

1. “1년”의 출발기준 시점은
2. “1년후 추적검사”라는 개념은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 회 시

“1년후 추적검사”는 검진 의사가 사후관리소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동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전후의 범위내에서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참고로, 특수건강진단결과 C<sub>1</sub>(직업병요관찰자) 또는 D<sub>1</sub>(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검진 의사가 사후관리소견으로 “추적검사” 판정을 하고 추적검사시기 및 검사 항목을 특수건강진단개인표에 기재 또는 별도의 서식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630, 2000.09.26.)

###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 질 의

1. 건강진단 병원을 노조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원을 지정하고 건강진단시행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
2.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건강진단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와 타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검진비용을 청구했을 때 지급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건강진단비용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산보 68307-631, 2000.09.26.)

## Air Gun(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 질 의

Air gun(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공정이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예를 들어, 70dB)으로,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을 입을 우려가 매우 낮은 경우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되는지

### 회 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리베팅기·절삭기 또는 주물의 자동조형기 등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강렬한 소음작업장으로 규정한 것은 압축공기로 원동력이 되어 기계 또는 기구를 작동하게 함으로써 그 동작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Air gun처럼 단지 압축공기 그 자체에 의한 소음은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소음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고시 제99-29호)〔현행 고시 제2001-45호〕제9조(특수건강진단대상)〔현행 제9조(특수건강진단 추가대상 업무 등)〕에 의거하여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옥내작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가 예시하신 소음발생기준(70dB(A))에서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산보 68307-650, 2000.09.30.)

## 일반질병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가능여부

### 질 의

1. 정기건강진단 결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에 대해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를 요하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본인의 병세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서를 받은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2. 일반질병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소견에 따라 근무중 치료, 근로시간 단축, 휴직 등의 사후조치를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

### 회 시

1.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강제로 각서를 징구하는 것은 그 목적이 비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동 목적의 각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음.
2.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판정된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조치이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질병 유소견자중 질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의 진단 소견 없이 휴직 등 근로제한 및 금지조치를 할 수 없음.

(산보 68307-761, 2000.11.24.)

## 작업환경측정결과 연속으로 노출기준 초과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

### 질 의

2000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면, 소음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1년에 1회로 단축이 되는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다음 년도에 동일공정에서 소음이 연속적으로 초과된다면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1년에 대하여 2분의 1로 단축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1회만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 회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1. 작업환경측정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따라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매년 노출기준을 초과한다면, 특수건강진단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의 주기대로 2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됨.

또한, 상·하반기 구분없이 최근 1년동안 유기용제(톨루엔)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주기를 단축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됨.

(산보 68307-797, 2000.12.11.)

## 정기건강진단의 법적의무 및 사후 불이익 여부

### 질 의

1. 회사에서 매년 1~2회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2. 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하게 하는 건강진단결과 산업재해가 아닌 고질적인 병으로 인하여 불리한 판정이 나왔을 때 그 판정으로 인하여 해고당할 우려가 있는지

### 회 시

1. 건강진단은 「특정인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 이전 또는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전에 건강장해나 질병을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로 실시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은 「의학적 선별검사로 건강에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질병발생의 전 단계에서 조기에 찾아내어 보건지도 또는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이상인 질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보 68307-827, 2000.12.21.)

## 특수건강진단 분석수가 적용

### 질 의

특수건강진단중 분석수와 관련하여 예전에는 의료보험에도 등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수가 적용되었는데 2001년도 보험수가에 노동부 고시 수가 항목에 해당되던 분석항목이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특수건강진단시 어떤 수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101조), 노동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2000. 5월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가 우리부에 특수건강진단수가를 승인해 주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요양급여대상”으로 분류된 검사항목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을 따르고 “비급여대상”으로 분류된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합리적인 수가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중 급여목록표 또는 비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산보 68307-111, 2001.02.28.)

##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건자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 의무

### 질 의

사용자의 질병유소건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일반질병유소건자(D<sub>2</sub>) 또는 요관찰자(C) 통보를 받으면 사직처리 되는 것인지 치료기간에는 휴직처리 하는지, 요양기간에 급여는 지급하는지 여부.

### 회 시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후관리조치에 협조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에서 의사가 판정하는 건강관리구분(A, C, (C<sub>1</sub>, C<sub>2</sub>), D<sub>1</sub>, D<sub>2</sub>, R)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휴직 또는 사직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주는 동료 근로자 또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자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을 하게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그 외의 사항은 회사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을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재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

다만, 산재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당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81조 및 제82조).

(산보 68307-113, 2001.02.28.)

## → 포름알데히드 함유중량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대상 범위

### 질 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업장에서 제공한 MSDS자료에 포름알데히드를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하여야만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인지 여부

### 회 시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미만 함유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건강위험(Health Risk) 수준이상으로 포름알데히드에 폭로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153, 2001.03.19.)

## →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 질 의

간기능에 이상이 없고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이 양성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구내식당출입을 금하고 휴직이나 사직을 권하는 것이 노동관련법규상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 회 시

질병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의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단순히 B형간염 건강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산보 68342-403, 2001.06.22.)

## → 하나의 회사가 분리 독립된 경우 건강진단 인정 범위

### 질 의

A라는 회사에서 2001년도 5월에 한 공정이 분리되어서 B라는 회사로 완전독립 되었음. 근로자 전체는 A회사에서 그대로 왔기에 유해부서와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대로임. 이와 같은 경우 다시 채용·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A회사 주기에 따라서 일반·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지 여부

### 회 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분할 계약서 상에 기존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의 변동사항 없이 승계되고, 사업장의 분리 독립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실시한 당해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실시결과 등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시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종전 회사의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분리 독립된 사업장의 작업이 새로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정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시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고, 새로운 주기에 따라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당해연도에 종전 사업장에서 채용시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보 68341-536, 2001.08.06)

## → 역학조사의 대상과 실시절차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제2항에 ‘……발생규명이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는 바, 이미 의사의 직업병소견에 의하여 발생원인이 이미 밝혀졌고 직업병

발생소지자는 산업재해요양보상을 신청중인 사업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2. 동조제3항의 관계전문기관의 범위 및 현재 위탁한 기관은 어디인지 (관계 전문기관외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3. 동조제5항의 역학조사의 방법, 절차,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는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직업병의 발생원인이 밝혀졌고 당해 직업병자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작업 또는 공정에서 동일한 직업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는 노동부장관이 한국 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계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하고 있음. 따라서 동 역학조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외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없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및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7조의2(역학조사)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 동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건강 진단을 실시한 자로,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역학조사의 기간 · 대상 · 방법 등 실시계획을 역학조사 실시 5일전까지 그리고 역학조사의 실시결과를 실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있음.

(산보 68342-537, 2001.08.06.)

### → 화학분석실 운영업체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

#### 질 의

1. 화학분석실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해당 물질의 취급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취급량에 관계없이 아주 소량이라도 취급하게 되면 무조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특수건강진단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1.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8조 제3호가목 내지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급유해인자의 수준 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또한, 작업환경측정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의 횟수는 해당 요건에 따라 주기를 1회/1년에서 1회/3년으로 지방관서에서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람.

(산보 68307-590, 2001.08.27.)

### 의료기관 전리방사선실 근무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 질 의

현재 모든 의료기관의 방사선실은 전리방사선을 사용하는 취급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법 적용상 전리방사선 취급업무가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해당되며, 그러한 경우 전국 모든 의료기관(병·의원)은 특수건강진단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회 시

전리방사선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자목, 제99조제4항제2호 및 시행규칙 별표13,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 배치후 6월 이내, 그 후 1년에 1회 이상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그러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9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따라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다만, 의료법 제32조의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3조에 의한 건강진단

(업무에 종사하기 전, 매 2년마다)을 받은 경우에는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시 상호 중복되는 검사항목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보 68307-627, 2001.09.11.)

## → 근로자의 건강진단 거부

### 질 의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 회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사업주-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법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며, 근로자가 끝까지 근로자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자문 또는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보 68307-49, 2002.01.18.)

##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서류의 보존

### 질 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전산기록으로 보관하는 경우 수기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해도 되는지의 여부

### 회 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류(건강진단개인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전산 입력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 경우 전산 입력한 자료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산보 68307-93, 2002.01.30.)

## → 취급 유해인자의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여부

### 질 의

전기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용재의 재료가 연 함유물질에서 카드뮴 함유물질로 변경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카드뮴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부서에서 근로자의 취급물질(유해인자)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물질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178, 2002.02.28.)

## → 건강진단 실시결과 송부 및 보고기한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되어 있는데, 상기의 실시일 기준은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에 특수건강진단시 질병유소견자가 발생될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학적 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내용과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에서 언급한 질병유소견자의 범위는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의 필수검사(일반건강진단 등은 1차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2.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기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에서 일반질병유소견자로 판정 받았다는 것은 직업성은 아니나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후관리조치를 받아야 함

(산보 68307-220, 2002.03.18.)

###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의 범위

#### 질 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다수의 사후관리조치를 판정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

#### 회 시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의사가 제시한 사후관리조치 중 택일하여 실시하도록 판정한 경우에는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음  
만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위반에 해당됨

(산보 68307-306, 2002.04.04.)

## 일반건강진단 대신 종합건강진단 실시 및 보고 등

### 질 의

종합건강진단이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 및 실시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여 종합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건강진단 실시결과 중 일반건강진단에 해당되는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산보 68341-453, 2002.05.15.)

##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 질 의

-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 취해지는 지방노동관서 등의 행정조치는

### 회 시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질병유소견자사후관리소견서”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질병유소견자의 사후관리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산보 68307-504, 2002.05.28.)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 질 의

동일 울타리 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보 68307-499, 2002.05.27.)

## → 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 질 의

1. 의료기관의 방사선사가 특수건강진단의 실시대상에 해당되는 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서 사용된 병원의 정의

### 회 시

1.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작업 중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에 한하여 실시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분류표에 의한 병원이란 종합병원, 병원, 정신질환, 결핵병원, 나병원 및 유사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 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

(산보 68307-735, 2002.08.13.)

## →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 질 의

1.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사외 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가능여부
2. 본인이 임의로 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 결과를 받아 오는 경우와 회사가 주관하는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공단에 검진결과 보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3. 포스코직원(의료인력, 산업위생관리인력)이 자체 사업장 부속 특수검진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으로 선임된 경우 사업장 보건관리자 중복 선임 가능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종합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다만,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 받는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또는 그 전산입력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송부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있으므로 귀사 직원이 자체 부속 특수검진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의사, 산업위생관리기사등)으로 선임될 경우 보건관리자 중복선임이 되므로 선임이 불가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산보 68430-877, 2002.10.05.)

## 1차 및 2차 검사의 건강진단기관 분리실시 가능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중 1차검사(필수검사)를 받은 근로자가 타지역 진출 또는 기타사유 등으로 1차검사(필수검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2차검사(선택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다른 기관에서 2차검사(선택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은 의학적선택검사로 1차검사(필수검사)와 2차검사(선택검사)의 두 단계로 실시되며,

1차 검사(필수검사)는 실시대상 근로자 중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를 1차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검사(선택검사)는 1차검사(필수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 중 의학적으로 정상임에도 1차검사(필수검사)에서 가짜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를 찾아내거나 진짜 이상소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관리조치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이와 같이, 1차검사(필수검사)의 결과와 2차검사(선택검사)의 결과는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의학적 검사라 하더라도 건강진단기관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검사인력, 검사장비, 검사기기 및 해석기준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검사의 연속성을 통한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검사(필수검사)와 2차검사(선택검사)는 반드시 동일 건강진단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산보 68340-755, 2003.09.09.)

## 배치전건강진단의 보고시기

### 질 의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지방노동관서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 미 준수 시 어떤 조치가 있는 지

### 회 시

배치전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함)제4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함)제98조제4호 및 제9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인자(120종)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유해업무”라 함)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에 관한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 유해 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업무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 으로부터 배치전건강진단의 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2호(2)서식의 배치전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은 그 속성상 연중 수시로 실시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그때마다 보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 시에 그 때까지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함께 보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산보 68341-786, 2003.09.22.)

##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의 상근대상 여부

### 질 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예방의학·산업의학전문의)가 기관내에 상주하지 않고 주 1~2회 정도 출근하여 대행사업장 방문 및 출장 검진시 참여하는 비상근 형태의 근무가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산업보건환경과-3491, 2004.06.25.)

##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

## 질 의

파견근로자를 소음발생공정에 사용할 경우에 건강진단의 실시주체와 사용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법 여부

## 회 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 규정을 적용함

(산업보건환경과-5025, 2004.09.02.)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법정장비를 임대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무상으로 일괄 양도·양수한 장비 또는 임대(리스)한 장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별표 14)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과-6573, 2004.11.12.)

## 주유원도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1. 주유소에 근무하는 주유원들도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2.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면 아르바이트생들도 받아야 하는지
3.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주유소로 이동한 경우 받은 배치전건강진단 결과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가솔린 등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않음
3. 다른 사업장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과-6936, 2004.12.08.)

##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같은법 제98조제3호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

(산업보건환경과-511, 2005.03.17.)

## 건강진단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해석)

## 질 의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 중 건강진단 미실시의 조치 기준으로 ‘최근 2회 이상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2회 연속이라는 의미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회 시

상기 규정에서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2회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1442, 2005.03.17.)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분원 또는 출장소에서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적법한지 여부

## 질 의

‘갑’ 병원은 의료법인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고 산하에 분원 및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분원에서도 청력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모병원이 분원의 청력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갑’ 병원의 재단산하 자매병원(법인은 다르나 이사장이 동일인)과 협력하여 청력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모병원은 자매병원의 청력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분원 또는 출장소(자매병원 포함)는 청력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및 그에 따른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없음.

(산업보건환경과-4041, 2005.07.13.)

### → 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검사항목 ←

#### 질 의

1.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어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와 근로자 채용시점 또는 현장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전입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 의하여 채용시 건강진단 항목인 치과검사항목이 빠져있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일반건강진단시 치과검사를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사무직은 2년 1회)에 실시하면 됨. 다만, 채용일을 기준으로 타 사업장에서 1년(사무직은 2년 이내)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사무직 2년 이내)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2. 일반건강진단에 치과검사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건강진단시 자율적으로 치과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 제6호)」에 의하여 치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음

(산업보건환경팀-991, 2006.02.07.)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에 합격한 다른 특수건강진단기관과 분석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급 이상인 자 1인 이상이 법적인력으로서 계속 채용되어야 하는지

### 회 시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상의 해당인력이 분석만을 위한 인력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정도관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도 계속 채용되어야 함

(산업보건환경팀-1350, 2006.03.03.)

## 특수건강진단 신규대상 물질 사용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는

### 질 의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을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올 해부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정기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배치전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배치 후 첫 검진까지 모두 다 해야 하는지

### 회 시

'05.10.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동 규칙 시행 전부터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동 규칙의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 규정한 대상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따른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내에 실시하면 될 것임

(산업보건환경팀-1598, 2006.03.15.)

## → 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 질 의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동일 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주체는

### 회 시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업형태를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가 이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즉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제조업의 경우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 제1차 금속산업과 선박 및 보트건조업은 50인 이상)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실시(도급이외의 단순 장소임대 등은 제외)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산업보건환경팀-1711, 2006.03.23.)

## →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질 의

원자력법에 의한 신고대상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근로자가 아닌 실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근로자건강보호과-752, 2008.11.14.)

## → 휴직 시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질 의

현재 휴직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포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년)

## →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 구분 방법

### 질 의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의 구분 기준

### 회 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99조)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

☞ 아래표를 참고하여 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

| 사무직                                                                                                                                                                                                                                                                  |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에서<br/>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br/>사무업무 종사자</li> <li>○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br/>사무실 종사자</li> <li>○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li> <li>○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li> <li>○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br/>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li> <li>○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br/>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br/>업무 종사자</li> <li>-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li> <li>·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br/>업무 종사자</li> <li>·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li> <li>-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li> <li>-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 등 직접 종사자</li> <li>-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li> <li>-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br/>하는 영업직 근로자</li> <li>-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br/>전담상담원</li> <li>-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li> <li>- 이·미용사, 조리사</li> <li>-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li> </ul> |
| ○ 내근기자                                                                                                                                                                                                                                                               | ○ 외근기자                                                                                                                                                                                                                                                                  |
|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br>일반교사 등                                                                                                                                                                                                                                       |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br>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                                                                                                                                                                                                                                                                      |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
|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 보험업 종사자 중                                                                                                                                                                                                                                                             |
|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
| ○ 건축설계사, 제도사                                                                                                                                                                                                                                                         |                                                                                                                                                                                                                                                                         |
| ○ 건물관리업 중                                                                                                                                                                                                                                                            | ○ 건물관리업 중                                                                                                                                                                                                                                                               |
|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br>종사자                                                                                                                                                                                                                                            |

(산업보건과-32, 2010.07.13.)

## 제조공정 근무관리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질 의

제조 관련 관리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 회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말하는 것(시행규칙 제98조제2호)이므로 제조공정의 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는 장소(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공정과 동일한 건물 내에 인접한 경우)에 수시 출입하여 생산 등과 관련하여 업무지시, 감독, 교육,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소속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조공정의 관리자가 해당공정과 일정거리 떨어진 사무실(다른 건물)에 주로 상주하면서 필요에 따라 해당공정에 수시 출입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관리자의 업무가 해당공정의 유해인자에 거의 매일 노출되는 정도라면 시간에 무관하게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간헐적으로 생산공정에 출입하여 업무지시만 하는 등 해당공정에의 출입이 당해 유해인자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정도로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예 : 생산과장은 대상, 자재과장은 비대상)

(산업보건과-32, 2010.07.13.)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대상 여부

### 질 의

계약기간 및 고용특성에 따른 근로유형별 사업주 의무 건강진단 실시 대상 여부 및 사업주 의무 건강진단 대상에는 속하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절차 및 처리방법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는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 하여 동법상의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기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모두 동법에 따른 정기 일반건강진단 대상이 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법상의 정기 일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과-452, 2010.08.25.)

### 밀폐된 맨홀내에서 자연발생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에 해당되는지

#### 질 의

1. 밀폐된 맨홀내에서 산화와 미생물 반응 등으로 자연발생한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가 [별표12의2] 라. 가스 상태 물질류에 해당되더라도 “15) 1)부터 14)까지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동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으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이 아닌 경우 위 가.와 같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9조제1호에 의거 밀폐공간 작업 전 실시한 공기 상태 측정·평가 결과 확인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별표 12의2]인 경우 이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 회 시

1. 밀폐공간내 작업장소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별표12의2] 라. 11)과 14)에 해당이 된다면 15)의 해당유무와 관련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임(\*15)는 별개항으로 적용됨)
2. 작업환경측정 대상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바,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은 작업환경측정이 면제되지만 특수건강진단의 면제 대상이 아님
3. 일산화탄소, 황화수소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므로 밀폐공간 작업이 작업자의

주된 작업이고 밀폐공간 작업 전 실시한 공기 상태 측정·평가 결과 해당 물질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서비스산재예방팀-452, 2012.03.05.)

**특수 및 일반건강검진의 중복 항목인 흉부 X-ray, 간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일반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이 가능한지**

#### 질 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5조에 의거 특수검진기관과 일반검진기관이 동시에 특수검진과 일반검진을 실시할 경우, 중복 항목인 흉부 X-ray, 간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일반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하였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의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정기적으로 정도관리(진폐, 분석, 청력 정도관리)를 통과해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질관리를 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건강진단기관만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고시) 제5조 제2항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중복검사 항목을 1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

(서비스산재예방팀-453, 2012.03.05.)

## 5. 산업보건기준

###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9호의 작업이 근로시간연장 제한 작업에 포함되는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제3항제9호 [현행 제32조의7제3항제9호] (연, 수은, 크롬, 망간, 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 탄소, 유기용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제6호가목, 다목, 바목, 사목, 차목 및 별표4의 제2호제코목(톨루엔)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현행 제32조의7 제1항]에서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현행 제32조의7제3항] 각호(제9호 포함)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산보 68344-434, 2000.06.20.)

### 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 질 의

사업장내에서 지게차(3톤 미만)운전중 사고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처벌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지게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하여 3톤 이상의 지게차인 경우 건설기계조종 면허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의 지게차인 경우 건설기계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나, 이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토록 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의2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또한, 재해 발생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을 수 있음.

(산안 68320-133, 2002.04.01.)

## → 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되는지

### 질 의

석탄광업소 갱내에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 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규정한 유해 위험작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1주 34시간)대상이 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함 잠수 작업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각 호(1호~9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석탄광업소 갱내에서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 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은 유해 위험작업에는 해당되나 근로시간 제한(1일 6시간, 1주 34시간) 대상은 아님

(산보 68344-658, 2002.07.16.)

##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및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 가능 여부

### 질 의

1.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해 지정된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2.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강사자격요건(산업안전기사)자가 법정장비 천정크레인 자체검사원 교육수료후 운영시 적합여부

### 회 시

1.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2항 및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련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동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교육기관 없음.
2. “질의 2” 천정크레인 조종업무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 제1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만 가능함.

(산안 68320-307, 2002.07.25.)

##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가능여부 및 진단대상의 범위

### 질 의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임시건강진단명령을 할 수 있는지, 임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특정 근로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 회 시

임시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해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직업병 발생위험성이 높은 작업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므로 지방노동관서장은 직업성으로 의심되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건강을 긴급히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의사의 소견서 등 별다른 요청근거가 없이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으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임시건강진단 명령의 대상 근로자 및 긴급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자로 하여금 의사의 소견서 등 요청근거를 제출토록 하고,

아울러 지방노동관서장은 요청근거를 바탕으로 산업의학 및 인간공학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임시건강진단명령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산보 68307-701, 2002.07.30.)

## →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

### 질 의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대상은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근거조항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1항임.

(산보 68344-728, 2002.08.09.)

##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관련 ←

### 질 의

1. 본 조의 적용대상은
2.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기기의 구체적 조건은
3. 연속적인 컴퓨터 단말기 조작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 적정 휴식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데, 연속적인 작업 및 적정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은

## 회 시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의 적용 대상은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2001-71호) 제3조에 의거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자 중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임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란 다른 근로자와 보조를 맞춰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당해 근로자의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시간의 변화가 다른 근로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어 자율적으로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함
2.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2001-71호)에서는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지도·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 할 수 있음
3. 연속적인 컴퓨터단말기작업이란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컴퓨터단말기를 취급하는 일련의 반복작업으로 동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는 1회 연속작업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연속작업이 시작되기 전 10~1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함

(산보 68307-156, 2003.02.28.)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의 범위

## 질 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산재요양 결정자 발생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사 전체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 회 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함

(산보 68070-629, 2003.07.29.)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64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 도구를 활용할 것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 제3절(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의 구체적 해석

### 질 의

1. 제149(현 제663조) 관련 중량물의 제한무게는
2. 제150조(현 제664조) 관련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휴식시간 적정배분에 관한 자료의 출처는
3. 제152조(현 제666조) 관련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을 의미하는지

### 회 시

1. 근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의 무게는 근로자의 연령 및 성별, 작업빈도, 운반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자근로자의 경우 25kg, 여자근로자의 경우 15kg 이상의 물체를 말함
2. 한국산업안전공단 ONE PAGE SHEET 「요통예방대책」, 「요통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등 참조([www.kosha.net](http://www.kosha.net))



3. 제152조(현 666조)의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말함

(산보 68070-749, 2003.09.05.)

→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일 9시간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한지** ←

**질 의**

1. 상시근로자 25인을 고용하여 환경오염 측정사업을 경영하는 업체에서 여성 환경수질검사원에게 클로로포름 등 55종(붙임1-2)의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 검사 등을 1일 9시간(때로는 22:00까지 연장)으로 근로시킬 수 있는지와 관계법령은 무엇인지
2. 유해 위험한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에서의 작업환경이며, 붙임 1-2의 화공약품 취급업무도 해당하는지

**회 시**

1.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의 12시간 한도로 법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음. 한편, 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그러나 임신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별표 2와 같은 업무에는 배치할 수 없으므로 동기간에는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주어야 함. 따라서 귀하가 임신중이거나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의 여성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55종)에 대해서는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 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8제3항에 규정된 “갱내에서의 작업” 등 9개의 유해 위험작업이 나열되어 있으며, 귀하가 제시한 55종의 화학물질 중 “수산화나트륨” 등 14개 물질이 그 분진 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이라면 유해 위험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한편,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라 함은 위 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가스의 발산 정도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할 정도로 심한 상태의 작업 장소를 말하는 것임.

(산보 68344-771, 2003.09.15.)

## → 사무직 근로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포함 여부

### 질 의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설계 및 사무직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 작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근로자가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장관 고시) 제1호에 의한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의 조절” 여부는 직종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작업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02.17.)

## → 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기준

### 질 의

작업장에서 동일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이 10개 이하일 경우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의 작업을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작업을 작업자로 해석해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교대제 근무가 이루어지거나 1명의 근로자가 공정의 진행에 의해 장소를 이동하면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용접, 도장 등)의 경우에는 당해 작업을 하나의 작업으로 보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1명의 근로자가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작업에 대하여 우선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를 판단 후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각각 유해요인 조사 실시

특정설비를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작업의 수를 산정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02.17.)

## 수시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방법

### 질 의

여러 작업을 수시로 바꾸어 작업하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된 경우 어떤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우선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된 신체 부위에 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다수의 작업중 근무한 기간 및 작업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 작업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 실시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02.17.)

## 수시유해요인조사 시기

### 질 의

정기유해요인조사 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후 단기간내에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근골격계질환자가 당해 작업에서 단기간내에 발생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 또는 작업환경개선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02.17.)

## 이동물품의 중량표시 방법

### 질 의

근로자가 같은 중량물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취급하는 경우 주 작업장소에만 안내표시를 해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제1호에 의하여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로 취급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당해 작업장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

따라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작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함

※ 동일 작업장 내에서 작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선정하여 안내 표시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02.17.)

## 무게중심 이동물품에 대한 표시방법

## 질 의

근로자가 취급하는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뀔 수 있는 경우 무게중심 표시방법

## 회 시

주로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중심이 바뀔 경우에는 주된 작업에 따른 무게중심을 표시하되 근로자에게 무게중심이 바뀌는데 대해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02.17.)

## 수시 유해요인조사 방법

## 질 의

안전사고 또는 근골격계질환 사고 발생시 1차적으로 사고를 조사하고 사고 보고서 작성 후 대책회의를 실시하는데 참석대상은 해당 공정의 과정, 실무자, 설비부 담당엔지니어, 노동조합대의원이 참석하여 사고내용을 기술 후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대책 등 3개항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실행 여부를 안전보건관계자가 체크 관리하는데 이를 유해요인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새로운 설비 도입시 1차적으로 회사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 안전보조 · 순찰원이 새로운 설비를 안전진단하고 문제점을 발췌하여 설비담당 엔지니어에게 조치토록 하고 2차적으로 노동조합 안전보건관계자와 사측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일정을 협의 후 해당 설비에 대한 노사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를 유해요인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 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는 보건규칙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 상황(작업설비 · 작업공정 · 작업량 · 작업속도 등), 작업조건(작업시간 · 작업자세 · 작업방법 · 작업동작 등),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사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면담,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및 증상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제외되어 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산업보건환경과-2479, 2004.05.04.)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 질 의

대형할인매장 캐셔(계산대작업) 작업이 부담작업이라면, 10개의 캐셔작업대 각각에 3명씩 3교대로 30명이 부담작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방법은

#### 회 시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부담작업이 동일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전체 동일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 동일 부담작업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5개의 작업당 작업강도가 가장 큰 1개의 작업을 추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시] 주조 1공장에 동일 작업인 부담작업이 16개 있는 경우에는 모두 4개 (10개 작업에 대해 2개 선정, 초과 6개 작업에 대해 2개 추가)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한편, 교대제 작업은 교대 근무조 각각을 동일 작업으로 간주하고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한 대형할인매장 캐셔작업(캐셔자업대 10개, 3명 3교대)은 전체 동일 작업 수가 30개에 해당되므로, 작업강도가 높은 순으로 6개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

※ 처음 10개 작업에 대해 2개작업 이상을 표본선정, 10개를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 4개 작업이상을 표본에 추가

(산업보건환경과-2868, 2004.05.25.)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이 법률상의 안전 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시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으나 동 교육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8의2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부합된다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음
2. 이와는 별도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산업보건환경과-3396, 2004.06.21.)

##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실시요건

### 질 의

노사가 공동으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04년 1월 중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작업에서 그 이후 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하였을 때 해당 작업에 대한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시

'04년 1월 중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된 부담작업에서 그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4123, 2004.07.22.)

##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제한 대상 여부

### 질 의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3호의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에서 “등”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 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4호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산업보건환경과-4520, 2004.08.10.)

## →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질 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실시는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에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함

(산업보건환경과-4546, 2004.08.12.)

## →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질 의

1.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 변경시 마다 수시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신차종 생산시 이전작업과 동일한 상태에서 부품이 추가되거나 부품이 다를 경우에도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동일 차종으로써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차종의 시간당 동일 생산량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참고로 동일한 작업조건에서 시간당 생산량의 감소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감소한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차종 교체에 따른 부품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동작 및 작업자세 등의 빈도가 증가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5030, 2004.09.02.)

###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노·사 공동으로 사업장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적절히 치료한 후 작업장에 복귀시킬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회 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근로자를 사업장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의 재활·복귀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절히 치료한 후 작업장에 복귀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5032, 2004.09.02.)

### 신설사업장 유해요인조사

#### 질 의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공장)을 신설사업장으로 보아 인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되는지의 여부

만일,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로 보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 전체 공정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에 대해서만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의 여부

#### 회 시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합병하면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가 도입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요인조사를 새로 도입된 작업·설비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설비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음(그러나 실제 가동되지 않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작업·설비가 추후 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한편, 인수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인수·합병된 사업장(공장)의 작업·설비에 대한 유해요인조사가 이미 실시된 바 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된 날부터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함

(산업보건환경과-6627, 2004.11.24.)

### →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계산원이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됨  
이때 “같은 동작”이라 함은 “동작이 동일하거나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움직임”을 말하며 “반복하는 작업”의 해당 여부는 신체부위별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판단함

| 신 체 부 위    | 어 개     | 팔꿈치    | 손목/손   |
|------------|---------|--------|--------|
| 분당 반복 작업기준 | 2.5회 이상 | 10회 이상 | 10회 이상 |

(산업보건환경과-3907, 2005.07.07.)

## → 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방법

### 질 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제3항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의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보건규칙 제1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시행 명령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지

### 회 시

사업주가 보건규칙 제14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에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보건규칙 제143조제3항)시키도록 하는 것은 특정 작업에 내포되어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은 그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해요인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와 조사방법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보건규칙 제147조제2항)

※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그 위험요인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등의 작업환경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다만, 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대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임(보건규칙 제143조제3항)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

따라서, 사업주가 특정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규칙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와의 면담 및 증상설문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보건규칙 제144조)
2. 합리적인 사유로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와의 면담 및 증상설문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근로자대표가 대신 유해요인조사에 입회한 경우
3. 사업주가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나 참여에 응하지 않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후 중재를 받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우(근골격계 질환예방 업무편람 19쪽)

보건규칙 제1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 명령의 주체를 노동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신설에 따라 작성·시달된 「개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시행지침」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 지속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시행의 필요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행정명령이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만큼 동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명령권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4727, 2005.08.12.)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 질 의

1.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을 명령받은 사업장이 유해요인조사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및 “만약,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2.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한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차기 유해요인조사의 시점은 언제인지”

### 회 시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된 후 재실시의 주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수시유해요인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규칙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도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은 보건규칙 제148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유해요인조사 재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명령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보건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근골격계부담작업 각각에 대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이와는 별도로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팀-928, 2006.02.03.)

## 고무흡 발생공정의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 질 의

타이어 제조회사에서 고무흡이 발생하는 공정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 회 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무흡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음. 다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의 별표 8(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환경과-929, 2004.02.25.)

## 황산 발생시 측방형후드의 제어풍속

### 질 의

측방형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유해물질로 황산이 발생될 경우 후드의 제어풍속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관리대상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에 의거 후드 형식이 외부식 측방흡인형 후드일 때, 황산의 발생이 입자상(후드로 흡입될 때의 상태가 미스트)이면 제어풍속은 1.0m/sec가 되며, 가스상(후드의 흡입될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이면 제어풍속은 0.5m/sec가 됨

(산업보건환경과-1559, 2005.03.24.)

### → 항암제 취급장소에 설치된 국소배장치의 자체검사 대상 여부 ←

#### 질 의

항암제를 취급하는 클린벤치에 대하여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기준 및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대상 여부

#### 회 시

항암제 중 관리대상물질이 용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3187, 2005.06.07.)

### → 정신분열증 병력자의 취업 시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규정 적용 여부 ←

#### 질 의

1998년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 받은바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에 의하여 취업을 금지받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에 의거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한 정신분열증에 걸린 자의 경우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한·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제한이 가능함

또한 같은 법에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가 가능한 때에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지체 없이 복귀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토록 하기 위한 법이므로 동 규정이 채용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산업보건환경팀-2843, 2006.06.07.)

##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적용범위

### 질 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이나 허가 및 금지대상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국소배기 장치의 제어풍속을 0.5m/s(가스), 1.0m/s(입자)로 유지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제조 등 허가·금지대상유해 물질에 대하여만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에 관한 기준을 물질상태별(가스상, 입자상)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다만 분진에 대해서는 후드의 형태 등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규정(동 규칙 제219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산업보건환경팀-1062, 2007.02.14.)

## 사업장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 질 의

인원감소 및 작업량 감소 등 사업장의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정기 유해요인 조사 실시 여부

### 회 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 불규칙적인 작업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기 유해  
요인조사는 실시하여야 함

다만, 일시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부담작업이 없어져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에 한하여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2096, 2007.04.12.)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 질 의

정기 및 수시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해당 작업에 대한 새로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이후나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주기(3년)가 경과되면 이전 문서를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유해요인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 등 예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것임

위와 같은 목적의 정기 유해요인조사는「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유해요인조사)에서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하면서 서류보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사업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은 조사결과 및 예방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법적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 새로운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존  
(최소 3년)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임

또한, 수시 유해요인조사표 보존기한도 위 정기 유해요인조사표 보존기한의  
설명사유와 같음

따라서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은 사업장 자율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나,



조사목적 및 실시주기를 감안하면 최소 새로운 유해요인조사(정기는 최소 3년)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2705, 2007.05.15.)

## →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미는

### 질 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의자의 비치)의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N/C 가공작업자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으로 장비가 작동함으로 작업자의 여유시간이 많을 경우에 의자비치가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보건규칙 제277조에서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동 규칙에서 “지속적”의 취지는 통상 서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인 작업의 경우를 말하고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되며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의 취지는 기계에 의한 자동작업으로 근로자는 작업 추이만을 지켜보는 등 의자에 앉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의자를 비치, 근로자가 이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덜어 주도록 하는 것이 보건규칙 제277조의 취지임

제시하는 사례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동 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져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5829, 2007.11.29.)

## →고열작업장소의 범위

### 질 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한 고열작업장소의 범위는

## 회 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용선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란 해당 작업 수행으로 인해 고열이 근로자에게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장소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작업공간의 범위, 고열차단 상태,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작업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고열의 노출기준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7-25호, '07.6.8)」 <별표 4> 고온의 노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자건강보호과-175, 2008.05.09.)

## → 캐셔업무 근로자의 의자비치 여부

## 질 의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계산을 하는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의 휴게실에 소파 등을 비치하여 두고 있는바, 별도의 장소에 의자를 비치하는 것으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부

## 회 시

해당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작업 중에 별도의 휴게 공간에 때때로 갈 수 있는 작업조건인지 여부 및 휴게 공간과의 거리 등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만일 작업 중에는 별도의 휴게 공간에 가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작업 장소에 의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만일 작업 중 때때로 별도의 휴게 공간에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별도의 휴게실에 의자를 비치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의자 비치를 위한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는 설치에 많은 공간을 요하지 않는 입좌식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음

(근로자건강보호과-2290, 2008.08.08.)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 질 의

2004년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았고, 그 후 규칙 제143조제2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최초(2004년) 유해요인조사시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과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작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11가지 부담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고, 이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최초 유해요인조사가 조사방법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근로자건강보호과-1443, 2009.04.13.)

## 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 유해인자의 범위

### 질 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과 같은 장 제8조 및 제14조에서 인체에 해로운 분진·흙·미스트·증기 또는 가스상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등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인체에 해로운’의 범위에 관한 내용 및 유권해석 사항은

### 회 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장(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8조 내지 제14조의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덕트, 배풍기, 배기구, 배기처리 등의 설치기준은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유해인자의 배출과 관련된 일반

기준이며 이 규칙 제2장, 제3장, 제4장, 제10장의 국소배기장치 관련 규정은 해당 장치의 설치근거 및 성능(제어풍속)을 규정하고 있어 각 해당 유해인자의 배출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임

(근로자건강보호과-3519, 2009.09.03.)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목적 및 증상조사자의 자격

### 질 의

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목적이 질환자 선별인지
2. 증상조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참여하여 근로자 개별 문진을 통해 질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지

### 회 시

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질환자의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2. 증상조사를 포함한 유해요인조사의 조사자에 대해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 사업주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조사자로 지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증상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정할 수 있음

(근로자건강보호과-4778, 2009.12.22.)

## → 반자동 케리지 용접작업장에서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 질 의

반자동 케리지 용접기(용접흠 발생)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 시

반자동 케리지 용접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

별표5의 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실내 작업장에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분진작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칙 제217조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규칙 제218조에 따라 분진 발산면적이 넓어 같은 규칙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는 현장 실정(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것임

(근로자건강보호과-1592, 2010.07.01.)

## 정화조 시설이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 질 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별표 18 「밀폐공간」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뜻하는 정화조·침전조 등의 내부란 정화조·침전조 등의 내부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정화조·침전조 시설이 있는 급배기시설이 갖춰진 실내공간도 포함하는지

### 회 시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말함

동 별표 18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장소는 분뇨 등이 담겨져 있는 정화조 등의 내부를 말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은 “정화조·침전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 또한 동 별표 제14호에서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인 장소의 내부”로 산소농도 측정, 환기조치 등이 필요함

(국민신문고, 2012.07.03.)

## 밀폐공간작업시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 안전보건조치는

### 질 의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이며, “적정공기”란 산소의 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

만약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시 상기 정의되어 있는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에도 송기마스크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를 위한 급배기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 회 시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동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동 규칙에서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라도 비상시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하고, 작업 전 측정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가 적정하더라도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이 적정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12.09.04.)

## 병원에서 근로자의 B형간염 환자 혈액노출 사고 후 추적관리 범위

### 질 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5」에서 근로자가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에 HBsAG(항원) 추적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B형간염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B형간염 항체가 적절하거나, 항체가 부적절하여 24시간 내 예방적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추적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혈액노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14」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의 감염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15」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추적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사침상해를 입은 근로자 중 상해 당시 B형간염 검사결과 항원이 없거나 혈중 항체가 충분하여 감염우려가 없다면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항체가 없거나, 항체가 충분치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사침 찔림 사고 즉시 백신 또는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향후에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동 규칙에서 정해 놓은 일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은 추적관리를 하여야 함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12.12.18.)





## 제 5 장 건설업 안전보건



## 제 5 장 건설업 안전보건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건설업, 선박 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의 범위

##### 질 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의 범주는

#### 회 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되는 관급재의 범주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그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말하는 것임

(산안(건안) 68307-331, 2000.04.21.)

### 순수 포장공사에 부대한 공사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 질 의

포장공사를 위하여 흙관, BOX설치공사가 같이 부대될 경우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 회 시

도로공사는 포장층을 포함한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으로 구분된 공사이며 포장공사는 표층, 기층, 보조기층, 선택층으로 구성되어 시공되는 공사인바,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도로공사중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포장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다른 공사가 부대공사이며, 이 부대공사 외의 다른 공사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 발주되어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이고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요율도 그에 따라야 함

(산안(건안) 68307-340, 2000.04.24.)

### 여러개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 질 의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일반건설(갑)과 중건설공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분류 기준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

(계상기준)에 의하면 동 기준 별표1 “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종류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일반건설공사(갑)과 중건설공사가 분리발주된 사실이 없이 시공하고 있다면 위 공사중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종류에 따라 나머지 공사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586, 2000.07.04.)

### 원가계산시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원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 질 의

원가계산시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시 4천만원이하로 되었다면 안전관리비 공제여부 및 방법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계약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다면 당해 공사는 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여야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14, 2000.07.13.)

### 하수종말처리현장의 공사종류

#### 질 의

하수종말처리현장(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종류는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

제2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동 고시 별표 5 건설공사의 예시표에 의하는바 이때 공사의 종류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면 되는 것임 하수종말처리장공사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 조정 등의 공사가 일괄발주로 복합공정에 의거 시공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요율은 동 공사중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90, 2000.08.30.)

## 관급자재비 감소로 대상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전관리비 재계상 여부

### 질 의

1. 조달청 발주공사로 공사기간은 '97. 12 ~ 2001. 12. 31이며, 공정을 78%임
2. 내역입찰로 최초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735,926,293원((재료비+직접노무비)×1.88%×1.2+8,780,901원)으로 도급액의 약 2.28%(정확히 2.2814241230078%)임
3. 현재상황은 1차 59,818,430원 준공, 2차 109,515,393원 준공, 3차 152,187,804원 준공, 4차 269,236,869원 현재 진행중 총 690,758,496원 이며, 6차 총괄계약시 최초 계상시 적용했던 2.28%를 적용하여 747,134,060원으로 계약 완료되었음
4. 발단 : 관급자재비가 감소되어 그 결과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의 감액을 주장
5. 각각의 주장
  - 시공사 : 최초 발주처와 계약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정에 준하게 사용하였고 최종 계약분 역시 향후 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 없이 사용하여야 함
  - 감리단 : 최종 정산시 최종계약에 상관없이(자재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1.88%와 도급안전관리비×1.2배중 작은쪽을 선택하여 감액(추정 약 4,000만원 이상)하여야 함
6. 논점 : 발주처가 책정하고 보편 타당하게 집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 시점에서 관급자재비의 감소를 이유로 감액한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기본적인 안전시설 등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제외할 시 잔여공기동안 안전관리자의 급여조차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 조치가 타당한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계상기준)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도 관급자재비의 감소 등으로 대상액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여야 함

다만, 위 기준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처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내용 등을 참조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6, 2001.01.18.)

## 건축물내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 질 의

1. 전기공사 원가계산시 각종 요율을 적용할 때 특히 안전관리비 요율적용시 기준이 되는 건설업의 종류에서 전기공사는 어디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건축물내외의 전기공사나 도로건설 가로등 등 설치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전기공사업 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타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전기공사가 건축공사 및 도로공사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또한 앞의 경우 전기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을 주된 공사인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전기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일 경우에 요율 적용의 문제로서, 전기공사의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040, 2001.02.19.)

## 분리 발주공사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 질 의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제1장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의 “총공사비”라 함은 1개의 현장에 건축,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마다 분리발주하여 각각의 공사비의 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공종의 공사비를 적용하여 각각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예) 건축(2억원), 전기(3천만원), 통신(2천만원)을 각각 분리 발주하여 계약자와 착공시기를 달리할 때,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의 총공사금액으로 적용해야 할 금액은

- 1) 총공사금액 2억5천만원으로 건축, 전기, 통신공사 각각에 안전관리비를 계상

- 2) 건축-2억원, 전기-3천만원, 통신-2천만원 각각 분리적용하여 건축공사만 4천만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전기, 통신공사는 4천만원이 안되므로 안전관리비 계상 불필요

- 1)과 2)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공사는 2천만원이상인데 공사비가 2천만원이 넘고 4천만원이하이면 산재보험료만 계상하고 안전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3. 한 현장에 건축이나 토목공종과 분리발주하여 계약자가 다르고, 착공시기가 달라도, 건축이나 토목공종과 병행하여 작업이 진행될 때 안전관리비계상기준표에서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특수및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공중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도 각 공사별로 하여야 함

2. 산재보상법의 개정(2000. 7. 1)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 공사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된 바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종전과 같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므로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됨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이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건축·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해서는 일반건설공사(갑)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42, 2001.02.20.)

###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 조치하고 이 비용을 이윤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 질 의

'97년 총액단가 계약된 ○○지하철 2호선×공구 업무수행중 설계당시 잘못 적용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요율을 공사수행중 시정지시가 있어 당초 철도궤도 적용요율 1.58%를 중건설 적용요율 2.26%로 변경하여 안전관리비를 증액하였으나 총도금액의 변경을 인정치 않아 이 증액분을 이윤에서 감액조치하여 당초계약 의도와는 다른 이윤손실이 발생하였음. 오적용된 요율의 수정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늘어남은 타당하나 이 증가분을 이윤에서 감액조치함은 납득하기 어려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가 설계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다만, 재계상으로 증액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기존의 금액과의 차액을 이윤

에서 감액을 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계관련법령이나 공사계약 내용 등을 참조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5, 2001.02.28.)

##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 포함 여부

### 질 의

안전관리비 계상시 순 공사비구성이 1. 재료비, 2. 직접노무비, 3. 사급자재비(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공사하는 자재로서 계약 내역서상에는 별도항목으로 두었으나 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액임), 4. 발주처 지급(관급)자재비(도급내역에 없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액은

갑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비) × 요율(단,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금액의 1.2배 이내)인지

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단,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금액의 1.2배 이내)인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바 귀 질의의 관급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귀 질의의 “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75, 2001.03.16.)

## →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질 의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가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바, 귀 질의의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84, 2001.05.11.)

## → 건설업 외에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는지 ←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은 “건설업, 선박건조업, 수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당사는 시설관리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갑”사와 일정기간(1년)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갑”사 소유의 건물에 당사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용역비는 사전 약정된 금액을 매월 1회 수령하여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근무중 사고에 대비하여 근무자들에게 고용, 산재, 의료보험 등 제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음

1. 상기 용역계약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함.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음.
3. 노동부 고시는 제2001-22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외에는 기타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건설업, 선박건조업, 수리업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정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업 외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2.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을 하고 있는 바,
3. 귀 질의의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작업내용이 건물에 상주하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건설업종이 아닌 기타 업종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

(산안(건안) 68307-10222, 2001.05.26.)

**안전관리비 계상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 질 의

1. 설계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안전관리비용 등이 내역에 반영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이 금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율”을 계산해야 되는지
2. 설계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가설방음시설, 환기시설 등)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이 금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율”을 계산하는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

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안전관리비용, 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65, 2001.06.16.)

## 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책임 여부

### 질 의

본공사는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저수지설치)으로 '99. 1. 16일 계약하여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로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가) 사업개요

- 저수지 : 3개소
  - A저수지 : 제당길이 281m, 제당높이 50.3m
  - B저수지 : 제당길이 422m, 제당높이 45.2m
  - C저수지 : 제당길이 247m, 제당높이 47.1m
- 용수로 : 13조 10.66km
- 이설도로 : 3조 3.05km
- 전기 및 기타 : 1식

나) 총공사비 : 27,423백만원

다) 사업기간 : '99. 1. 29 ~ 2002. 12. 30

라) 현재 공정율 : 13%

1.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하면 본 공사는 중건설공사 50억이상으로 적용요율 2.26%이나 당초 설계시 착오로 공사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여 적용요율 1.88%를 적용, 시행청과 계약이 이루어진 실정으로 설계변경시 수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설계변경시 수정적용이 되지 않고 당초 계약율(1.88%)에 의거 공사진행 및 안전관리비 집행시 향후 도급회사 및 발주청의 불이익 발생 여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발주자가 설계 당시 착오로 건설공사의 종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재계상을 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산안(건안) 68307-10342, 2001.07.23.)

##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엘리베이터 등을 다른 시공사에 도급을 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에 포함되는지

## 질 의

1. 건축공사 계약시 설계내역서상 관급자재를 안전관리비에 포함시켜 원가계산을 하여 도급계약을 하였음. 이때 관급자재는 시멘트 등 도급회사에서 재료를 사용하는 품목과 엘리베이터, 냉온수유닛 등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여 시행하는 관급공사도 포함되었는데 이 경우 발주처에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급자재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멘트, 아스콘 등 도급공사와 관련된 품목만을 뜻하는 것이고, 관급공사로 된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자동제어설치 등은 도급공사의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데 어떠한지
2. 만일 관급공사도 안전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급공사 설계내역상 금액은 관급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은 틀림) 이므로 모든 관급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하여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2. 이때의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는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멘트, 아스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나,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등의 관급공사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사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에 의해 시공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457, 2001.09.19.)

## 경관림 조성사업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여부

### 질 의

동해안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림 조성 사업이 일반 건설업중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조림 등 경관림 조성을 영림업(임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됨

(산안(건안) 68307-10464, 2001.09.24.)

## 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 질 의

국가기관으로부터 내역입찰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당 현장의 경우 낙하물방지망이 가설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상에도 일부 낙하물방지망이 계상되어 있는 바, 발주처에서는 낙하물 방지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낙하물방지망 만큼 도급내역에서 감액 지시하는 바 내역에서 삭제함이 타당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7, 2001.10.08.)

### →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 질 의

2001년 5월 계약~2001년 7월 준공되는 공사로 공사 계약시 금액이 17,500,000원 (안전관리비포함)으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 원가 계산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준공 후 발주처는 감사 지적 사항이라며 원가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32만원을 환수조치 하려고 함.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비는 전액 사용하여 발주처에 정산보고도 하였는데 안전 관리비는 공사금액 얼마이상부터 적용이 되는지 (4천만원이 맞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금액이 1,750만원이라면 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 대상공사는 아님

그러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 수행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으로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3, 2001.10.13.)

###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 질 의

도급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입찰에 설치시공 비용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분류되는지

- 건설공사로 분류된다면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은
- 공사개요
  - 도급형태 :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 일괄계약
  - 도급비용구성 : 물품제조(구매)비(90%) + 설치시공비(10%)
  - 도급업체구성 : 물품 제조 및 공급(일본제조업체) + 설치시공(국내건설회사)
  - 이행방식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손익에 대하여 공동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 회 시

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3, 2001.10.25.)

##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 질 의

1.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관리시에 산업재해 개시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여부
2. 안전관리비를 책정할 경우 적용되는 공사의 종류/요율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제3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임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업무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을 받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님

(산안(건안) 68307-10535, 2001.11.07.)

## 토지구획정리 등 복합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적용

### 질 의

도로신설, 상·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박스 등 구조물 공사, 공원조성공사, 포장 등 복합공정으로 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에 있어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사종류에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신설, 상·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 박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포장공사 등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종류로 보여지는 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가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진다면 이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65, 2001.11.24.)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제조하는 공장도 사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1. 현재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그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총액의 70%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하도급 계약시 계약금액에 원청이 계상한 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재료를 자사(하도급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현장에 설치 시공하는 업체인 경우(즉, 창호공사처럼 재료비가 매우 크며, 현장에서 실 작업인원은 소수인 경우) 그 안전관리비 등 법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어떤 방법을 적용함이 합리적인지
2.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면,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경우 그 사용의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당해 현장의 안전에 사용하도록 국한된 안전관리비지만, 직접 재료인 창호를 제조하는 공장도 그 사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작업의 성질상 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서 원도급자가 직접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04, 2001.12.11.)

## 민원처리비가 포함된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질 의

재개발아파트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계약이 평당 단가로 이루어짐. 그러다 보니 일반 같은 규모의 공사보다 계약금액이 높은 편임(민원처리비 등의 포함). 따라서 최초 안전관리비의 계상시 공사계약의 70%에 1.88%를 곱하여 계상을 하지만, 차후로도 발주처로부터 별도의 구분(노무비, 자재비 등)이 되지는 않으나 자체적으로 본사에서 사업장이 실행예산을 편성시 구분이 가능하여 그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음. 이렇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그 기준으로 개별사업장에서 집행하여도 법(고시)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되,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행예산이 아닌 공사 계약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 특성상 공사원가계산서상 세부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귀 질의의 민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21, 2001.12.20.)

## → 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

### 질 의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이라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의 및 계상기준을 정하고 있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포함한 안전관리비 대상 금액이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이 경우 “1.2배 범위내에서 안전관리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절대값으로 1.2배 곱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1.2배 이하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2. 위에서 1.2배를 곱하지 않고 안전관리비를(노무비+재료비-관급비포함) 원가 계산서에 적용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액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2. 따라서,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631, 2001.12.26.)

##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율 적용여부

### 질 의

당현장은 ○○사에서 발주한 내역 입찰대상공사임. 당초 예정가격에 의해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완료후 공사수행중인데 계약시 산출내역서상 다른 항목은 낙찰율을 곱하여 작성하는데 안전관리비도 낙찰율을 곱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3, 2002.02.05.)

## 총 공사금액의 70%와 자체 실행예산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 의

APT공사 현장으로 착공전 총공사비의 70%에 1.88%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던 중 기성내역이 확정되어 안전관리비를 현장의 기준으로 계상할 시

- 자재비 : 50,067,033,594원
- 노무비 : 179,224,100원
- 외주비 : 57,280,224,134원
- 경 비 : 4,510,736,050원

자재비와 노무비는 그대로 계상하고 외주비에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자재비를 구분하기 어려워 총 외주비(장비대 포함)의 70%만 적용하여 법정안전관리비 = (자재비+노무비+외주공사비의 70%)×0.0188을 적용해도 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계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자체 시공하는 공사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귀사의 자체 실행예산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아닌 자체 사업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14, 2002.03.20.)

###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70%의 의미 ←

#### 질 의

1. 발주(도급)금액은 평당 단가로 산정하여 총 발주금액으로 정하여지게 되다 보니 대상액이 구분되어지지 않아 공사초기에 안전관리비 계상을 총 도급 금액(VAT 포함)에서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이주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70%에 요율 1.88%를 적용하여 사용하다가 본사에서 실행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느 금액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2.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중 재료비+직접노무비에는 부가가치세(VAT)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3. 도급금액의 70%와 재료비+직접노무비와의 관계는 어떤 수치적 근거에 의하여 나오게 된 산식인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 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귀 질의의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이주비 제외)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하고 이렇게 계상된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인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3.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 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에 해당 하는데 따른 것임

(산안(건안) 68307-10116, 2002.03.20.)

##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질 의

- 도급계약시 연면적×평당공사비로 계약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공사종료시까지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 당사의 실행편성이 완료되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 (직접노무비+재료비) 확정되므로 안전관리비를 재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귀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귀사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하고 이렇게 계상된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됨

(산안(건안) 68307-10125, 2002.03.28.)

## 물품납부 및 설치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발주자의 책임한계

### 질 의

1. 하도급 계약이 아니고 자재계약으로 발주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약 3개월 정도 출근하면서 공사를 하고 물품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안전관리비를 자재계약시 계약서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2. 이런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다면 발주자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
3.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검사 또는 안전장구를 구입한다면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자재 설치공사가 별도 발주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이고 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바,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즉시 계상을 하여야 함
2. 귀 질의 내용만으로 공사중 발생하는 재해의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해 재해의 책임에 대해서는 재해원인, 작업상황, 작업 지시 여부 및 제반 안전조치 이행상태 등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하게 됨
3. 귀 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공사 임에도 계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자가 즉시 계상을 하여야 하고,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검사 및 안전장구 구입 등을 위해 실제 사용한 비용은 사용 이후 에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32, 2002.04.01.)

## → 사급자재비가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 질 의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관급자재대와 같이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는 재료비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사급자재대를 합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지방노동사무소 회신내용중 적합한 계상방법은
- 이 경우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중 올바른 계상방법은  
가) (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1.81%+3,294,000 : ○○지방노동사무소 적용  
나) [(재료비+직접노무비)×1.81%+3,294,000]×1.2 : ○○군 적용  
다) [(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1.81%+3,294,000]×1.2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따라서, 관급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귀 질의의 경우 사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42, 2002.04.09.)

## Turn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질 의

설계10%, 구매60%, 공사30% 정도의 비율을 가진 Turnkey계약을 진행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에 설계비용, 구매비용도포함시켜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제 비용이 이에 포함됨

Turnkey 계약 공사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 원가계산서상의 총 공사 구성원가상의 비목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는 동 금액 중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제공해 주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51, 2002.04.10.)

## 관급자재비 누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질 의

당 현장은 당초76억에서 150억원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으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관급자재비가 별도인 토목현장에서 당초 설계당시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서(직접노무비+재료비)×1.88%로 되었을 경우 정확한 계상방법은

- 참고로, 직접노무비는 5,775,704,869원, 재료비는 4,673,928,736원, 관급자재비는 3,030,000,000원임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금액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고,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위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text{직접노무비} + \text{재료비} + \text{관급자재비}) \times 1.88\% \text{과} [(\text{직접노무비} + \text{재료비}) \times 1.88\%] \times 1.2$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하며, 설계변경시에도 위 기준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것임

(산안(건안) 68307-10211, 2002.05.15.)

## 사급자재 및 골재비용이 별도로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질 의

원가 계산서상에서 사급자재와 골재비용은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이 되는지 여부

- 당 현장 원가 계산서 -

가. 직접노무비 : 967,451,308원

나. 재료비 : 279,855,567원

다. 관급자재비 : 239,503,222원

라. 사급자재대 : 108,322,571원

마. 골재대 : 69,337,500원 일 때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갑 : 1.  $(\text{가} + \text{나} + \text{다} + \text{라} + \text{마}) \times \text{요율}$

2.  $(\text{가} + \text{나} + \text{라} + \text{마}) \times \text{요율} \times 1.2$  1과2중 적은 값

을 : 1.  $(\text{가} + \text{나} + \text{다}) \times \text{요율}$

2.  $(\text{가} + \text{나}) \times \text{요율} \times 1.2$  1과2중 적은 값

병 : 1.  $(\text{가} + \text{나} + \text{다} + \text{라} + \text{마}) \times \text{요율}$

2.  $(\text{가} + \text{나}) \times \text{요율} \times 1.2$  1과2중 적은 값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사급자재 및 골재 등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골재비)×요율과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골재비)×요율×1.2배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218, 2002.05.17.)

##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1999년 총괄계약하여 연차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3차년도까지는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 대상액을(직접노무비+재료비 : 관급자재대 및 사급자재대 미포함)×비율로 적용하여 준공된 현장으로 기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당초대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고 금회(4차)분 이후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대하여는 ①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 및 관급자재대 포함) ②관급자재대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사급자재 포함)으로 계상한 금액의 1.2배 이내에서 계상되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47, 2002.05.29.)

## 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 질 의

건설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아파트공사 등을 수행할 경우 도급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실행내역서를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작성할 수 밖에 없는데(자체공사는 도급계약서가 없음) 회사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실행내역 비목을 구분하면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공사경비 등으로 구분해서 실행내역서를 작성함

법정안전관리비란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로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외주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외주비의 경우 분명 하도업체의 장비, 공사경비, 이윤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주비 대부분이 노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어 외주비 전체를 대상액에 포함하여 대상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미확정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인용하여 외주비도 70%정도만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자체 사업계획서상의 재료비 및 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고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 공사내역 중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주가공비”의 경우 동 비용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가 시공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때 외주가공비의 세부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관리비는 자체 사용 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52, 2002.05.30.)

##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 질 의

1. 안전관리비계상에 있어 최초 예가상에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있고, 공사입찰시 수급인은 낙찰율(예 80%)을 적용하여 도급받았으며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수급인이 사용하여야 할 법적 안전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할 수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가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낙찰시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낙찰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예100만원)를 계상한다면 그 금액을 법적 안전관리비로 볼 수 있는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289, 2002.06.19.)

### 아파트 평당단가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질 의

1. 안전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노동부 고시”에 의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현장은 타 공사와는 달리 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광고, 아파트공사, 입주까지 평당단가로 계약하여 도급을 받았음. 따라서 안전관리비 대상액의 금액산출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도급계약상의 총공사금액”을 당 현장에서 처럼 모든 분야(분양계획수립, 모델하우스건립 및 운영, 광고, 아파트공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어떠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평당 단가로 계약한 도급액이 되는지, 아니면 도급액중 아파트 공사비만을 대상액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3.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비에 VAT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매월 작성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VAT 포함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 등으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계약상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하여야 하며,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 중 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동 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와 함께 계약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위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3.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볼 경우에는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계상과 정산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96, 2002.06.24.)

## 일괄발주 계약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질 의

Plant 건설 Turnkey 공사시 설계와 자재조달이 한건 계약이고 건설공사가 따로 계약되어 공사를 수행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설계/자재조달, 건설공사는 같은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이런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만 계상하는지
- 아니면 건설공사비에 1.2배로 계상해야 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그 계상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에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동 설치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311, 2002.07.05.)

## 택지조성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 계상방법

### 질 의

일반건설공사(갑) 2.48%(5억원 미만),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5억원 미만)을 적용토록 고시되어 있는 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적용토록 되어있음  
질의내용은 공유수면매립공사에는 어떤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참고로 공유수면매립은 택지조성이 목적이며 매립, 우·오수시설, 도로, 전기, 상하수도, 조경공, 기타부대공사로 이루어져 있음)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상의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로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를 말함

귀 질의의 공유수면매립공사가 택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오수시설, 전기, 상·하수도, 조경, 기타 부대공사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의 형태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공사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336, 2002.07.19.)

## 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

### 질 의

터널 525m(지하 50m)를 NATM공법으로 굴착하는 전력구 건설 현장으로써 '98년 5월 계약시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중건설 공사로 분류하여 계상토록 지적된 바, 설계변경시 중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비율 적용여부

-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 공사금액(도금액) : 5,533백만원
- 공사기간 : 1998. 5. 1 ~ 2003. 1. 21

### 회 시

귀 질의의 전력구공사(지하 50미터, 길이 525미터의 터널공사)가 전력케이블 설치공사와 별도 발주되어 시공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1997. 12. 23)중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에 해당하는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금액보다 부족하게 계상되었다면 발주자가 즉시 이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353, 2002.07.24.)

## 안전관리비 초과계약시 법 위반여부 등

### 질 의

1. 총공사금액을 표기할 때 관급재료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을 산출할 때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를 대상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를 제외한 대상액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급자재비만 제외한 대상액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 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3. 위 경우 발주처(관)에서 1.2배를 초과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회사와 계약하고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4. 안전관리비 산출시 꼭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 산출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산출하여 사용내역서 작성시에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작성한다면 법 위반이 안되는 것인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관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로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됨
- 2, 3. 귀 질의의 관급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경우를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며,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사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말하고 발주자가 위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해 주었다면 법 위반은 아님
4. 부가가치세는 공사원가계산서상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정산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82, 2002.08.09.)

### →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

#### 질 의

당 현장은 관 발주공사로 책임 감리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공사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산정자체가 당사의 입찰시 착오로 법정요율 산출에 미달하여 발주처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거 변경시켜 줄 수 없기에 당사 실행예산에 반영하여 법정요율 적용 산출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 감리원은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미달금액을 당연히 반영하여야 할 입장임. 이러한 경우 도급 내역서에 산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비만 사용하여도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인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공자는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적정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00, 2002.08.22.)

### → 시공사 구매자재를 지급자재로 볼 수 있는지

#### 질 의

병원 운송설비(물품계약)관련하여 계약(1999년 12월 ₩2,000,000,000/ VAT포함)을 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하여 병원 감리단과 이견이 발생

당사에서는 현장설치 자재는 당사가 구매하여 현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자재 조립 및 설치 위주로 공사가 진행 중임.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에 있어서 당사가 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제1항제2호의 “안전관리 대상액”에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회계예규 '99.9.9) 제13조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07, 2002.08.29.)

##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등이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되는지

### 질 의

공사비용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공사에서는 도급액의 70%중 1.88%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었는데 저희 현장은 도급액에 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건립 운영, 광고, 공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평당 단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비라고 할 수 있음. 공사비만을 따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바 공사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분양계획수립비, 모델하우스 건립·운영비 및 광고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만 책정된 공사의 경우, 동 항목중 분양계획 수립비, 광고비, 모델하우스 건립비(본공사의 일부로 계약시는 포함) 등 본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의 공사 실행금액이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이윤,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9, 2002.11.11.)

## 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질 의

물품구매(플랜트 프로세스 설비) 및 설치시공을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도급형태: 시설공사 일괄계약(설계, 구매, 설치시공) / 국내건설회사

- 도급비용구성: 물품구매비용(60%) + 설치시공비용(40%, 설계비용포함)
- 물품구매방식 : 발주처가 지명한 스위스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프로세스 설비의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

#### 회 시

설계, 구매 및 설치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 2003.01.07.)

### 안전관리비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 질 의

본 공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당초 발주 계약 당시의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은 50억원 이상 일반건설공사(갑) 기준인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레미콘+아스콘+투스콘)]} × 1.88%로 원가 계산되었으며 금번 설계변경에도 당초 설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순공사비 증가분만큼의 비율로 적용 산정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제4조(계상기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항목 관련으로 당초 계약당시 설계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였을 때 위 항의 1.2배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감리단의 의견은 1.2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 금액은 감액하라는 입장임.

하지만 위 법적근거는 안전관리비 계상의 최소 기준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당초 산출기준대로 산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

2. 위 제4조의 명확한 해석과 이러한 경우 당초 산출기준을 따라가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안전관리비 사용 금액(98.7%)이 1.2배 금액을 초과한 상태임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관급자재를 대상액으로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중 적은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한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이의 감액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4, 2003.01.17.)

###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 질 의

선로의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시설관리사무소의 업종을 운송지원서비스가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 회 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운송지원서비스”로, 철도 등의 건설은 “토목시설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무소가 행하는 주된 업무가 철도건설이 아닌 선로의 단순한 유지 및 보수업무라면 운수업 중 『철도 운송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해 선로의 유지·보수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금액 총액이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의 의무는 발행하지 않을 것임

(안정 68301-204, 2003.03.18.)

## 현장에서 설치하는 완성제품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 질 의

당 현장은 외주설계용역 감독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설계도서의 내역서에 의한 공사원가예산의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기 대상액 범위 중 당 부대에서 별도 단가계약으로 중앙계약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직접 납품받아 시행하고 있는 완성제품(합성수지창호, 조립식 욕실, 플라스틱 도아, 철재관물함, 총기보관함, 온수 AL방열기, 강관기둥철망 울타리, 콤테이너 탄약/무기고 및 무기운반상자)류의 금액도 대상액에 포함해야 되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 준칙(재경부 회계예규)』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합성수지창호 및 조립식욕실 등과 같이 완제품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되어 시공되는 자재의 경우, 그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계약시 이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22-88, 2003.03.31.)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의 1.2배 의미

### 질 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장, 제4조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여기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한 의미를

- 예를 들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억,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포함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억5천만원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1억원 ×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억2천만원이 한도이나,

(갑 설) :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하여 꼭 1억 2천만원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 설) :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하였으므로 1억원 이상 1억2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하면 된다.

따라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란 의미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의 정확한 1.2배를 계상한다는 의미인지, 1.0배 이상 1.2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조절하여 계상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 회 시

동 고시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대상액에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산안(건안) 68307-171, 2003.06.18.)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 질 의

『케이블선 납품 및 설치계약』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수급자가 제조 및 설치의 일부를 제조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에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고, 동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케이블선 납품 및 설치계약』은 제조업으로 동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수급자의 케이블 설치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는 자율사항임

### 2. 귀 질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별도 계상에 대하여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의 보호 및 보험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명목의 경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78, 2004.01.29.)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범위

## 질 의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범위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 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그러나 귀 질의의 설계감리비, 분양관련비용, 이주(비)관련비용, 민원처리비, 하자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680, 2004.01.2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련 질의에 대하여

### 질 의

1. 도급계약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 공사중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시 계상에 대하여

###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에는 대상액이 구분되었으나 도급계약시 대상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질의 1의 갑설)
2.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수행 중 공사비가 증·감액되었다면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총 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함(질의 2의 을설)

(산업안전과-1108, 2004.02.1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 질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에 관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

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239, 2004.02.24.)

###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 공사금액의 범위

#### 질 의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 공사금액의  
범위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 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정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242, 2004.02.24.)

### 발주(도급)금액이 평당단가(연면적 × 평당공사비)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아파트공사

#### 질 의

발주(도급)금액이 평당단가(연면적×평당공사비)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아파트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공사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이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 중 당해공사 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설계비·감리비·이주비 등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텔하우스 건립비용은 동 모텔하우스 건립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와 함께 계약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146, 2004.04.03.)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질 의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산업안전과-2147, 2004.04.03.)

##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 시행비, 감리비, 분양비,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질 의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에서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금액 또는 총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시행비·감리비·분양비·제세공과금·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귀하가 제외 사항으로 분류한 제세공과금은 당해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하여야 함)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예시한 50억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당해공사의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 × 70% × 1.88』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606, 2004.06.1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질 의

1. 공사를 시공하던 ○○건설(주)가 부도·폐업하여 그 잔여공사를 타회사에서 발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부도·폐업한 ○○건설(주)가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서류 일체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시공업체인 ○○산업(주)(전 시공사)가 부도·폐업함에 따라 잔여공사를 타회사가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당해 잔여공사를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임

2.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 시공사로부터의 관련서류 인수여부와 무관하며, 당해 공사에 대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7302, 2004.12.01.)

## 노반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

## 질 의

1. 발주처(철도시설공단)에서 노반신설공사(궤도설치는 없음)의 공사종류를 철도, 궤도신설공사로 적용하였으나 공사의 특성상 교량(일반건설 갑)의 공사금액이 45%, 터널공사금액이 9%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해 요율 적용이 타당한지
2. 시공사가 입찰시(설계시) 공사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철도 또는 궤도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는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종류 중 ‘철도·궤도신설공사’에 해당되며, 아울러 궤도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는 바, 만일 발주자는 위 고시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상의 공사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게 계상된 경우라면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산업안전과-328, 2005.01.1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

### 질 의

1. 관공사 수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적금액 이하로 계상되었을 경우 재계상의 의무가 발주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게 있는지
2. 공사시행중 일부 분양세대주의 추가 옵션공사(기존계약된 주방기구, 도배지, 변기교체 및 전동블라이드 등) 요구가 있어 조합이 아닌 각각의 세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옵션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옵션공사 금액을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면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06호)」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 공사시행 중 일부 세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옵션공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발주자인 당해 조합의 구성원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여지는 바,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247, 2005.03.23.)



## 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한지

### 질 의

발주자가 총액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954,093원을 내역합산 과정에서 누락하여 발주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았거나 부족 계상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액입찰시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원가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에 누락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196, 2005.06.27.)

##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질 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구분이 되지 않은 실적공사비 방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에 계상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식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 관하여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를 포함(직접공사비)한 시공단위당 가격을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동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7)」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404, 2005.11.24.)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65, 2006.01.26.)

##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한 회시

### 질 의

실적공사비 방식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2조제1항제2호에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고시 제5조제1항 단서에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고시 제5조제3항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라 함은 공사의 원가구성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다른 원가구성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하며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근거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있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상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로 보아 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1934, 2007.04.13.)

## 일괄 발주 방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질 의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 기자재 공급 및 설치, 시공, 시운전 및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일괄계약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노동부고시 제2002-15호를 적용받는 공사에 있어

1. 2007년 이전 고시의 경우 완제품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포함여부
2. 분리제작 납품된 터빈발전기의 경우 완제품으로 보아 재료비를 제외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귀 질의의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 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해당 공사내역서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07년 이전의 고시에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산업안전팀-2239, 2007.05.0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내용중 “제품”의 의미에 대한 회시

## 질 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의 의미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시멘트, 벽돌, 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임

(산업안전팀-2584, 2007.05.22.)

## 154KV관련 공사의 공사종류 등에 대한 회시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154KV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의 공사종류
2.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일지라도 안전관리비를 요율 이상으로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으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로 타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154KV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로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동일한 장소에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의 계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상기준에 의한 금액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사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산업안전팀-2687, 2007.05.29.)

## 발전소 설치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회시

## 질 의

발전소 건설공사의 설치조건부 구매에 있어 공장제작분 기자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 회 시

구매 및 설치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 또는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물품”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839, 2007.06.07.)

## → 공법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요율

### 질 의

당초 일반도로개설공사로 공사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적용된 공사가 터널공사가 전체공사비의 30%비중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공사종류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시 별표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 (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비록 공법의 변경으로 위험도가 높은 터널 공사가 반영되었지만 전체공사금액에 있어 해당 공사금액이 적은 것으로 판단 되므로 당초와 같이 전체공사비의 70%를 차지하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공사 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3253, 2007.07.04.)

## →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공사종류

### 질 의

1. 새로이 건설되는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
2. 노동부고시 2007-4호 개정 이후 철도노반 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여부
3. 철도 노반공사 뿐만 아니라 궤도신설공사를 포함할 경우 공사종류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시 별표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 (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고시 부칙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철도노반시설공사는 노반성토를 위한 절·성토 등의 시공 등 일반적인 토목공사의 형태와 과선교 건설 등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주된 공사가 노반신설을 위한 공사이므로 상기 고시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공사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공사종류의 분류는 상기 고시 부칙에 의하여 2007. 2. 21이후 계약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철도 노반 신설공사와 궤도신설 공사가 분리발주의 형태가 아닌 하나의 시공사가 일괄하여 시공할 경우 상기 고시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에 따라 공사종류를 분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3503, 2007.07.18.)

## → 단가계약 공사에서 개별 단위공사의 의미는

### 질 의

연간 단가계약공사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개별 단위공사별로 시공시 개별단위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있는데 개별단위공사의 의미는(작업지시 1건, 동일장소 작업지시 1건, 1회 준공기준 1건)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 2007-4호, 2007. 4. 2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단가계약공사라 하더라도 고압 및 특별고압 전기공사, 지하맨홀·관로 및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단가계약 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비는 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하고는 개별 단위공사를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공사에 한해 계상 의무가 있으며, 발주자가 공사내용, 물량, 공사기간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시공사가 해당 작업지시서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지시서에 따른 공사를 “개별 단위공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95, 2008.06.20.)

## 아파트 공사중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추가 공사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금액에 포함 여부

### 질 의

아파트 공사중에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설치 공사를 추가로 계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2008.10.22.)』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70퍼센트)으로 계상기준을 적용하는데 냉장고, 세탁기 등은 공사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국민신문고-2AA-0810-067366, 2008.10.2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대상액에 포함가능 여부

### 질 의

아파트 공사중에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설치 공사를 추가로 계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2008.10.22.)」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70퍼센트)으로 하여 계상기준을 적용하는데 냉장고, 세탁기 등은 공사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377, 2008.11.10.)



## → 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한 재산권 여부 ←

### 질 의

시설공사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재 활용 가능한 안전관리용품을 부대에서 인수하여 안전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관리용품의 소유권이 시공회사와 발주기관 중 누구에게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용품을 준공 후 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가능

(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05.26.)

## → 발주자 제공 재료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 질 의

1. 건설업체(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와 계약 시 공동 수급업체로서 A, B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 수급업체 A사, B사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모두 계상 받을 수 있는지
2. 승강기 설치공사 완료 후 완성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서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3.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총액의 30% 이내)이 삭제된 것이 맞는지
4. 건설공사 중 제조부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자로부터 공동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총액범위에서 A,B사의 지분을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원도급자로부터 공동수급(하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크레인, 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승강기 완성검사 등은 산안법령상 인증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불가함
3. 안전보건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별 사용비율은 2005.3. 17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으로 삭제됨
4.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2602, 2009.06.3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비 관련 질의회신

## 질 의

1.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현장에 보관 해야 하는지
2.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 중 소속 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출장비에서 ‘소속 현장’은 당해 현장만을 의미하는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음

1.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체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현장에서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음

2.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항목 중 업무수행 출장비는 당해 현장뿐만아니라 해당 업체의 소속 전체 현장 모두를 말하는 것임

(안전보건지도과-4804, 2009.12.31.)

##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질 의

연간단가계약 공사 현장에서 작업지시서별 공사금액은 4천만원이 되지 않지만 여러 개의 작업지시서 상의 공사기간이 연결되어 진행되는 경우 하나의 공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는 개별 단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

이때 개별 단위 공사로 합은 장소·시간적 개념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서 각각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공사기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공사조직에 의해 공사가 수행되고, 별도의 작업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하나의 공사로 보아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47, 2010.01.13.)

## 재해예방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환수

### 질 의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이었으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자 할 때 방법은

### 회 시

발주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임에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급할 안전관리비 정산액이 전체 계상 금액의 80%미만 이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환수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57, 2010.01.14.)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의 범위는

### 질 의

관급자재비에 부가가치세와 조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의 범위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총 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조달 수수료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급자재비에 포함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121, 2010.03.03.)

## → 터널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 질 의

○○철도건설 제○공구 노반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터널공사가 전체공사의 51%를 차지하는 경우 철도·궤도 신설 공사 적용요율인 1.58% (50억원 이상)의 적용 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종류별 적용 요율 계상과 관련하여 우리부는 '07.2.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4호, 2007.2.21.)을 개정 한 바 있고,

동 고시 개정으로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 4.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기설 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 궤도 신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동 고시 제4조제2항의 단서 조항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에 의하여 요율을 계상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철도 노반 건설 공사중 터널공사가 전체공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면 상기 고시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에 따라 중건설공사로 분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616, 2010.04.08.)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책임한계

### 질 의

<공사개요>

- 총 공사금액 : 590억원(A지역 : 513억원, B지역 : 77억원)
  - 발주처로부터 4개사가 공동도급을 받아 A지역은 주관사 포함 3개사가 시공하고, B지역은 나머지 1개사가 시공을 함(공동도급사 4개사 사이에 내부협약을 맺어 A지역은 3개사가 B지역은 1개사가 책임시공하기로 함)
  - 행정관서로부터 A, B 지역 각 구분되어 건축사업 승인됨
1. 공동도급사간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기로 한 경우 전체 공사비에 대한 A, B 공사비 비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별도 계상하고 집행할 경우 그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2. 위와 같이 공사를 하던 중 B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주체(현재 주관사 현장소장이 A·B지역 총괄관리책임자로 선임됨)
  3. 만일 분담시공하는 B지역의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시

1.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각 지역의 공사금액 비율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집행하여도 됨
2.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별도 시공조직에 의해 시공되고 고용관계, 작업지시, 하도급 등의 각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도 각 분담이행사에 있음

3.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한 바, 각 구역별로 해당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안전보건정책과-776, 2010.08.23.)

##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 질 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금액은 「총공사금액」기준인지, 아니면 시공비율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주계약자, 부계약자 등) 「지분금액」인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에 따라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여야 함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도급계약은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나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의 책임에 대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 이므로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성원 각자의 분담 비율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안전보건정책과-2562, 2010.12.0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귀하의 질의는 법상 계상요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한 것으로 설계변경 등 대상액의 변동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은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 도급계약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며, 계약에 따라 청구·지급한 금액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내용 및 계약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재예방과-131, 2012.01.13.)

##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완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제4조의 완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완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제4조의 완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4조에 의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에서 완제품 납품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을 달리한 이유는 완제품의 경우 이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경우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과-977, 2012.03.28.)

##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 질 의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전기 및 정보통신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일반 건축 및 토목공사를 연간 단가계약형태로 실시할 경우 연초에 맺은 추정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단위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과-2306, 2012.07.10.)

## 고압 및 저압공사가 혼재된 전기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 질 의

고압 및 저압공사가 혼재된 전기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3조(적용범위)제1항에 의하여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 중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총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의 경우 위험부담이 큰 공사로서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다른 종류의 단가계약 공사와는 별개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한 것으로, 귀 질의처럼 고압 및 저압 전기공사가



혼재되어 단가계약형태로 발주될 경우 고압공사와 저압 전기공사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높은 고압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단가계약의 내역 중 일부 저압공사를 포함 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산재예방과-2977, 2012.09.04.)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기술지도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건설업, 선박 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외부기관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장치 가동시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귀 질의의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56, 2000.02.25.)

### → 안전관리비를 공중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 가능여부 ←

#### 질 의

발주자측으로부터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별도·분리집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별도관리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중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해도 되는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공사종류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함)로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사업주와 총괄공사로서 계약하고 편의상 공중별로 공사금액을 분리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는 공중에 관계없이 공사전체에 대해서 위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227, 2000.03.16.)

### →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질 의

당사의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 회 시

귀 질의의 안전환경팀내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전담직원이 3인 이상인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파트 등의 조직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항목1에서 항목8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47, 2000.03.23.)

## →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고 안전관리비로 사용 여부 ↩

### 질 의

공사설계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감액 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위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기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비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사계약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74, 2000.04.03.)

## →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질 의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 제1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사용내역 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ENT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326, 2000.04.20.)

### → 리프트 무선폭출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건설용 호이스트카 무선폭출장치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호이스트카 무선폭출기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호이스트카 무선폭출기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406, 2000.05.16.)

### → 안전지원제 행사후 수건을 배포한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안전지원제 행사 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 배포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5항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지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지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장갑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용접작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용접작업용 안전장갑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49, 2000.07.21.)

## 안전관리자 통신수단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현장여건상 무전기로는 통신이 되지않아 다른 통신수단을 구입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하여야 한다면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73, 2000.07.26.)

## 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냉각자켓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열중증 예방을 위해 냉각자켓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730, 2000.08.09.)

## 2차 건강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여 1차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2차 정밀신체검사를 받아야 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건강관리 구분,사후내용관리)하는 것까지를 말하며, 채용시 또는 일반건강진단결과 질환의심자(R 판정)에 대한 2차건강진단을 포함함

2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99-29호)

[현행 노동부고시 제2001-45호] 별표2에 의해 8종의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한 질환이 아래의 8종에 해당하는 질환의 의심자라면 건강진단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 8종의 질환

1. 폐결핵 및 기타(비결핵성) 흉부질환, 2. 순환기계질환, 3. 간장질환, 4. 신장질환, 5. 빈혈증, 6. 당뇨질환, 7. 피부질환, 8. 기타질환(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검사)

(산안(건안) 68322-740, 2000.08.16.)

##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및 라벨비용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89, 2000.08.30.)

## 특고압선의 방호관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현장내 특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을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방호관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장내 장애물인 특고압선에 대한 방호관의 설치비용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서 규정한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63, 2000.11.30.)

## 안전기원제 행사시 초청자의 기념품비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안전기원제 행사시 초청자의 기념품비, 작업자의 포상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때 사용한도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하고 포상비 또한 안전유공자에 한하여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07.)

## 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지급여부

### 질 의

기존의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급여액의 10%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2000. 8. 5)으로 안전담당자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작업의 관리감독자가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질의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서 급여의 10% 범위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109, 2000.12.19.)

## 안전시설물 구입 시 발주처의 과도한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 질 의

1. 안전용품에 대하여 5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후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업체 구분없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기반입한 물건에 대하여 감액조치를 취할 것(원도급자와 협력업체간의 결제방법 및 반입처가 다른 관계로 단가 차이가 있음)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업체에서 받은 최저가도 물가자료와 비교하여 비싸면 물가자료의 단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교량공사가 3개소로 총연장이 1.3km로서 강교 거치시 안전난간이 필수적이거나 강교가 3개소에 동시에 이루어져 안전난간이 약 5,000개 정도가 필요하지만 2,000개 반입 후 감리단의 지시로 인하여 추가적인 반입이 안되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강교위에 작업자들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경우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단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입을 하여야 하는지
4. 기성 청구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공정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 회 시

1. 질의 1, 2에 대하여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가 실시하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안전시설 자재 등에 대한 구입단가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다른 공사의 정산방법 등의 예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2. 질의 3(안전상의 조치)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을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당해 작업의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3. 질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적법하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만큼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4, 2001.01.06.)

### 자진신고한 미검정 가설기자재 심사수수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자진신고한 미검정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성심사 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기준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을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동 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중 “사업장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5, 2001.01.09.)

## 습윤지역 전선거치대 및 LPG운반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1. 현장의 습윤 지역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선을 거치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전선거치대를 제작·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2. 현장의 가스 절단시 사용을 하고 있는 LPG 및 산소통을 직접 설치하고 작업시 전도 등의 위험으로(특히, 산소통의 머리부분의 파손으로 폭발한 경우가 있음) 인하여 이동용 가스운반구를 제작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1. 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습윤지역에 설치하는 전선거치대는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건설현장의 용접작업용 LPG통 및 산소통의 운반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스 운반구는 작업용 도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기존의 운반구에 별도의 전도 방지장치 및 소화기 보관함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부분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59, 2001.01.19.)

## 공사비에 반영된 기존 안전방망 해체후 일부 추가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 의

기존 안전망설치비는 공사비에 책정되어 있으나 기존 안전망을 해체하고, 일부 (roof 판넬설치로 인해) 천정지역 개구부를 막기 위해 재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도 안전방망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재설치 부분이 개구부 방호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이의 설치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60, 2001.01.19.)

### 안전보조원 인건비 및 안전시설 설치 유지를 도급에 의할 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1. 현장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전원)을 당사가 직영으로 채용하지 않고, 도급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와 화재감시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와 도급 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항목을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귀 질의의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 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중인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또한, 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급에 의해 수행을 하는 경우 그 도급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75, 2001.01.31.)

## → 제빙을 위한 재해발생 방지 염화칼슘이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 질 의

폭설로 인해 현장내 근로자와 작업차량 등이 통행함에 있어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염화칼슘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13, 2001.02.08.)

## → 사용하지 못한 안전관리비의 반환여부

### 질 의

당 현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아파트현장임 당 현장은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재개발조합과 시공자(원청)간의 공사비에 근거하여 1.88% 적용하였으나 준공시점에 이르러 시공사의 실행공사비(당초 계약공사금액대비 80%정도임)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하여 집행하려 하고 있음. 그런데 시공사가 자율안전관리 업체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집행금액은 재개발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6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 동 기준 제5조에 의하여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감액 또는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귀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최초 공사계약시 발주자가 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시공자가 자체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최초 계약시 금액을 기준으로 동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5, 2001.02.08.)

## → 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 질 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한 안전관리비 계상금액은 122,265,022원이나 도급내역서에 계약된 안전관리비 금액은 39,400,200원임.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작성시 도급내역서의 안전관리비 39,400,200원을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해도 하자가 없는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도급계약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이 되었다면 수급인은 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별표 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018, 2001.02.10.)

##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 차이점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시공안전관리비상의 차이점과 적용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금액 및 종류에 따라 각각 사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기준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에 명시되어 있음

이에 반해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비는 동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된 것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정기안전 점검, 건축공사 수행중 발생하는 주변 피해방지 및 주변의 통행안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양자는 용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구조물의 안전(품질관리)을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이 되고 별도의 목적에 따라 각각 사용됨

(산안(건안) 68307-10021, 2001.02.12.)

## → 혈압계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당 현장에서 혈압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1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혈압계를 구입하였다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34, 2001.02.17.)

## → 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연차공사의 경우 전년도 차수계약 완료 후 다음연도 차수공사 계약일까지의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참 고>

- (1) 당 현장 전체공사 계약기간 : 1997. 3. 19 ~ 2004. 3. 18(84개월)
- (2) 6차 공사 계약기간 : 2000. 1. 25 ~ 2000. 12. 20
- (3) 7차 공사 계약기간 : 2001. 1. 22 ~ 2001. 12. 31 준공예정
- (4)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 3인 전담

#### 회 시

차수별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는 총 공사 부가금액을 대상으로 전체공사 기간에 대하여 선임을 하여야 함. 따라서,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차수계약 간에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3, 2001.02.20.)

### → 라셀망을 폭목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현장의 건물 외측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은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건물 외측이 아닌 건물 바닥 끝단 또는 개구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폭목용으로 라셀망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참고로 폭목에 대한 강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안전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폭목 대응으로 라셀망을 사용하였다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또한, 폭목의 강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 참고로, 추락재해방지 표준작업지침(노동부고시 제2001-11호)에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을 10cm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cm이상으로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산안(건안) 68307-10044, 2001.02.20.)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집행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 질 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시 노동부선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1, 2001.03.07.)

## 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측정기 구입 및 바람에 의한 타워크레인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풍속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효과를 위한 차원에서 사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풍속계의 경우 고소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바람을 사전에 예측하여 작업수행여부를 판단하여 강풍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풍속계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90, 2001.03.20.)

## → 개인보호구 지참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 질 의

근로자가 직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참한 경우 보상금 지급방법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여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급금액의 증빙,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금전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금액은 해당 보호구의 시가내에서 적절히 지급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098, 2001.03.26.)

## → 안전화 깔창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의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기준에 의거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앞치마 등 안전 보호구
- 2. 상기 기준에 의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구입하여 착용하고, 작업중 안전화 내부가 습기에 젖어 착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화 구입시 내장된 깔창과 별도의 예비 깔창을 구입하여 필요시 깔창을 교환하여 착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에서 안전화 바닥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위 항목에 의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16, 2001.04.04.)

###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의 범위

#### 질 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2001-22호) 별표2 3번 항목 중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에서 업무용 기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현장 안전과 전용으로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당 현장에서는 노동부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5명임)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때,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한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17, 2001.04.04.)

## → 리프트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각층마다 설치하고 있는 리프트의 안전문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건물 각 층에 설치한 리프트 안전문이 근로자의 추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20, 2001.04.06.)

## → 계열사 파견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용 기기 사용여부

### 질 의

1. 당 사업을 ○○○시스템테크놀로지(유)에서 수주하여 수행함에 있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계열사인 (주)○○○에서 일부 인력을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1인이 “안전관리자”역할을 수행토록 하였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그간 기성을 통해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급 받았으나 현 정산시에 감리단에서 인건비 증빙자료에 (주)○○○발행 급여명세서가 “인력

파견법”에 의거 타당성이 없으므로 정산시 삭감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 정당한 법적용인지 또는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의 첨부할 서류가 무엇인지

- (주)○○○은 ○○○시스템테크놀로지(유)의 지분 50%를 소유한 상호계열사로서 인력파견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식발령을 통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을 받는 회사에서 파견하는 회사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파견자 본인의 경우 원소속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음

2. 총 공사비가 494억의 공사로서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관리자 1명의 안전보조원 3명을 선임, 여객터미널 및 부대건물 51개동을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TRS 4대, 무전기 1SET(2EA), 디지털카메라 3대를 4개사 공동구입 및 사용, 기성을 통해 지급 받았으나 정산시에 MPK감리단에서는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거 (별표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항목에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및 카메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TRS 3대 및 무전기 1SET(2EA), 디지털카메라 2대의 비용을 삭감하고 안전관리자용 카메라 및 TRS 각 1대만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시스템테크놀로지(유)에 소속된 자로 당해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동 기준 별표2의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41, 2001.04.16.)

## → 안전순찰차량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안전순찰차량의 부품 중 타임벨트 교환 및 타이어 교환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부품 중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48, 2001.04.21.)

## → 장소협소로 협력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1. 철골 설치공사시 구조물의 제작작업을 공사현장이 아닌 별개의 공장에서 제작하였을시 시간·장소적으로 현장과 분리되어 있다면 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2. 저희 현장은 공장내 구조물의 신설, 증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각 협력업체의 사업장에서 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시공하고 있음. 이처럼 시간적으로는 동일하나 장소가 별개의 사업장으로 있다면 그 별도 사업장에서는 현장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는지, 만일 사용할 수 없다면 안전물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철골제작 공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업체 적용이 되는 것이어서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공장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제작과정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를 일괄 하도급계약에 의해 수행하면서 하도급 업체가 당해 설치대상 구조물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이 곤란하여 제조 공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로 건설업에 해당된다면 당해 제작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60, 2001.04.27.)

##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 질 의

당 현장은 한국○○공사에서 발주한 원유비축기지건설공사임. 총 공사금액 1,630억원으로 년차계약으로 시행중 안전관리자 법적선임은 3명이 되나 금년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1번 항목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기준요율을 적용시 금액이 부족하여 1~2명만 선임할 수 있음(1차분). 이럴 경우 법적여건을 갖출 수 없는데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최종 준공시 전체 안전관리비에 사용기준을 맞추어 사용할 수 없는지

### 회 시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당해 차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82, 2001.05.09.)

## →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위한 수평강관 및 브라켓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질 의

공사내역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함에 있어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한 하부의 수평강관 파이프 및 브라켓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및 노무비가 안전관리비로 계상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및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수평 강관이나 브라켓의 재료비 및 인건비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91, 2001.05.14.)

## 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기자재 구입 비용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PC 및 인터넷 연결용 ON-Line 망을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98, 2001.05.16.)

## 타 현장에서 안전교육장 비품 이송시 차량운송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교육장 비품을 무상으로 전입받을 경우 차량 운송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구입한 자재를 하차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안전교육장 설치용 비품 운송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202, 2001.05.17.)

## 안전순찰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유지비의 인정범위

## 질 의

건설현장내 안전순찰차량을 안전관리자의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순찰 차량 유지비의 범위는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외에 개인소유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3, 2001.05.23.)

## 터널작업장 식별이 용이한 반사조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터널작업장에서 출입근로자에 대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반사조끼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작업복의 용도로 지급을 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230, 2001.05.30.)

##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 전액 지출여부

### 질 의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이상인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적용되는데 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약 60억으로서 공사 위험요소가 많아 전담안전관리자를 ○○노동관서에 선임신고 하였음. 이 경우에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100%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금액이 6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은 아니나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위 사용기준 내에서 안전관리자의 월 급여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235, 2001.06.02.)

## 작업용 우의 및 전선보호덮개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1. 작업자 우의 중에 상하분리형과 코트형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2. 용접기 사용시 용접기 홀더 연결구(용접기 2차측과 홀더선사이의 노출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어 테이핑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홀더 연결구는 노출면을 고무로 감싸고 있는 제품임) 및 어스용집게(일반적으로 집게를 사용하지 않고 홀더선을 용접부위에 묶어서 쓰는데 이 경우 접촉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있음)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3. 바닥의 전선보호를 위한 전선보호덮개(전선노출부위에 장비 및 차량이 통행하면서 전선피복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음)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4. 표지판 제작시 안전관련 문구만 써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라든지 기타 문구가 섞일 경우 안전관련한 문구가 전체의 몇 %정도를 차지해야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따라서, 당해 작업상황 등에 따라 적정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됨
2. 용접기 홀더 연결구 및 어스용 집게가 용접작업시 접촉 불량에 의한 감전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바닥전선보호덮개가 현장내 노출전선에 의해 근로자의 감전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4. 안전표지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는 당해 표지판의 주목적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37, 2001.06.04.)

## → 안전모용 땀흡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안전모용 땀흡수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모를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 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261, 2001.06.14.)

## → 비계용 안전화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고소작업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용 안전화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비계용 안전화”가 건설현장에서 비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74, 2001.06.21.)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 질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음

(산안(건안) 68307-10351, 2001.07.25.)

## →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안전관리비(카메라, VTR 등)의 손료처리 가능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있어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안전보건 교육기자재 등에 속하는 안전헬스, 카메라, VTR등 비품인 경우

<갑설>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안전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사용기간이 짧은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손료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바라며, 손료처리의 경우 그 기간에 따른 기준은 어떠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구입 비용은 손료 개념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구입한 안전용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구입 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360, 2001.08.02.)

## 고압선이 타워크레인에 인접한 경우 전선방호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고압선이 타워크레인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전선방호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여 고압전선의 보호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 작업시 인접한 고압전선의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3, 2001.08.04.)

## 안전시설요원 퇴직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안전시설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시설요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동 시설요원이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충당금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374, 2001.08.04.)

## 안전가시설재 정리시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안전가시설재를 정리하기 위해 인력이 아닌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사용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구입·유지·보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안전가시설재 정리작업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해체작업과 연관되어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동 작업에 투입된 인력을 대체하여 사용한 장비의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94, 2001.08.23.)

## 지하굴착 현장에서 매연측정기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지하터널굴착현장에서 중장비 및 운반장비에서 배출되는 매연(배기가스)을 측정하기 위해 매연측정기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매연측정기가 중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 등으로부터 지하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98, 2001.08.24.)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시기 및 안전관리비의 손료 적용 정산가능 여부

### 질 의

1. 유해·위험방지계획,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안전보건관리비가 품목별로 금액이 초과할 때 사용이 불가능한지
2. 본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수정코자 하는데 이때 수정시기는 언제 하여야 하는지, 매년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수정하면 되는지
3. 발주처에서 기 사용한 금액은 매년도 손료로 집행하라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를 손료로 적용하여 정산하여도 되는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공사 수행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3.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등 안전용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은 당해 공사기간에 대한 손료 개념이 아닌 당해 용품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도 교육용 안전용품에 대하여 손료 개념이 아닌 구입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428, 2001.09.04.)

## 안전시설비가 부족하여 기준 초과 비용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당사는 ○○사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신설(확충)공사 [○○하수처리구역]”를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의 직상부에 고압선(22,900V)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감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보호카바를 설치하고자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는 바, 발주처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설치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본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37,034,661원이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하면 안전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이내인 18,518,330원이 상한선임

본 안전카바를 설치하는 비용이 20,000,000원을 상회하는 바, 안전관리비중 안전 시설비의 금액을 초과하며, 본 안전시설비는 안전카바외 다른 용도에도 사용 되어짐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8,517,330원보다 적은 실정임.

1. 본 고압선은 지장물로 간주하여 지장물 이설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안전카바용 안전시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2. 본 안전카바 설치비를 안전관리비의 사용 규정에 관계없이 전부를 안전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당해 공사에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50%이하인 바,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 고압전선 방호관의 경우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이하에서 사용을 하여야 하며,
2. 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에서 확보하는 등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42, 2001.09.14.)

### 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컴퓨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5번(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 중에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전용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노트북도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퍼스날컴퓨터만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PC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노트북컴퓨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453, 2001.09.18.)

## 박리재에 의한 질병방지용 방수조끼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당사는 ○○타워팰리스 3차 현장에서 A.C.S공법에 의해 코아공사를 하고 있음. A.C.S공법을 시공시 박리재 도포후 폼 내부로 슈설치를 하기 위하여 들어감. 그러므로 작업자 등 부위에 박리재가 침투되어 피부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조끼를 제작하여 착용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A.C.S공법에 의한 공사 수행시 박리재에 의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작업자들에게 방수용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한 경우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484, 2001.10.06.)

## 설계내역서에 포함된 낙하물방지망을 도급내역서에서 감액 할 수 있는지

### 질 의

국가기관으로부터 내역입찰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당 현장의 경우 낙하물방지망이 가설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상에도 일부 낙하물방지망이 계상되어 있는 바, 발주처에서는 낙하물 방지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낙하물방지망만큼 도급내역에서 감액 지시하는 바 내역에서 삭제함이 타당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7, 2001.10.08.)

##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지급방법

### 질 의

1. 개정 산안법의 안전담당자 선임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39개 공종에 대하여 직·조·반장 지위의 자를 안전담당자로 선임하고 그 책무를 다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비에서 담당자 급여의 10% 이하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적합한지
2.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안전담당자에게 지급된 업무수당을 정산할 경우 반드시 급여명세서에 기록된 것만을 인정하는지

폐사의 경우 안전담당자의 지위에 있는 자 모두 정식직원이며 안전담당자는 해외현장을 수시로 입·출국하는 관계로 해외에 적용되지 않는 산업안전관리비를 일률적으로 급여(상여포함)에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됨.

3. 따라서 산업안전관리비가 각 공사 PJT별로 계상되고 정산되는 특성상 투입된 인원과 해당 안전담당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현금이나 현물로 규정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원에 대하여 대장관리(기타 본인의 영수증이나확인서)를 실시하여 그 증빙으로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본사에서는 본인의 소득에 따른 종합과세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것인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귀 질의의 안전담당자가 직원으로서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위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동 기준 별표 2 항목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급여의 10%이내의 업무수당”에서 월 급여는 동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 지급하는 월 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임금 지급에서 제외됨. 이 경우 급여 계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할 계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외에도 동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귀 질의의 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0, 2001.10.09.)

### 안전관리자 업무용기기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현장 안전사진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음. 사진인화를 현상소에서

하는 대신 칼라프린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칼라프린터를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안전관리자 전용컴퓨터와 안전관리현황을 CD-WRITER도 적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카메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칼라프린터기, 컴퓨터, CD-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11, 2001.10.24.)

### 환기FAN 가동에 따른 소음차단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터널내 환기를 위해 입구에 FAN HOUSE를 설치하여 12개의 FAN HOUSE 주변에 설치하려고 함. 방음벽 설치시 소요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 방진설비 및 방음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 질의의 터널작업장내 환기장치 주변에 설치하는 방음벽의 경우 동 설비가 환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여 터널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청력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항목이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14, 2001.10.25.)

##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보상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 질 의

1.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의 경우 대부분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보상금을 하도급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있다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할지 업무 기준이 있는지
2. 근로자가 동절기 제설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면 방한피복(방한복, 방한화, 장갑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공자가 구입하는 비용 대신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됨. 이때, 지급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보호구의 시가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2.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한피복은 동절기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비용은 공사 경비 항목중 복리후생비(지급피복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6, 2001.10.26.)

## 소화기 받침대 및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1.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에서 안전시설비 중 현장 사무실에 배치한 소화기 받침대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당 현장은 건설현장으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400m 정도의 임시도로가 있음. 안전관리자 개인 승용차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서류신고 양식 등 구체적인 기준 및 관련 절차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항목별사용내역및기 및』 항목2 (안전시설비등)의 규정에 의하면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소화기받침대가 소화기와 함께 소화설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받침대 설치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동 기준 항목4 (사업장의안전진단비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개인 소유차량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차량 사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 차량이 안전순찰에 사용된 것이 사실이고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1, 2001.10.31.)

**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지**

#### 질 의

노동부 고시 제2001-22호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안전관계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바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의 인건비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지
2.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의 안전업무용 기기란 반드시 전담안전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만 사용가능한지,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도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지



3. 유자격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계자가 안전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따라 위의 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의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안전보조원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또한, 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전기, 카메라 및 순찰차량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3. 그러나, 귀 현장과 같이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위 “1” 및 “2”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31, 2001.11.03.)

### 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카 운전원을 용역회사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채용하였는데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카 운전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시 용역회사와의 계약금액 전체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실급여 지급분에 대하여만 안전관리비 처리를 해야 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보조원 및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및 리프트운전원을 계약에 의해 사용  
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34, 2001.11.06.)

## →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1.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2. 법정 안전관리자의 정원은 2명(공사금액 1,200억원)이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하도급업체에서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후 임금의 정산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항목별사용내역및기 및』 항목1 (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및  
각종업무수당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1.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  
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하여 수행한다면 이 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 하도급업체에서 안전보조원 채용 및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1.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 법정 안전관리자의 정원은 2명(공사금액 1200억원)이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하도급업체에서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노동관서에 신고 후 임금의 정산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1.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 당해 현장의 안전보조원 퇴직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당 현장의 공기는 1997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임. 당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보조자(안전반장)로 재직하던 안전반장이 퇴사하게 되었는데 안전

인건비로 퇴직금 및 년월차 수당을 10월분 안전관리비의 안전인건비로 정산을 하였는데 정산이 가능한지 안전보조자 근무기간 : 2000. 6. 19 ~ 2001. 10. 14 약 13개월간 임금은 월급제이며 본사 지급임

#### 회 시

귀 질의의 안전보조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한다면 동 안전보조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38, 2001.11.10.)

### 미션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당사는 1,000억원 공사로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3명을 법적기준이상 선임 운영하고 있음. 협력사 하도급액 30억원으로 협력사 자율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노동부에 선임신고 없이 전담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할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보아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규정한 안전보조원인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43, 2001.11.13.)

### 안전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표 2의 5번 항목중 교육기자재의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관련 사진 등은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은 TV와 VTR을 이용해 하고 있으나 비디오자료는 토목현장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자체적으로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자료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함. 이를 안전관리비로 투자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구입비용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현장에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49, 2001.11.15.)

### → 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

#### 질 의

현장에서 안전관리비의 미사용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2001-22호)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감액조치하여 반환했을 때 노동부의 처벌(과태료 등)을 받게 되는지

#### 회 시

귀 질의 내용대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대공사와 무대공사를 도급(동일계약, 동일장소)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무대공사(토석제거)에 투입된 안전관리비를 사용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 시

귀 질의의 토석제거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공사비 책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라면 당해 토석제거 공사 수행시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체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59, 2001.11.19.)

## 리프트 자동운전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호이스트운전원 대신에 요즘에 자동운전장치라는 기계장치를 부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았음. 이것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귀 질의의 리프트 자동운전장치가 운전원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75, 2001.11.30.)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및 전선거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1. 현장내 잣은 굴착과 되메우기 작업을 병행함에 따라 법면 상단부에 고정 표준안전난간대의 설치가 곤란하여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목적으로 안전헬스와 강관파이프를 굴착법면 상단부에 안전난간대 대용으로 고정 설치한 경우 안전헬스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현장내에서 사용하는 가설전선은 대부분 관리소홀로 바닥에 닿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어 피복손상으로 인한 감전재해 위험이 많아 노동부 패트론펙점검시 전선거치대를 이용하여 가공(공중)배선한 상태에서 사용토록 지도를 받아 기성품의 전선거치대를 구입·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용과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굴착법면 상부에 설치한 안전헬스 등의 시설물이 현장내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접근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이라면 동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피복 등의 손상으로 인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입·설치하는 전선거치대의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76, 2001.11.30.)

##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운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설치중 운반비(장비사용비 등)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교육장 설치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및 장비사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78, 2001.11.30.)

## 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의 모든 업무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2. 건설현장에서 안전반장(안전보조원), 리프트카 운전원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을 때 이를 파견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용역계약 금액 일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 가능여부

## 회 시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며, 리프트 운전 및 안전보조원의 업무가 이러한 업무에 해당된다면 동법상 파견이 금지됨
2.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와는 별개로 안전보조원(안전반장), 리프트 운전원 등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2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0, 2001.11.30.)



## 추락방망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 질 의

교량(PSC BEAM)공사 추진중 추락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비에 계상시키고자 함. 도급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으로 명시된 항목이 있으나, 비계와 철망 설치로서 철망은 작업여건상 합판 및 비계발판으로 대치한 후 추락·비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였음. 위와 같은 여건을 고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 인정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처럼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안전방망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603, 2001.12.11.)

## 수직방망 및 접지형 플러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1. Gang Form의 Cage 외부에 설치되는 낙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수직방망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위한 접지형 플러그 구입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수직보호망이 비계 등의 외부에 설치하여 작업하는 쪽에서 물체가 비계 등의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하고, 동 비용이 공사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접지형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7, 2001.12.12.)

###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 잠수교육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 의

수중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잠수장비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가능 여부

1. 비상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잠수장비 구입비
  - 예비용 잠수장비 : 작업중 공기의 고갈, 장비의 고장 등 비상시 작업자가 바로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중작업장에 비치용
  - 보조용 호흡장비 : 주호흡기의 고장 또는 공기의 고갈 등 비상시 및 상대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발생시 주호흡기 대용으로 사용
2.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up-grade 잠수교육
  -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한 잠수교육을 받는 경우
  - 잠수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40m의 심해 잠수작업 관리를 위한 심해잠수 교육 또는 nitrox 등의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
3. 수중작업시 작업자의 위치표시를 위한 다이빙소시지 등의 부품 구입비(통행 선박 등에 의한 작업자의 위험방지)
4. 작업자의 질소마취 등을 잠수병 방지를 위한 다이빙 스케줄 관리용 다이빙 컴퓨터의 구입비

####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질의 수중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수중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잠수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별표 2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전용 업무용기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2. 질의 2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의 잠수교육은 안전관리자에 대한 잠수방법 및 잠수기술 습득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잠수용 예비장비 및 보조잠수장비 등이 수중공사시 지급되어야 하는 잠수장비 외에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비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3. 질의 3,4에 대하여

작업위치 표시용 부표 및 다이빙컴퓨터의 경우 동 장비 등이 당해 작업수행시 반드시 설치되거나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등이 아닌 당해 작업수행시 작업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 또는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8, 2001.12.12.)

# 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관련 기관 및 본사 안전관리팀의 안전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 기회가 많아 관련 업무 수행시 비용이 발생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항의 출장비 등 관련 비용에 “숙박비 및 일비(출장시 일당식으로 지불됨)”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련 기관 및 본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하는데 소요되는 숙박비 및 일비 등의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611, 2001.12.13.)

## → 제비용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현장내 결빙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염화 칼슘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귀 질의의 현장에서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612, 2001.12.13.)

## → 실공사착공전 선행된 공사 준비기간 중 사용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 질 의

발주처와 공사계약체결후 현장사무실 부지정리작업, 사무실신축, 착공식준비, 현장방음, 방진벽(높이 6M) 설치 등 발주처에 공사착공계가 제출전 공사가 선행되면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표지판, 개인보호구(직원, 근로자용)구입 등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였으나 착공계 접수전의 사용 안전관리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취지상 착공계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안전관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한 안전표지판, 개인보호구 등의 비용 및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경우 지급하는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620, 2001.12.20.)

## →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가 퇴직하여 행방 추적이 곤란한 현장소장인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대상

<갑설> 과태료부과 처분은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벌로 위반행위를 한 전임 현장소장은 퇴직으로 처분이 곤란하므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없음

<을설> 과태료부과 처분이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벌이기는 하나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므로 현장소장의 퇴직으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법인)를 부과대상으로 하여야 함

<병설> 사업주인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인에 대해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신임 현장소장은 전임자의 제반업무를 승계 받았으므로 신임소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임

### 회 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에 관한 법인이 범죄능력·형벌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목적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의무주체(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임

따라서 법상의 의무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당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 (“갑”, “을”, “병”설 모두 타당하지 않음)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안정 68307-1213, 2001.12.21.)

## → 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질 의

타워크레인 탑승, 지하작업 등 근로자의 고소작업 장소 이동시 추락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 마스터 내부 또는 고소작업 사다리 측면 등에 설치하여 권상기에 연결된 와이어로우프가 부착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이동할 수 있는 아래의 추락방지장치(와이어로우프식 건설용리프트)를 타워크레인 설치 후 추가로 설치시 안전장치(14종)의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탑승용 리프트에 설치하는 낙하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작업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한다면 동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635, 2001.12.28.)

## → 자산성 장비 구입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

### 질 의

자산성 안전관리비의 사용(예를 들어 현장 안전작업 이행여부와 지시를 위해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산소농도측정장비 등을 구입한 경우)에 있어 당해 공사 종료시의 해당 기기의 소유권이 발주자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자 측에 있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가 공사비 중 일정금액을 확보하여 당해 공사 수행 중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위 금액을 동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 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안전보조원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2항 및 시행령제45조 제2항을 숙지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2001. 7. 9)하여 당 현장을 운영하였는 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안전보조원으로 해석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것이 목적외 사용인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동 현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안전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09, 2002.01.11.)

## →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질 의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현수막을 설치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기저기 분산설치로 잦은 훼손 및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바, 안전조회장 전면에 안전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 안전현수막을 일괄 게시함으로서 관리상의 용이성과 안전의식 전파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설치 사용 가능한지(단, 현수막 걸이대에 안전관련 현수막으로 제한)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 내에 설치하는 현수막걸이대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 현수막걸이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10, 2002.01.11.)

## → 화재예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1. 현재 공사진행중인 건설현장내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시공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에 자동화재감지를 위한 감지기 및 자동탐지시설 (수신반등)시공



- 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 전기배관을 외부 노출배관 시공
  - 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 스위치와 환풍기 연동장치 시공(내부 조명스위치 작동시 환풍기 작동)
2. 신규개설현장에서 상기항목을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를 여부와 상기 내용중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능 항목이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화재경보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내 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협력업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화재감지장치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화재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배관 노출 시공비용 및 스위치와 환풍기의 연동장치 시공시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1.14.)

### →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 질 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갑 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을 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병 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부분이고, 근로자의 임금에 일정요율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임금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음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01.17.)

## → 손료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질 의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자재중 재활용이 가능한 단관PIPE (0.48×6M) 및 보강지주대(제작품 0.48×7M) 자재비를 공기에 대한 손율로 산정하여[건설표준품셈표 제2장 가설공사, 2-5파이프비]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시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동 자재의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이 이에 해당함

(산안(건안) 68307-10027, 2002.01.24.)

## 안전시설물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 의

1. 안전가시시설물(난간대등)에 대한 가설전문업체에서 신제 또는 구제를 임차하여 사용시 임차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여부
2. 안전가시시설물(난간대등)을 구입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전용등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허가 유무

### 회 시

1. 현행 규정상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시 소요되는 가설기자재의 비용에 대해 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안전시설물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자재의 구입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비(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 설치비 등은 사용가능)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28, 2002.01.24.)

## 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질 의

용접작업 시에 용접사의 화상과 시력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용접면과 용접장갑을 개인안전장구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안전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시에 안전교육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개인자격으로 강의하고 강사료를 수령할 수 없는지(안전관리 법인 명의 영수증만을 요구함)
2. 안전의 날 행사에서 안전수칙 준수 모범 근로자를 근로자 10명 당 1명 정도 선정하여 1인당 50,000원 정도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문제의 적법성 여부
3. 안전의 날 행사와 정기 안전 교육 시에 근로자 1인당 3,000~5,000원 정도의 다과비를 집행하고 있는 문제의 적법성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 초빙강사료와 포상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1. 따라서, 질의의 용접작업용 용접면 및 용접작업용 장갑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위해 초빙하는 외부강사(개인의 경우 포함)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안전보건행사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사용은 일정 인원내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안전보건행사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용의 경우도 그 사용한도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3.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명목의 회식비용 및 안전보건교육시 음료비용 외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5, 2002.01.30.)

##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시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시공시 안전장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4대의 기기설비가 있는 동일사업장에서 기기설비유지를 위한 1년간의 경상공사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경상공사 기간 중 1대의 단위기기설비에 대한 특정기간(약 1달)동안의 계획예방공사가 동시에 이루어 졌을 때 각 경상, 계획예방공사 계약에 의해 별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장구를 상호 공사에 교체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 및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귀사에서 기기설비 유지공사 수행 중 동일현장의 기기일부에 대하여 계획예방공사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 비록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사에

의해 수행되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6, 2002.01.30.)

## → 건설체험교육장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1. 체험교육장 사용목적으로 임대한 부지의 임대료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2. 체험교육장 주변의 가설울타리와 바닥 콘크리트 타설비용도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1. 귀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체험교육장이 현장부지의 협소 등으로 현장 내에 설치가 어려워 부득이 당해 공사와 연관 되는 장소에서 당해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교육장설치에 소요되는 건물 및 부지 등의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2. 교육장과 부대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및 교육장 바닥 콘크리트 타설비용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00, 2002.02.04.)

## → 안전시설물 유지 및 보수 전담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질 의

공사와는 별도로 안전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킨다면 그 인건비(월급제)를 안전관리비의 시설비 항목으로 정산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동 근로자에게 위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안전보건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때 인건비는 월급제 형태로도 지급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56, 2002.02.05.)

## 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질 의

1.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 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컨설팅회사(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와 현장 안전점검 등에 관한 용역계약(민법상의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용역업체에 지불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4번 항목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로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안전전문가는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따라서, 타법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위하여 초빙한 안전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이때, 안전전문가에 대해서는 그 자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분야 대학교수,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및 건설안전기술사 등 건설분야 자격소지자 등이 이에 해당함

(산안(건안) 68307-10063, 2002.02.08.)

##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화물용 LIFT(호이스트) 운행구간에 추락, 낙하물방지용 자동개폐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자동 안전장치가 낙하물방지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 운행 구간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22, 2002.03.28.)

## 불꽃방지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절단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SPARK FENCE(일명 “불꽃방지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SPARK FENCE”가 절단작업 수행시 발생하는 불꽃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29, 2002.03.29.)

## 가설전선 피복을 위한 ELP주름전선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 의

장재(H빔)를 양중 및 이동시 가설전선과 부딪쳐 전, 단락등 위험이 있어 가설 전선을 ELP주름 전선관에 넣어 충돌시 가설전선 피복을 1차적으로 보호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할 때 가설전선 보호관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설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전기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량물의 인양 및 이동시 가설전선에 접촉됨으로써 발생이 우려되는 감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ELP주름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34, 2002.04.01.)

## 안전자재 반입시 장비사용료 등

### 질 의

안전자재 반입, 반출 등에 소요되는 운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 현장내에서 근로하다 보면 기 입고된 안전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옮길 때가 많은데 운반 장비인 지게차 운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2. 안전자재를 타 현장에서 반입 받거나 타 현장으로 반출, 자재 수리를 하기 위해 공장으로 보낼 시 차량 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따라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 등을 현장으로 반입 하거나 현장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2. 당해 장비의 사용료 및 운반비 등이 공사비 내역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공사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38, 2002.04.04.)

### → 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 임대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요즘 보급중인 리프트카 무인 자동운전장치 설치 임대료를 안전관리비로 계상 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토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리프트 자동운전장치가 운전원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동 장치의 설치비용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동 기준 별표 2의 “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43, 2002.04.10)

## →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 여부 ←

### 질 의

약 43억원의 관급 토목공사현장에서 1992년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가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는 없으나 관할노동사무소에 선임신고를 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중 1번 항목의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의 40% 이내에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이 가능함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귀 현장에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귀 현장이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0, 2002.04.10.)

## → 낙석방호 철망 및 건설기계 후진경보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질 의

작업구간내의 터널작업중 근로자들의 주출입로인 터널입구 절개지 법면에서 해빙기 및 우천으로 낙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낙석방호시설(철망)을 설치할 경우 터널내에서 작업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기계 기구에 후진경보음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를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및 작업장 등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경보기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낙석방호 철망이 경사법면에서 발생하는 낙석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을 말하고, “후진경보음(후진경보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이 작업차량의 후미에 설치되어 작업장 내 주변에서 작업을 수행중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53, 2002.04.13.)

## 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 질 의

역사의 환기, 공조 시설 공사현장에서 현장 특성상 24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안전보조원도 안전업무를 하고 있음. 야간에는 안전관리자가 주간에는 안전보조원이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데 안전보조원이 야간에 단독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야간작업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동 안전보조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60, 2002.04.17.)

## 철도공사 야간 작업수행자 야광조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철도역사 현장에서 선로변 작업시 작업자들의 안전식별용 야광안전조끼를 착용 시키고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야광식별용 안전조끼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참고로 공사장 중심부로 통과하는 열차의 5개선로가 있음>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을 열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안전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87, 2002.05.06.)

## 통신시설 사용 가능 여부(가능 또는 불가능)

### 질 의

당사가 건설업종으로 시공중인 현장(작업장)이 지하 공동구나 맨홀인 관계로 대다수가 사용중인 휴대전화 등이 불통되는 지역인 관계로 응급 또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1차 수준인 인편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이에 당사에서는 지하 공동구에는 한국통신 등에 협조를 받아 유선을 설치, 비상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자체적으로 현장 사무실과 지하작업장간의 인터폰을 설치(거리에 따른 감도차이 현저) 사용하고자 함

맨홀의 경우 무선전화 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지하 작업장에 증폭기 등 중계기를 설치하여 비상시 사용(기설 사용중인 도로인 관계로 유선설치 불가) 체계를 수립, 확보하고자 하오나 시설물 설치(기기 : 무상임차, 유선 또는 통신선 포설 : 수용자 부담)에 따른 비용이 발생

산안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유선선로 포설 및 철거 인건비와 설치 등에 따른 약간의 지급수수료 등 발생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고시 별표 2의 8항목중 어느 항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비상사태 등의 발생에 따른 작업자들의 대피 등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대해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러한 목적에서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작업상황 파악 등을 위한 통신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우는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99, 2002.05.10.)

## 부대입찰시 원·하도급자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 질 의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부대입찰로 낙찰되어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였으며 당사는 설비업체로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음. “갑”측인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명목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구입한 물건값도 기성에서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현장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하도급공사의 경우도 원도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원도급사가 직접 귀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동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1, 2002.05.11.)

## 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 질 의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연매출액 80억원 상당의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하인 건설업체(발전설비정비)의 안전담당자이며, 사업소 안전순찰 및 각종 공사시에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등을 확립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합당한지 그리고,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지급대상으로써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련 업무 수행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동 업무수행자에 대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9, 2002.05.15.)

## 설계에 반영분을 초과 사용한 원·하청간의 안전관리비 사용문제

### 질 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중 구조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하도급사)로서 당사에서 하도급 받아 시공중인 교량에 낙하물 방지공사가 원청사 직접공사비에 약 300만원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는 약 2,000만원 정도로 초과 투입되었음

이러한 경우 원도급자는 낙하물방지공사 초과 투입분에 대하여 당사(하도급자)의 안전관리비로 정산토록 공문이 접수된 상태임

원도급자의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의 차액분을 당사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함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원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원도급업체가 설치한 안전시설의 설치비용을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0, 2002.05.15.)

### 교량 공사에서 안전난간 및 난간 고정용 브라켓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1. 교량 coping부 추락예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기존 코핑난간용 브라켓은 강고거치시 해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특별 제작한 브라켓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본공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순수한 추락, 낙하재해예방시설임)
2. 또 그 브라켓에 난간지주와 난간보를 단관파이프로 하려 하는데 단관파이프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단관파이프에 노란색을 칠하여 본공사용과 구별하여 사용하려 함)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브라켓 및 단관비계 등이 교량 상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의 설치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15, 2002.05.16.)

## 분실한 카메라 재구입 가능여부 및 안전시설 해체 비용

### 질 의

1.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년 5월에 구입하였으니 이번 2002년 3월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인정을 안하여 준다고 함. 감리단에서도 안전관리자 전용 카메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한번 구입이 되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함. 만일 현장 근무중 망실되었던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2. 구조물 구간 상부 슬라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양카볼트를 이용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음. 구조물이 완료되면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데 이때 안전관리비에 해체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비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슬라브 구조물에 구멍을 뚫은 것에 대한 원상복구비용도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계상을 하고 시공자는 동 기준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1.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동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작업(안전난간 설치용 슬라브 구멍 원상복구)이 안전난간의 해체작업과 연관되어 그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 교육용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교육장을 컨테이너로 렌탈하여 현장내에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안전보건교육장 기자재중 다음 항목을 렌탈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안전관리비 인정 여부

가. PC 주변기기-PC, 프린터, 스캐너

나. 디지털카메라, 팩스

다. 빔프로젝트, VTR, TV

라. OHP

마. 에어컨, 온풍기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안전교육장 책·결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전보건교육장 설치용 컨테이너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PC, 프린터, 빔프로젝트 등의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보건교육장 내부 냉·난방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44, 2002.05.28.)

##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비목으로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를 안전보조원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51, 2002.05.30.)

## 음주측정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건축과 달리 토목은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게 배치되어 있어 한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음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를 구매하여 현장을 순회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자를 사전에 퇴장조치코저 하는 바, 음주측정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57, 2002.06.03.)

## → 신호수의 인건비 사용여부

### 질 의

석산개발현장에서 발파작업시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참고로 1일 2~3회의 발파작업을 시행함)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신호수가 발파작업 수행시 사전에 근로자들의 안전한 대피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배치된 자를 말하고 그 인건비가 공사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0, 2002.06.05.)

## → 안전차량 추가운영시 유지비 사용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사용내역을 보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사용이 가능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안전관리차량 2대(더블캡-1대, 포터-1대)를 운영중에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교통관리비(단가구성 : 교통관리초소, 교통관리인, 교통관리차량(1ton 포터))을 반영하였으므로 안전관리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정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교통관리비 단가구성에 1ton 포터 1대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팀에서 추가로 운영중인 안전관리차량(더블캡)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회 시

귀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 (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도로공사인 현장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비에 반영된 차량 외에 추가로 차량이 필요하고 동 차량이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추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6, 2002.06.10.)

## 교량 크로스-빔 하부에 방호선반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현장에서 PC-빔 교량(L=90.2M B=27.5M) 작업시 CROSS 빔 철근 바로잡기 및 용접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업장소와 지상간의 높이가 15M 이상이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락사고의 위험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이 너무 많아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안전시설을 추락방지망으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용접작업시 추락방지망의 훼손 및 철근의 낙하시 하부 근로자에게 재해의 위험성이 있어 PC-빔 하부에 방호선반을 밀설하게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재해 위험, 용접작업시 불꽃비산방지 및 낙하물(철근, 기구, 기타자재)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작업구간에는 별도로 달대비계를 설치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방호선반이 교량 상부작업시 발생하는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7, 2002.06.10.)

## 고압전선 전기재해 예방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당 현장은 고압 전차선 공사로서 전차선 부근에 특고압(25,000V)의 감전위험으로,

첫째, 접근금지방지책 (비계 및 러셀망이용)을 설치였고

둘째, 접근금지관련 경광등 및 접근시 소리가 나도록 활선경보감지장치를 설치 하였으며

셋째, 근로자의 임의 접근금지를 위한 전차선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였으며

넷째, 활선근접 근로자에게는 휴대용 활선경보기를 배포하였고

다섯째, 접근금지시설 이설 및 경보기 수리도 하였음

1. 상기와 같이 산업안전관리비를 집행시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호수는 1번, 접근금지시설은 2번, 활선경보기(휴대용만)는 4번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2. 건설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고시를 참조하였는데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2번) 및 활선근접 작업경보기(4번)의 차이는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고압전선 등 위험 시설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용 방책 및 활선 근접작업 경보기,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 등의 장치,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다만, 위 사용항목 중 고압시설로부터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 수의 인건비는 항목 1 “안전관리비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으로, 고압전선 접근방지를 위한 방책 및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는 항목 2 “안전 시설비”의 항목으로, 활선근접작업경보기는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2.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는 정전작업 등의 경우 사전에 해당 전선로의 통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고, 활선근접작업경보기는 고압 전선 주변에 작업자들이 접근하는 경우 경보음이 울려 고압전선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74, 2002.06.12.)

### 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현장의 중장비의 대부분이 임대장비(이동식크레인의 방호장치가 고가이기 때문에

임대장비에서 기설치된 것은 상관 없지만 파손된 방호장치(권과방지장치, 로드 게이지 등)에 관해서는 업무를 못내고 있는 실정임

1. 방호장치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
2. 이미 구매하여 설치된 방호장치에 대해선 할증을 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3. 할증기준은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크레인에 기 부착된 방호장치(귀 질의 권과방지장치)가 귀 현장에서 사용중 파손된 경우라면 동 장치의 교체·수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동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손료(귀 질의 내용중 “할증”)가 아닌 동 제품에 대한 구입비용 전액을 말함

(산안(건안) 68307-10288, 2002.06.17.)

### 안전모 햇볕가리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하절기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일사병/열실신 등의 재해 뿐만 아니라 안전모 착용기피 현상 등 근로자 안전 관리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모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양막 형태의 제품(안전모에 끼우면 밀짚모자 형태)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 차양막 형태의 제품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320, 2002.07.09.)

## 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 사용여부

### 질 의

1. 안전체험교육장을 제작, 설치할 부지의 임차비용이 안전보건비로 가능한지
  - 안전체험교육장내 바닥 콘크리트와 잡석 등이 안전보건비로 사용 여부
  - 안전체험교육장 임차할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공사 전구간이 개발제한구역임), 체험교육장 가설건축 후 발생하는 세금(제한개발구역내 개발훼손 부담금과 취득세)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2. 레미콘차량 등의 하상 추락을 방지하고자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을 놓아 차량 추락방지대를 설치코자 함. 이때 소요되는 자재 및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바지선에 최대 5대 레미콘 차량이 탑승 가능하며, 바지선 내에서는 차량이 수시로 이동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함)
  - 바지선 내에서 차량운전시 운전자 시야확보 및 바지선 테두리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철골빔 추락방지턱에 노랑색 페인트로 도색 할 경우 제반 페인트 비용과 인건비가 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체험교육장 설치가 현장부지의 협소 등으로 부득이 당해 공사와 연관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교육장 대지 임차비용(대지 구입비는 제외)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의 바닥 콘크리트, 잡석설치 및 세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귀 질의의 레미콘 차량 등의 하상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으로 추락방지대를 설치하는 경우(유선 확인결과 바지선 위에서 펌프카에 의한 레미콘 타설시 차량이 밀려 강으로 떨어지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하는 시설물) 주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차량추락 방지를 위한 추락방지대 및 페인트 도색비용 등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8, 2002.08.06.)

## 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원청에서 일정금액을 하도급회사에게 안전관리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하도급 회사에게 안전화를 지급하라고 했더니 보호구가 성능검정품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싸고 불편한 안전화를 지급하고 있어서 조금 비싸지만 편한 안전화를 지급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지도·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구입여부 확인을 포함하여 동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당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함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선임된 원도급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보호구의 적격품 선정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좌 및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하도급업체에서 성능검정품인 보호구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이와 다른 제품을 구입토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16, 2002.09.04.)

## 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질 의

당사는 조직개편으로 팀명칭이 당초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 안전만을 전담하던 직원 3명(건설안전기사1급 1명, 노동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1명, 안전관리학과 전공자 1명)과 품질관리 전담직원 4명 등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 ISO 9001 업무표준절차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을 “안전파트”로 구분하고 당초에 수행하던 재해예방 각종 활동 및 산재처리와 관련한 안전업무를 실제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 본사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본사에 두어야 하는 안전 전담 부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 별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전담직원 3인이상으로 구성된 과·파트 등의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안전담당 부서의 명칭이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원이 품질안전팀 내에서 “안전파트”에 소속되어 전과 동일하게 안전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423, 2002.09.10.)

### → 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 포함 여부 및 목적외 사용시 조치

#### 질 의

1. 안전보건 행사후 참석자(근로자 및 관계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였는데 안전 관리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2. 안전순찰차량의 범위에 오토바이, 자전거도 포함이 되는지
3.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천만원인데, 목적외 사용으로 1백만원(인건비 50만원, 안전시설비 50만원)을 삭감당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 의하면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귀 질의의 음료가 안전보건 행사 후 그 일환으로 현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2. 동 별표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순찰차량에서 “차량”은 현장에서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총칭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도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시정하여 원상회복을 해야할 것임. 그렇지 아니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안전관리비(귀 질의의 경우 900만원)를 향후에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로 보고 집행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목적외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처해지고 또한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귀 질의의 100만원)은 발주자가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438, 2002.09.19.)

##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 질 의

1. 근로자 휴게소 내부에 난방시설 설치, 유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2. 도로공사 등 발주처가 있는 경우 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감리자나 공사감독 등 발주처 관계자의 승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잔액을 반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폭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2. 동 기준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잔여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 시설로서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 → 안전보건행사비 소요비용 사용여부 및 인정 범위

### 질 의

1.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행사기간을 선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무재해 선포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사전 준비물인 태극기, 무재해기, 각종 플랭카드/게시물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선포식 행사를 외부 행사 진행업체에게 의뢰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3.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해 선포식 등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 및 무재해 달성 등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1. 귀 현장에서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랭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진행을 위해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의 경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2. 이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4, 2002.11.29.)

##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 질 의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개인승용차(가족명의 차량)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자동차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비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 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5, 2002.12.09.)

## 감리자가 확인 날인하지 아니한 안전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인정 할 수 없는지 여부

### 질 의

감독기관(감리업무수행)은 건기법에 의해 현장의 재해예방대책과 안전관리(시공 안전)에 대해 관리감독하며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에 대한 통제기능은 법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만약 매번 안전용품 입고시 거래명세표에 감독관 확인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확인날인이 없는 용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감독관의 주장이 있다면 감독관의 안전관리 업무상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9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해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는 바, 발주자(귀 질의의 경우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관”)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5, 2003.02.10.)

###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 의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기둥(강관) 사이로 근로자가 작업중에 추락할 수 있음

따라서,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1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하면 추락의위험이 있는 장소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설비계가 충분하지 못해(설계시 안전난간대용 강관비계는 미계상 되어 있음) 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47, 2003.02.21.)

## 터널공사에서 긴급 대피용 발전기 및 CCTV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우리현장은 Shield 기계를 이용하여 터널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서 평상시 ○○전력공사의 전력을 인입하여 굴진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에 비상용 발전기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아 천재지변 또는 누전에 의한 정전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명시설이 없이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하는데 안전상 문제가 되며,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감안 할 때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설계에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발전기 및 CCTV 등을 설치하므로서 터널내 근로자의 작업상황과 유사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발전기, CCTV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포괄적이므로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과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발전기가 터널작업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 등의 전기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설치하는 CCTV의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1, 2003.03.10.)

## 안전보건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어떤 내용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1. 건설현장에서는 사전안전점검이 무척 중요함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점검을 사내의 인력이 아닌 외부의 안전관리 유경험자(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유, 실무경험 10년 이상)를 둔 회사를 통하여 실시하여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 중 4번 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의 항목으로 집행하려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여기서 말하는 외부 안전전문가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지, 자격조건이 있는지
2.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안전진단비 등)의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중 외부 안전전문가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당해 공사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이때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재해 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산업재해의 발생원인분석,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적정여부 등 관리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진단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2, 2003.03.10.)

##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집진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 의

지하층에 그라인더로 벽체 건축작업시 비산하는 콘크리트 분진으로 작업자 및

주변 작업자의 건강 및 작업에 영향을 주어 먼지 등을 모으는 집진기를 구입 하려고 함

물론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도 되나 분진 등이 넓게 퍼져 보호구지급이 한정 (작업자)되어 있고, 환기시설을 하여야 하나 시설비가 고가이며 작업이 한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옮겨다니는 작업이라 고정된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작업기간이 1달 정도로 짧고 계속해서 그라인더로 작업하는 것이 아님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집진기가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비산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2, 2003.03.19.)

###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의 사용범위

#### 질 의

터널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기원제 행사를 통한 무재해 의지를 다지려하는데 마을 주민들을 초대하여 시험발파를 병행하려함

이 경우 돼지 1마리를 제물로 하여 고사를 지내고 안전기원제후 음복 등 오찬시 술과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할 경우 위법성 여부

행사비 중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 해석해야 할지 표준사례가 없어 예산(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



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지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지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85, 2003.03.31.)

### →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급수시설, 난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 의

노동부 고시 제2002-15호의 별표 2에 6항.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에 명시된 작업중 휴한, 휴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도로, 교량 공사 등)을 설치하고, 휴서기에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급수(식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휴한기의 근로자들의 동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난방시설(난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휴한·휴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휴서기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 2003.04.16.)

### → 안전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의 하나로 안전조회를 실시하고

있음. 안전조회시 안전체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체조의 활성화와 효과증대를 위하여 외부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였을 경우 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에어로빅 강사 초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면 동 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2, 2003.05.14.)

### 안전관리팀의 산재과에 대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서 작성시기

#### 질 의

당사는 안전전담부서를 안전관리팀으로 운영중이며 팀내 조직은 안전과와 산재과로 구분되어 있음

1.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및 출장비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산재업무 담당직원의 급여 및 출장비와 안전관리팀소속 사무보조여직원의 급여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매월 작성해야 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4항 및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8(본사 사용비)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 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안전 부서의 안전전담직원의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되고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일 경우 안전전담 사무 보조 여직원의 급여는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산재과의

경우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직원 및 안전과와 산재과의 총괄책임자인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등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동 고시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는 월간 단위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66, 2003.06.16.)

### 안전관리자 비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 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신고하여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제출시 급여전액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발주처(감독부서)에서는 자체 규정을 들어 안전관리 전담대상(건축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 공사도 아니고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로써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만한 규모가 아니라고 하여 급여전액 안전관리비 사용을 불허하고 있음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하고 계약한 공사에서 국가계약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발주처 자체규정이 먼저인지 그리고 발주처에서 전담안전관리자가 필요없다고 하면 120억 미만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전담은 안되는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노동부에 보고하면 월급여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급계약 체결시 사용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27, 2003.07.29.)

## → 용접흡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 2항목 안전시설비 세부항목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기와 차단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처럼 넓은 장소에서 설비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용접흡으로 인해 환기가 필요하여 D/A를 통한 전체 환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관련비용(휀, 후렉시빌, 전선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배관용접 작업 중 발생한 용접흡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동 환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29, 2003.07.29.)

## → 외주업체 소속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안전관리비중 첫 번째 항목에서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

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라는 항목이 있음. 외주계약 (현재 주로 안전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시설물 공사 외주계약을 하고 월기성으로 집행하는 실정)에 포함하여 원청사의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보좌하고 현장 안전순찰을 하는 안전관리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하여 월기성으로 그 인건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창고로 대부분의 건설사는 리프트카의 전담운전원은 외주(용역)계약을 통하여 월기성/결재하며 관리하고 있음)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순찰전담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44, 2003.08.13.)

### →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 중 누진에 따른 차액을 당해 현장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

#### 질 의

노동부고시 제2002-15호에 의한 퇴직금이란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현재 당사에서는 퇴직금 산정시 타 현장에서 근무한 근속 연수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법적으로 퇴직금 산출에 대한 문제는 없음)

이에 퇴직금산정시 타현장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정산된 퇴직금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여도 되는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한 별도의 퇴직금 산정방식이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때,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퇴직금 산정방식 : 평균임금 × 30(일) × 당해 현장 근속일수/365(일)
-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그리고, 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58, 2003.08.28.)

### 낙하물방지망을 “안”자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한 후 낙하물의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는 필요시 폭목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음

이때 안전난간대 사이와 발판바닥부분까지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본구조물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와는 달리 지상에서 높이 2m 이하 안전난간대의 사이에 설치하는 망)을 설치할 경우 그망에 대하여 “안”자 마크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는 상관없고 그 재질과 관련 없이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귀 질의와 같이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망에 대한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75, 2003.09.18.)

### 본사 안전관리부서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현장 안전업무의 지원, 지도, 교육,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 안전관리부서에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등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8(본사 사용비)은 소속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비를 위한 지원비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및 소속현장의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출장비만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81, 2003.09.26.)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 및 방한복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라 함은 동 규칙 제10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한랭작업”으로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와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작업을 말함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근로하는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 나. 겨울철 옥 외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작업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방한용 귀덮개 및 귀마개의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594, 2004.01.20.)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입·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입·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바,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작업구역 제한 및 충돌방지 시스템』이 타워크레인으로 이동 중인 물체가 고압전선 등 인근 장애물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동일 작업반경 내에 있는 크레인의 충돌에 의하여 우려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된다면 이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959, 2004.02.10.)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질 의

당해 현장에서만 근로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며, 이때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식직원, 계약직원 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당해 현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산업안전과-1033, 2004.02.11.)

### →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

#### 질 의

안전보조원이 순찰 등 안전관리업무와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를 어느 항목에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업무와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동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로 사용 가능함

(산업안전과-1453, 2004.03.08.)

## →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

### 질 의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위탁 수수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산업안전과-1860, 2004.03.22.)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질 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토록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공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만큼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449, 2004.04.16.)

###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매월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 질 의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매월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외부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귀 질의의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등 다른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2519, 2004.04.21.)

###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지

#### 질 의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전기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귀 질의의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 전기시설에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3604, 2004.06.12.)

### →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목적으로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그 내용 및 활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전산관리시스템(귀 질의의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이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983, 2004.08.04.)

## 리프트 호출장치를 포함, 임대하여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을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 질 의

리프트 호출장치를 포함, 임대하여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을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리프트 운전원을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건설용 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와 2. 리프트 무선호출기·자동 운전장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리프트에 호출장치가 부착되어 임대할 경우에는 호출장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전담 운전자를 배치할 경우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또한,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전문용역업체에서 계약에 의해 사용할 경우에 파견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는 별개로 하고 당해 운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근로 절대금지업무임)

(산업안전과-5271, 2004.08.18.)

## 안전시설재를 현장에서 반출시 운송비용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 질 의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당사 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회사 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 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시설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재는 원칙적으로 신규 구입 자재를 대상(손료 미적용)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는 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타 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동 자재를 임시로 회사 창고에 보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창고에 보관하던 안전시설을 필요한 현장으로 반출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입을 받은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과-5272, 2004.08.19.)

## 의료시설 사용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 질 의

수중공사시 잠수부의 산소감압의료시설사용료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수중공사에 있어서 잠수부는 잠수병의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음. 표준잠수시간을 지키고 현장에서 감압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100% 효과를 얻을수 없음. 의료시설(병원)에 있는 산소감압장치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여 잠수병의 원인인 체내의 질소를 배출시켜 잠수병을 예방하려고 하는데, 이에 사용되는 의료시설 사용비가 표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수중공사에 있어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압을 하기 위한 산소감압장치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당해 잠수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407, 2004.10.12.)

##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 질 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제7조제2항 규정의 공사설계내역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의미하는지
2.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에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규정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사용내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 내역에 해당 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계내역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계약서상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38, 2005.01.03.)

##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1.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우수현장의 직원들 중에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선별하여 해외 우수현장 견학을 시킨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위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사용증빙은 실행 계획 및 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준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본사 회계 계정을 집계하거나 기존의 계정에 사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포상비’는 근로자 중에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동 고시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 우수현장을 견학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해외견학을 실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품의서, 견적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 이하)에 대한 정산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실행예산서 등을 통하여 본사 배정분을 확인하되 일괄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현장에서 본사 사용분에 대해 사용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46, 2005.01.17.)



## 자동탈착식 방호덮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터널상부 부석제거작업시 부석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징카의 작업발판 상부에 자동찰탁식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터널상부 부석제거작업시 부석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징카의 작업발판 상부에 자동찰탁식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부석낙하 또는 낙반에 의한 운전자의 위험방지를 위해 당해 차징카의 운전석 상부에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836, 2005.02.23.)

## 조끼형 안전벨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착용을 간편하게 하여 추락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벨트를 안전조끼와 일체식으로 제작된 조끼형 안전벨트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조끼형 안전벨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조끼형 안전벨트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착용을 간편하게 하여 추락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벨트를 안전조끼와 일체식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895, 2005.04.20.)

## → 크레인에 설치하는 감시용 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질 의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인양 등의 작업시 자재의 낙하·비래 및 충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레인의 붐대 끝단에 감시용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타워크레인 감시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인양 등의 작업시 자재의 낙하·비래 및 충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크레인의 붐대 끝단에 감시용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940, 2005.06.13.)

## →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질 의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 등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지휘자(또는 신호수)와 운전자에게 송·수신기(긴급상황호출장치)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긴급상황호출장치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등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지휘자(또는 신호수)와 운전자에게 송·수신기(긴급상황호출장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351, 2005.07.05.)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설치비용 및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1. 현장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감리단에 안전감시용 케이블 TV를 설치할 경우 당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감리단도 현장 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0, 2005.09.03.)

##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건축공사현장의 천정 부위 양카천공 등의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또는 각종 이물질의 낙하·비래에 의한 눈·얼굴 외상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천공기에 안전커버를 부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경우, 건축공사현장의 천정 부위 양카천공 등의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또는 각종 이물질의 낙하·비래에 의한 눈·얼굴 외상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89, 2005.09.14.)

## 위험기계 자체검사후 개선결과에 대한 확인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위험기계·기구(크레인·리프트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지정검사기관에 다시 의뢰하여 확인하는 경우 당해 확인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자체검사로 함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정 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체검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36, 2005.09.27.)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831, 2005.10.21.)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방지를 위해 매층 20cm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질 의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해 매층 20센티미터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으로 막는 경우 당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내부에 매층마다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으로 막을 경우 당해 내역이 공사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36, 2006.01.03.)

### 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질 의

1.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가 있으면 지브에 간판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전국 여러곳에 설치된 것은 풍압에 대한 구조검토 후 설치된 것인지 여부
2. 안전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제4항에서는 풍압에 의해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 의해 구조계산을 실시한 결과 풍압에 의한 부가응력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규정된 안전표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팀-240, 2006.01.10.)

## 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 질 의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채용을 결정한 후(예 : 2주 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동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용은 제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1년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동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건강진단에 소요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보건환경팀-749, 2006.01.20.)

##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질 의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헬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장비(굴삭기, 덤프)에 의한 충돌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내 가설도로상의 사각지대에 교통안전시설물(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752, 2006.02.07.)

##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이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한지

### 질 의

암면 등의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암면 등의 보온재를 사용하여 설비 보온작업시 암면에 의한 피부 발진 및 가려움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분진복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814, 2006.02.14.)

##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이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한지

### 질 의

암면 등의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암면 등의 보온재를 사용하여 설비 보온작업시 암면에 의한 피부 발진 및 가려움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분진복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814, 2006.02.14.)

### 건설중장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질 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중장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협착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후방 안전시그널』 경고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동 설비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후방 안전시그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229, 2006.03.21.)

### 안전작업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지

#### 질 의

공사현장의 사다리 대용으로 개발한 안전작업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작업대』는 작업에 필수불가결한 작업발판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작업대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동 작업대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362, 2006.03.27.)

## →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배선용차단기가 부착된 세류기의 누전차단기 설치시 동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배선용차단기가 부착된 세류기의 전기판넬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동 누전차단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팀-6220, 2006.12.27.)

## → 손 혈관인식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손 혈관인식장비를 활용한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손 혈관인식장비를 활용한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도 그 내용 및 활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손 혈관인식장비를 활용한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이 출력 현황 및 출입통제 등 단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교육이수,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건강진단에 의한 유소견자 관리 등 작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주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동 시스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740, 2007.04.05.)

## 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산소공급기가 화재발생 등 비상시 근로자의 긴급피난 및 응급처치시 사용할 수 있다면 동 산소공급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933, 2007.04.13.)

##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

### 질 의

공사현장 여건상 도서지방 또는 거주지로 부터 원거리에서 근로를 함에 있어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1.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중 전담 안전관리자 사용분의 인건비 해당 여부
2. 숙박시설이 없을 경우 공사 완료시 까지 전담 안전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비용의 안전관리비에 포함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는 바, 이때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1. 귀 질의의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보다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현장 직원들이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하는 단순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인건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2. 전담 안전관리자의 숙소용 가설건축물은 상기 내용과 같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기타 다른 경비비목(가설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061, 2007.04.18.)

## 음주측정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음주측정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164, 2007.04.25.)

## → 피뢰침 설치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크러셔장에 설치하는 피뢰침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설치대상 기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피뢰침 설치 대상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에 화학류 및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크러셔장이 화학류 및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이고 동 피뢰침의 설치비용이 공사설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피뢰침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178, 2007.04.26.)

## → 안전보조원의 각종 도구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안전보조원으로 안전점검반 및 안전시설반을 운영, 이에 필요한 각종 도구(검전기, 가스측정기, 망원경, 전동공구 및 소모자재 등)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서목.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과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다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무전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안전점검반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만을 전담 하여 수행하는 자 이라면 그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전기, 가스측정기,

망원경 등 업무용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 질의의 안전시설반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업무 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 이라면 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스패너, 몽키, 드릴 등 전동 공구 및 소모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193, 2007.04.27.)

### 신호수 및 구조물설치 신호업무 병행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1. 고정식크레인 신호수 업무와 철골 설치 신호업무의 병행시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철골조립 작업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정부분
3. 신호수 인건비 증빙서류에 있어 작업자의 급여통장사본 및 급여명세표 제출의 합당성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한 고정식크레인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한 안전대 걸이설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1. 귀 질의의 고정식크레인의 신호업무 및 철골조립 작업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에 따른 인건비 산정에 있어 실제 안전대부착설비의 설치 및 신호수가 고정식크레인과 연계된 신호업무에 소요되는 작업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으나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산출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 질의의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입금내역서, 자동이체내역 및 급여명세표 등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266, 2007.05.02.)

## 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시 교재비 및 외래강사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시 활용되는 교재 및 외래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규정에 적합한 교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이라면 동 교재비 및 외래 초빙강사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269, 2007.05.02.)

## 반사띠 및 형광물질이 부착된 안전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도로현장에서 반사띠 및 형광물질이 부착된 안전조끼를 근로자에게 지급·착용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처럼 도로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대하여 통행차량 및 건설장비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고 동 작업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착용되는 조끼인

경우 등 조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576, 2007.05.22.)

### 열차감시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구 및 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철도 운행선 인접공사시 작업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열차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 및 안전화, 안전모, 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안전완장 및 항목3 (안전시설비 등)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1)안전모, 안전화, (3)신호수용 반사조끼에 의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수의 개인보호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 질의의 열차감시원이 열차 통행시 작업중인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호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 자를 말한다면 그가 사용하는 안전조끼, 안전화, 안전모, 안전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852, 2007.05.22.)

### 안전관리자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안전관리자의 퇴사로 인한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바,

질의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일시적인 공백이 있는 경우로서 기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607, 2007.05.23.)

###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 질 의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함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보조원, 형틀작업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팀-2707, 2007.05.30.)

## → 안전보건관리비로 무릎보호대 및 신호수조끼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1. 바위로 이루어진 경사진 발파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무릎에 대한 근골격계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는 “무릎보호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발파구역 통제용 신호수에게 세탁용 신호수 조끼 2벌 지급과 손상된 조끼의 추가 구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귀 질의의 무릎보호대는 비탈면이나 바위 등에서의 작업시 무릎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 판단되므로 동 무릎보호대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귀 질의의 신호수에게 세탁·관리를 위하여 여벌의 신호수조끼를 지급하였고 성실하게 사용·관리하였음에도 손상으로 추가 구입·지급되었다면 동 추가 및 여벌의 신호수 조끼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884, 2007.06.11.)

## → 휴대용 산소캔 등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1. 공사설계내역에 명기된 낙하물방지공 외에 미 설계된 부분에 낙하물방지공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밀폐공간작업시 휴대용산소캔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7조제2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낙하물방지망 등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낙하물방지공 외에 반영되지 않은 낙하물방지공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낙하물방지공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 고시 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및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휴대용산소캔이 근로자의 긴급피난시 또는 개인보호구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휴대용산소캔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011, 2007.08.13.)

## 강풍여부 인지용 윈드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고소작업을 하는 장소의 바람의 강도를 알기 위하여 설치하는 윈드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여부 풍속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윈드썩이 철골공사 또는 타워크레인 등 고소작업장에서 바람의 강도를

인지·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016, 2007.08.13.)

## 비상용 방송설비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화재사고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시 사용하는 비상용 방송설비 설치비를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근로자들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대피방송 등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작업장간의 상호 업무연락, 작업상황 파악 등 통상적인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방송·통신시설 또는 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불가함

(산업안전팀-4530, 2007.09.14.)

##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장소의 환기설비의 설치가능 여부

### 질 의

건설현장내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 주차장내에서 용접작업, 용단작업, 도장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배기장치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주차장에서 작업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배관용접작업, 용단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용접흠의 배출을 위해 설치코자 하는 환기설비가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환기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4919, 2007.10.17.)

## →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 구입가능 여부

### 질 의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충돌방지시스템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에서 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리프트 무선호출기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크레인 작업에 있어 티콜의 설치가 크레인 작업 전반에 대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통신장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크레인 메인지브의 충돌 등 위험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크레인기사 간 위험신호를 보내기 위한 비상호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시설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922, 2007.10.17.)

## →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현장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소농도측정기와 소음측정기의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소농도측정기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귀 현장의 작업조건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용접작업 등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장소에 필요한 산소농도측정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감소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소음 측정기라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174, 2007.11.01.)

## →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의 안전순찰차량 유류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 질 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택지개발 현장에서 안전순찰 전용 차량의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산업안전팀-5307, 2007.11.15.)

## 밀폐장소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기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밀폐된 탱크공사 작업환경 특성상 발생하는 먼지로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되어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방진설비,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밀폐된 탱크공사에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호흡기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특성상 발생하는 먼지제거를 위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4128, 2007.11.27.)

## 법에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의 추가로 실시한 검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법에서 규정한 점검이외 추가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는다면 이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에 의하면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법에 규정된 검사 또는 점검 외 추가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431, 2007.11.29.)

## → 안전화 건조를 위한 에어건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보면 안전화 건조기라는 품목이 있는데 안전화 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어건(콤푸레샤)이나 신발 털이개를 안전화 건조기 명목으로 사용 가능한 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2007-4호) 제7조제1항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용기준에 예시된 안전화 건조기뿐만 아니라 안전화 털이개와 에어건도 개인보호구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533, 2007.12.07.)

##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방진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밀폐된 공간에서 피부로 스며드는 분진을 억제하여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방진복은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방진·방독 등 위생을 위한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와 같이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및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진마스크 및 방진복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641, 2007.12.12.)

## 동절기 토목현장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이젠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동절기 토목현장 근로자들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지급코자 하는 아이젠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대, 안전화,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현장에서 구입코자 하는 아이젠이 동절기 잦은 눈 등 현장여건상 근로자들의 미끄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팀-258, 2008.01.22.)

## 안전띠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건설현장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가 일체화된 작업복”을 제작·보급할 예정인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보호구의 검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인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하는바 귀 질의의 안전대(조끼가 부착된 일체형 안전대)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호구 성능검정 결과 합격한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업안전팀-355, 2008.01.31.)

## 간호사급여, 냉장고 등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 질 의

1. 간호사 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정기상여금과 사무실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응급치료용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환자상담용 소파 및 테이블, 냉장고, 화이트보드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2.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채용하여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하는 경우 응급구조사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

10.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및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전담 보건관리자로 선임 보고한 날 이후부터 발생한 인건비(임금과 당해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와 보건관리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환자상담용 소파, 약품보관용 냉장고, 화이트보드, 약품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책상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2. 응급구조사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417, 2008.11.1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설안전 컨설팅을 하는 경우 외부 안전전문가 범위

### 질 의

건설업체에서 자율안전관리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외부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건설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외부 안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범위는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안전보건진단 및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 또는 보건진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안전전문가는 건설안전분야 대학교수,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건설안전(산업)기사 등으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분야 전문가(전기공사인 경우 전기안전기술사 등 전기안전분야 전문가)를 말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함

(안전보건지도과-616, 2009.01.15.)

##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건설용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호(안전시설비)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건설용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은 그 설치 목적이 발판상부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발판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용리프트와 건설물 벽체사이에 형성되는 개구부에 의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14, 2009.04.10.)

## 낙하물 방지 설치비 관련

### 질 의

공사비 내역 작성시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와 관련하여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서만 사용해야 하는지, 공사 원가계산서에 있는 안전관리비에 관계없이 건설공사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가설공사 항목에서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을 순공사비 내역에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에서와 같이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기준에 따라 가설공사 항목(지상에서 높이 3.5미터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미터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필요한 부분 높이 15M이내마다 방지망을 설치)에서 순공사비 내역서를 포함 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 의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기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104, 2009.05.26.)

## → 안전감시단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1.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2. 계약을 맺고 안전감시단을 운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3. 안전감시단의 인원제한 수와 인건비의 증빙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감시단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3. 안전보조원의 인원 및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11.17.)

## 방염천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플랜트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염천막과 현장내 보관중인 자재에 덮는 방염천막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귀 질의의 방염천막이 설계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접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화재예방 시설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자재를 덮는 방염천막은 근로자의 보호보다는 자재의 보호를 위한 용도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4307, 2009.11.24.)

## 타워크레인 검사 비용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이외에 자체적인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를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 검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귀 질의의 크레인 안전검사가 다른법 적용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검사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4584, 2009.12.11.)

## 갯폼 안전인양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 질 의

갯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귀 질의의 갱폼 탈락방지 장치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전 볼트 등을 임의로 해체하여 발생하는 갱폼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로 판단 되므로 동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4627, 2009.12.16.)

### 방한용 보온 목도리 및 손난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손난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369, 2010.01.26.)

### 환기덕트설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 건설현장내 환기가 불충분한 시험실내 추가 환기덕트설비를 위한 시설비와 환기덕트 자재비가 산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환기가 불충분한 토사 시험실내에서 작업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먼지 등 배출을 위해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환기설비가 공사설계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환기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36, 2010.03.15.)

## 외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AED(외부자동심장충격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AED(외부자동심장충격기)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심장박동 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 실시로 근로자의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 처치에 필요한 구급기재로 판단됨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21, 2010.04.16.)

## 간이 휴게실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1. 케이슨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대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 해상공사중 해상선박(부선)에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간이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컨테이너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 10.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의 규정에 의하면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케이스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대가 근로자들의 해상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고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2. 위 고시 항목2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부선헌에 설치하기 위한 컨테이너가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간이 휴게시설이라면 컨테이너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1472, 2010.06.24.)

### 철탑 송전케이블 간섭예방 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시 현장 외부에 있는 철탑(높이 32m) 송전케이블과 간섭의 우려가 있어 작업을 위해 위험을 표시할 만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사고발생시 근로자 안전사고 및 주변지역의 정전사태 등의 위험이 있음)

#### 회 시

비록 철탑이 현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현장 여건 상 대형크레인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중량물 양중작업을 할 경우 크레인과 철탑 송전케이블이 접촉 함으로써 작업 근로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감전방지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조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 감전재해 예방 차원인지 아니면 공사장 주변지역의 공중의 안전조치 차원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853, 2010.08.2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적용 가능여부

### 질 의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최초 공사계약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적어 공사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던 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증액 되었는데

이 경우 증액된 안전관리비로 기 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와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상 1번 항목(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 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또한, 동 현장의 협력업체에서 기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정산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970, 2010.08.31.)

## 안전패스너(안전레일&안전롤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기존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기둥부 통과 시 걸림 현상을 제거(반복적인 안전고리 탈부착 방지)함으로써 근로자 안전 확보가 가능한 안전패스너(안전레일 & 안전롤러)를 개발하였는데, 동 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에 “안전대 걸이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귀 질의의 안전패스너(안전레일 & 안전롤러)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풀었다 매었다 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부착설비로 판단되고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지지로프를 이용한 “안전대 걸이설비” 에서의 로프 기둥으로 인한 안전대 걸이 혹은 걸림 문제를 해결 함으로써 안전도를 향상시킨 경우라면 동 안전패스너(안전레일 & 안전롤러)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1988, 2010.11.01.)

## 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안전벨트용 LED 부착 밴드 및 추락위험지역 안전 LED 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이의 사용가능 여부도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의 “안전벨트용 LED 부착밴드”의 경우 야간작업, 터널 및 지하철 작업, 실내·선박내부·탄광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어두운 장소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위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안전 LED 타포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2408, 2010.11.24.)

## 공사현장내 안전감시용 CCTV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1.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의 안전사고 및 위험장소에 안전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 CCTV 전담감시(모니터링)할 인원을 상주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상주 인원이 감시를 해도 되는지

3. CCTV 감시인원을 전담으로 할 경우 그 인원에 대한 비용(급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 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안전감시용 CCTV 감시용 인원을 별도 상주시켜야 하는지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나 기존 상주 인원이 감시업무를 병행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따라서, CCTV 전담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는 위 2의 답변과 같이 병행수행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정책과-2409, 2010.11.24.)

###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가설계단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패드를 설치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귀 질의의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는 건설현장의 가설계단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보여지고 이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2410, 2010.11.24.)

##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 질 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제1항 및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또는 보건보조원을 고용하여 해당업무를 전담할 경우 해당 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처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이 보건보조 업무만을 전담 할 경우 해당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과-882, 2012.03.22.)

## 본사에서 전체 소속현장의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질 의

본사에서 전체 소속현장의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8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또한, 동고시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및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따라서 귀 질의의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전체 소속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건설산재예방과-1892, 2012.06.08.)

##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질 의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 재해예방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주자 및 감리단이 현장 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등 공사 진척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과-2493, 2012.07.25.)

##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 → 내부 바닥청소작업에 분진집진차 이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건물내부 바닥청소작업시 분진집진차를 이용하여 청소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물내부 바닥청소작업시 분진집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보다는 현장 청소 및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진마스크 및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242, 2000.03.22.)

### → 가설발판 및 계단, 수해방지·제빙용 모래주머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흙막이 공사후 작업저면으로 내려가기 위한 가설발판 및 계단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수해방지 또는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를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가설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로서 작업상 필요한 설비이므로 동 시설물의 제작비용중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우기대비 수방방지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구조물 보호 등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제비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286, 2000.04.07.)

## 이동식비계 승강사다리 및 전도방지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이동식비계에 별도로 설치한 승강사다리 및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07.22.)

## 확포장공사시 투광등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기존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차량의 안전한 운행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투광등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웬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공사용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투광등이 도로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산안(건안) 68307-758, 2000.08.22.)

##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재해발생시 피재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작업중인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22-777, 2000.08.28.)

## → 순찰을 목적으로 하는 Touch-checker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건설현장의 순찰기능과 근로자의 출퇴근관리 등 노무관리로 사용할 수 있는 Touch-checker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 기준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안전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컴퓨터 순찰시스템인 Touch-checker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순찰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관리 등 노무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산안(건안) 68307-1112, 2000.12.29.)

## → 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임. 골조 진행은 45% 정도 진행이 되었고 지하 주차장 내부에 400명 정도 인원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고 교육장 내부에 안전관리자 사무실, 안전 보호구 창고 등을 만들려고 함. 교육용 고가비품, 자재창고에는 안전 보호구 등을 적재시키고자 하는데 도난이 염려되어 자체 보안경비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함.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장의 설치비용, 교육용 비품 및 장비, 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에 도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보시스템은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42, 2001.01.02.)

## → 가스누출 경보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당 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20m이상

장기간 노출되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별표 5 제3호 과목, 별표 6 제8호 나목(6))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영향평가서에 의거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고정식)을 설치하여야만 함. 이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01-22호 2001. 2. 16) “(1) 타법적용사항 제외, (2) 가스자동측정기-휴대용에 한함”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에 의거 ○○지하철본부에서는 시공사에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고정식)설치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장비 중 가스자동측정기의 경우는 휴대용에 한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가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가스사업법령 등에 의거 시공자가 공사수행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643, 2001.01.02.)

###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자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전차선단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참고로 귀 질의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하고 있는 ①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② 건설업체의 전기관련 분야에서 전공 이상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산안(건안) 68307-10066, 2001.03.08.)

## →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안전관리자의 기술수준을 높이고자 국가자격시험(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규정에 의해 자격·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87, 2001.03.17.)

## → 철로 건설목 시설비용 및 안내원의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민자역사 공사현장에서 다음 공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되면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몇 번 항목에 적용되는지

- 열차 진입 자동경보장치: 철로선상에서 작업하는 중장비(크레인 등) 및 근로자와 운행중 열차충돌방지 예방 경보장치임

- 철로와 철로 사이의 가설울타리: 철로와 철로사이에서 공사중인 건설중장비 및 근로자와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방지용 가설울타리임
- 철도건널목 시설비용 및 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철로선상에서 장비 및 근로자가 열차와 충돌 방지를 안전한 건널목 설치 및 건널목안내원(열차진행감시역할) 인건비임
- 타워크레인 신호수용 무전기 구입비용: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가 무전기로 상호통신하는 무전기 구입비용
- 근로자 식별용 조끼구입비 : 열차승객과 근로자 식별을 위하여 전 근로자에게 근로자 식별

#### 회 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 설치한 자동경보기 및 가설울타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2. (안전시설비 등)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

작업장비 등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은 장비 및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 무전기 및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끼 등도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96, 2001.03.22.)

### 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당사가 도급계약 시행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부지경계가 경부선 철도부지와 맞닿아 있어 본 공사 착공에 따른 철도청 보선 사무소와의 협의내용 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선로 무단통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 선로쪽 대지 경계부근에 헨스 또는 블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의 조건에 의해 안전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장내 개구부나 맨홀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헬스 및 가설울타리 등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질의의 가설울타리는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공사비로 확보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097, 2001.03.26.)

### → 공사부 대리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시 업무수당 지급 여부 ←

#### 질 의

하청업체 공사부 대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업무를 담당했을 때 업무수당 10%를 계상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하청업체 공사부 대리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이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54, 2001.04.25.)

### →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 질 의

당 공사현장은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내 오수관 및 우수관을 신설하는 공사로 총 연장은 약 8km 정도임

1. 시가지 공사로 안전시설(가드웬스, 안내간판 등) 설치가 필수 불가피한데 설계내역에 계상되지 않았음. 이 경우 안전시설 설치비를 설계에 적용된 표준안전시설 설치비를 설계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설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안전시설 설치비를 적용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도로공사 설계기준 단가산출기준에 의하여 가드웬스는 공사현장의 1.4배 적용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1항 별도 안전시설 설치비 적용 가능시 총 연장의 1.4배 적용인지 여부
3. 당 공사 현장은 년차계속공사로 시가지 특성상 일정구간별로 나누어 관 부설 및 되메우기 포장공종을 반복시행하며, 가드웬스 등을 이동하며 재사용하는데 이 경우 2항 기준에 의한 가드웬스 적용범위와 안내간판 등 적용범위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웬스, 안전표지판 등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85, 2001.05.11.)

### →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발주처 승인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 질 의

기존도로의 확·포장을 위한 도로우회시 관할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발주처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 시공사는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을 하여야 하고,

2. 동 표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헨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위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음
3. 따라서, 귀 질의의 우회도로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은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90, 2001.05.14.)

### 자재주임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 구입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 질 의

도급받은 공사를 전체 하도급할 경우 원도급자의 현장 사무실에서 고용한 자재주임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이라 함은 당해 현장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비용 및 당해 시설의 설치·유지·보수작업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재주임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동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203, 2001.05.17.)

### 안전시설비 손료적용 및 중고자재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1.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를 본사에서 일괄 구입한 후 품목의내구년한에 따라 예외없이 손료를 적용하고 있음. 이들 자재중에는 호이스크



승강구 안전문, 스틸·알루미늄·PVC MESH 등 낙하물 방호선반 및 가설재 중에서도 일부 품목 중 파이프써포트, 강관파이프, 브라켓, 부착물 등은 안전시설물로도 사용되어짐으로 최초 구입현장에서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의 손료로 정산하였다면 이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현장은 당연히 손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형틀 하도급업체가 당해 공사를 수행하면서 중고재인 강관파이프로 안전난간대 및 호이스트 주변 방호비계, 낙하·비래물 방호시설(설계외) 등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동 자재에 대한 손료가 아닌 구입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타 현장에서 전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고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타현장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없을 것임. 다만, 타 현장으로부터 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나 이를 설치하는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241, 2001.06.05.)

### →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현장주변에 학교가 있어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방음설비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접건물에 대한 소음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275, 2001.06.21.)

## 별도의 장소에서 석재 생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하여 해상에 방차제를 축조하는 공사로서, 설계서에는 석재(사석, 피복석)의 단가구성이 석재원 상차도로 견적처리되어 있으며, 당사에서는 석재원에 생산된 석재를 구입하여 현장까지 운반, 투하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 공사의 안전관리비에는 석재의 자재비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발주처 담당감독원은 당사에서 석재의 생산(발파, 소할 등) 작업에 따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당사에서 시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바,

- 안전관리비 = [도급재료비(전체공사에 대한 재료비) + 사급재료비(관급시멘트) + 직접노무비] × 1.88%

안전관리비에 포함된 재료비는 석재 및 시멘트, 아그콘 등 당 공사를 위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독 석재에 대해서는 자체생산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자재납품을 받더라도 안전관리를 당사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발주처의 지시는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 1. 공사내역중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항목에 대한 의미

- 자재반입시 안전관리는 동 자재의 생산시가 아닌 자재를 사용시에 안전관리를 수행할 것의 의미가 아닌지

#### 2. 당 공사와 같이 현장 인근의 석재원에서 생산된 석재를 자재 납품받는 입장에서 석재원의 석재생산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석재생산사업주와 당사중 누구에게 있는지

### 회 시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을 말함. 따라서, 자재납품 계약에 의해 제공 받는 석재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는 포함이 되나,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관리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석재의 생산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비용은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2. 석재작업장에서 석재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의 원인 및 작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석재작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동 재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85, 2001.06.26.)

## 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무자격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선임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미신고하였는 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안전보조원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자격자가 선임되었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동 기준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 등을 겸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금액이 10억원 정도로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93, 2001.06.30.)

##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 의

도로 건설현장에서 절토 및 성토후 법면 녹화(꺼죽덮기, 때, 녹생토 등)전까지 절토 및 성토지역에 비산, 낙석,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Green을 설치하는데 동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시설비 항목에 보면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은 사용하게 되어 있음)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이라 함은 경사면의 붕괴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절토 및 성토지역의 비산, 낙석,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16, 2001.07.11.)

## 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의 탑승용 설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10, 2001.08.28.)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철근 매립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피트내부에 설치하고 있는 철근 매립 비용의 안전관리비 투자 가능여부(철근 자재비용, 설치 인건비)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는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인 작업발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49, 2001.09.17.)

## 원청사 공구장, 담당기사의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지급여부

### 질 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에 따르면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수당을 지급(급여의 10%이내)하도록 되어 있음. 당 현장에서는 공구장(원청사), 담당기사(원청사), 협력업체 작업반 책임자를 관리감독자를 임명하여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이에 업무수당 지급을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가공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는 바, 귀 질의의 협력

업체 작업반 책임자가 작업반장인 관리감독자로서 영 제11조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원청소속 공구장 및 담당기사의 경우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1, 2001.10.09.)

## 목재 발판의 상부에 합판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A.C.S시스템에 의해서 코아부 골조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임.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을 50×200×L의 각재를 이용 설치하여 작업하고 있음. 그런데 목재 특성상 웅이, 썩음 등 목재의 단점에 의하여 목재가 부러질 염려가 있음. 지금 시행하는 공사가 지하 6층~지상 ○○층 공사이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80회 정도가 됨. 이러한 위험성이 있어 목재발판 상부에 12mm합판을 설치 하려고 함. 이 합판을 설치함으로써 목재의 부러짐 방지 및 목재 틈새로 인한 낙하물방지에 있어 안전하다고 봄으로 이때 사용자는 합판 및 노무비가 안전 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 회 시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동 별표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발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추가 설치하는 합판의 경우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골조공사시 사용하는 작업발판의 결함 등을 보완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설치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작업발판은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 (노동부고시 제2001-50호, 2001. 8. 14)』중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편(제21장)”의 규정에 의거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499, 2001.10.18.)

## 일체식으로 부착된 방호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성능검정하여 합격한 등근톱 방호장치 (합격번호:2000 - 0000 - 000)에 대해

- 사이즈와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어있는지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 안전관리비가 안 된다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회 시

귀 질의의 합격제품은 목재가공용 등근톱에 부착된 방호장치(덮개)로 동 방호장치는 톱날과 함께 일체식 구조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동 제품은 길이가 2.5미터, 폭이 1.8미터, 높이 1.2미터의 테이블형의 구조로 되어있고 주요 부품으로는 안전카바, 광전자식 안전장치, 공압실린더, 각종 센서 및 브레이크모터 등이 있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거 목재가공용 등근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의 구입·수리비용에 한하는 바,

동 방호장치가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구조라면 동 제품 전체에 대한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동 제품에 대한 구입비중 톱날의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09, 2001.10.23.)

##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신호수용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도로작업시 백호덤프, 카고, 작업자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신호수용 무전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회 시

귀 질의의 관로매설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신호수용 무전기의 경우 동 장비가 유선상 확인(2001. 10. 29)한 바와 같이 도로 작업장 주변 일반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배치된 신호수가 교통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520, 2001.10.30.)

### → 여름에 탈수방지를 위하여 얼음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질 의

하절기 기간동안 폭염으로 인한 열·피로 등으로 근로자가 실신하여 전도 추락 등으로 이어지는 위험요소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얼음물(식용수 + 식용얼음)을 지급 복용케 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2, 2001.10.30.)

### → 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

#### 질 의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안전 서류업무를 전담으로 작성 관리하는 여직원을 채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서류업무 작성지원 등 사무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직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안전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545, 2001.11.13.)

##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으로 교통안내표지판, 공사 안내표지판, 라바콘, 차량유도 등, 차량신호수 등을 운용하려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당 현장은 공사장이 도로상이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많은 교통안내표지판과 차량 유도 등이 설치됨.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2. 안전관리비의 적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중 어떤 것이 어느 부서의 점검에서 적용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 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주로 공사장 주변의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

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통행안전관리 대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부(산업안전공단은 감독권한이 없음)에서,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비는 동 법령의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부의 감독을 받게 됨

(산안(건안) 68307-10551, 2001.11.16.)

## 엘리베이터 운전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건축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정 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호이스트를 해체한 현장인데 잔여공정으로 인하여 호이스트 운전원을 엘리베이터 운전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엘리베이터는 공사용으로 사용 중임. 이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B/T비계 사용 중에 비계를 4단 설치하여 사용하는 공정으로서 전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도방지시설(기성제품)을 구입 설치하였다면 이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또한 설치된 비계에 승강용사다리를 설치하였다면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인건비는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엘리베이터 운전원은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공사용 엘리베이터는 운전원이 없어도 그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공사용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용 사다리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73, 2001.11.28.)

## 안전관계자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안전시설유지자, 리프트카 전담운전원, 안전보조원 등이 근로 중 옷을 갈아입고, 간식,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 보dana은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현장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안전시설유지자, 리프트 운전원 등이 근로 중 옷을 갈아입고 간식·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현장내 근로자의 휴게시설, 숙사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시설로써 공사비에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84, 2001.12.03.)

## 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1.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및 직원에게 근무복외 방한복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 및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기구(탁구대, 베드멘트 라켓, 축구공 등)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동절기에 근로자 및 직원에게 작업복 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방한복,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기구(탁구대, 배드민턴, 라켓, 축구공 등)는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594, 2001.12.06.)

## → 횡단보도 복공홀 마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지하철 현장내 복공판 위에 횡단보도가 발생하여 부득이 통행인 및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복공판 상단의 구멍(지름 5cm)을 복공홀 마개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기성제품인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하철 현장내 복공판위에 횡단보도가 발생하여 지름 5cm의 복공홀 마다 설치하고자 하는 마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서 다른 비목의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95, 2001.12.06.)

## → 안전교육장 보안경비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안전교육장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경비 시스템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 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장의 설치비용, 교육용 비품 및 장비, 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에 도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보시스템은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642, 2002.01.02.)

##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 의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8번 본사 사용비에 있어서 다음이 적합한지

○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근로자 이력관리 시스템은(활용도 안전 50%, 노무 50%)

① 노무관련 출역확인 및 집계

② 안전관련 : 건강검진 이력관리, 현장의 안전 위반사항 관리, 교육실시 현황 등을 전산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구성은 스캐너, 프린터기, 설치카드 등이며 가격은 최소 600만원 ~ 1000만원/개별현장에 소요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본사 사용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내에서 동 기준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을 본사 사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 비용이 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바,

동 시스템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설치 목적 및 활용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시스템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이 현장내 하도급업체 관리 및 출역근로자 이력관리 등 노무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08, 2002.01.11.)

## → 공사장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가설방음벽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여 가설 방음벽 (방음설비)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철거되는 것이므로 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별표 2)중 2. 안전시설비등에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비에 방진설비, 방음설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 방음설비라 함은 공사 수행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당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청각장해 예방 등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장 주변 인접지역의 소음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21, 2002.01.21.)

## →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압, 토사 등의 운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 의

당 현장 공사중 발주처의 토지보상의 지연으로 당 현장내에 야적되어 있는 압, 토사 등의 붕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 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서 정하는 사용내역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야적된 토사

등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수행과 관련한 비용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26, 2002.01.23.)

## 투광등의 부품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가설 투광등에서 등갓의 유리가 깨져 교체하려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귀 질의의 가설 투광등은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 수행시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설 조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구의 고장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34, 2002.01.25.)

## 안전관리자(겸직) 보조원의 인건비 사용여부

### 질 의

총 공사금액 42억원인 현장으로(공사기간 18개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 예방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 선임보고 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있을 때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배치하는 경우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지급 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위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라 함은 당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의미하고, 안전보조원은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공사 규모 및 작업특성 등에 따라 단독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의 공사가 공사금액이 42억원으로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여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8, 2002.01.28.)

## →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1) 소음측정기 : 터널내부 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측정용
- 2) 저항측정기 : 전기뇌관결선 작업시 모든 회로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소정의 저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용
- 3) 도통시험기 : 전 현장의 가설전기 전선, 기타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용
- 4) 헤드랜턴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측정장비 중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음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전선 자체에 대한 저항 및 가설전선, 전기기기의 통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및 헤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9, 2002.01.28.)



## → 안전순찰차량 렌트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서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만 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새차를 렌트하는 경우는 렌트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보험료 등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순찰차량 렌트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48, 2002.01.31.)

## → 야간업무감시 수당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주공정이 터널이라 주·야 24시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 취약시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당 현장에서는 야간 일일안전당번제(체크리스트 작성)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심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안전당번자 야간 업무수당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안전관리비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월 급여액의 10%이내)하는 업무수당의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조·반장인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야간 순찰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70, 2002.02.16.)

## 기관사의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발주처에서 무전기의 제조업체 및 규격을 지정하여 주고 역사마다 무전기 2대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며 무전기 사용자는 역무실에 1대, 기관차 기사 1대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 무전기는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기관사 등이 사용하는 무전기의 경우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91, 2002.03.06.)

## 일괄도급시 제작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당사는 보일러 제작, 설치공사를 일괄도급받아 수행중인 업체로 안전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제작과 설치로 나누어 안전관리비를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집행/정산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참고로 제작과 설치의 도급 금액 비율은 70:30이며 계약시 안전관리비를 별도 구분없이 일괄로 계약되었음)

### 회 시

건설업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일러 제작·

설치공사의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보일러 제작 공정에서는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이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한 비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함

(산안(건안) 68307-10095, 2002.03.06.)

## → 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의 인건비 사용여부

### 질 의

2001년 7월 1일부로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1년 12월에 600%의 특별 상여금을 받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상주를 일 기준으로 600%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부 적용하여도 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함

귀 질의의 특별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00, 2002.03.14.)

## 야간근무 안전당번의 인건비 사용여부

### 질 의

주·야간 24시간 공사를 수행하나 안전취약시간인 18:00~22:00에는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실정을 보완하고 야간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초 주간에만 근무하는 직원중 1일 1명을 선정, 일일 안전당번을 명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 역할인 일일 안전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순찰, 경고장발부, 시설물, 점검등의 야간 안전관리자보조원 역할을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집행이 적법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당해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보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동 별표의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05, 2002.03.14.)

## 가설울타리 안전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현장의 가설울타리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와이어로프와 클립을 사용하여 가설울타리 안전조치시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현장이 바다를 끼고 있어 강풍시 위험요인이 있음)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동 별표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가설 울타리 설치비용은 사용이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현장주변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149, 2002.04.10.)

##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경사가 30도 이상인 터널구간(연장:280m)에 통행중 미끄럼방지를 위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터널의 경사구간이 너무 길고 경사가 급하여 단지 목재로만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 시설을 목재 대신 조립식 계단 발판으로 설치할 경우 조립식 계단 발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현장에서 설치하는 조립식 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로서 작업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여기에 추가하여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54, 2002.04.13.)

##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 의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점수 도달시 포상함

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 적용하며 해당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 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 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65, 2002.04.18.)

## →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현장내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는 바, 평탄면에 안전발판 및 단관파이프를 사용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으며, 경사면에는 계단 발판 및 단관파이프를 이용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안전통로라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할 때 가능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통로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가설통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난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70, 2002.04.22.)

## → 교량하부에 수평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P.S.C빔 교 슬라브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빔 하부에 수평비계를 설치한 후에 크로스빔 및 슬라브시공을 해야하는데, 수평비계 설치에 대하여는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자재비 및 인건비)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의 경우는 크로스빔 설치 및 슬라브 시공 등 후속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185, 2002.05.03.)

## 물웅덩이 해충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현장 및 사무실, 숙소 주변에 큰 물웅덩이가 많은데 각종 해충이 번식하여 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방충, 방역과 관련 소독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음. 차선책을 모색하던 중 미꾸라지, 붕어 등의 천적을 방류하여 해충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충방역 방법에 소요되는 비용(구입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중 『작업장 방역 및 소독』이라 함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의 예방을 위해 약품·일광·끓이기·증기 등의 방법으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을, 『방충』은 해충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품을 이용한 퇴치나 망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천적을 이용한 해충퇴치 방법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은 다른 공사비 항목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191, 2002.05.08.)

## 감리원 등이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직원 및 근로자외에 감리단과 감독이 현장 외출시 기본적으로 안전화와 안전모는 착용을 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 집행하는 안전관리비로 감리단과 감독이 착용할 개인보호구를 구입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모, 안전화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개인보호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서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79, 2002.05.22.)

## 굴착면 주위 안전웬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와 도로 확·포장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적용을 받지 못함을 알고 있는바,

본 공사 현장은 차량통행이 번잡한 도로를 굴착하여 전면에서 지중관로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도로를 굴착후 바닥면에서 전선과 배관을 위한 전공이 작업후 철근배근 작업을 위한 철근공과 거푸집 설치작업을 위해 목공이 작업하는 현장으로 본 현장의 굴착면 주위에 설치하는 안전웬스와 차량 우회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웬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현장에서 도로 굴착면 주위에 설치한 안전웬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은 작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므로 동 표지판 등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233, 2002.05.22.)

## → 공용 앰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매일 아침 체조와 TBM 등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 근로자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행사 일정대로 추진하다 보면 말소리가 너무 적어 무척 안타까움을 느낌. 특히, 소장훈시를 할 때는 아예 그러려니 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이어서 다음달부터는 안전활동 모범근로자를 선발 표창해야 하므로 필히 앰프가 필요함

그리고 건축현장에선 현장사무실에 앰프를 설치해 정직원이나, 하청업체 소장 등을 호출하기 위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만을 위해서만 쓴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당 현장은 고속도로 터널현장이므로 현장사무실과 작업장은 약 5km거리며 시점부와 종점부를 차량으로 이동하면 약 15km정도의 거리 일뿐만 아니라 유원지를 가운데 두고 있으므로 일반업무용으로 앰프를 쓰기엔 불가능하며, 공구 감리단도 한 울타리에 상주해 같이 생활하므로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앰프를 타용도로 쓰기는 어려움이 있음. 항목중 안전교육비 및 행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서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동 행사를 개최시 이와 연관되어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바,

귀 질의의 방송용 앰프장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현장 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비의 구입은 공사비 등에서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61, 2002.06.05.)

## → 현장 대리인이 안전업무 수행시 인건비 사용여부

### 질 의

공사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중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이 안전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785,000원을 업무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공사관련철에 보관하다가 금년 정기감사(5월)때 감사가 위 내용을 지적하여 업체에 1,048,000원(재경비포함 산출금액)을 환수조치함은 물론 공사감독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위와 관련하여 현장 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안전관리 업무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업무수당”이라 함은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바,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 질의의 현장대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로 당해 공사에 있어 시공 및 관리, 근로자 안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위 기준에 의한 인건비 또는 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62, 2002.06.05.)

##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 질 의

공공기관에 도급받아 시행중인 20억원 미만 아파트 전기공사(아파트 9개동 옥내 전기공사, 고압수변전설비 전기공사, 가로등 공사, 교통신호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는 총액의 40%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조직표상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노동부 신고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관리자(노동부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담당자 2명으로 선임되어 있음

위 공사에 있어서 20억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지만 조직표 상의 실수와 안전담당자 이적으로 인한 안전관리총괄

책임자(서류상) 및 안전담당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하였다면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담당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10% 미만의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단, 서류상 안전담당자 2명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그 업무를 대신함)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말하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들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업무(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07, 2002.07.03.)

### 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1. 내장공사중 건물내 공조시설 및 통풍 등이 원활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쿨링조끼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 사용가능 시 쿨링조끼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을 얼리는 냉장고 등 구입·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자산성의 물품으로 혹서기의 짧은 기간에 아이스팩을 얼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냉장고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07.10.)

## 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 의

건설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이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어 투철한 목표의식 없이는 무재해로 현장을 이끌기가 어려우며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 기술자가 무재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안전관리자만 설치고 다니다 지쳐 회의를 느끼게 됨

따라서, 동기부여 방식으로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재해 2배, 3배 달성시 전직원에게 월급 기본금에 20%, 30%의 포상금을 근로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직원, 근로자 모두 하나되어 능동적 참여로 무재해 4배를 달성했고 앞으로 5배달성을 목표로 전직원 및 현장근로자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음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급한 동기부여식의 포상금 및 기념품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무재해 달성시 지급되는 동기부여식의 포상은 현장근로자 중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는 등 무재해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무재해달성 사실만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5, 2002.07.19.)

## 교량 강교 박스 하부 안전망(합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일부 가능)

### 질 의

본 공사는 교량 강교박스 설치 후 강교박스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공법이며, 상부작업시 떨어지는 낙석으로부터 하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망설치 또는 합판을 설치하는 공법으로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사진 첨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 및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외부비계, 작업발판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설치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첨부된 사진 및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안전망 및 합판으로 설치한 시설 중 추락 및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주된 설치목적이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97, 2002.08.20.)

## 노출된 도시가스관 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당 현장은 ○○-○○간 현장내의 ○○선지하차도 구간내에 아래와 같이 가스 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바, 당 지점 시공전에 가스공사와의 가스안전영향평가에 의거 공사를 시공중 가스포집갓을 설치하였으나, 노출배관 상부 전면에 걸쳐 재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시정하는데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발생하게 되어 가스누출경보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포집갓 설치하는 명시되지 않아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설계내역에는 없음)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거 작업장에서 가스 측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휴대용 가스측정기에 한하는 것으로,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의 가스누출을 검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하는 가스누출 경보기나 가스 포집갓 구입 및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17, 2002.09.05.)

## 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난간, 발판 등 일체형)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당사 신기술사업팀에서 건설현장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개발 특허화한 제품으로 작업발판, 측벽 및 안전난간지주의 장단점을 보완, “벽체고정식 작업시스템”화 하였으며 특징으로는 조립, 해체 간편 및 별도의 부자재 설치가 필요 없으며 작업여건에 구애없이 경사시 수평유지가 가능토록 하였고, 발판의 폭을 최대한 확보, 벽체에 밀착시켜 작업자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여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그물형 구조의 발판을 채택 하부의 상황파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안된 신기술 제품으로 특히 해체후 운반 및 보관이 용이한 것이 장점임

용도로는 건축 및 토목현장 작업전반의 외벽 및 기타 비계설치부위에 장착, 다양한 용도(구조물 마감작업, 점검통로 등 안전난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며, 발명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등록을 취득한 제품임

상기 제품의 부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벽체고정식 자체시스템”의 경우는 건축물 외벽작업 및 마감작업 등 수행시 필요한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추락방지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440, 2002.09.26.)

## →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 사용여부

### 질 의

○○○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자사업단임

당해 사업의 철도횡단 과선교 설치와 관련하여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청구한 청원사업 수탁사업비(철도청 안전감독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계자는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에 한함

따라서, 철도의 안전운행 및 철도 시설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탁사업비(안전감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2, 2002.11.05.)

## → 1일 안전교육 참가시 당일 임금을 교육비로 지급여부

### 질 의

당 현장은 조선소내 기계설비(크레인조립)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서 발주자(○○중공업) 사업장내 자체안전교육(발주자 안전교육장내)에 당 현장내 작업 근로자가 안전교육참석시(1인당 8만원지급) 안전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 집행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교육실시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료, 교육용 교재비, 교육을 위한 이동시 소요비용, 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 등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출장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교육참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또한, 사내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정기교육, 신규 채용시교육, 특별안전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말함

(산안(건안) 68307-10488, 2002.11.09.)

## 겨울철 방한복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혹한기 작업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한복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용 장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겨울철에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시 착용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방한복은 공사비(지급피복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494, 2002.11.13.)

## 수중 송·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수중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으로서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

하여 시공하는 공사이며 수중압식 파쇄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 설치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수행하는 공사임. 이와 같은 공사에 수반되는 수중근로자인 잠수부와 육상근로자인 안전유도자간 교신에 필요한 밴드마스크, 스피커, 마이크 등을 통한 송·수신 장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수중작업용 송·수신장치인 밴드마스크, 스피커 및 마이크의 경우는 수중작업자와 육상근로자간에 작업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등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과 관련되어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치의 구입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550, 2002.12.31.)

###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매출신장으로 인하여 상여금외 성과금으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였는 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성과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1, 2003.02.05.)

## → 안전순찰 등 사용목적의 자전거 구입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토목공사현장에서 지형적으로 일반승용차로 안전순찰 등이 불가능하여 자전거를 구입, 순찰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동 자전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안전진단비 등”에서 안전관리비용 안전순찰 차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및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위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귀 질의의 자전거의 경우 이를 차량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리비 및 소모품교환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자전거 구입비용과 같이 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8, 2003.03.14.)

## →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보안면, 안전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보안면(귀 질의의 용접면)과 용접장갑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현장의 가설전선의 접지 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작업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건설현장에서 이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9, 2003.04.24.)

### 철근작업시 실족 및 전도방지를 위한 발판설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질 의

철근배근작업 시 근로자들이 기 배근된 철근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 배근 사이로 발이 빠지거나 철근 등 운반시 전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합판 또는 메탈라스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합판 등 설치”는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작업통로로 보여지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82, 2003.09.26.)

###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제작·구매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595, 2004.01.20.)

#### 체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등 운동기구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596, 2004.01.20.)

####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961, 2004.02.10.)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질 의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와 같이 귀 현장의 발판이 근로자가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작업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241, 2004.02.24.)

##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 질 의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동 차량 임대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규정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순수한 검진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차량 임대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003, 2004.03.30.)

##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질 의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 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은 사용이 불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누전차단기가 가설용 발전기의 누전차단기라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분전함 및 분전함 외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그리고 귀 질의 내부 배선용차단기(자동전격차단기(N·F·B))는 전기설비 감전사고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 보다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안전장치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439, 2004.04.16.)

###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 질 의

상·하수도 설치공사 현장에서 보행자 등의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은 귀 현장 주변의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실제 구입비용임

(산업안전과-2518, 2004.04.21.)

###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 질 의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전담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안전보조원)의 인건비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금년도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격려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이라기 보다는 1회적인 금품으로써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5273, 2004.08.18.)

###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질 의

당사는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를 판매·공급하고 있으나 노동부고시 별표 2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동 제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 등이 동 고시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 여부는 당해 제품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408, 2004.10.12.)

## 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질 의

1. 해상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순찰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선박이 있어야 하므로 육지와 해상작업구간을 이동 할 수 있는 안전순찰용 선박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 해상공사에서 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3. 안전순찰용 선박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선박을 운전하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이 있어야 하는데, 안전순찰 업무를 병행할시에 이 선장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4. 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 계약시에 ①임대료 ②선장인건비 ③유류대 ④수리비 ⑤보험료 ⑥기타 관리비등으로 분리하여 월 정액으로 계약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5. 그렇다면, 해상공사 특성상 안전순찰용 선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선박)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동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바, 안전 용 선박의 임대료, 해기사(운전자)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666, 2004.10.22.)

## 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질 의

○○공사의 건설공사 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상 꼭 시공하여야 하는 바, 시공사에서 외부비계공사를 시공하고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외부비계의 경우, 외부공사에 있어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668, 2004.10.22.)

##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비용 및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임대(리스)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13, 2005.09.30.)

## → 성과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안전관리자에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함

다만, 귀 질의의 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금근로시간정책팀(02-5039732)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991, 2005.10.28.)

## → 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기전공사 중 현장 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을 정리정돈 중 빗자루로 쓸어내고 있으나 유해물질이 많이 날리고 또한 살수효과로 미흡하여 이동식 전기집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동식 전기집진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현장내로 유입된 먼지, 용접작업잔매물, 보온재 부스러기 등의 청소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동식 전기집진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385, 2005.11.23.)

## 철선커터기 등 기계·공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철선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의 공구(또는 도구)와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 질의의 철선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과 같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또는 도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임

(산업안전팀-1909, 2005.12.23.)

## →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질 의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 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음

따라서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공히 적용됨

(산업안전팀-1961, 2005.12.28.)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질 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산업안전팀-37, 2006.01.03.)

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질 의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다수 사용하는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지정검사기관 소속직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산업안전팀-304, 2006.01.12.)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항목 외에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34, 2006.01.18.)

###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항목 외에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34, 2006.01.18.)

###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질 의

실시간 작업자·방문자의 이동경로·위치 모니터링, 현장 반입 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지정통로 및 위험기계·기구 무단반출시 경보작동,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 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의 “위치추적시스템”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장소 접근시 정보 작동 등 재해예방 등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작업자·방문자·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방지,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39, 2006.01.25.)

## 굴착작업 가시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질 의

하수관거 설치공사에서 2.5m 이상의 굴착작업에는 가시설이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2.5m 이하의 굴착작업에는 가시설이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가시설 미설치 구간중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버팀대 등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꽃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꽃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기성 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경우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귀 질의와 같이 가설 전기시설인 콘센트와 일체식으로 이루어진 꽃음접속식 누전차단기라면 동 제품 전체에 대한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팀-6176, 2006.12.26.)

## 간이 휴게시설 내 선풍기, 에어컨 등 시설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1.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컨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용 칸막이 설치비용, 책상, 의자 등 비품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간이 휴게시설은 숙소 또는 현장사무소, 건물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함

1. 따라서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컨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 고시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은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실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190, 2007.04.27.)

## → **혹서기를 대비한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 **질 의**

혹서기를 대비하여 근로자 휴게시설에 냉동고를 비치, 일정시기마다 근로자에게 얼음 등을 제공할 경우 냉동고 및 얼음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용)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및 얼음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 포함)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577, 2007.05.22.)

## → **간이 흙막이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시** ←

### **질 의**

간이 흙막이 시설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고시 제2007-4호)”에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자재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자재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교육실시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료, 교육용 교재비, 교육을 위한 이동시 소요비용, 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 등이며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시간중에 실시하는 근로의 연장이라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자재 안전보건교육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을 것임

(산업안전팀-4014, 2007.08.13.)

## 타워크레인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지지방식 적용시 전문가 구조검토비용을 기계·기구 검사비로

해석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바

귀 질의상 타워크레인의 지지를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으로 할 경우의 필요한 구조검토는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건설물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대한 검사, 또는 같은 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동 구조검토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315, 2007.08.31.)

### → 공장에서 기계제작 및 조립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플랜트 현장에 필요한 기계를 공장에서 부분제작하여 현장으로 반입한 후 조립·완성하는 공정 중 공장에서 제조 및 조립시 산재예방에 필요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는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제2조(정의)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건설현장과 달리하는 작업장소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과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장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과정에서 필요한 안전보호구 구입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되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

(요양신청)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팀-4359, 2007.09.05.)

## → 휴게실의 냉·난방기 등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 질 의

건설현장내 지하1층에 설치한 근로자 휴게실 및 설치한 냉난방기, 정수기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폭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작업중 폭한·혹서 등 열악한 환경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간이 휴게시설이 아니라 현장사무소내 대다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이라면 이는 복리후생 성격의 시설로서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532 2007.09.14.)

## → 갯폼의 추락방지 안전장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 질 의

갯폼의 추락방지시설(브라켓 추락방지장치, 무레벨 갯폼 낙하방지장치) 설치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에서 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및 비례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장치와 브라켓 추락방지 장치는 구조상 갱폼 인양을 위해 갱폼에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갱폼의 낙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 장치는 크레인 등으로 갱폼 인양시 흔들림을 방지하고 작업 속도향상 및 용이 등 시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 이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브라켓 추락방지 장치는 갱폼의 인양 또는 해체 등 시공과정에서 작업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갱폼의 낙하 방지를 위하여 갱폼을 크레인에 걸어 놓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만을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075, 2007.10.24.)

## 군사작전지역 매물 폭발물 탐지장치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공사현장에서 홍수로 인해 유실된 불발탄으로 작업시 안전이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탐지장치와 장구류(방호복, 방호뿔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공사예산에 지뢰 및 불발탄 처리비용이 없는 상태임)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서는 당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목적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되,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현장이 군사지역에 인접해 있는 현장으로 군사작전시 불발탄과 지뢰 등 폭발물이 홍수 등으로 유실되어 공사현장에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예견되는 공사전반에 대한 비용 등은 공사내역 변경 등을 통해서 확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532, 2007.12.06.)

##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 ←

### 질 의

'08.1.28.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탈의실 등의 설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되는 바, 복리후생비 등 별도의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93, 2008.02.18.)

## →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 질 의

1.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법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1인이 여러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각 사업장(현장)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2.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를 초과할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공사비에 계상하고 실투입 비용을 정산할 수 있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별도로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거 추가로 선임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현장) 단위로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장소적으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 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으로 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사 위험도,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 적용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3474, 2008.11.17.)

### → 안전화용 안전양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 질 의

산업현장에서 안전화의 착용은 발 냄새와 무좀으로 인해 불편한데, 냄새 제거에 효과가 큰 기능성 음이온 양말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노동부고시 제2008-67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보안경과 같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기능성 음이온 양말”은 개인보호구 또는 안전장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930, 2009.07.24.)

## →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질 의

현장 게이트 앞에 배치하여 현장출입 덤프트럭의 신호를 하는 신호수와 덤프트럭의 신호수 역할을 겸하는 차량집계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유도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게이트에 배치된 신호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보다는 공사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통제를 위한 목적이 더 크므로 동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차량집계원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덤프트럭의 신호수로 근무하는 경우 신호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함

(안전보건지도과-4570, 2009.12.10.)

## → 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 질 의

1.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산업안전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인지
  - 목적외 사용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조정이 되는지
  - 목적외 사용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 회 시

1.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용도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 발주자는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목적외 사용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시 감점을 받게 됨

(안전보건지도과-4822, 2009.12.31.)

## PE방호블럭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도로내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와 외부 차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PE방호 블럭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 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토록 규정 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PE방호 블럭은 중장비 및 외부 차량의 경계표시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로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34, 2010.03.15.)

## 용접작업 안전장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집행

### 질 의

배관 매설공사장에서 지반을 굴착하여 배관용접 작업시에 굴착부 용접작업자가 낙석 및 중량물 낙하에 따른 중대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용접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인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제작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토류벽은

단기간의 굴착 및 복구, 2m 이하의 굴착심도를 고려하여 연약지반을 제외하고는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동 안전 Shelter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 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 전자식 인력관리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개인 보호구지급, 개인별점부과, 교육이수, 무재해 달성), 보건관리(건강진단, 건강유소견자 관리), 출·퇴근관리, 노임지급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적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 노임관리, 공사관리와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동 비용의 사용목적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09.02.)

##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질 의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고시 제7조제2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이라도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CCTV의 경우 일부 근로자 재해예방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현장소유물(시설 및 장비 등) 보호 등 수방대비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과-2515, 2012.07.26.)

##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을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질 의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을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0.8.9.)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사용가능한 항목이라도 해당 시설 또는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 할 경우 동 시설 또는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자연재난 등의 사유로 안전시설이 파괴되어 동비용을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 받았다면 보상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건설산재예방과-3076, 2012.09.14.)

### 2-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서 공사착공의 기준

### 질 의

1. 기술지도계약체결에 있어 “공사착공후 14일 이내”라 함은 계약서상의 착공일을 의미하는지 본 공사시설의 착공을 말하는지
2.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아 지도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경우 지도횟수를 월 1회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회 시

1. 기술지도 계약체결시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기술 지도는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기술 지도 대가요율 및 지도횟수 기준은 월 1회정도로 기술지도를 받도록 지도 횟수를 정한 것으로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1월에 1회이상 정도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가를 조정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300, 2000.04.02.)

## 주한 미군부대 내의 공사인 경우 기술지도

### 질 의

발주처가 주한미군이고 공사지역도 주한미군 주둔지역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주한 미군 부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동 협정 제17조에는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22-417, 2000.05.18.)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

### 질 의

공사금액이 95억원인 건설공사로써 2001. 2월 착공예정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에서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 공사에 대해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는 개정규정(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2조)은 2001. 1.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는바 여기서 착공라 함은 실착공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 대상여부는 실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무방함

(산안(건안) 68307-927, 2000.10.21.)

## → 기술지도 종료시점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3 제7호 관련 ‘---기술지도 종료후 3년간 보존 ----’에서 기술지도 종료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3 제7호(기술지도 관련서류의 보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종료후의 의미는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횡수중 최종 기술지도를 실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기술지도 횡수가 12회라고 한다면 12회 방문일이 기술지도 종료시점이 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1.02.10.)

## 동시에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전담기술지도(공사금액 4,000만원~20억원미만) 및 정기기술지도(공사금액 20억원 이상~120억원미만)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 전담 배치하였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하였을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급여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개정(2000. 9. 28)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귀 현장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위의 내용처럼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6, 2001.02.28.)

## 기술지도 대가 및 기술지도 횟수 산출 방법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내에 해당하는 지도대가가 12만원이고, 공사기간이 4개월인 경우 지도대가 및 지도횟수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2.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중 월 1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통신공사 특성상 공사기간, 공사성격(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월 1회이상 기술지도 횟수를 산출 하여도 무방한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내에서 1회당 기술지도 대가에 지도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1회당 기술지도 대가에 미달한 경우, 이 금액으로 1회의 지도횟수에 추가하여도 되는지 (예 : 공사금액 1억5천만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0만원, 공사기간 110일인 공사의 경우 지도대가는 24만원으로 산출되는데 지도횟수를 2회로 해도 무방한지)
4. 공사기간이 110일(3.1~6.20)인 공사의 경우 1개월마다 1회의 지도를 하여 3 회의 지도를 실시하고, 나머지 20일에 대하여도 1회의 기술지도를 하여 총 4회의 지도를 하여도 무방한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서 기술지도횟수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횟수이상을, 기술지도대가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의 특성상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횟수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지도 총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3. 지도횟수 기준의 월은 역상 월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지도계약을 3. 15일 체결한 경우 1월은 4. 14일 까지를 말하고, 이 기간동안 1회의 기술 지도를 실시하라는 의미임. 이렇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남은 기간이 1월이 안되는 경우 잔여기간을 1월로 적용하면 됨

(산안(건안) 68307-10068, 2001.03.09.)

## 기술지도 대가총액이 안전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계약체결

### 질 의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 부칙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의 기준은 계약체결일인지 착공일인지
2. 착공후 몇 개월뒤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도횟수는
3. 기술지도대가 총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기술지도계약 체결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부칙에 의하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실제 기술지도계약 체결일이 고시 시행 이후라면 개정된 고시내용을 적용하여야 함
2. 기술지도 계약을 지연 체결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지도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남은 공사기간에 대한 기술지도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면 되리라 사료됨
3. 동 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11조(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규정에 의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는 동 기준 별표4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기준』에 의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대가가 동 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위 사유로 인하여 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렵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를 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73, 2001.03.14.)

## 기술지도 적용시점, 공사기간 기준 및 수수료 20% 초과시 조정가능 여부

### 질 의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중 재해 예방기술지도 계약과 관련된 부분 중 제11조[별표 4]의 적용기준은 언제인지  
예 : 공사도급예약일, 실착공일, 기술지도계약일 등
2. 동고시 제11조[별표 4]의 기술지도 횡수의 공사기간 중 월 1회란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안전관리비의 20%범위 내에서 월 1회 이상 실시하여도 되는 것인지
3. 동고시 제11조[별표 4]의 공사기간 1월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지  
예 : 일수(30일), 기간(00년 3월 5일~4월 4일)
4. 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보다 실제공기가 짧거나 시공사에서 지연계약 의뢰하여 공사기간 중 월 1회 지도준수가 어려울 경우 실공사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이 경우 승인서(발주자 또는 감리자)를 받아야 되는지
5.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중 월 1회로 계약시 지도대가가 안전관리비의 20%를 초과하여 지도횡수를 줄였을 경우도 월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횡수를 전체공사기간중에 분배하여 지도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 회 시

1. 금번 개정된 노동부고시(제2001-22호, 2001. 2. 16)는 “부칙” 규정에 의해 고시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바, 이때 동 고시의 적용은 기술지도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2. 동 고시 별표4 “기술지도 대가 및 횡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횡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횡수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이상 실시할 수 있음
3. 공사기간 1월의 기준은 역상 월의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간 (3. 5~4. 4)”을 말함
4.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짧거나 지연계약 체결 등으로 월 1회 지도횡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동 규칙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횡수를 조정할 수 있음

5. 동 고시 제11조(기술지도 대가 및 횡수) 규정에 의하면 기술지도 대가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그 횡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전체 공기와 계약한 지도횡수를 고려하여 지도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89, 2001.03.20.)

##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이 차수별로 적용받는지 여부

### 질 의

총공사금액 약 302억원(공사기간 3년)으로 계약하여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 하였음. 총공사금액 302억원에 대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은 아니나 차수별 공사로 인하여 1차공사분(공사기간 1년)에 대한 공사금액 약 77억원에 대하여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기술 지도대상 적용을 받는 것인지

### 회 시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며,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공사 전체 기간동안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게 되므로 당해 차수별로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산안(건안) 68307-10092, 2001.03.21.)

## 2001. 1. 1 이전 착공공사로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제외 여부

### 질 의

법 개정이전(2001. 1. 1일 전) 착공된 현장으로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상 기술 지도 대상사업장임. 현재까지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나 개정 이후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대상현장임이 성립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공사가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에서 3억원이상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으로 상향되었고,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2. 다만, 위 내용은 2001. 1월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이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관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 공사임

(산안(건안) 68307-10136, 2001.04.13.)

### → 공사계약서상 기술지도 대상이나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 여부 ←

#### 질 의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이 7개월로 되어 있으나 설계작업을 제외하면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절기 공사중지기간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7개월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되나, 당해 공사의 실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지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지도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58, 2001.04.26.)

### → 안전관리자 선임공사에서 추가공사 수주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

#### 질 의

연차공사로서 3차공사까지 있음. 현재 1차 공사가 진행중임. 1차 공사의 금액은 약 125억원 정도임. 수의 계약으로 연차공사가 진행이 됨. 그리고 얼마전 수의 계약형식으로 공사금액 약 16억원의 현장을 추가로 수주를 하였음. 이럴 때 추가수주 현장에 대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별도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1차 공사에서 안전관리비가 초과 또는 미달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을 2차 공사로 이월을 할 수가 있는지

#### 회 시

귀 질의의 경우 추가공사가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기존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동 공사가 기존 공사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되어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차수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사용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초과 또는 미달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73, 2001.05.04.)

### 조기준공의 경우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 여부

#### 질 의

기술지도 계약시 10회 계약하였을 때 수수료를 할인하여 회당가격이 7회 정도 금액이었을 때

1. 매월 1회 방문주기를 지켰는데 조기 준공으로 2회가 미방문 되었을 때 변경계약이나 수수료도 같은 비율에 대하여 조정되어야 하는지
2. 조기 준공시는 월 1회이상 방문하여도 되는지
3. 8회 방문하였을 경우 변경계약이나 수수료변경 없이 완료를 처리하여도 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3호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횟수 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의 조기준공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기술지도계약이 노동부고시(제2001-22호)인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01. 2. 16) 이전에 계약이 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지도횟수 및 대가의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최초 계약시의 1회당 대가 등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또한 조기준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공사의 작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술지도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88, 2001.05.12.)

## → 추가 계약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여부

### 질 의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신축공사를 하던 중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신축공사 공사금액과 ○○진입로 확·포장공사 공사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장의 개념을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 또는 연계되는 장소에서 동일 시공자에 의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신축공사 수행중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가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공사가 동일 시공자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 하에 시공되는 것이라면 추가 공사금액을 합한 총 공사금액 규모의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이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221, 2001.05.26.)

## → 절대공기 90일인 공사현장이 기술지도 대상인지

### 질 의

도금액 1억3천만원의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여 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제외 대상인 바, 총공사기간이 2001. 10. 15착공하여 절대공기 90일인 당 현장이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 공사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역(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의 착공일이 2001. 10. 15일인 경우 3개월이란 2001. 1. 14일 까지를 말하므로 귀 공사의 준공일이 2000. 1. 14일 이전이라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10, 2001.10.24.)

### 기술지도대상 3개월 미만에서 3개월의 의미

#### 질 의

공사기간이 2001. 11. 01부터 2002. 01. 30인 현장은 대상현장에서 제외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공사 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은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계산 규정에 따르는 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2001. 11. 1일에 착공한 경우 3월은 2002. 1. 31 이므로 준공일이 2002. 1. 30일인 공사는 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치므로 기술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47, 2001.11.13.)

## 2001. 1. 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 가능여부

### 질 의

당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으로 총 공사비 130억 중(1998년 12월에 착공) 현재 2002년 1월 4일 잔여공사가 약 37억을 남겨두고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해서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감리단이 반대하고 있어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되는지

### 회 시

'97. 12. 3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귀 공사의 경우 '98. 12월에 착공된 공사금액 130억원의 토목공사로서 위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안전관리자 퇴직시 잔여공사 기간 동안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음

참고로,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인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은 동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 1. 1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1. 1. 1 이후에 착공한 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인 경우에 안전 관리자시 퇴직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13, 2002.01.14.)

## 기계장치 설치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 질 의

당사는 한국기계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사로서 2000년 5월 4일자로 연합회와 축산기술연구소간에 체결된 형질전환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설치 공사를 배정 받아 설치를 시행, 완료하였음. 2001년 11월 축산기술연구소측에서 자채감사시 당사의 공사비중 안전관리비사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기술 지도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2,800,000원 상당액을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 당사의 소속조합인 한국

기계협동조합연합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업종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부득이 당사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문의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동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형질전환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설치작업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하는 사항은 동 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작업이 기 제작된 제품을 단순히 설치하는 것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사료됨

※ 2003.7.7.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가 삭제됨

(산안(건안) 68307-10036, 2002.01.25.)

###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당 현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로 총공사금액은 26억원이고 이중 안전관리비는 3백만원임. 공사 내용은 대부분이 계측 기자재 설치공사이고 배관배선공사 부분은 얼마되지 아니함.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계약은 총액 계약임)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 의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을 하고 있음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설비공사에 해당한다고 일견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건설산업기본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3.7.7.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가 삭제됨

(산안(건안) 68307-10042, 2002.01.00.)

### 3개 학교 공사를 1개 공사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도급금액 409,151천원으로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3억원 이상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데 공사는 교실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1건으로 발주시 3개 학교에 걸쳐 현장이 산재되어 있고, 공사 성질이 교실증축(1교), 울타리설치(1교), 옥상방수(1교)일때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귀 질의의 교실증축(1개교), 울타리설치(1개교), 옥상방수(1개교) 등 3개 학교의 공사계약을 1건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공사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223, 2002.05.20.)

### 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 질 의

현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토목)이하의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 지정 기술지도 전문기관에 지도를 받는 바,

1.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상을 초과한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협력

업체 자체적으로(형틀목공업체, 철근업체 등)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2. 계약할 수 있다면 지도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3. 지도기관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 지도를 실시할 경우 원도급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귀 질의의 공사에서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라면 하도급업체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76, 2002.06.12.)

### → 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 질 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청 관내 ○○에 있는 회사가 주력업종이 배수문 제작 시공업체로 시공현장이 전국에 있으나 공사기간을 10개월로 볼 때 제작을 8개월정도 ○○에서 하고 나머지 2개월을 ○○관내가 아닌 타지역에서(대전, 부산 등) 설치시공을 하는데 이런 경우 ○○청 관내의 기관에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만약 기술지도 계약을 한다면 8회는 공장방문을 하여야 하는데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공사현장으로서 제조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지역에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귀 절의의 배수문 제작·설치업체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은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며, 동 업체가 지정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귀 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05, 2002.07.02.)

### → 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공개입찰을 통해 ○○전기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도급금액은 1억4천만원정도인데 공사기간이 540일임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로 약 4천만원을 계약하였는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1억원 이상 공기 3개월 이상이면 체결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1억4천원으로 계약했지만 또 차수로 나뉘어지고 만약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면 약 18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비를 넘어갈 수도 있는 바, 안전용구는 하나도 못 사고 기술지도만 받아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귀 공사의 경우도 3개월 이상의 전기공사로 공사금액이 1억4천만원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도횟수 기준준수가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이 가능한 바, 절의의 공사도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도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안(건안) 68307-10358, 2002.07.26.)

## 총액의 20%이내에서 기술지도 횡수조정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질 의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술지도대가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초과로 기술지도 횡수 및 대가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3. 다항과 같이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시에서 정한 안전관리비의 20% 초과로 조정사유가 이미 발생 하였으므로(제11조제2항) 그 근거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상대자와 기술지도 대가 및 횡수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시행하면 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11조(기술지도 대가 및 횡수)에 의하면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대가 및 횡수는 동 별표 4에 의하되,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 대가가 제 5조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횡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기술지도 대가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기술지도의 대가가 위의 기준 이내가 되도록 그 횡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7, 2002.08.02.)

## 기술지도 수수료 한도(20%)액의 50% 초과 및 월 1회 초과계약이 가능한지

### 질 의

1. 개정된 고시 제7조를 보았을 때 제11조의 경우 기술지도 대가도 5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30%이내로 하여 대가 및 횡수를 늘려(통상 월 1회의 기술지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외의 동의가 필요한지)
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수수료 한계(위 질의와 관련 20~30%범위) 내에서 공사 기간 중 월 1회를 초과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하여도 되는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1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에서 기술지도 대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총액의 30%이내)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기술지도계약의 지도횟수는 동 기준 제11조제1항에서 월 1회로 규정하고 있고,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동조 제2항에서 기술지도비에 해당되는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횟수를 줄이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 바, 20%를 초과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월 1회 이상으로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21, 2002.09.09.)

##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 질 의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사업장의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데 이때 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및 사·관급자재비를 포함)인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됨

(산안(건안) 68307-10493, 2002.11.13.)

##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 질 의

재해예방기술지도는 건설공사 기준으로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에서 감독중인 현장의 경우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11억8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이 2002년 10월1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미만인 관계로 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해당 법규정에 의거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시공회사측에서 현장 안전관리의 효과증대를 위해 법규에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지만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겠다고 할 경우, 본 공사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 사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 회 시

귀 질의에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실시 의무가 면제됨. 그러나,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가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대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18, 2002.12.04.)

###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기술지도 계약횟수 및 승인여부

#### 질 의

1. 공사기간이 당초(도급계약서상) 12개월이었으나(기술지도횟수 12회 계약체결), 공사특성상(전시공사) 착공이 7개월 시점에 착공(선행공사인 건축 준공이후)되고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3개월일 경우 3개월의 공사기간내에 기술지도 수행을(12회 지도시, 1개월에 4회씩 지도방문)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 1개월에 4회씩 방문시 1주 기준이며 1주의 공정율은 5~10%임

위의 정반대의 사항으로서 당초 공사기간은 12개월이었으나(기술지도횟수 12회 계약체결), 공사특성상(수리시설공사) 36개월로 공사기간(공사도급 계약서상)이 연장되었을 경우(실질적인 공사기간은 1년중 3개월 추수이후 본공사 시행) 36개월로 연장하여야 하는지 실질적인 공사기간(1년중 3개월) 동안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술지도 지도횟수 적용문제

- 36회로 기술지도 계약체결

- 12회 + 2년(3회) + 3년(3회) = 총 18회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2.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감독, 감리)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반드시 상기의 사항으로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유무

○ 조정시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횟수』 제3호에 의하면 기술지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도 횟수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당해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하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공사의 경우도 실 착공 지연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기술지도계약상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공사기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당초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93, 2003.04.03.)

###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조정방법

#### 질 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 기술지도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으로 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이 수행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는 당사자간 1회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450, 2005.11.29.)

## →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질 의

당초 공사계약시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이어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에 해당되었으나 당해 공사시공 중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3월 이상이 되었을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다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키는 어려우나 단순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닌 설계변경 또는 공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3월이상으로 연장되었다면 당해 연장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534, 2005.12.05.)

##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

### 질 의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028, 2006.03.06.)

##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장비기준

## 질 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장비기준에 가스농도측정기와 산소농도측정기를 2인에 1대씩 보유토록 하고 있는데 가스농도측정기가 산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스농도측정기와 산소농도측정기 모두를 2인에 1대씩 보유해야 되는지, 가스농도측정기만 2인에 1대씩 보유해도 되는지

## 회 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가스농도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보유토록 한 것으로 가스농도측정기가 산소농도를 측정(겸용)할 수 있으면 가스농도측정기를 2인에 1대씩 보유하여도 장비기준에 적합함

(산업안전팀-6061, 2006.12.19.)

## →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기술지도 가능여부

## 질 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에 기술지도를 받아도 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3137, 2007.06.25.)

## 발주처가 다른 경우 기술지도 해당여부

## 질 의

당사는 ○○로부터 택지조성공사를 260억원에 수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전기 및 통신관로공사를 별도로 수주하였는데 발주처가 다른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동 공사는 택지조성공사의 관리조직으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임(A 9억원, B 1억3백만원, C 2억2백만원)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택지조성 공사를 수주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기 및 통신관로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사 관리 조직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별도의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797, 2007.12.26.)

## →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 질 의

공사금액이 4억원인 하수도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출자비율 50 : 50)으로 체결 하였는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2억원 인데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 회 시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분담 이행방식으로 시공 하는 경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팀-1525, 2007.03.27.)

## → 공사금액별 기술지도 횟수 및 방법

### 질 의

1. 규칙별표 6의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별표6의3 제1호 및 제2호”가 지도분야를 말하는지 기준인력 중 가 및 나를 말하는지
2. 규칙별표 6의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지
3. 개정법령이 기존 진행중인 현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법 시행이후 신규 계약현장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지

### 회 시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의 “별표 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에서

제1호는 건설공사 지도분야, 제2호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의미하고 각호의 1은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

안전 실무 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 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대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안전보건지도과-3409, 2009.09.07.)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 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

##### 질 의

하도급자가 구입한 각종 안전용품을 공사가 끝났을 때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하도급자가 그에 상당하는 안전용품을 구입 사용후 반납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0, 2000.01.11.)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증빙방법

##### 질 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의 복사본 등으로 증빙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9조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나, 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외에 안전관리비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의 제출 요구, 필요시 현장실사 등도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48, 2000.07.21.)

## 장기계속공사의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 질 의

1. 차수별로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집행시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총 계약된 안전관리비의 한도내에서) 다음 차수에 반영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
2. 안전관리비의 특성상(초기 투자가 많음)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정리를 차수별 관리가 아닌 총체분에 대하여 관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차수별 관리가 타당한 것인지, 총체분에 대한 관리가 타당한 것인지

### 회 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차수계약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 부가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을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공사에 대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정리 등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 2001.01.02.)

##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 실투입 인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당 현장은 안전시설체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구하였으나 인원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를 외주업체(청소용역업체)에 일괄계약(연면적기준) 하였음. 안전관리비를 월 기성금액기준(연면적)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된 근로자 인원수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연면적 기준이든 투입된 근로자수 기준이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가장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감리자 등과 협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8, 2001.01.18.)

**일부항목이 과소집행되고 최종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정산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 질 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중 일부 항목(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 건강 진단비)에서 사용계획보다 과소 집행하였지만 최종 준공정산시 총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각 항목의 미사용 금액만큼을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 사용안전관리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동 기준에서 정한 사용항목 이외의 항목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반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급인이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한 총 금액이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5, 2001.02.10.)

## 자동혈압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및 공사종료후 발주처에 반납 여부

### 질 의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제7조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다음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  
○ 품명/자동혈압계, 고유번호/BP705, 공급업체/(주)○○○시스템, 구입가격. 1,700,000원
2.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소모성 물품이 아닌 내구성 및 재활용가능품(추락사고 방지용 AIR MAT 10,400,000원, 자동혈압계 1,700,000원, 안전교육용기자재 앰프 및 스피커 1,000,000원 등) 구입시 공사완료후 처리시 발주처에 반납 또는 시공사 임의 처리 여부

### <참 고>

- 1) 당 현장은 항만공사 현장으로 토공, 준설, 매립, DOCK 기초굴착 및 기타 부대공사를 하고 있고 하루 약 120명 정도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DOCK기초 굴착공사는 Datum Level(기본수준면)에서 10m깊이까지 타파기 공사 예정임
- 2) 당 현장은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보안상 출입 조건이 자유롭지 못함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자동혈압계는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는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구입비용은 최초 구입시에 전액 인정이 되고 당해 시설 등을 타 현장에 전용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에서 반복적으로 정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종료시 발주자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050, 2001.02.24.)

## → 시공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 질 의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시 안전비라는 항목으로 법정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약체결을 하였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임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모 이외의 안전에 관한 시설을 설치한 것은 없음. 이런 경우 발주자가 건설회사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사용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여도 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 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동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위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064, 2001.03.08.)

##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 질 의

1. 일반공중통신시스템 구축사업 시스템 중 통합배선 시스템 공사를 당사에서 직영으로(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지원을 받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 협력업체 직원의 신체검사 및 각종 안전시설, 안전장구류를 구매 집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각 협력업체명의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질의 1. 사항과 관련 '98년 10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집행된 사항으로 발주처에 해당될 안전관리 이행사항에 보고를 못하고 2000년 9월에 소급하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수급인이 자기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할 때는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급 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도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규 채용시 실시한 신체검사비용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개인 보호구 구입시에 소요된 비용을 협력업체에서 직접 지출하였다면 원수급인은 위 협력업체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귀 질의의 기 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라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94, 2001.03.22.)

### 원·하도급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한지

### 질 의

하도급 업체로써 매월 원청에 기성청구를 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지 않았음. 공사가 종료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일시에 정산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또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기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귀사에 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이 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됨

(산안(건안) 68307-10102, 2001.03.26.)

## 분리 발주된 공사를 하나의 회사가 시공시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

### 질 의

건축현장으로 발주처에 건축, 기계, 토목이 한건 그리고 전기, 통신이 한 건으로 두 건이 별도로 계약이 되어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임. 물론 한 회사가 모두 시공사임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표준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한 후 발주처에 상위 2건의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청구시 2건의 비율(안전관리비)에 따라 나누어 2중 청구가 되지 않게 청구를 하는데 이를 발주처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음

예) : 모든 공종이 공통되는 안전관리비 금액 : 100원

건축, 기계, 토목 금액 : 80원 / 전기, 통신 금액 : 20원을 청구함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발주자에 의해 발주되고 동일한 시공자에 의해 수주 계약된 공사로 하더라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을 하고 이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리 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안전시설물이 건축·기계·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공사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그 구별이 어려운 경우라면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공사별 비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89, 2001.05.14.)

## 안전관리비 잔액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족한 공사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 질 의

현재 발주처와의 계약에 의하여 확보된 안전관리비를 공사기간내에 소비후 잔액을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부족한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공사비로 전용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발주처와 협의후에는 가능한지, 공사비로 전용이 안될 경우 안전관리비를 소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공사 등에 문책이 있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6조에 수급인은 계상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기준 제8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진행중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와 협의에 관계없이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사종료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32, 2001.06.01.)

###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

#### 질 의

착공시 안전관리비 사용항목(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2의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 30%이하)에 따른 사용계획이 25%이고 준공시 사용율이 20%일 경우 발주처에서는 사용율이 사용계획 이하이므로 감액처리한다 하는데, 착공전 제출한 사용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한 최종내역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과 비교하여 목적외 사용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사 시공도중 사용계획의 변동에 따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즉, 100,000원이상(이하)시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 처리건)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는 “수급인은 동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조에는 “수급인이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감액을 하거나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용계획서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 사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후 영수증 처리는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다른 자재비 또는 경비 등의 정산의 예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45, 2001.06.07.)

## 인건비 증빙 방법

### 질 의

1. 석유공사가 발주처인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안전시설비 중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설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 비용을 발주처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하면 규정에 적합한지
2. 다음으로 발주처에서는 표준품셈에 의거하는 방법외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지금까지 인건비를 인정한 전례가 없으며 석유공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다는 이유 때문임. 그 내용에 따르는게 옳은지? 단 현장 실제 노임과 표준품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를 순수 안전업무에 비정기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고 있음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 작업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이렇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안전시설물의 구입·설치·유지·보수작업과 관련하여 실제 투입된 자재비 및 인건비를 산정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으로 그 방법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따라서, 안전시설물의 설치자 인건비 산정시 품셈에 의한 방법이 당해 작업에 소요된 인력 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위 내역 외에 추가로 소요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작업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인건비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70, 2001.06.20.)

##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유무

### 질 의

1. 도급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었을 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의 70%에 1.88%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부가세를 제외한 도급금액의 70%에 1.88%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둘다 가능한지, 둘다 가능하다면 도급금액의 부가세 포함유무에 따라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실집행에 있어서도 부가세 포함유무가 결정되는지
2. 부가세 포함된 도급금액을 대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부가세 포함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면 공사기간 동안 부가세를 제외하여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였을 경우 준공 정산시 총 집행금액에 110%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3.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위 “2”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334, 2001.07.21.)

##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전에 하도급 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환수가 적법한지

### 질 의

당사는 준설매립 공사현장으로 2000년 4월부터 현재(공사기간 : 2000. 4월에서 2004. 3월)까지 공사가 진행중이며, 금월 발주처 점검시 하도급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환수하겠다고 하여 질의

원도급사인 당사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하도급사는공사를 개시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있었던 바, 공사 진행중에 발주처에 하도급승인요청 신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공사는 진행(현장 여건상 위 하도급사와는 직영 업체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음). 공사 기성은 매월 지급되고 있으나 하도급 승인이 되지 않은 회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인정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전액환수하겠다고 하는 상황임. 발주처에서 요청한 것이 적법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안에서 하도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시공회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사를 착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당해 하도급을 직영형태로 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하도급 계약상의 제반 문제는 건설관련법 등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귀 질의의 안전관리비가 당해 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위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52, 2001.07.25.)

## → 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정산시 증빙 방법

### 질 의

1. 인건비에서의 신호수, 보조원, 관리감독자 수당 그리고 시설비 중 안전시설원 인건비를 사용한 후 이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2. 그리고 안전순찰차량유지비, 수리비, 보험료에서 실제 중고차를 현장에서 구매하여 안전담당자 집 주소를 현장주소로 변경하여 안전담당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숙소생활로 출퇴근 없고 순수히 순찰 차량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나 자동차(프라이드)의 등록이 안전담당자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어 현재로선 기름값만 사용하고 있는데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사용이 안되는지, 별개로 수리는 어느선까지 가능한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 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동 별표 항목 4(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에 대한 비용은 개인소유 차량이라 할지라도 안전순찰에 사용하는 동안의 유류비, 소모품교환비, 수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개인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바, 동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임을 입증(회사 명의의 차량등록, 차량운행 일지 등)할 수 있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4, 2001.10.31.)

##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공사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총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부 고시에 의한 비율로 계상하였고 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하였다면 위법 사항인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함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시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85, 2001.12.03.)

##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1. 하도급의 (전문건설업) 안전관리비 서류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즉 원청의 권한으로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2. 하도급의 안전관리비 작성서류 중 사진 등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 그 금액의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 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 자료의 제출요구 등 그 사용에 대해 확인·감독을 할 수 있음
2. 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6, 2001.12.12.)

## 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합산 정산 여부

### 질 의

동일 지역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별도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두개의 현장 안전관리비를 합산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

한 공사는 1999년 착공 2002년 6월 준공, 다른 공사는 2001년 3월 착공 2002년 1월 준공, 이전 질의회신때 기존의 안전관리자가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아마도 합산을 하여 정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고 싶음(물론 계약서가 각각 존재하지만 동일 발주처 동일 마스터 플랜상의 공사라서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같은데)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은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기존 공사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주한 공사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고

그 안전관리비도 별도로 계상되었다면 당해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정산도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39, 2001.12.31.)

##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감액 대상인지

### 질 의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를 구매하여 발주처 안전담당부서의 검수까지 거친 안전장구에 대하여 실적자료 제출시 현장에서의 사진자료가 미제출됐다는 이유로 미사용이라는 규정을 들어 감액정산을 실시했는데 정당한 감액사유가 성립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을 위한 사진 등의 제출요구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현장에서 안전장구 등을 실제로 구입·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동 자료의 제출도 정산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4, 2002.01.30.)

## → 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한지

### 질 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장구 및 자재를 현장반입시 송장과 확인 대조하여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 사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장반입 당시 확인(반입여부 알수없음)되지 않고 추후 거래명세표로서 안전관리비사용 인정을 요구하는 실정임

- 감리자로서의 적법성 여부
- 거래명세서로 사용 확인가능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면 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1, 2002.02.07.)

### →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소급 정산여부

#### 질 의

협력업체에 계약시 반영한 안전관리비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시말해, 협력업체의 하도급기성이 6개월만에 발생하여 안전관리비도 지난 6개월치를 한번에 청구한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에 집행한 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으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기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자가 귀하에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7, 2002.02.15.)



## →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 질 의

현재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보다 초과 집행되었을 경우 공사 완료 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 설)

- 발주처는 계상된 안전관리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함

(을 설)

- 안전한 공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된 비용이므로 발주처에서 실적 정산하여 추가 계상해 주어야 함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초과 사용한 금액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발주자가 위 기준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추가로 발생한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06, 2002.03.14.)

## → 안전관리비 정산시 물가변동액 적용 방법

### 질 의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비 + 노무비 공사비 + 등등 = 순공사비, 순공사비 + 이윤 + 일반관리 + 물가변동액(K치반영) = 공사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실비 정산을 하여 계산(설계당시 인건비, 자재 구입비, 설치비가 아닌 시행당시의 실비로 정산)을 하다 보니 공사비에서 물가변동액을 고려했는데) 안전관리비 정산도 실비가 아닌 설계당시의 금액으로 계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실비정산을 한다면 순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는 물가 변동액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물가변동액을 적용했다면 물가변동폭 만큼의 금액을 안전관리비(+, -)로 사용해야 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공사가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금액의 대상액(재료비+노무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고 재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7, 2002.05.17.)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 질 의

○○시 발주로 시행중인 건축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비를 내역에 반영하여 이를 정산하고 있음

1.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 보고를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 보고가 된 것만 안전관리비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2. 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 하도급 계약서로써 하도급 보고를 대체하고 안전관리비 정산을 할 수는 없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귀사에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에 의해 실제로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하도급 공사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도 원수급 업체에서 그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하도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37, 2002.05.23.)

## →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 질 의

1. 항만 호안을 축조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수행중 동일 발주처, 동일 장소, 동일 작업공종(항만 호안공사)으로 추가공사 형태의 별도 발주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정산은 최초 공사와 합하여 누계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별도 공사로 분류하여 구분하여 정산/관리를 하여야 하는지(감리단 및 시공사는 최초공사와 동일하지만, 도급계약은 최초분과는 별도로 체결함)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개별 공사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와 같이 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 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하고, 유선상 확인한 바 대로 설계 변경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에도 내부 사정상 수의 계약에 의거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위 규정과 관계없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00, 2002.06.26.)

## → 감리단에서 검수하지 아니한 안전용품을 정산시 인정여부

### 질 의

당 현장에서는 안전용품(시설 포함) 구입시 감리로부터 검수를 받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등 감리가 현장내에 없어 검수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함. 시급을 요하는 안전시설물 등을 방치할 수가 없어 사진 촬영 후 선

투입 사용 중에 있는데, 감리에서는 검수를 맞지 않은 안전용품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감리의 업무로 합당한 건지,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확인)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다만,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을 위해서라면 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 사용여부 확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시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06, 2002.07.03.)

### 안전시설·보호구 무상지원(CLEAN 3D) 비용 정산시 감액여부

#### 질 의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추진중인『CLEAN 사업장 조성』사업에 따라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인보호구 무상보급 및 안전시설 임차금 무상지원(1,000만원 한도)을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처리하고 있으므로 동일건에 2중으로 안전관리비가 시공자에게 지급되게 되므로 건설현장 안전 가설재 임차금 무상지원시 지원되는 금액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 감액하여도 되는지 여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무상보급시 해당되는 금액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 감액하여도 되는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기간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정한 것인 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이중 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지원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43, 2002.07.22.)

## 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법적인 문제

### 질 의

발주자가 도급사에게 또는 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안전관리비 지급에 있어 계약서 상에 “산업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지급 정산 할 수 있는지, 차후 분쟁 발생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등 그 사용에 관하여 확인감독을 할 수 있음

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해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등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45, 2002.07.22.)

## → 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정산방법

### 질 의

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교육장 설치 또는 무재해기 계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집행할시 하도급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투입된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를 구분하여 증빙처리가 가능한지(안전교육장 설치 및 무재해기 계양대 설치 공사비는 단독공사가 아닌 하도급 계약금액의 일부분 공사로 실지 투입된 노무비, 재료비, 장비비 등 구분이 불가)

### 회 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보건교육장 및 무재해기 계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등으로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30, 2002.12.13.)

## → 안전관리비 사용전에 감리단이 반드시 검수하여야 하는지

### 질 의

현장 감리단에서 매월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 매월 계획을 올리고 매회 반입시 마다 감리원의 검측을 받고 승인하에 집행하라고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 및 필요한 시점에 집행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제대로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음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는 시공사에서 집행후 증빙에 따른 확인감독만 했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집행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때 확인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9조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자(감리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규정은 없음

(산안(건안) 68307-10538, 2002.12.23.)

## → 안전시설물 설치를 전문업체에 도급 줄 경우 정산과 관련한 경우 증빙처리 방법 ←

### 질 의

최근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등)을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완, 해체 등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안전시설설치공사 전문업체에게 안전시설 설치 일부를 하도급공사로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 “기성내역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추가 증빙을 건전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협력업체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와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 “안전시설전문업체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투자 증빙을 건전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거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0, 2003.01.27.)

## →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

동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에 의하여 동일 읍, 면, 동 지역 안에서 2개의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1인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갑설)

- A현장의 공사금액 40억원, B현장의 공사금액 60억원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현장별로 40%(A현장) 및 60%(B현장)로 나누어 사용함

(을설)

- 두 현장중 공사금액이 큰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집행함

(병설)

- 두 현장 각각 50%씩 부담함

#### 회 시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현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안전관리자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3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50, 2003.08.20.)



## → 목적 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처리방법

### 질 의

본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감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체시정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자체점검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코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해당월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동일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845, 2005.09.05.)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질 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정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에 있어서도 위 1.과 같이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240, 2005.11.15.)

##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정산방법

### 질 의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함에 있어 인건비라 함은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말하며, 이 때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등 안전관계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 가능한 인건비는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전액을 인건비로 보아야 함

(산업안전팀-1360, 2007.09.05.)

## 안전시설물 공동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방법

### 질 의

도급사업주가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별도 발주 하였으나, 현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그 비용을 건설공사 시공업체가 부담해 왔으나, 안전시설물 초과투입으로 인해 부족한 산업안전관리비를 별도 시공업체(전기공사, 통신공사)로 하여금 일부 부담토록 한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 회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안전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동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분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계획 수립 시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동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방법, 각 사의 분담금액 및 정산방법 등에 협약을 하였다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때,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고시 제9조에 의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과정에서 분담집행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각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시설물의 공동설치를 주문할 수 없을 것임

한편, 위와 같이 각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장소·통로·시설물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동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사업주의 재해예방 조치의무가 분담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물론 타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의무조치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안전보건지도과-1739, 2009.05.0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질 의

다수현장과 안전감시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등을 개별 현장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하여서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비용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증명의 방법은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4585, 2009.12.11.)

##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제9조(협조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시행규칙 제3조의2(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이 경우 산업재해 발생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은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건설현장내 제조, 감리, 레미콘 운전기사 등의 재해율 산정

### 질 의

1. 현장내에서 별도의 B.P(배차 플랜트)장이 있는 경우로서 B.P장내에서 관리 감독중인 감독자,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발생시 산재처리 및 산재건수는
2. 감리단 직원이 현장내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3. 토목현장에서 공사차량의 작업을 위해 가설한 도로상에서 레미콘차량이 운행도중 운전자의 과실로 계곡에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 회 시

1. 귀 질의의 레미콘 제조작업이 시공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에 의해 공사현장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산재가입을 하였다면, 레미콘 제조회사의 소속 관리감독자 및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는 레미콘제조회사의 산재로 처리되는 것임. 다만, 건설업 재해율 산정시 동 제조작업장이 시공회사가 제공한 부지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됨
2. 귀 현장내에서 사고를 당한 감리단 직원은 감리회사의 산재로 처리가 되는 것임
3. 공사현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됨

(산안(건안) 68307-604, 2000.07.01.)

## 공동 수급사 운영지침 협약서의 법적 효력

### 질 의

3개사가 지분율에 의하여 공동으로 시공, 운영, 관리하는 고속도로 현장임. 공동 수급 운영지침 협약서 중 산재건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사별로 배분일을 정 하였으며 사고발생시 배분일의 회사가 산재처리토록 명기함. 사고발생시 공동 수급사가 운영지침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는 분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협약서의 내용에 상관없이 참여업체간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379, 2001.06.04.)

## 법령규정과 공동이행 협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재해자수 분배 방법

## 질 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와 관련하여

1. 법 제정이전에 현장에서 업체간의 협약서를 작성한 내용이 상기내용과 상이할 경우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기준
2.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재해건도 지분율로 분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는지
3. 근로자가 아닌 공동수급업체 직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재해자를 분배하는지

## 회 시

1. 2000. 9. 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의 개정으로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는 재해율 산정시 산재처리협약서와 상관없이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되며, 위 기준에 의해 재해자수를 분배하는 경우 사망자뿐만 아니라 일반 재해자 공히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2. 동 기준에 의한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는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도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됨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지분율에 따른 분배 등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매년 5월경) 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에 공동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

(산안(건안) 68307-10379, 2001.06.22.)

## → 공동도급 공사에서 장비만 투입할 때 재해율 산정

### 질 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중인 현장의 A, B, C 사중 A사가 주관이 되고 B, C사는 장비만 투입하고 재해발생시 A사가 재해율을 산정하도록 각서를 쓴 경우에 사고발생시 변경된 법에 의하여 B, C사도 재해율에 가감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는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수급업체간의 재해율 산정에 관한 각서 등과 상관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379, 2001.07.14.)

## → 하수급인 인정승인 및 공동도급공사 재해자수 분배방법

### 질 의

1. ○○공사를 ○○건설회사가 민자유치사업의 공사를 하면서 특수공정 및 일반공정을 공사일부 또는 공사전부를 일반건설업체에 하도급계약을 하고,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을 받아 산재가입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하수급인 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 산정방법
2.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당사 지분에 대한 공사를 포기하고 공동도급 대표사에게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처리를 하였을 경우 공동도급공사중 발생한 재해자수의 분배방법

### 회 시

1. 특수공정 및 공사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가목 (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인 일반건설업체 재해자로 산정함

2. 또한, 위 기준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 또는 대표사에게 공사를 일임하는 등과 관계없이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379, 2001.07.24.)

## →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에서 재해자 분배방법에 대하여

### 질 의

건설공사의 지분율이 A사 50%, B사 35%, C사 15인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는 운영협약서에 따라 A사가 처리하였는데 어떻게 확인하여 지분율대로 분배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재해자 확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재해조사결과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자료 등을 참조하여 파악한 사실과 이러한 경로로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를 조사시 산재처리한 업체에 재해현황을 우선통보(매년 5월경)하고 통보받은 업체에서 공동이행공사에서의 재해임을 이의신청하면 그 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등에 따라 재해자수를 배분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483, 2001.10.06.)



## → 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 질 의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공동 도급사 간에 내부 협약을 통해 분담시공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 협약에 따라 분담 구간 재해자의 소속사에 재해자수를 귀속하여야 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를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함.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함

(산안(건안) 68307-1055, 2001.11.19.)

## → 하도급사에서 산재처리시 재해율 산정방법

### 질 의

원도급사를 “갑” 하도급사를 “을”이라 칭하여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산재하수급인 보험료납부 인수신청서 제출후 승인을 받은 경우 하도급사 공사추진중 산재가 발생하여 처리하였다면 산재의 주체는 을사인데 갑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1)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2)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당해 재해자는 위 기준 (1)에 의하여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되며, 노동부장관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 미만이거나 초과여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 또는 감점( $\pm 2$ 점)을 받게 됨

(산안(건안) 68307-10018, 2002.01.17.)

### → 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

#### 질 의

SOC 민간투자사업인 공사를 발주자의 승인에 의해 구성원간 분할시공의 원칙 (시설공사기본도급계약서 제19조) 1차적인 책임은 해당공구 구성원이 지고, 해당 공구 구성원만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계약(공동수급협정서 제6조)을 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을 하던 중 특정 수급업체의 관할공구가 아닌 공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부담은 출자지분에 따르는지 아니면 재해발생공구 시공사가 일괄 부담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됨

그러나,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귀 질의의 공사에서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함

(산안(건안) 68307-10019, 2002.01.18.)

## → 뇌출혈로 인한 사망시 가중치가 부여 여부

### 질 의

2001년 9월 ○○일 당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뇌출혈로 인하여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음. 이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어 산재로 인정을 받았고 이 근로자는 그동안 치료를 받다가 2002년 3월 ○○일 사망한 경우 당사의 재해율에 사망 1건으로 가중치가 부여 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라목에서 재해자중 사망재해자는 부상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개인질병에 의한 재해 등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재해가 개인질병 등으로 판명되고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율 산정시 가중치가 부여됨

(산안(건안) 68307-10119, 2002.03.25.)

## → 본사 근로자의 재해도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 질 의

건설회사로서 산재보험 성립이 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현장 일괄가입)과 기타의 각종사업(저의 회사는 건설본사 해당)에 산재보험 2종류가 가입되어 있음. 본사 직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부상 또는 사망)를 입어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에 매년 발표되는 800대 건설업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에 의거 재해자수는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본사 직원이 업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위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127, 2002.03.28.)

## 뇌출혈 사고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 여부

### 질 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로 인한 산재로 처리가 되었을 시

1. 개인질병 등 사업주의 과실이 명백한 재해도 매년 실시하는 재해율 및 환산재해율에 포함이 되는지
2. 노동부에서는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중치부여를 제외시킨다는데 정확한 기준

### 회 시

1. 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중 개인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산재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재해자중 사망자는 부상재해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개인질병에 의한 사고 등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가중치 부여 또는 제외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재해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이를 심사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195, 2002.05.09.)

##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율 변경시 분배 방법

### 질 의

공동수급공도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1. 재해자수 분배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므로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어떻게 처리(또는 몇째자리까지 처리) 되는지(예 : 지분 -A사(76.5%), B사(10.0%) C사(13.5%)이고 일반재해 1건 발생시 분배)
2. 부득이 발주자와의 계약시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을 공동수급업체간 상호협약에 의해 출자비율을 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조정하는 경우 재해자수의 분배시 적용하는 출자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인지 아니면 상호협약에 의해 조정된 출자비율인지(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은 변경 없음)

#### 회 시

1.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재해분배는 사망자 및 일반재해자 공히 소수점 자리수에 제한없이 지분율에 따라 분배(귀 질의의 A사 0.765명, B사 0.1명, C사 0.135명)하며, 이렇게 산전된 재해자수를 기준으로 재해율은 통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함
2. 공동수급업체간 출자비율을 도급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참여업체간 상호협약에 의해 조정한 경우 재해자수는 출자비율이 조정되었음을 참여사 전체가 동의하고 발주자가 인정(확인서 등)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출자비율대로 재해자수를 분배함

(산안(건안) 68307-55, 2003.03.04.)

### 장비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여부

#### 질 의

하청업체에서 임대한 펌프카 작업시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붐대가 부러지면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붐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 천재지변성 사고 및 제3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하수급인을 포함)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 기준 제3호 라목에 의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사항중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라 함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나 폭풍·폭우·폭설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를 말하며,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당해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귀 사고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재해로 당해 공사의 시공업체의 재해자로 산정됨

(산안(건안) 68307-103, 2003.04.14.)

## 인수합병의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 재제출 여부

### 질 의

A업체(모회사로 개발업체)가 B업체(A업체의 자회사로 시공업체)를 인수합병할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를 A업체 법인명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인수합병된 경우 재해율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 등의 각종 제출서류와 무재해운동 관련 규정에 의한 무재해 개시 신고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B업체는 A업체로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A업체가 다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귀 질의와 같이 A업체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고 B업체만이 등록업체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재해율 산정에서 B업체의 상시근로자수(공사실적액) 및 재해자수는 A법인으로 귀속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 제3호 가 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체 재해율은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므로 본사 재해는 제외됨  
(산업안전과-3226, 2004.05.20.)

## 전문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에 대하여

### 질 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면허로 입찰을 보고 해당등록증으로 건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을 경우 재해율 산정에 대하여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의 환산재해율로 산정한다”로 하고 있으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체에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의 재해자는 당해 일반건설업체 재해자수로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재해율 산정대상 건설업체는 노동부장관이 규모에 따라 매년 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일반건설업체로 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업체와 같이 일반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 등록증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자격으로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재해자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산업안전과-4108, 2004.07.07.)

## 운송업체 운전기사의 산업재해가 원수급업체 재해율에 산입되는지 여부

### 질 의

운송업체 운전기사가 자재하역 중 발생한 산업재해가 원수급업체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 시

건설업 재해율 조사기준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 다.목에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하고 제3호 가.목(1)에서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B건설업체(하청업체)와 C운수업체가 물품 납품 등 계약을 하였고 당해 현장에서 하차작업중 산업재해를 입어 별표 1 제3호 가.목(1)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A건설업체(원청업체) 재해자수에 합산함

(산업안전팀-761, 2005.10.18.)

##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

## 질 의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

## 회 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적용되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은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산정방법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의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만을 합산하게 되며,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수는 합산되지 않음(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는 원도급 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

(안전보건지도과-1165, 2008.06.02.)



## → 하도급 받은 사업주의 사고가 재해율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 질 의

현장에서 보수보강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소규모업체로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등)가 현장에서 근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 회 시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이 되는 재해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 사업주 해당여부는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에는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산업안전팀-5248, 2006.10.30.)

## → 수급업체와 원청업체의 재해율산정 방법

### 질 의

1. 발주자(민자사업단)로 부터 8개사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건설업체에 공사의 일부(건축 및 설비)를 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액을 원청이 가져간다면 재해율 산정은 원청업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2.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한 경우 재해율 산정과 일반 건설업체가 일반 건설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재해율 산정 방법(개정된 내용)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 도급을 행한 경우의 재해자수는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하게 되며, '07.1.12. 이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체(A)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하되,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함

2.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수급인이 전문건설업체라면 당해 재해자는 원수급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게 됨.

(산업안전팀-940, 2007.02.22.)

###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재 하도급한 경우 재해율산정 방법

#### 질 의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일반건설업체(B)에 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C)의 근로자 재해는 어떻게 배분되는 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하고 있는바,

'07.1.12.이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체(B)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A)와 일반건설업체(B)에 각 반분되며 A, B업체 중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책임이 있는 업체의 재해자수로 합산됨.

(산업안전팀-4338, 2007.09.04.)

###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 되는지

#### 질 의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 회 시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 사업으로 행하는 건설현장 포함)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사업 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는 개인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이른바 사용자에게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율 산정대상에 포함됨

(산업안전팀-5779, 2006.12.04.)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 질 의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에게 재해자가 합산되는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인정 승인되고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당해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실적액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분리 산정하여 협회(전기공사협회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 하였다면 하수급인 인정승인과 상관없이 하수급인의 재해자는 원수급인의 재해자 수 산정에 합산되지 않음

(산업안전팀-799, 2007.02.13.)

##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재해의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열거된 방화, 근로자와 근로자 간 또는 근로자와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외에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에 대해서 환산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건설현장 내 근로자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받고 산재요양승인된 경우 환산재해를 산정시 반영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제3호에 의거 재해자수는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환산재해를 산정은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 시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부상이나 질병 재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재해율산정에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에 규정된 사항은 건설현장을 벗어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예, 출장 중 재해)하거나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하였으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현저히 벗어나 발생하는 방화나 근로자 간 폭행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환산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모두 환산재해율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2. 건설현장 내 근로자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받고 산재요양승인된 경우에는 산재인정은 대면관계 업무종사자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 질병이 다른 요인 없이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지 여부, 전국에서 인정받은 환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산재해율 산정시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안전보건지도과-4387, 2009.11.30.)

###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재해율 산정기준

#### 질 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와 환산재해율 산정 기준은

## 회 시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여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한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고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의 책임에 대하여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공동계약의 유형으로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여부는 사고발생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시공의 책임이 구성원 각자에게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구성원 각자에게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율 산정시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사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안전보건지도과-624, 2010.02.09.)

## 산업안전보건법 보고의무 위반시 재해율 산정기준

## 질 의

헌법재판소에서 2010.2.2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하였는바, '09. 8. 7. 이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보고의무 위반건수”로 산입되어 감점 대상이 되는지

## 회 시

'10.2.25. 헌법재판소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09.2.26. 개정 이전 법, '09.8.7. 시행)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함에 따라 '09. 8. 7.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구법 제10조 위반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보고의무 위반건수”에 산입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1238, 2010.06.06.)

## 3개월간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는 수식은

## 질 의

환산재해율산정시 3개월간 재해율을 산정하는 산식은

## 회 시

우리부에서는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매년 단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음

우리부에서는 년단위로만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며, 이때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에 따라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과 “건설업 월평균임금”, “노무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의해 산정한 값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

$$\text{상시근로자수} = (\text{총 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 \div \{\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text{개월})\}$$

- 이 공식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수는 1년동안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 귀 질의와 같이 3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총 공사실적액과 12(개월) 대신 3(개월)을 입력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환산재해율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우리부에서는 건설업체별로 연간 총 공사금액에 대해 연간 단위로만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어, 연차공사나 공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해 별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지는 않음

(국민신문고, 2012.01.09.)

## →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계약시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 질 의

일반 건설현장에서 원청인 종합건설업체(A)가 전체 작업 공종 중 특정공종을 종합건설업체(B)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자재 납품 및 시공을 하는 경우, 재해 발생시 어느 업체의 재해자수에 반영되는지 여부

갑) 원청업체(A)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특정 공종(일부도급)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원청업체(A) 재해율에 귀속

을)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B)가 종합건설업체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1에 의해 원청업체(A)와 하청업체(B) 재해자수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규정됨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됨

귀 질의의 경우, 우선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하게 되나 (귀 질의 ‘을’에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라면, 하청업체(B)에서 발생한 재해는 원청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됨

(국민신문고, 2012.02.03.)

## 민자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율 산정에 관한 회신

### 질 의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된 민간계약공사에서 지분에 따라 공구분할방식으로 분담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발주처 및 관할관청에 사전 신고한 경우, 분할된 각 공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환산재해율 산정 기준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나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토록 규정

공동도급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하나 귀 공사와 같이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이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되거나 발주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함

(건설산재예방과-503, 2012.02.21.)

## 제 6 장 지정(대행)기관





## 제 6 장 지정(대행)기관

### 1.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예방의학전문의를 보건관리대행 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여부

#### 질 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예전에 면허를 취득한 예방의학전문의는 「환경 및 산업의학」이라는 세부전공이 없었는데 이러한 구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 회 시

예방의학전문의로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여야 하지만 예방의학전문의의 레지던트 전공이 ① 보건관리, ② 역학, ③ 환경 및 산업의학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되기 이전에 예방의학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레지던트의 세부전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귀 질의와 같이 세부전공 구분전에 예방의학전문 의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전문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의사 자격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건관리대행 업무수행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산보 68340-61, 2000.01.26.)

## 보건관리대행시 대행계약 인원과 검진인원이 다른 경우 조치 사항

### 질 의

1. 보건관리대행시 실 근로자인원을 정규직으로만 한정하는지? 혹은 일용직도 포함하여 계약을 해야 하는지
2. 보건관리 대행인원의 계약 근로자수와 검진인원의 근로자수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보건관리 대행 계약인원은 150명이나 일반 특수검진 수검자는 200명 일 경우) 의료기관 및 사업주에 대한 조치사항은

### 회 시

1. 사업주가 보건관리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 보건관리대행기관간의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수를 말하는 바,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직 근로자나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함.

따라서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상시근로자의 수는 일정 사업기간 내의 고용 근로자(임시직·일용직 근로자 포함) 총인원 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함.

2.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의 수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주에 의해 일정 사업기간 동안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 진단 대상 근로자의 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사업주간에 계약한 근로자의 수가 위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근로자수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보건관리대행관련 서류로서 대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해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3(제15조의5 준용), 시행규칙 제143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20의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의 제1호라목 또는 사목의(1)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보건관리를 위탁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계약한 것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를 할 근거 규정이 없음.

(산보 68340-80, 2000.02.01.)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타기관에 시료분석 의뢰 가능 여부

### 질 의

정도관리를 합격하고 장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에서 혈중 납 및 혈중 중금속의 분석량이 많아 타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회 시

특수건강진단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특수건강진단결과의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므로 특수건강진단 시료는 기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산보 68307-253, 2000.04.10.)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보건행정학과”가 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7】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건행정학과”가 관련 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보건학과라 함은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산업 위생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등과 같이 학과나 학부 명칭에 「산업」의 수식어가 붙는 등 「산업보건」과 그 명칭이 흡사한 학과나 학부를 지칭함.

따라서 일반공중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 및 경영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학문인 “보건행정학과”는 “산업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될 수는 없음

(안정 68301-429, 2000.04.20.)

## → 사업장 자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법정 장비의 제외 여부

### 질 의

사업장 자체 의료기관에서 중금속 분야는 분석시료를 의뢰하고, 나머지 분야만 특수건강진단으로 지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련, 당해 사업장의 유해인자의 유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4 제2호다목(15) 또는 (16)의 기기중 모두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둔 이유는 가급적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쉽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상의 예외사항을 인정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산보 68307-449, 2000.06.24.)

## → 보건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 중 '산업의학 관련기관'과 '산업의학 분야의 의미

### 질 의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라 함은 일반건강진단기관(의보 지정의원)에서 4년이상 일반검진 업무에 종사한 자도 가능한지? 또한 일반건강진단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 업무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학 관련기관과 산업의학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가목(1)의(다)에 규정된 산업의학관련기관이라 함은 의과대학의 산업의학교실, 예방의학교실, 병원 산업의학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의학관련 대학원을 말하며 산업의학분야는 상기 기관에서의 의사업무 영역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검진기관에서 일반검진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경우는 일반검진기관이 산업의학관련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가목(1)의(다)에 규정된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로 볼 수 없음.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가목(1)의(다)의 단서에 의해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됨.

(산보 68340-452, 2000.06.26.)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인력이 자격기준 격상시 지도기준

### 질 의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을 유지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2의제2호(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인력기준중 2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상위인력인 1호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2. 인력기준 2호에 신고된 자가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1호에 해당되면 관할 지방청에 이를 신고후 공사금액 40억이상의 사업장에 기술지도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및 장비기준』 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지도분야 제2호에서 요구하는 바는 건설 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요건과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 등 경력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바, 동 인력기준 제1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경력기준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 기준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 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경력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의견대로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기간 중 제1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가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00, 2000.07.10.)

## 출장건강진단버스의 법적 기준

### 질 의

출장건강진단버스의 법적기준(엑스레이검사 및 청력부스)은

## 회 시

출장검진차량의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5호, 1996.5.18.]에서 정한 “방사선방어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소음 특수건강진단에 사용되는 청력검사실은 정확성을 위하여 배경소음이 35dB(A) 이하의 환경에서 실시되어야 함.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청력검사용 부스도 반드시 동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참고로, 특수건강진단의 지정과 관련하여 검진차량 등 출장검진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산보 68307-574, 2000.08.28.)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자격별 대행요원이 동행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업무수행 인정 여부

## 질 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의사와 간호사가 사업장에 동행방문하여 각자 직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시 업무수행 인정여부

## 회 시

『안전보건관리대행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436호)』 제4조 제1항제3호의 보건점검기준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자격자별 대행요원의 점검 횟수를 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에서와 같이 대행사업장에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 동행 방문하여 각각의 자격자별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보건 점검기준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정됨. 다만, 대행요원이 특수건강진단 또는 작업환경측정 등 보건관리대행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산보 68340-44, 2001.01.27.)

## 지정교육기관이 임대차계약으로 강의실 사용시 시설·장비기준 충족 여부

## 질 의

지정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중 강의실과 시청각 기자재를 타 교육기관에서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점유사용이 아닌 사용계약에 의하여 필요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기준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실·강의실·시청각 기자재 등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대강당 및 중강당(276㎡,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이 구비됨)에 대한 강의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이를 강의실로 사용·수익하고 이에 대한 차임으로 사용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것은 상기 별표7의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안정 68307-121, 2001.03.06.)

### → 정도관리 참여자의 업무중복 적합 여부

#### 질 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지정측정기관 분석담당자가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참여 및 특수건강진단 분석업무를 모두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3조의2(행정처분기준)를 적용하여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 분석 업무에 지정된 자가 받아야 함. 다만, 현행 규정에 분석정도관리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정측정기관 분석담당자가 대신 참여하여 인정받은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결과를 철회할 수는 없으며,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노출 지표검사 분석업무는 시행규칙 별표14 제2호가목의 인력중 (5)호에 지정된 자가 전담하여야 함. 다만, 이러한 사항이 규칙 및 하위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우선 시정지시 등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산보 68341-140, 2001.03.15.)



## → 환경보건학 전공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전문대학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하였는데 “환경보건학을 전공한 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중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4의 “2.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인력기준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화학·화공학·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인 자”는 별표 13의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항목” 중 유해물질 자체 또는 그 대사산물농도 분석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인력이므로 환경보건학 전공자는 지정인력으로 볼 수 없음.

(산보 68307-155, 2001.03.19.)

## → 2개의 지정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및 시설기준

### 질 의

1. 안전관리대행기관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2개기관이 경영합리화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합병시의 명칭은 지정교육기관 명칭으로 함)
2. 사무실 시설기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50㎡이상, 지정교육기관은 77㎡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합병시의 사무실의 시설기준은 지정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인 77㎡이상 하나의 사무실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상기 합병이 귀문과 같이 지정교육기관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흡수하는 합병이라면 합병 결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소멸됨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서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는 한편,  
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함

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은 50㎡이상이고, 지정교육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은 77㎡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수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임

따라서 상기 합병 사례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지정교육기관으로 각각 지정을 받아 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사무실은 두 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을 합한 127㎡이상이어야 함.

(안정 68307-584, 2001.07.06.)

## 안전관리대행요원의 1일 사업장 점검 사업장수 제한

### 질 의

안전관리 대행요원 1인이 30개업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월 2회 격주 단위로 일반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한 개인이 1일 방문 가능한 업체수가 몇 개 한도내에서 가능한지

### 회 시

안전관리대행 담당자의 담당 사업장수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에 30개이하 사업장으로 명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하고 있으며 사업장 일반안전점검의 횟수는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 (노동부 예규 제436호)』 제4조에서 월 2회(격주단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안전관리대행 담당자의 1일 점검 사업장수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1일 점검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 점검 부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우리부의 지도·감독시 대행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부실이 적발될 경우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 사유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대행요원의 1일 방문 사업장수를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장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담당사업장의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담당사업장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산안 68320-370, 2001.08.22.)

- ※ '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개정(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 1명당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수를 삭제)으로 탄력적인 인력조정 및 운용을 가능토록 함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실체는 유지된 채 명칭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정방법

### 질 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인 (주) ○○○○기술공사가 신규지정시 지정요건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법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신규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변경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법인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것인가 변경지정 할 것인가 여부는 기존법인이 소멸되고 신규 법인으로 변경될 때에는 새롭게 지정을 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서의 변경요인만 발생할 때에는 변경지정함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인 (주)○○○기술공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명칭만 (주)○○○안전공사로 변경되어 변경등기하였고 기존 이사중에서 단순히 대표자만 교체된 것으로 보아 동 기관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26, 2001.09.03.)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임상의학전문이가 법정인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의사가 임상의학전문의로써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 건강진단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중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로 인정되는지

### 회 시

의사가 임상의학전문의로써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 건강진단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

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의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2조 및 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 : 산업의학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의학 분야에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다만,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구체적인 의사자격 확인업무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보 68307-638, 2001.09.14.)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의사) 기준중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 대한 인정범위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4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중 “(다)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의학 분야에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와 관련하여

1.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의 인정범위
2.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 해석은
3. 일반건강진단실시기관 및 채용시건강진단 실시기관 대표자 의사로 재직하며 실제 건강진단업무를 담당한 경우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의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 회 시

1.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과, 산업의학과, 의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대학원 또는 산업의학과(산업의학전문의 근무)를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특수건강진단업무,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전담하거나 직업성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등을 말함.
2.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는 예방의학전문의 및 산업의학전문의를 제외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보유자를 말함.

3. 일반건강진단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일반 건강진단업무 또는 기타 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산업의학 분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보 68307-692, 2001.10.09.)

## 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지정검사항목이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부속설비일 때 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되는지

### 회 시

지정검사기관(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 분야) 공통 인력기준 가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자격을 비파괴검사기술사 자격이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일러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자체검사시에는 비파괴검사장비 및 기술에 의하여 용접상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수적이므로 비파괴검사기술사 자격은 공통인력기준 가목에 해당됨

(산안68320-506, 2001.11.15.)

## 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의 인정

### 질 의

현재 지정측정기관 및 대행기관 인력기준에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1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음. 이럴 경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로 3년간 근무하다 기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사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실무에 종사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기사로 근무한 3년간의 경력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1.가.(3) 및 별표 12 1.가(1), 1.나(1)의 인력중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본문과 같이 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산업보건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산보 68344-56, 2002.01.22.)

### 산업의학전공의가 책임의사의 지도아래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질 의

전공의 수련병원인 대학병원이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책임의사의 지도아래 전공의가 사업장 방문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책임의사의 지도”란 반드시 사업장에 같이 방문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는지의 여부

#### 회 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하여 ① 산업의학전문의, ②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③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한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 업무에 종사한 의사만 될 수 있으므로 산업의학전공의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될 수 없음

다만, 산업의학 전공의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 복지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의학과 수련과정의 일환으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인 산업의학전문의의 실질적인 지도·책임 하에서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업장도 방문할 수 있으나

동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없음.

(산보 68340-84, 2002.01.29.)

### 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의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

#### 질 의

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에 해당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규칙별표 6) 및 제43조(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은 (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전공), (다)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다만, 임상의학전문의는 2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이므로,

예방의학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전공)를 취득하지 않고 예방의학전공의 과정만을 수련하는 경우는 위 (나)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대행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 종사 경력이 추가로 필요함

(산보 68307-94, 2002.01.30.)

## 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 질 의

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시(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의 전직, 이직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 회 시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지정한계,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변경 인력의 법정기준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알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산보 68344-468, 2002.05.18.)

## 고분자기기분석실험 등을 이수하였을 때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 질 의

1. 고분자기기분석실험(2학점)과 고분자기기분석(3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분석담당자 자격이 되는지
2. 분석화학(2학점)과 분석화학실험(2학점)인 두 과목을 이수한자가 분석담당자 자격이 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 12에 의한 지정축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자』라 함은 유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등 화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학과로서 화공과, 화학공정과, 화학공학교육과, 화학과, 화학교육과, 화학기계공학과, 화학기계과, 화학공업경영학과, 화학공업과, 화학공업교육과, 농화학과 등을 화학관련학과로 볼 수 있을 것임.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석화학과 거의 같고 단지 명칭이 다른 “고분자기기분석실험(2학점)”과 “고분자기기분석(3학점)”이라는 과목을 이수하였다면 분석담당자로서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2. 분석화학과 실험을 포함하여 3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다면 분석담당자로서의 자격이 된다고 판단됨

(산보 68344-523, 2002.06.04.)

##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의 자격

## 질 의

결핵과전문의 또는 의학박사학위를 소지한 의사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될 수 있는 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규칙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과 전문의는 임상 의학 전문의로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 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의학박사(예방의학전공) 학위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두 가지의 자격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로 볼 수 없음

(산보 68354-688, 2002.07.23.)



##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의 규칙별표 12의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 회 시

전공한 자라함은 졸업한 자로 해석됨

(산보 68344-760, 2002.08.23.)

## 사단법인 설립의 법적 절차

### 질 의

1.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
2. 사단법인 산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법적 절차
3. 부속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는 법적 절차
4. 사단법인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는 법적 절차

### 회 시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서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lab.go.kr](http://www.molab.go.kr))에 올려진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참고
2.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명시 하고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동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동 규칙 제103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동 규칙 제96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보 68307-844, 2002.09.23.)

##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지정·변경 신청 관련

### 질 의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대표자 변경, 인수 합병, 양수·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사항의 변경(변경신청)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6조,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지정신청서(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정조건 포함)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기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지정서 명기사항에 대한 변경사유 발생시 즉, 단순히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지정조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증명서류·지정서 첨부)를 제출

지정서 명기사항 이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법인이 아닌 지정기관이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인 지정기관이 법인이 아닌 기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두개 이상의 기관이 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교류 또는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

다만, 지정신청서 제출시 인력·시설·장비에 변동이 없거나 변경전보다 인력의 추가

충원, 시설·장비의 추가 구입 등 지정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능력 향상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변경전 지정기관이 받은 정도관리 결과 제출 가능

(산보 68300-103, 2003.02.11.)

###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 질 의

분석전담자가 임상병리사이고 '03정도관리에 합격하였으나, 지정측정기관 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로 하여금 임상병리사와 함께 분석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분석을 전담할 자를 채용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예정)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의하여 분석을 전담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는 분석을 전담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임상병리사는 위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이 곤란함.

(산보 68344-409, 2003.05.28.)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검사

#### 질 의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 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요청하는 국소배기장치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적법한 자체검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의 직무와는 별도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0조·제281조 및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20호) 제5조 및 별표 13의 규정에서 정한 주기,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로써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육안검사 및 제어속도만으로 약식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로 인정받을 수 없음

(산보 68341-611, 2003.07.24.)

##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타지역에 출장소를 운영하여도 되는지

### 질 의

1.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기기보정, 측정시료보관, 보고서 작성, 영업업무 수행 등 업무의 편리를 위하여 타지역에 출장소를 운영 하여도 되는지
2. 만약 출장소 설치·운영이 불법이라면, 대학측정기관에서 2~3주정도 지방 소재 대규모 사업체 출장 측정의 불법여부

### 회 시

1.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출장소를 운영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정기관이 타지역에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2. 다만, 대학측정기관 등이 지방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한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 제9조의 측정지역의 특례 규정(노사협의 또는 사업장 부속기관의 계열회사 사업장 측정)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산보 68344-696, 2003.08.19.)

## 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실무 8년경력인 경우 기술지도요원 자격여부

### 질 의

산안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인력 및 시설, 장비기준중 규칙 별표 6의2중 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인력기준 2번 항목에 있는 가, 나,의 내용에는 건설안전 기사(산업기사)이상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7년 이상)이나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지 3개월 되었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건설안전업무를 8년간 실무에서 경력을 갖추고 있는데,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자격을 갖추고 실무에서 8년 동안 경력을 쌓고 건설안전 자격을 최근에 취득하여도 2번 항목에 해당되는지 만약 2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4번 항목에 보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해당되는데 4번 항목에는 정확히 해당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중 건설공사 지도분야 인력기준 제2호 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을 말함

귀하의 경우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위 요건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위 제2호의 인력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산업안전기사로서 8년간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위 제4호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영 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은 충족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82, 2002.02.23.)

### 기술지도 요원이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치 기준

#### 질 의

건설안전 재해예방지도기관에 선임된 기술지도인력이 장기간(100일 이상/연간) 타 업무(건설현장 안전점검/교육 용역 등)를 수행할 경우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지도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주어지게 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 6의2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은 동 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하는 지도한계 (당해 기관의 사업장 지도담당 요원의 1인당 사업장수는 30개소)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술지도요원의 기술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동안 기술지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술

지도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등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96, 2002.05.10.)

## →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 주기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3항가에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기술사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회중 1회 이상이 꼭 매4회마다 1회인지 아니면 4회 범위 안에서 1회 방문인지(예를 들어 2회째 방문하고 8회째 방문하면 지도기준에 위배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2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 4회의 범위안에서 1회 이상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의 인력은 위험공정 등으로 인하여 지도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9, 2002.07.19.)

## → 비상근 이사의 인력기준 적합성 여부

### 질 의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이사인 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또한 산업의학전문 의가 동 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일반분야 인력으로 적합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7)의『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서의 인력기준은 지정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동 교육기관에 상시 근무하면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총괄·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비상근 이사인 자를 상기 인력기준에 적합한 볼 수는 없을 것임

또한, 지정교육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일반분야의 인력기준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분야 산업기사나 기사이상”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나 기사 이상인 기술사 등을 의미하므로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질의에 명시된 산업의학전문의가 일반분야중 제3호(산업안전보건관련학과를 졸업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의 전공학과 등을 기준으로 2001년도 산업안전보건질의회시집(제138쪽)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안정 68301-874, 2002.10.15.)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 질 의

지정교육기관 지정신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및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의 구분 중 아래 가., 나.항의 경우 기술분야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가. 기술분야 내용

- ① 해당분야 : 전문대학 기계과 졸업
- ② 국가기술자격증 : 건설기계기사 2급(현 건설기계산업기사)
- ③ 실무경력 :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의 안전담당 3년 이상 경력자임

나.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가.의 ③도 기술분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시행규칙 제34조 및 동 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해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기술분야의 기준은 기계·

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1인 이상임

1. 관련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따라서 “건설분야인 건설기계산업기사로서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또한 지정교육기관으로서 위탁받으려고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기술분야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임

(안전정책과-3834, 2004.07.13.)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 기술분야 인력 기준의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인력으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인력이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귀하가 졸업한 재료공학과에 대한 전공내용 등의 자세한 언급이 없어 세부적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일반적으로 재료공학은 재료의 물리적·화학적·기계적 성질을 서로 연관시켜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 재료의 결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이므로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인력은 지정교육기관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강사요원으로 운영되는 기술분야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안전보건정책팀-587, 2006.01.27.)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법정 인력 외 인력의 업무범위

### 질 의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지정받은 안전관리대행업무 외 기타 사업으로 회원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지,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대행 법정 인력이 동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 지, 별도의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지

### 【답 설】

1. 안전관리대행업무 외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 없으므로 지원지역, 사업장 개수, 근로자 수 등의 한계없이 자율적으로 판단 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안전대행기관 법정 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을 갖추어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나, 법정 인력인 대행요원도 안전관리대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음

### 【을 설】

1.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본연의 업무외에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은 할 수 있으나, 지정받은 일반대행지역 및 한계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함
2. 안전관리대행 법정인력은 일반대행업무 만을 전담하고, 별도의 인력이 회원 관리 등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5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은 지도한계(1인당 담당 사업장수는 30개소, 근로자수 2,000명 이하)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

이는 지도요원의 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므로 지도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지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관리업무를 부수적·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도 업무보다 회원관리업무가 주업무가 되어서는 안되고 이를 장기간 동안 수행하는 경우 지도 업무를 정당 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도 사업장을 법정 인력중 일부직원에게만 담당하게 하고 일부 직원은 회원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수적·간헐적인 수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지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원관리업무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92, 2007.01.05.)

## →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과 관련임.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지정인력(5명)으로 근무하던 4명이 퇴사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으나 동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 관할지방법원에 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위와 같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된 상황에서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

<답설>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지정서를 발급 하여야 함

<을설>

법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회 시**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향후 법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갑설)

(산업안전팀-5664, 2007.12.13.)

## → **안전대행기관의 출장소 설치 가능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회사에서 등기부등본상

본사(주사무소)와 지사(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사별로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에 지사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면서 안전관리 대행업을 수행하던중, 목포지역의 사업영역확대를 위하여 관외지정이 아닌 목포시에 지사가 아닌 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시 지사(분사무소)와 동일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지 여부 및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에 지사(분사무소)가 있으므로 사무실만 임시로 두고 운영을 하여도 무관한 것인지 여부

#### 회 시

관외지정을 받지 않고 목포시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안전관리대행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인력, 시설, 장비 및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아야만 할 것임

(산업안전팀-910, 2007.02.21.)

###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 ←

#### 질 의

전년도 11월에 신규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1개월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후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연도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제436호) 제4조(대행업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신규계약사업장인 경우 대행계약후 1개월 이내,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인 경우 중대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1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민원인의 질의내용과 같이 전년도 11월에 신규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1개월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해당사업장이 연도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 점검실시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기존 작업공정의 개선, 신규 작업공정의 설치 등 안전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실시해야 되는 정밀안전점검은 신규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1개월 이내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6, 2008.03.24.)

##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 가능 여부

### 질 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에 대한 반려조치 가능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2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추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지정을 하여야 하나, 추가지정 반려의 명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되면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상호협의하여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것임

※ 대행업무의 부실 등에 대한 부분은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5조(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통하여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1, 2008.04.18.)

## →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의 인정범위

### 질 의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의 인정범위

## 회 시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은 노동부에서 지정한 지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사업장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등 실질적으로 산업안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근로감독관 근무경력 및 지정검사기관의 기계기구 검사 업무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안전보건지도과-489, 2008.12.10.)

## 소방설비 기사의 안전관리 대행기관 인력요건 인정여부

## 질 의

아래 사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규칙별표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 기준 중 “라”목 기준에 해당하는지

1.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안전관리(소방설비 2년)와 사업장 안전업무경력(1년 6월)인 경우(총 3년6개월)
2. 소방설비기사 취득후 안전관리(소방설비 1년6월)와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사업장 안전업무(1년6월)(총 3년2개월)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본인력은 [규칙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을 5명 이상(“가”목 해당자 1인, “나”목 해당자 1인, “다”목 해당자 2인, “라”목 해당자 1인)를 갖추어야 하고, 여기서 “라”목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아래 어느 하나를 말하는 바,

- (1) 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별표4 제7호 내지 제12호 제외)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중 기계·금속·화공·전기·조선·섬유·안전관리(소방설비·가스분야 한함)·산업응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질의 1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후 산업안전 실무경력 산입은 소방설비 안전관리 경력과 사업장 안전관리 실무경력을 포함한 안전관리 경력이 위 (1)에 정한 산업안전 실무경력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되고,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동일인이 위 (1)과 (2)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이때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요건은 각각의 자격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의 합이 3년 이상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533, 2009.04.27.)

## 안전관리대행기관 관외지정 가능여부

### 질 의

안전관리대행요원이 5명(사업장 150개소, 근로자수 10,000명)인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관외 지정 소재 사무소가 장거리에 소재하므로 상주인력 1명을 배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주 사무소의 안전대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법적 인력요건이 부족한 경우로 보아 관외 지정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아니면 관외 지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각 관할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 각 해당 지방노동청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

지정한계 이내에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09.1.1. 이후에도 기존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만으로 다른 청에 관외지정 허용

관외지정권자인 해당 지방노동청장은 지정한계, 업무수행 가능 정도를 최초지정권자인 해당 지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관외지정서 발부토록 업무지침 시달

따라서 상가지침에 따라 관외지정의 허용범위는 최초지정권자의 지정지역과 지정한계, 업무수행 가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접지역에 한하여 관외지정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기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4012, 2009.10.26.)

## 2. 측정 및 검진기관

###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서 ‘대학’의 범위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제1항제3호에 의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대학’의 범위

※ 지정측정기관 중 재능대학이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회 시

‘대학은 4년제 대학교(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와 2·3년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감안할 때 재능대학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992, 2006.02.08.)

### 대학 산업보건학 전공자 등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해당 여부

#### 질 의

1. 4년제 대학교에서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2. 화학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3. 산업보건학을 전공하였으나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의 분석전담자로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모두 위 규정에 의한 분석전담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1291, 2006.02.08.)

## 작업환경측정 분석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 질 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작업환경측정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규칙별표12의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과 장비기준에서 광전분광광도계, 순수제조기, 유도결합프라스마(ICP)가 중복될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의한 별표12(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는 작업환경측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산업보건 외의 업무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지정측정기관의 장비기준 중 광전분광광도계, 순수제조기, 유도결합프라스마(ICP) 등 일부 장비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의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동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산업보건환경팀-2767, 2007.05.18.)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신청 시 정도관리 신규 실시의무 여부

### 질 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반납 후 재지정신청 시 검진기관, 검진인력, 시설, 장비가 동일한 상태에서 청력, 진폐 정도관리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이 지정서 반납 후 다시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분석, 진폐, 청력분야 정도관리)에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3분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지정서 반납 이전 포함)에 같은 법 제43조제9항에 의한 정도관리에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신규로 정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나, 1년이 경과 하였다면 해당 분야의 평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

(근로자건강보호과-169, 2008.05.07.)

###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작업환경측정 분석에 관한 자격에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해당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는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인바,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는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근로자건강보호과-336, 2008.07.07.)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

#### 질 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한 의사 2인을 두고 연간 2만명 이하 검진이 가능한 조건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자격의사 1인이 이직한 상태에서 운영한 경우 지정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시 해당기관이 보유한 자격 의사 수를 기준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가능한 연인원을 지정조건으로 명시하여 지정

따라서 지정받을 당시 지정조건(연간 2만명 이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자격의사 1인 부족)에는 지정받은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될 수 있음

※ 의사 1인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정 받을 수 있으나 실시인원을 연 1만인 이하 조건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지정받은 사항의 인력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면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

(근로자건강보호과-566, 2008.09.22.)

##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 질 의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및 위탁측정기관이 인력·시설 및 장비를 법 규정에 맞게 구비하고 분석업무를 타기관에 의뢰할 경우 지정받을 수 있는지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이나,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준비 또는 분석실험실’로 규정되어 있음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의 위탁측정기관 또는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12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보유) 같은 법 제42조제8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평가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준비 또는 분석실험실’로 규정하고 있어 작업환경측정준비, 분석실험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음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관련 별표12 제1호 다목(14)의 선택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별표의 비고2호에 의거 해당 장비를 보유한 다른 위탁측정기관 또는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 해당 유해인자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9-78호)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측정한 시료의 분석을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근로자건강보호과-802, 2008.12.01.)

## →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리 독립한 경우 지정신청 여부

### 질 의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총괄하던 책임자가 분리 독립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계속 측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지정(변경 또는 신규)방법

### 회 시

하나의 법인 내에서 단순히 기관명,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다면 지정측정기관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여도 무방하나, 기존 법인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신설 법인이 측정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신규지정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건강보호과-57, 2010.07.08.)

## →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분석자의 측정 업무 가능 여부

### 질 의

작업환경측정기관 중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인력기준은 측정자(산업위생관리기사 등) 1인 이상과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자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분석자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분석업무 외에 작업환경측정업무를 수행하여도 되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분석자는 분석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에서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석자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갖춘 자라면 분석업무 외에 작업환경측정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음

(국민신문고, 2012.03.09.)

## →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인력의 석면 감리업무 가능 여부

### 질 의

사업주 A는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위생기술사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음. 이런 상황에서 측정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석면감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으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자가 석면조사기관, 건축사무소,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질의의 경우 사업주 A가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석면조사기관의 소속인력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산업위생기술사 자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동 고시에서 규정한 감리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국민신문고, 2012.06.05.)



## 제 7 장 행정기준



## 제 7 장 행정기준

### 1. 감독 및 조사대상

#### 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 질 의

(주)○○의 제1공장에서 중화조 플랜지부위의 핀 홀결함 부위를 보수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해당 중화조 내부에 잔류해 있던 벤젠증기에 의하여 화재(폭발)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하여

1.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협력업체가 공사의 일부를 도급 계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설비로부터의 유해·위험물질의 화재(폭발)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중대산업사고의 적용여부
2.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관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중대산업사고 정의를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사고는 사고의 크기가 중대한 것으로 사고 영향의 범위(장소)를 사업장내 사업주 근로자를 포함한 도급계약 등으로 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타 사업주의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 공정안전보고서의 12개 구성요소에는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제1항의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근로자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관련)”에서 근로자 부상과 피해를 동반한 중대 산업사고로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조사대상 기준이 되는 것으로 문구적으로 보이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중대산업사고를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중대산업사고 정의는 상기 2가지 요건중 한가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중대산업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부상 또는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도 조사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6015, 2006.12.13.)

## 현장소장과 임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은

### 질 의

사업주를 위하여 공사의 시공과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현장소장(피재자 망 ○○○)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인인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본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같은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범죄인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답설>

- 건축주 ▽▽▽는 피재자 망 ○○○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손익의 귀속 주체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비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로써 행위한 일부 사실이 있다면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피재자 망 ○○○)에게 위임하여 총괄 관리토록 한 경우에도
- 건축주 ▽▽▽가 사업주라면 어떠한 형태라도 안전관리 의무를 위임·위탁 등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3.29. 선고2006도8874 판결)에 근거하여 ▽▽▽에게 같은법 제23조 적용을 제외하고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본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같은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범죄인지해야 함

### <을설>

- 건축주 ▽▽▽는 피재자 망 ○○○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손익의 귀속 주체인 사업주로서 현장소장(피재자 망 ○○○)을 고용하여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에게 위임하여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는 주 1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기는 하나 공사의 시공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 피재자 망 ○○○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선발·고용하여 재량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동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다면
  - 피재자 망 ○○○은 ▽▽▽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위자이므로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 사업주 ▽▽▽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위반의 법적 책임의 부과는 판례(대법원 2007.3.29. 선고2006도8874 판결)의 사례와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인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동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실상의 행위자인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 또한, 망자인 현장소장의 사망사건 관련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본 사건 당사자인 행위자의 사망으로 “다세대 신축공사 고용계약서”의 당사자인 ▽▽▽에게 산재발생보고 의무가 있어 동조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과 함께 양벌규정에 의거 동조의 벌금형을 물도록 법적 책임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 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사용자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현장소장(피재자 망 ○○○)이 명백하다고 가정한다면

-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 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서울민사지법 2004가합56795 참고)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하므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주는 ▽▽▽로 볼 수 있음
2. 대리권의 소멸사유로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인 경우(민법제127조)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사전적인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사후적인 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피재자 망 ○○○)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적인 조치의무는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피재자 망 ○○○)에게 있고, 사후적인 조치의무는 대리권을 위탁한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에게 의무가 부과됨
3. 따라서 상기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10, 2008.05.01.)

###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사업주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감독대상이 되는지

#### 질 의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도급사업주(원청)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집무규정 제9조제2호에 해당, 사업장이 감독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79호) 제9조제2호에 의한 감독대상은 도급 및 수급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2건의 범죄인지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시설,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작업관리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조사하여 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대상이 된다는 판단임

(안전보건지도과-390, 2009.02.06.)

## →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가 조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질 의

국내업체가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선박수리(도장 등 청소)를 의뢰받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선박이 정박 중인 해외로 가서 선박수리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에 규정된 조사대상 재해 해당 여부

### 회 시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안전보건정책과-2659, 2010.12.07.)

## → 사건의 관할

### 질 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에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등에 어로작업 등 선박 내 작업의 포함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6호) 제22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제1항제3호 규정은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에 대하여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2009.7.31. 집무규정(훈령 제703호)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 귀 질의의 어로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142, 2012.01.10.)

## 중대재해조사 등 관할

### 질 의

○○주식회사(○○주식회사 소재지는 A지방관서 관할) 소속 근로자가 업무 계약 차 △△빌딩(△△빌딩 소재지는 B지방관서 관할)에 들러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빌딩 주차관리자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하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협착 사망한 경우

1. 사건의 관할이 A지방관서인지 B지방관서인지 여부
2. 위 사망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인지, 발생 보고 대상이라면 보고 의무자는 ○○주식회사 사업주인지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인지 여부
3.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무규정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는 보고하지 아니하고 조사 생략 대상으로 판단되는데 위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어느 관서에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사건의 관할이 B지방관서라면 사망자가 △△빌딩 주차관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여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는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인데,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22조는 사건의 관할은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 감독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처리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발생한 △△빌딩이 동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B지방관서에서 동 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타당함

2. 동 사망사고가 업무에 기인한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인 ○○주식회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가 있음
3. 동 사망사고가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지방관서가 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사고 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무규정 제21조의 중대재해발생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규정한 법으로서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빌딩 주차 관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태적인 범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348, 2012.05.01.)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 질 의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 여부 판단은?

(사업장 개요)

- 도급인 A사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20,000명
- 수급인 B사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150명

※ 도급인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주이며 수급인 B사 이외 다수 수급인에 하도급을 주어 작업

(중대재해 개요)

수급인 B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던 중 중량물이 낙하하여 사망(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에 해당)

<갑설>

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 재해자는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도급인 A사로, A사만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수로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여 감독 대상여부 판단

### <을설>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A사, B사가 모두 해당되며, 각 사업장별 하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한 근로자수로 산정한 사고성 사망만인율에 따라 감독 대상 여부 판단.

### 회 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3호)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시감독 대상은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전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 후단)와 재해자(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1호)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A사)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 산정시에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내 모든 수급업체 소속근로자수와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망만인율로 수시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4066, 2012.07.30.)

## 2.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및 감경기준 적용 방법

#### 질 의

1.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 감경기준(산업안전보건법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 적용방법
2. 산업안전보건법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바, 건설현장의 경우 위반의 범위를 당해 건설현장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 소속의 전국 현장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전단에 의거 영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동 별표 13은 다시 제1호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금액을, 제2호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감경기준이 아님)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감경기준은 영 제48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보건법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적으로 영 별표 13 제1호에 규정된 부과금액에 동표 제2호의 사업장 규모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산업안전보건법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한 처분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사실이 없는 경우 그 해당기간별 감경비율만큼 감경하여 최종 산정해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장(건설현장)의 위반 및 처분 사실에 따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정책과-724, 2004.02.06.)



##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 기준”의 근로자 과태료 부과시 적용 여부(산안법 제19조제4항, 제25조, 제43조 제3항, 제43조의2제4항 위반 등)

#### <답설>

동 기준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할 사안이 아니므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누구에게나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 <을설>

제2호의 문구만으로 볼 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단정지을 근거가 빈약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임금수준, 작업여건, 노동강도 등에 차별이 존재하는 실태를 감안하여 근로자에게도 사업장의 규모(공사금액) 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에서 사업장의 규모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토록 규정한 것은 300인 미만(건설공사의 경우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한 경제적·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취지이며,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5만원)은 소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의 입법취지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안전보건정책과-535, 2005.10.07.)

## 임차인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 질 의

임차인(개인병원)이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건물주, 임차인, 개인 공사업자)이 누구인지와 부과 시「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1조, 제42조 적용방법이 무엇인지

#### 회 시

석면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자에게 부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임차인에게 부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부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 집무규정 제41조를 적용, 공사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동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 건도 집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자건강보호과-3995, 2009.10.13.)

###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적용방법에 대한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4제1항 및 제38조의5제3항 관련 사항을 위반한 개인(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능 여부 및 감경기준 적용방법이 무엇인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3조(적용범위)제1항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를 규정한 것으로 의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동법 제19조제5항, 제22조제1항, 제49조의2제5항, 제50조제4항이 의무주체를 “사업주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4제1항, 제38조의5제3항은 의무주체를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로 한정할 수는 없음

또한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려는 동조항의 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문언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사업자 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1조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제41조를 적용, 공사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동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은 특별히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해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집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자건강보호과-4565, 2009.12.01.)

## 공립초등학교에서 기능직공무원 사망 시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 질 의

공립초등학교 소속 기능직공무원이 전직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산재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 회 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자치법 제3조)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초·중등교육법 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공립초등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5204, 2011.12.07.)

## → 노·사간 합의 지연으로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넘긴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

### 질 의

A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노·사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 등으로 합의가 늦어져 정해진 작업환경측정 주기(6개월)를 넘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에 따라 측정주기를 준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과 작업환경측정을 주기 내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항이므로 별칙조항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임

(제조산재예방과-3225, 2012.11.21.)



## **효력이 없어지는 질의회시**

**- 폐지된 질의회시 목록 -**



## 1-1

## 법 적용 일반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근로자수 산정 | 안정68301-686<br>(2000.06.29.)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공무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산보68300-557<br>(2001.08.18.)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1-3

## 산업안전보건교육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하수급인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br>실시할 의무주체           | 산안(건안)68307-317<br>(2000.04.18)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br>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 안정68301-781<br>(2000.07.21.)    | 해석변경<br>서비스산재예방팀-43<br>(2013.01.04.)   |
|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br>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안정68301-1216<br>(2000.11.18.)   | 해석변경<br>서비스산재예방팀-43<br>(2013.01.04.)   |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br>건강진단 실시 여부            | 안정 68307-157<br>(2001.03.15.)   | 해석변경<br>서비스산재예방팀-43<br>(2013.01.04.)   |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산안68307-10361<br>(2002.07.26.)  | 해석변경<br>서비스산재예방팀-43<br>(2013.01.04.)   |
|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br>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안전보건정책팀-1404<br>(2005.05.21.)   | 해석변경<br>서비스산재예방팀-43<br>(2013.01.04.)   |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br>여부                  | 안전보건정책팀-5974<br>(2007.12.28.)   | 해석변경<br>서비스산재예방팀-2463<br>(2012.11.22.) |
| 휴업기간 중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 안전보건정책과-113<br>(2009.01.08.)    | 관련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br>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안전보건정책과-4817<br>(2009.12.30.) | 해석변경<br>서비스산재예방팀-2463<br>(2012.11.22.) |
|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br>보수교육 면제       | 국민신문고<br>(2010.10.01.)        | 해석변경<br>서비스산재예방팀-2463<br>(2012.11.22.) |
|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 국민신문고<br>(2010.10.16.)        | 해석변경<br>서비스산재예방팀-2463<br>(2012.11.22.) |

## 2-3

### 안전 · 보건관리자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시 제출서류중 재직증명<br>방법                                | 산안(건안)68307-1064<br>(2000.11.30.)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생활정보신문 발행업의 안전 · 보건관리자<br>선임여부                               | 산안68320-169<br>(2001.04.13.)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br>선임방법                             | 산보68307-234<br>(2001.04.18.)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하는 사업장의<br>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산안68320-382<br>(2003.10.01.)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br>사업장인지 여부                          | 산업보건환경팀-836<br>(2006.01.26.)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br>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br>가능한지 여부 | 산업안전팀-888<br>(2006.02.21.)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 산업안전팀-1649<br>(2006.04.10.)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을<br>동시에 할 경우 관리기준                      | 안전보건지도과-1635<br>(2010.04.07.)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3-1

##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 산안(건안)68307-10383<br>(2001.08.16.) | 해석 변경<br>건설산재예방과-3311<br>(2012.10.02.) |

## 3-2

## 인증·검사제도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장소               | 산안68320-148<br>(2000.02.22.)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이동식크레인의 자체검사 대상여부 및 자체검사원의 자격          | 산안68320-213<br>(2000.03.13.)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                            | 산안68320-280<br>(2000.04.03.)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성능검정 규격외 파이프써포트의 제조 또는 판매가능 여부         | 산안(건안)68307-633<br>(2000.07.19.)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임대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를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 산안68320-687<br>(2000.07.29.)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깁폼, 시스템가설재에 적용되는 검정기준                  | 산안(건안)68307-722<br>(2000.08.09.)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교류아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설치여부                  | 산안68320-791<br>(2000.08.31.)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절곡기에 국내에서 검정받지 않은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부착하여도 되는지 | 산안68320-830<br>(2000.09.16.)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추가로 설치된 공기탱크의 검사여부                     | 산안68320-947<br>(2000.10.26.)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수출용 비상 브레이크(로울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검정 적용 여부    | 산안68320-991<br>(2000.11.06.)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산 보안경을 국내검정없이 착용가능한지        | 산안68320-994<br>(2000.11.07.)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                                  | 산안68320-1013<br>(2000.11.16.)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된 보호구의 성능검정<br>합격표시 방법          | 산안68320-1018<br>(2000.11.17.)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호이스트가 완성검사 대상인지 여부                          | 산안68320-1047<br>(2000.11.25.)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프레스에 대한 안전장치                                | 산안68320-47<br>(2001.01.18.)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항만법에 의한 자체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의<br>자체검사 면제 여부        | 산안68320-72<br>(2001.01.30.)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크레인 수입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                          | 산안68320-74<br>(2001.01.31.)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수직형 사출성형기의 정기 및 자체검사 대상<br>여부               | 산안68320-81<br>(2001.02.05.)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안전성심사결과 불합격판정 기자재를 본공사<br>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산안(건안)68307-10053<br>(2001.02.24.)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호이스트가 크레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br>자체검사 대상 여부         | 산안68320-111<br>(2001.02.28.)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관류보일러의 검사대상 여부                              | 산안68320-112<br>(2001.03.02.)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보일러의 정기검사 면제 여부                             | 산안68320-121<br>(2001.03.07.)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두께 기준에 미달하는 단관비계용 강관으로<br>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산안(건안)68307-10140<br>(2001.04.16.)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특수구조 방호장치로 성능검정을 받을 수<br>있는지 여부             | 산안(건안)68307-10262<br>(2001.06.14.)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위험기계·기구 완성검사 실시의무 위반시<br>처벌                 | 산안68300-396<br>(2001.09.04.)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낙하물 방지망이 성능검정 대상인지 여부                       | 산안(건안)68307-10262<br>(2001.10.08.)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파이프써포트를 3분까지 이어서 사용할 수<br>있는지               | 산안(건안)68307-10579<br>(2001.11.30.)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본 공사용 난간지주가 성능검정 대상인지                                        | 산안(건안)68307-10207<br>(2002.05.14.)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유압기구 특장차량이 이동식크레인에<br>해당되는지 여부                               | 산안68320-277<br>(2002.07.08.)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특수구조의 강관비계가 성능검정을 받을 수<br>있는지                                | 산안(건안)68307-10370<br>(2002.07.31.)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화물용승강기에 대한 방호조치                                              | 산안68320-330<br>(2002.08.12.)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KS표시제품 성능검정여부                                                | 산안68320-483<br>(2002.11.06.)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검정받은 수입품을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br>경우 검정이 필요한지 여부                      | 산안68320-80<br>(2003.03.07.)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화물용리프트 검사대상                                                  | 산안68320-155<br>(2003.04.15.)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자체검사자격 등                                                     | 산안68320-169<br>(2003.05.01.)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타워크레인 광고물 부착금지                                               | 산안68320-186<br>(2003.05.14.)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크레인 변경 이전설치                                                  | 산안68320-224<br>(2003.06.04.)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비상방수문이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br>여부                                  | 산안(건안)68307-203<br>(2003.07.10.)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교반용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여부                                            | 산안68320-380<br>(2003.09.29.)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성능검정을 받은 방폭용<br>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도 성능검정을 받아야<br>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과-224<br>(2004.01.09.)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방폭기기에<br>대해 성능검정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산업안전과-3444<br>(2004.06.04.)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KS인증을 받은 안전화도 성능검정을 받아야<br>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과-3958<br>(2005.07.21.)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정격하중 3톤 미만 크레인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 산업안전과-4183<br>(2005.08.04.)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 주기 산정방법                | 산업안전팀-834<br>(2005.10.21.)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팀-585<br>(2006.01.27.)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리프트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와 관련하여                            | 산업안전팀-1020<br>(2006.03.06.)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견인 및 구난 렉카차량용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 안전보건지도과-4210<br>(2009.11.13.)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시 검사주기는                                | 안전보건지도과-4478<br>(2009.12.04.)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소방차 및 군용 차량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 안전보건지도과-4546<br>(2009.12.08.)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차량탑재용 크레인에 탑승장치 설치 시 법 위반 여부                      | 안전보건지도과-791<br>(2010.04.22.)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3-3

### 산업안전기준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인화점의 설정기준 및 인화점 값의 설정근거                | 산안68320-201<br>(2001.05.09.)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위험물 취급공장내 전동기의 방폭구조 적용여부               | 산안68320-267<br>(2002.07.03.) | 일부 문구수정            |
| 화학설비 안전거리                              | 산안68320-68<br>(2003.03.03.)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소화배관 등의 용접작업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팀-1054<br>(2005.11.02.)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가스부피환산장치(온압보정기)의 방폭 적용여부               | 안전보건지도과-334<br>(2008.08.29.)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사업장내 샤워장에서의 감전사고에 대한 법 적용 여부 | 산업안전과-952<br>(2010.10.13.)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3-5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혜택            | 산안(건안)68307-10337<br>(2001.07.21.)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시기     | 산안(건안)68307-10271<br>(2002.06.11.)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자율안전관리업체계획서 확인의 면제기준           | 산안(건안)68307-10458<br>(2002.10.18.)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방법 및 주기 | 산업안전팀-832<br>(2005.10.21.)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 산업안전팀-1998<br>(2006.05.09.)        | 해석변경<br>제조산재예방과-3571<br>(2012.12.31.) |

### 4-1

### 작업환경측정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화학물질의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 대상여부                    | 산보68300-107<br>(2000.02.11.)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압축공기로 작업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 및 금속끝의 범위   | 산보68344-191<br>(2000.03.15.)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밀링 및 선반작업, 유압프레스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산보68344-293<br>(2000.04.29.)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산보68344-294<br>(2000.04.29.)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옥내 공작기계 작업장의 소음기준                       | 산보68344-457<br>(2000.06.27.)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규정                 | 산보68344-542<br>(2000.08.04.)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확산시료 포집기를 이용한 작업환경측정의 인정 여부             | 산보68344-571<br>(2000.08.24.)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노출기준이 설정된 유해물질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산보68344-619<br>(2000.09.19.)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Air driver작업시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산보68344-671<br>(2000.10.14.)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온열의 노출기준 적용 및 작업환경측정방법                  | 산보68344-765<br>(2000.11.25.)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레미콘 제조회사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산보68344-766<br>(2000.11.25.)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분진의 유리규산 함유량에 따른 노출기준                   | 산보68344-798<br>(2000.12.11.)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작업장 및 사무실의 적정온도                         | 산보68344-45<br>(2001.01.27.)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자동차 도장공정의 페티와 페인트 분진의 노출기준              | 산보68307-118<br>(2001.03.02.)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특정화학물질 함유중량 비율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 산보68307-144<br>(2001.03.15.)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하수 및 폐수처리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산보68307-247<br>(2001.04.24.)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황산을 사용하는 매립장 침출수 전처리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산보68307-298<br>(2001.05.11.)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통한 자동횟수조정 가능 여부                 | 산보68307-304<br>(2001.05.15.)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작업환경측정 수수료부담 주체                              | 산보68307-409<br>(2001.06.25.)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간헐적 납땜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산보68344-534<br>(2001.08.04.)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온열에 적합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                        | 산보68344-559<br>(2001.08.20.)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시 제어풍속 측정의무 및 처분사항                | 산보68344-616<br>(2001.09.05.)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단일물질 초과가능에 대한 판단                             | 산보68344-854<br>(2001.12.04.)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측정 실시주체가 어느 회사인지               | 산보68344-658<br>(2002.07.16.)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사업장에 대하여 1인 1일 2개소 측정이 가능한지 | 산보68344-129<br>(2003.02.20.) | 질의내용 중복            |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평면도의 구체적인 의미 등                    | 산보68344-409<br>(2003.05.28.)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중 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등은 무엇인지        | 산보68344-637<br>(2003.07.31.)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원재료가 점토와 고령토를 사용할 경우 몇 종 분진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 산보68344-706<br>(2003.08.21.)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석면포 취급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산보68344-732<br>(2003.09.01.)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산보68344-787<br>(2003.09.20.)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3종 분진을 호흡성분진으로 측정할 경우 노출기준의 적용               | 산업보건환경과-572<br>(2004.02.04.)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기록방법 및 노출기준 적용                   | 산업보건환경과-978<br>(2004.02.26.)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소음만 노출기준 초과시 작업환경측정주기 완화가 가능한지      | 산업보건환경과-1248<br>(2004.03.10.)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광물성분진 및 곡물분진의 노출기준                  | 산업보건환경과-1614<br>(2004.03.23.)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유해물질별 올바른 측정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 산업보건환경과-2127<br>(2004.04.16.)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지방노동관서 보고기한            | 산업보건환경과-3557<br>(2004.06.29.)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일부 유해인자만 측정 횟수 조정이 가능한지             | 산업보건환경과-3870<br>(2004.07.12.)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석탄분진의 노출기준                          | 산업보건환경과-4390<br>(2004.08.03.)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한지             | 산업보건환경과-3585<br>(2005.06.20.) | 질의내용 중복            |
| 분진의 중량분석시 시료채취 분석오차는                | 산업보건환경과-4847<br>(2005.08.18.)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혼합유기용제의 평가 방법                       | 산업보건환경과-4973<br>(2005.08.25.)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토목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산업보건환경팀-1463<br>(2006.03.07.)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4-2

#### 유해물질관리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원료의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여부         | 국민신문고, 2010년                  | 해석변경<br>(국민신문고<br>2012.11.21.) |
| 법 제39조의 유해표시와 법 제41조의 경고표시와의 관계 | 산보68343-795<br>(2000.12.11.)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일반소비제도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산업보건환경과-4391<br>(2004.08.03.)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4-3

## 석면조사 및 관리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단순 분리작업만 행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산업보건환경과-3691<br>(2005.06.28.)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건물 내에 석면제품 사용가능 여부 및 석면의 유해성                   | 산업보건환경과-4624<br>(2005.08.09.)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석면 해체·제거 작업 해당 여부                              | 산업보건환경과-4881<br>(2005.08.22.)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백석면이 5% 함유된 천장재료를 시공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산업보건환경과-4881<br>(2005.08.22.)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4-4

## 건강진단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일용, 임시직 근로자 신규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산보68307-100<br>(2000.02.21.)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채용시 건강진단의 인정범위                  | 산보68307-137<br>(2000.02.23.)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채용시 건강진단의 비용부담 주체               | 산보68307-193<br>(2000.03.15.)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신체장애자가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 산보68307-52<br>(2001.01.31.)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안정68307-157<br>(2001.03.15.)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채용신체검사에서 치과검사의 필요성              | 산보68305-339<br>(2001.05.28.)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신규채용자 신체검사결과 채용불가 판정에 대한 적법 여부  | 산보68305-443<br>(2001.07.03.)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재입사자의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 산보68307-83<br>(2002.01.28.)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채용시건강진단의 치과검사 포함 여부 및<br>실비비용 부담 주체 | 산보68307-339<br>(2002.04.15.)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의 채용시건강진단               | 산보68307-535<br>(2002.06.05.)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채용시건강진단의 비용 부담 등                    | 산보68307-772<br>(2002.08.27.)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4-5

#### 산업보건기준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관리대상물질이 1% 미만 발생하는 경우<br>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성능유지 여부 | 산업보건환경과-2923<br>(2004.05.29.)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5-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기술지도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공사착공후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br>기집행한 안전관리비 사용             | 산안(건안) 68307-77<br>(2000.01.29.)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br>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164<br>(2000.02.28.)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안전교육장에 정수기 구입시 안전관리비<br>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622<br>(2000.07.15.)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최초계약이 '99. 6. 3이전에 시행된 연차공사의<br>경우 안전관리비의 본사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934<br>(2000.10.23.)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br>정의                      | 산안(건안)68307-953<br>(2000.10.27.)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작업조끼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26<br>(2001.01.09.)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하도급업체에서 안전시설비를 50%이상 사용한<br>경우 법 위반여부                             | 산안(건안)68307-61<br>(2001.01.18.)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건설안전체험교육을 위한 버스임대료·식비의<br>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10028<br>(2001.02.15.)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기성공정을 적용에 있어서 정산방법                                                | 산안(건안)68307-10037<br>(2001.02.19.)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경사법면의 붕괴위험 방지시설의 안전관리비<br>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10099<br>(2001.03.26.)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공사진척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br>못할 경우 벌칙 및 처리방법                          | 산안(건안)68307-10157<br>(2001.04.26.)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안전지원제 행사비중 출장부패 및 스님의<br>보시금액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10166<br>(2001.04.27.)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안전관리비에 부가세 포함여부, 항목별<br>초과금액 인정여부, 협력사의 사용기준<br>준수여부, 수해방지시설 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10211<br>(2001.05.22.)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분진막, 보호구 잔여량, 감리원 건강진단 비용<br>사용여부 등                               | 산안(건안)68307-10324<br>(2001.07.14.)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차수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br>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안(건안)68307-10587<br>(2001.10.31.)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지게차 등의 고장난 후진정보기 교체비용<br>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10593<br>(2001.12.06.)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인접현장 자재사용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br>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부와<br>대상인지 여부        | 산안(건안)68307-10600<br>(2001.12.07.)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br>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위법성 여부                         | 산안(건안)68307-10601<br>(2001.12.07.)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초과가능 여부                                    | 산안(건안)68307-10051<br>(2002.02.04.)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안전화 털이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10087<br>(2002.03.04.)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br>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우선인지 법적기준이<br>우선인지  | 산안(건안)68307-10123<br>(2002.03.28.)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공사현장내 교통안전시설물 안전관리비<br>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10177<br>(2002.05.02.)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기성으로 80%수준에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br>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 산안(건안)68307-10220<br>(2002.05.17.)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발주처에 신고되지 않은 안전관리자 인건비<br>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10227<br>(2002.05.20.)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br>안전관리비 사용                         | 산안(건안)68307-10178<br>(2002.05.22.)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경사법면 보호망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10310<br>(2002.07.05.)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br>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10330<br>(2002.07.15.)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 사용<br>가능여부                            | 산안(건안)68307-10406<br>(2002.08.29.)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비 지출시기 및 증빙<br>방법                              | 산안(건안)68307-10414<br>(2002.09.02.)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공사중 정산후 남은 안전관리비를 시설공사로<br>전환여부                           | 산안(건안)68307-10441<br>(2002.09.26.)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만 참여시 안전관리비<br>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 산안(건안)68322-12<br>(2003.01.15.)    | 행정해석 변경<br>안전보건정책팀-3040<br>(2007.07.09.) |
| 안전관리비 공사진척도에 따른 미사용시 공사<br>감독자 등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은<br>것인지 | 산안(건안)68307-69<br>(2003.03.14.)    | 관련(근거) 규정의<br>개정 및 폐지                    |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의 조치 사항         | 산안(건안)68307-128<br>(2003.05.20.)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안전화 건조기 구입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180<br>(2003.06.19.)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안전화 세균살균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10491<br>(2003.07.02.)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마대 등 수해예방 장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산안(건안)68307-202<br>(2003.07.10.)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 산업안전과-1240<br>(2004.02.24.)        | 행정해석 변경<br>(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원청업체에 과태료를 부과) |
| 본사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 산업안전과-2598<br>(2005.05.20.)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 산업안전팀-1028<br>(2006.03.06.)        | 질의내용 중복                                                      |
| 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산업안전팀-1181<br>(2006.03.16.)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안전순찰 겸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산업안전팀-4760<br>(2007.10.02.)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가설 구조물 안전성검토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안전보건지도과-4599<br>(2009.12.11.)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안전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안전보건지도과-253<br>(2010.01.18.)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설계변경에 따른 기술지도 대상 해당 여부                        | 안전보건지도과-237<br>(2010.03.15.)       | 행정해석 오류<br>산업안전팀-1534<br>(2005.12.05.)<br>오인용                |

## 5-4

##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2001.1.1.이후 공동이행방식 건설현장 재해자수 산정 방법         | 산안(건안)68307-64<br>(2001.01.27.)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건설업체 환산재해율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 산안(건안)68307-10379<br>(2001.08.13)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재해율 산정 및 안전관리와 산재보험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 산안(건안)68307-10214<br>(2002.05.16.)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재해율 높은 회사의 불이익 조치 내용                       | 산안(건안)68307-10312<br>(2002.07.05.)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업체가 시공하다 재해발생시 재해율 귀속 여부       | 산안(건안)68307-236<br>(2003.08.07.)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관리대상물질이 1% 미만 발생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성능유지 여부 | 산업보건환경과-2923<br>(2004.05.29.)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6-1

##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장비를 가지고 신규지정신청시 이전의 정도관리 합격 인정 여부 | 산보68344-540<br>(2000.08.02.) | 질의내용 중복            |
|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작업환경측정 실시방법              | 산보68344-818<br>(2001.11.21.) | 질의내용 중복            |
| 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 인정                              | 산보68344-56<br>(2002.01.22.)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측정기관종사가 1인당 하루 1개소만 측정해야 하는지                        | 산보68344-648<br>(2002.07.12.)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7-1

## 감독 및 조사대상

| 제 목                                  | 회시번호                               | 비 고                |
|--------------------------------------|------------------------------------|--------------------|
| 본사가 재해율 우수업체일 때 중대재해발생 현장의 점검감독 대상여부 | 산안(건안)68307-10326<br>(2001.07.18.)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

## <이 책을 만드는 데 수고하여 주신 분들>

---

산재예방보상정책관 : 하미용

과 장 : 정진우, 김규석, 이철우, 김충모

서 기 관 : 신인재, 고광훈, 함병호

사 무 관 : 박종일, 강성훈, 조형근, 김진숙, 이민영, 이홍주,  
박형수, 구자환, 김민호, 홍신표, 추규봉, 성상호,  
최종수, 서영우

주 무 관 : 신우승, 이진홍, 천춘희, 동재형, 심용태, 김정태,  
최성필, 신정옥, 김영남, 정대성, 양유건, 김진수

전 문 위 원 : 이현숙, 이강명, 김해진, 김상현, 이승철, 서재민,  
최은진, 한인영, 임세종, 박현진, 박선아

---

※ 이 책자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정책과(02-6922-0918), 제조산재예방과(02-6922-0937), 건설산재예방과(02-6922-0954), 서비스산재예방팀(02-6922-096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2013년 2월 일 인쇄

2013년 2월 일 발행

발행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인쇄처 : 전우용사촌(주)  
02) 426-4415

---

<비 매 품>